

2010년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안성시립도서관



EM121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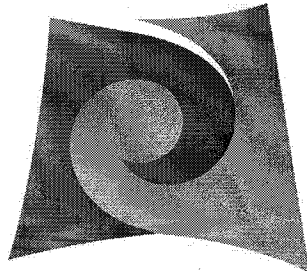


안성맞춤도시 안성

도 시 건 설 국
재 난 안 전 관 리 과

2010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도 시 건 설 국
재난안전관리과

안 전 관 리 현 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지진·화재·교통사고·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1.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1.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1.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목 차

제1장 총 론	1
제1절 일반사항	1
1. 안성시의 지역여건	1
2. 개 요	2
3. 매뉴얼 적용범위	2
제2절 재난의 이해	3
1. 재난의 정의	3
2. 자연재난의 발생유형	4
제3절 재난관리 대책	6
1. 기본방향	6
2. 추진전략	7
제4절 최근 자연재난 발생현황	8
제2장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11
제1절 조직체계	11
1.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11
2.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11
제2절 근무체계	12
1. 대책기간	12
2. 평상시(상시대비체계)	12

3. 비상시(준비단계, 비상단계)	12
가. 기상특보별주의보, 경보비상근무 계획	13
나.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편성	13
다. 유관기관 등 파견근무자 비상근무 요령	23
라. 재난관련 실과별 및 유관기관 주요임무	24
바. 상황판단회의 운영	30
사. 자연재난 사전대피계획(야간 집중호우 등 재난 예견시)	31

제3장 자연재난 유형별 및 단계별 행동요령 33

제1절 태풍 및 호우	33
1. 대비단계	33
2. 대응단계	60
3. 복구단계	77
제2절 대 설	99
1. 대비단계	99
2. 대응단계	118
3. 복구단계	126
제3절 황 사	140
1. 대비단계	140
2. 대응·복구단계	142
제4절 가 물	143
1. 대비단계	143
2. 대응단계	143
3. 복구단계	147

제5절 지 진	148
1. 대비단계	148
2. 대응단계	150
3. 복구단계	158

제6절 폭 염	171
1. 대비단계	171
2. 대응·복구단계	173

제7절 강 풍	175
1. 대비단계	175
2. 대응단계	180
3. 복구단계	195

제4장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행동요령 213

제1절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 행동요령	213
1. 본부장(시장)	213
가. 본부장 임무 및 역할	213
나. 대비단계	213
다. 대응단계	216
라. 복구단계	217
2. 차장(부시장)	218
3. 통제관(도시건설국장)	218
4. 담당관(재난안전관리과장)	218
5. 실무반	219

제5장 실·과·소별 주요임무 223

1.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223
2. 공보감사담당관실	223
3. 행 정 과	224
4. 주민생활지원과	224
5. 사회복지과	225
6. 세 무 과	225
7. 회 계 과	226
8. 정보통신과	226
9. 문화체육관광과	227
10. 지역경제과	228
11. 농 정 과	229
12. 축 산 과	230
13. 산림녹지과	230
14. 환 경 과	231
15. 도시정책과	232
16. 건 설 과	232
17. 교통행정과	233
18. 토지민원과	233
19. 건 축 과	233
20. 재난안전관리	235
21. 도시개발과	237
22. 보 건 소	238
23. 상수사업소	239

24. 하수사업소	239
25. 의회사무과	239
26. 농업기술센터	240
27. 시립도서관	240
28. 읍 · 면 · 동	240

제6장 국민행동요령 241

제1절 태 풍	241
제2절 호 우	244
제3절 홍 수	248
제4절 대 설	249
제5절 황 사	250
제6절 가 물	253
제7절 지 진	260
제8절 폭 염	265
제9절 대 설	268
제10절 강 풍	270
제11절 한 파	271

※ 참고자료 275

1. 안성시 의료시설 현황	275
2.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	279
3. 대피소 지정현황	280
4. 자연재난대비 비상연락망(시장, 부시장 등)	291
5. 기상특보 발령기준	292
6. 기상, 영상(CCTV), 수위관측 장비 현황	293

7. 읍·면·동 재난관리담당자	295
8.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편성표	297
9. 재난상황관리 비상연락망	299
10. 방재시설물 현황(배수펌프장, 저수지)	301
11. 농촌공사관리 저수지 현황	302
12. 소류지 현황	303
13. 재난관련 IP 및 Password 현황	304
14. 인명피해 최소화 행동요령	305
 ※ 재해상황 관리 서식	 317
1. 즉 보	317
2. 자연재난피해신고서	318
3.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등록부	320
4. 피해상황접수 대장	321

제1장 총 론

제1절 일반사항

1. 안성시의 지역여건

안성시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평택시, 북동쪽으로는 이천시, 남동쪽으로는 천안시, 북쪽으로는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부와 남부사이의 점이성 기후 형태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으며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건조하여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가. 지리적 여건

안성시는 동경 127° 06', 북위 36° 54' 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38국도 4차선도로와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동쪽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나. 지형적 여건

안성시 전체면적의 52%가 산지를 차지하며 전체적으로는 동쪽이 높고 서남의 경사가 완만하고 동쪽으로는 한강수계인 청미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안성천수계인 안성천, 청룡천, 한천, 조령천이 흐르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다. 기후적 여건

○ 기 온

기후적으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으며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건조하여 기온의 연교차가 크며 전체적으로 대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성 기후이다. 연평균 기온은 25℃이며, 겨울철에는 -2℃ ~ -6℃의 분포를 보인다.

○ 강 수 량

안성시의 10년간('00~'09) 년평균 강수량은 1,277.53mm로 벼농사 및 가타 작물재배에 적당하며 특히 벼농사의 경우는 연중 1,000mm이상의 강우량이 필요한데 안성시의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편이다.

강우량 년도별	평균 강우량(mm)			
	합 계	6월	7월	8월
2009년도	600.7	69.1	350.9	180.7
최근10년 (2000-2009년)	779.2	145.37	358.47	275.36
최근20년 (1990-2009년)	777.02	159.94	323.44	293.64
최근28년 (1981-2009년)	733.02	140.60	310.1	282.32

○ 바 람

안성시의 바람은 우리나라 전역과 같이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겨울철의 계절풍은 주로 대륙방면에서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으로 매우 차갑고 건조하여 맑은 날씨를 가져오게 하는 한편 혹독한 추위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2. 개 요

가. 목 적

본 매뉴얼은 태풍, 호우, 대설, 황사, 가뭄, 지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유형별,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부서별 활동방향을 규정하여 신속한 상황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근 거

○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 조례, 규칙 등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3. 매뉴얼 적용범위

- 태풍, 호우, 대설, 황사, 가뭄, 지진 등으로 인한 재난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안성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에 적용

- 태풍, 호우, 대설, 황사, 가뭄,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 안성시의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에 적용
-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매몰 등의 사태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어 안성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적용

제2절 재난의 이해

1. 재난의 정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인적재난·국가기반재난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 가뭄 · 지진 · 황사 ·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가목〉

나. 인적재난

-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재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나목〉

다. 국가기반재난

-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다목〉

2. 자연재난의 발생유형

가. 태풍(typhoon)

○ 일반적으로 태풍은 적도부근 해상에서 중심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 부른다.

※ 세계기상기구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부근의 최대풍속이 33m/s 이상인 것을 태풍(TY), 25~32m/s인 것을 강한 열대 폭풍(STS), 16~24m/s인 것을 열대폭풍(TS), 그리고 17m/s 미만인 것을 열대저압부(TD)로 구분한다.

나. 호우(heavy rain)

○ 일반적으로 큰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리킨다.

○ 그러나 기상학적으로 우량·강우강도·지속시간 등에 따른 명확한 정의는 없다. 각각의 강우기후구에서 평균적인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릴 때 사용한다.

【 호우 시 시간당 강우량과 벌어지는 상황 】

강우량 (mm/hr)	사람이 받는 느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실외상황	차에 있을 때	재해발생상황
10~20	세게 내리는비	걸을 때 바지를 적신다.	지면에 물웅덩이가 생긴다.	와이퍼를 빨리 하여도 잘 보이지 않는다	오래 지속되면 주의가 필요하다.
20~30	장대비라고 말한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옷이 젖는다.	도로가강과 같이 된다.	고속 주행시바퀴와 노면의사이에수막이생기고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게 된다.	하수나 작은 하천에물이 넘치고 작은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30~50	물통으로붓듯이내린다.				산사태가 쉽게 일어나고 위험지대에서는대피준비가 필요하다.도시에서는 하수관으로부터 빗물이 넘친다.
50~80	폭포와같이 내리며쿵쿵 소리가난다.	우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보라가 일어나도로면이새하얇게 되고시야가 나빠진다.	차량운전은 위험하다	도시에서는 지하실이나 지하상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재난이 발생한다.
80이상	가슴이답답한 압박감이있다. 공포를느낀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다. 홍수

- 홍수란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땅이 물에 잠기게 된 상태의 큰물

라. 대설(heavy snow)

- 일시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으로 같은 양이라 하여도 도심지역에 내린 경우와 기타 지역에 내린 경우 대처 방법이 다르다.
- 도심지역은 산간지역에 비하여 적은 양의 적설이 있어도 교통두절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산간지역의 과다한 적설은 도로두절을 추레하여 마을간 고립현상이 발생한다.

마. 황사(Asian dust, yellow sand)

-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 황토 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흩먼지를 말한다.
- 보통 저기압의 활동이 왕성한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때로는 상공의 강한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간다.

바. 가뭄(drought)

- 오랜 기간에 걸쳐 비가 적게 내리고 햇볕이 계속 내리쬘어 수문학적으로 물의 균형이 깨져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가뭄의 특성은 다른 재난과 달리 피해가 서서히 발생한다. 또한 같은 지역이라도 물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가뭄이라는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자연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사. 지진(Earthquake)

-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활동과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 지구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기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 지진의 규모 및 자연, 사람에 대한 영향 】

규모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인체영향	JMA진도 (8등급)
2.5미만	사람의 몸으로는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됨	느낄 수 없음	0(무감)
2.5~3.0	정지하고 있는 사람, 특히 감각이 민감한 사람이 다소 흔들린다고 느낌	민감한 사람만이 느낌	I (미진)
3.0~3.5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창문이 다소 흔들림	여러 사람이 느낌	II(경진)
3.5~4.0	건물이 흔들리고 창문이 움직이며 형광등과 같은 매달린 물건이 흔들리거나 그릇의 물이 출렁임	약간 놀람, 자다 깨م	III(약진)
4.0~5.0	건물의 흔들림이 심하고 불안정하게 놓인 꽃병이 넘어지며 그릇의 물이 넘침, 많은 사람이 집밖으로 뛰어나옴	매우 놀람, 자다 깨 나옴	IV(중진)
5.0~6.0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 넘어짐, 굴뚝, 돌담, 축대 등이 파손됨	서있기 곤란하고 심한 공포를 느낌	V(강진)
6.0~7.0	건물파괴 30% 이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땅에 금이감, 사람이 서있을 수 없음	도움 없이 걸을 수 없음	VI(열진)
7.0~8.0	건물파괴 30%이상, 산사태가 나고 땅이 갈라짐	이성상실	VII(격진)
8.0~9.0	건물 완전 파괴됨. 철로가 휘고 지면에 단층현상이 발생	대공황	
9.0이상	관측된 바 없음		

제3절 재난관리 대책

1. 기본방향

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 대책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안전성 제고
- 행정계획·개발사업 등의 확정·허가 전에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의 도입으로 재해유발요인 사전차단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으로 자기책임형 민간자율방재 시스템 구현
-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의 위험요인 해소 방안 마련

나. 한 발 앞선 대응체계 확립

- 경기도↔안성시간 긴급지원체제 확립, 비상지원본부 및 공동상황관리 관제운영

- 재난현장 이재민구호체계 확립 및 신속·정확한 현장 수습 체계 확립
- 적극적 사전대비, 한 단계 앞선 현장대응, 자연재난 표준대응 프로그램개발, 시·군 재난관리시스템의 적극 활용 등으로 과학적이고 신속한 재난상황대처

다. 자연친환경을 가미한 항구적인 재해복구

-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선진화 및 복구지원체계 개선
- 신속한 복구의사 결정과 자연친환경을 가미한 항구적인 수해복구로 근본적 재발방지 강구
- 재난복구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한 재난예방·대비 개선방안 강구

2. 추진전략

가. 재난환경 변화와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 21세기 국내의 재난관리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 및 수해방지종합대책 등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 등 탄력적으로 운영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 세부계획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일체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토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 강화

나. 지역여건을 고려한 재난방재정책 추진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방재정책 추진계획에 해당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재난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반영

다. 민간자율방재의식 함양 및 홍보강화

- 효과적인 재난방재정책 추진을 위해 재난관련기관·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재난관리에 대한 자각과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리기 위해 방재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제4절 최근 자연재난 발생현황

1. 2006년 풍수해(태풍, 호우)

1) 발생현황

구분	강우기간	기간최대강우량	시간당최대강우량	비 고
1차	7.9 ~ 7.10	20mm	5mm	제3호 태풍 에위니아
2차	7.14 ~ 7.20	146mm	21mm	호우
3차	7.25 ~ 7.29	290mm	46mm	호우

2) 피해현황(2006.07.25 ~ 07.29)

구분	이재민 [세대/명]	주택 침수 [동]	주택 파손 [동]	농경지 침수 [ha]	농경지 유실·매몰 [ha]	공공 시설 [개소]	사유 시설 [개소]	피해액 [천원]	복구액 [천원]
1차	-	-	-	-	-	-	-	-	-
2차	-	-	-	-	-	-	-	-	-
3차	298/758	153	12	185.69	40.28	178/152	19	14,429,701	38,904,494

※ 특별재난지역선포 : 2006. 08. 10(목)

2. 2007년 풍수해(태풍, 호우)

1) 발생현황

구분	강우기간	기간최대강우량	시간당최대강우량	비 고
1차	8.4 ~ 8.11	77mm	44mm	호우

2) 피해현황(2007.08.04 ~ 08.11)

○ 공공시설

읍면동	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복구액 [천원]	비고
계	2개소	2식	50,170	382,949	
금광면 현곡리	지방도 302호선 도로 사면 유실	L=30m,B=2m,H=3m	12,889	69,654	
금광면 오산리	지방도 325호선 도로 사면 유실	L=70m,B=2m,H=6m	37,281	313,295	

○ 사유시설

읍면동	피해규모		피해액 [천원]	재난지원금 [천원]	비고
	피해유형	피해물량			
계	농림시설 농작물(농약대)	16,214 ^{m²} 15.99ha	30,219	20,000	
미양면	농림시설 농작물(농약대)	15,768 ^{m²} 7.74ha	23,351	12,500	
서운면	농림시설 농작물(농약대)	446 ^{m²} 8.25ha	6,868	7,500	

3. 2008년 풍수해(태풍, 호우)

1) 발생현황

구분	강우기간	기간최대강우량	시간당최대강우량	비 고
1차	7.23 ~ 7.26	218mm	97mm	호우

2) 피해현황(2008.07.23 ~ 07.26)

구분	이재민 [세대/명]	주택 침수 [동]	주택 파손 [동]	농경 지침수 [ha]	농경지 유실·매몰 [ha]	공공 시설 [개소]	사유 시설 [개소]	피해액 [천원]	복구액 [천원]
1차	17/44	21	0	39.06	4.85	13/13	1	710,371	1,593,621

3. 2009년 풍수해(태풍, 호우)

1) 발생현황

구분	강우기간	기간최대강우량	시간당최대강우량	비 고
1차	7.11~ 7.14	293mm	56mm(고삼면)	호우

2) 피해현황(2009.07.11 ~ 07.14)

○ 공공시설

시설명	피해위치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복구액 [천원]	비고
9개소			135,695	445,992	
방초리 구거제방유실	일죽면 방초리 일원	석축 L=100m, H=1.5m	24,088	50,420	
하가1소하천 제방유실	고삼면 가유리 일원	옹벽 L=15m, H=1.5m	19,175	37,269	
시도5호선 낙석 유출	금광면 오흥리 일원	안전웬스 16m	10,032	67,219	
산하리 평동 세천유실	원곡면 산하리 일원	농로 및 세천 L=70m	6,044	26,126	
산하리 신천 세천유실	원곡면 산하리 일원	농로 및 세천 L=110m	9,498	55,926	
곡천 제방유실	보개면 곡천리 일원	호안 L=20m, H=6m	22,517	33,776	
지방도325호 도로범면유실	삼죽면 덕산리 일원	L형측구 L=20m	2,171	58,381	
양진소하천 제방유실	공도읍 진사리 일원	보강토 L=30m, H=3m	14,887	24,813	
옥정천 제방유실	금광면 현곡리 일원	돌망태 L=100m	27,283	92,061	

○ 사유시설

읍면동	피해규모		피해액 [천원]	재난지원금 [천원]	비고
	피해유형	피해물량			
계	농림시설 주택침수	41,414㎡ 4동	-	55,000	
일죽면	농작물침수	34,714㎡	-	7,000	
보개면	농작물침수 축사파손	5990㎡ 710㎡	- -	2,000 42,000	
고삼면	주택침수	2동	-	2,000	
공도읍	주택침수	1동	-	1,000	
원곡면	주택침수	1동	-	1,000	

제2장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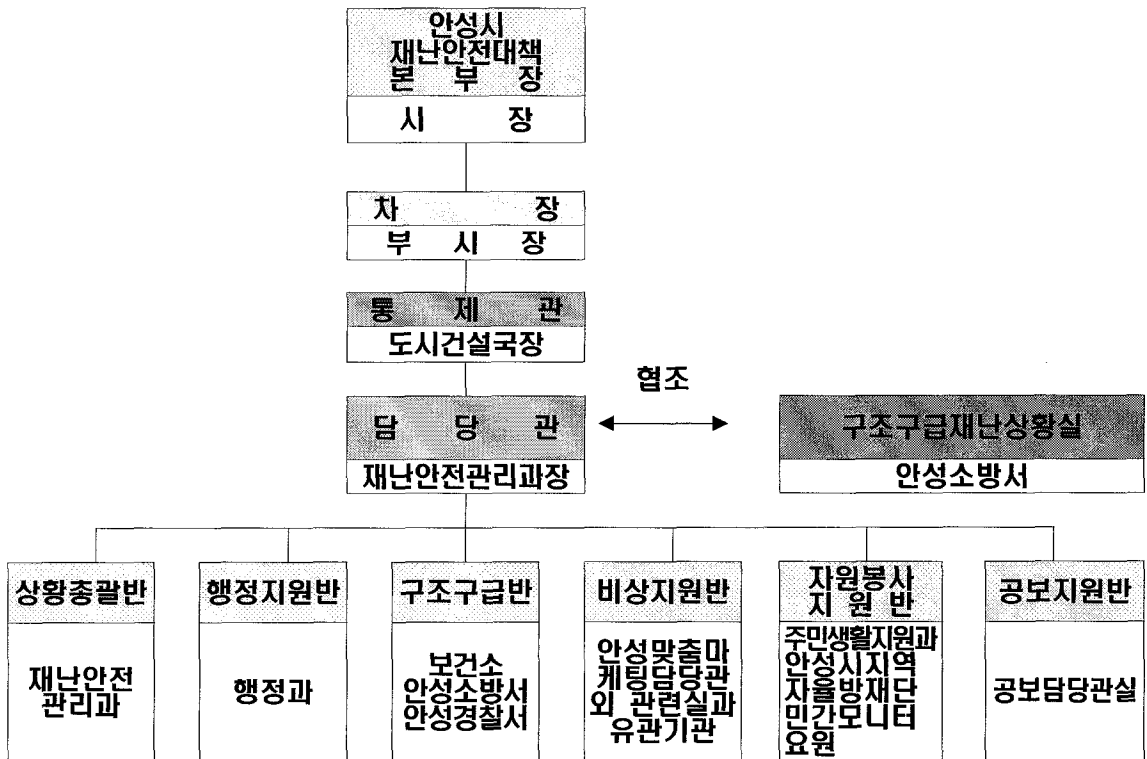
제1절 조직체계

1.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재난대책에 관한 관련부서 및 수습상황의 총괄 조정
-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집행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응급조치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작성
- 재난상황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제반조치 요청 등

2.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가. 조직



나. 구성원별 임무

- 본부장(시장) : 본부의 대표로서 의장이 되며 본부업무를 총괄
- 차 장(부시장) : 본부장 보좌하고 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
- 통제관(도시건설국장)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실무반 지휘
- 담당관(재난안전관리과장) : 본부운영 실무 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 실무반 : 본부 회의 의결사항과 본부장이 지시한 사항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통제관 밑에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홍보지원반을 둔

제2절 단계별 근무체제

1. 대책기간

- 여름철 : 5월 15일 ~ 10월 15일까지(5개월)
- 겨울철 : 12월 1일 ~ 다음 년도 3월 15일까지(3.5개월)

2. 평상시(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주 간 :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이 상황관리
 - 야 간 :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1명이 상황관리(사령, 반장포함 총3명)
 - 휴 일 :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1명(주·야간 2교대)이 상황관리

3. 비상시(준비단계, 비상단계)

○ 준비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비상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가. 기상특보별(주의보, 경보) 비상근무 계획

계절별	기상특보별		기상상황	근무체계	대책본부 근무자
여름철	호우	호우 예비특보, 주의보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준비단계	담당관 등 7명
		경보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비상단계	본부장 등 26명
	태풍	주의보	평균 최대풍속 14m/sec 이상	준비단계	담당관 등 7명
		경보	평균 최대풍속 21m/s 이상	비상단계	본부장 등 26명
겨울철	대설 예비특보, 주의보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준비단계	담당관 등 7명
	대설 경보		24시간 신적설 20cm 이상	비상단계	본부장 등 26명

※ 기상특보별 주의보는 준비단계, 기상특보별 경보는 비상단계 임.

나.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편성

1) 비상근무 체제 : 2단계(준비, 비상)로 구분 근무

① 준비단계

- 재난안전관리과 자체 상황관리계획에 따라 상황유지
 - 기상특보를 수시 파악하여 관·과·소 및 읍·면·동에 전파
 -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자 비상소집 및 기상상황 보고
- 주 간 (09:00 ~ 18:00)
 - 08:30분까지 야간 근무자와 상황관리 인수인계
 - 09:00기준으로 주간 근무자 Safe-on(상황전파시스템)에 근무자 입력
- 야 간 (18:00 ~ 09:00)
 - 17:30분까지 근무자 신고와 상황관리 인수인계
 - 18:00기준으로 야간 근무자 Safe-on(상황전파시스템)에 근무자 입력
 - 22:00기준 경기도 재난종합상황실에 이상유무 전언보고 (행정 141-3655, 일반 249-3655)

② 비상단계

- 비상단계시 실무반 편성기준에 의한 근무방법에 의함
 - 통제관은 비상시 재난상황전반을 관리
 - 담당관(재난안전관리과장) 또는 재난관리담당은 근무자 근무교대 시 주요 대처 사항과 앞으로 중점관리 해야 할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감독·확인

- 근무자는 상황실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비상근무조 투입시는 전일 근무조 다음 근무조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 재난관리담당은 근무자 개인별 업무를 숙지토록 조치
- 근무자는 전일 근무자로부터 각종 상황을 인수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또한 근무 중 상황변화를 즉시 파악하여 보고 등 신속한 대응 조치
- 근무자는 관련업무의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협조 유지

○ 근무교대

- 08:30분까지 교대하고 08:3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합동근무 실시

○ 상황보고

- 실무자→담당관(재난안전관리과장)→통제관(도시건설국장)→차장(부시장)→본부장(시장)

※ 긴급 상황시에는 본부장(시장)과 차장(부시장)에게 즉보

2) 실무반 편성

-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6개반으로 편성하되, 재난관련 부서 공무원 및 재난관련 유관기관 소속직원으로 구성

① 상황총괄반 : 재난안전관리과

-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
- 상황관리지원 및 분석·판단

② 행정지원반 : 행정과

③ 구조구급반 : 안성소방서, 안성경찰서, 보건소

④ 비상지원반 :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회계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정보통신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토지민원과,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성소방서, 안성경찰서, KT안성지점,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 한국농촌공사 안성지사, 육군제5171부대2대대

⑤ **자원봉사지원반** : 주민생활지원과, 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
민간모니터 위원

⑥ **공보지원반** : 공보감사담당관

2-1) 실무반 준수사항

-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상황관리 임무 수행
- 근무자는 반드시 근무시간동안 상황실에 정위치 근무(자리 이석시에는 만의 장에게 보고)
- 실무반원으로서 실무반의 장 지시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수행
- 유관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중식 및 석식은 실무반별 2교대 식사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2-2) 상황파악 및 보고체계

- **비상지원반**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위주로 소관부서(도로유실 : 건설과, 농경지매몰 : 농정과)를 최대한 활용, 상황 파악
- **자원봉사지원반**
 -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민간단체 유기적인 협조하에 자원봉사자 정보 수집 및 전달
- **구조구급반**
 - 안성소방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자료 제출
- **행정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각 실무반에서는 파악된 모든 상황을 상황총괄반에 제출
- **상황총괄반**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무반의 장에게 협조 요청

2-3) 실무반별 근무수칙

① 상황총괄반

상황 총괄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반		○ 반장 : 정보수집·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판단업무 총괄 - 상시 상황파악 독려 및 반원 근무실태 파악 - 상황일지 결재(익일 08:00) - 익일 교대근무자 대상 종합브리핑(09:00~09:10)
			1. 상황근무, 직무분석자료 정리 2. 익일 교대근무자 대상으로 상황파악 등을 위한 종합브리핑 실시(상황총괄반장) 3.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4.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5.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6.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7.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8. 긴급상황 관리(즉보상황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상황 등) 9.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황 관리 지원 반	반장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관리 지원 팀	1.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2. 현장상황지원과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3.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4.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상황 분석 팀	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3. 안성시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5.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6.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② 행정지원반

행정 지원반	○ 반장 : 행정지원업무 총괄 - 상시 상황파악 독려 및 반원 근무실태 파악
	1. 근무명령 발령 2. 당일 비상근무자 확인 및 복무단속 - 근거 없는 자리이석이나 근태 불량시 행정조치 3.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 사전에 상황실 확인 및 근무실태 등 확인 4. 그 밖에 행정지원반의 장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③ 구조구급반

구조 구급반	안성소방서 직원 1명이 상황실에 근무하며, 구조구급 활동 사항 보고 및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

④ 비상지원반

비상 지원반	○ 반장 : 비상지원업무 총괄 - 상시 상황파악 독려 및 반원 근무실태 파악
	1.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관별 사전대비, 응급복구 및 구호상황 파악 2.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3.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4.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5.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6.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7.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확인 8.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9.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장비지원 협조 요청 10.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1.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3.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14. 대국민 공지가 필요한 주요사항 상황관리 15. 그 밖에 비상지원반의 장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⑤ 자원봉사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 반장 : 자원봉사지원반 업무 총괄 - 상시 상황파악 독려 및 반원 근무실태 파악
	1. 안성시 자원봉사자 현황파악 2. 자원봉사 장소, 인원 등 정확한 수요조사 및 자원봉사자의 적재적소 배분·배치 (지원내용, 인력, 필요장비 등 양식작성) 3. 자원봉사자 응급복구 투입현황 파악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5. 그 밖에 자원봉사지원반의 장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⑥ 공보지원반

공 보 지 원	반 장	○ 반장 : 공보지원반 업무 총괄 - 재난상황 전개에 따른 대국민 홍보 및 반원교육·지도 - 주요인사 내방시 홍보상황 브리핑
	보 도 지원팀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 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공보팀	1. TV·라디오 등 각종 인터뷰 요청시 대처 2. TV·라디오 기상·뉴스속보, 자막방송 등 요청 및 오보 대응·정정보고 자막방송 요청 전달 3. 홍보상황·실적 기록 및 정리·보고 4. 그 밖에 공보지원반의 장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2-4) 단계별 근무인원 배치도

비 상 근무 인 원 편 성 표							
구 분	준비단계 (에비특보 또는 주의보)			비상단계 (경보)			실무반
부 서 명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구분
계	76	6	70	225	25	200	
본 부 장(시장)	-	-	-	1	1	-	
차 장(부시장)	1	1	-	1	1	-	
통 제 관(도시건설국장)	1	1	-	1	1	-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1	-	1	2	-	2	비상지원반
공보감사담당관실	1	-	1	5	1	4	공보지원반
행 정 복 지 국	행정복지국장	-	-	1	-	1	
	행정과	1	-	7	1	6	행정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1	-	5	2	3	자원봉사지 원반
	사회복지과	1	-	3	-	3	비상지원반
	세무과	-	-	5	-	5	비상지원반
	회계과	-	-	5	-	5	비상지원반
	정보통신과	1	-	3	-	3	비상지원반
	토지민원과	1	-	3	-	3	비상지원반
	산업경제국장	-	-	1	-	1	
산 업 경 제 국	지역경제과	1	-	2	-	2	비상지원반
	문화체육관광과	1	-	4	1	3	비상지원반
	농정과	1	-	6	1	5	비상지원반
	축산과	1	-	3	1	2	비상지원반
	산림복지과	1	-	4	2	2	비상지원반
	환경과	1	-	6	1	5	비상지원반
도 시 건 설 국	도시정책과	2	-	3	-	3	비상지원반
	건설과	2	-	7	1	6	비상지원반
	교통행정과	1	-	5	1	4	비상지원반
	건축과	1	-	5	1	4	비상지원반
	도시개발과	1	-	2	-	2	비상지원반
	재난안전관리과	5	4	17	5	12	상황총괄반
	보건소	1	-	7	1	6	비상지원반 구조구급반
	농업기술센터	-	-	7	-	7	비상지원반
	상수사업소	1	-	4	1	3	비상지원반
	하수사업소	1	-	4	1	3	비상지원반
	시립도서관	-	-	2	-	2	비상지원반
	의회사무과	-	-	2	-	2	
	안성소방서	1	-	2	1	1	구조구급반
읍·면·동	45	-	45	90	-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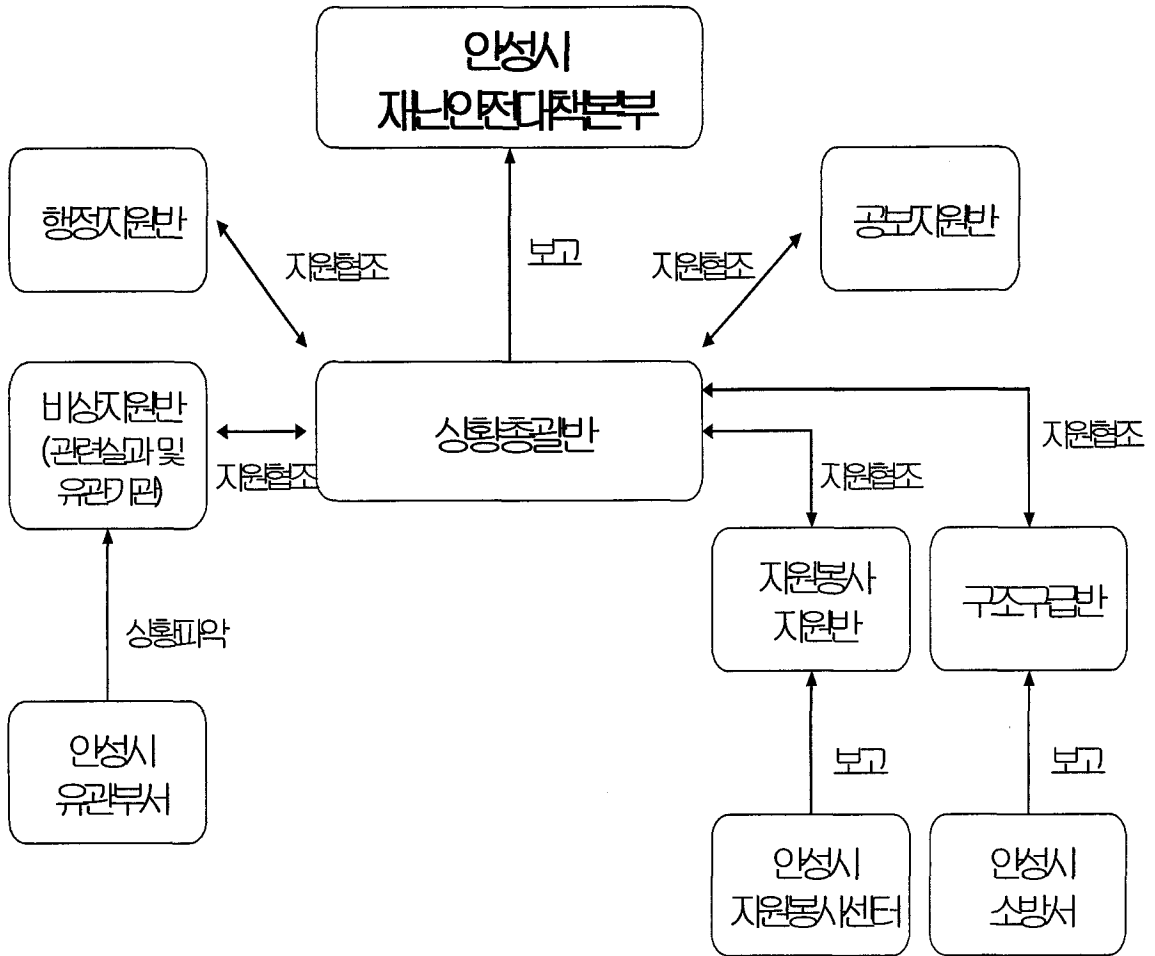
유 관 기 관 별 비 상 근 무 인 원 편 성 표						
기 관 명	준비단계(주의보발령시)			비상단계(경보발령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계	7	-	7	12	5	7
안 성 경 찰 서	1	-	1	1	-	1
안 성 소 방 서	1	-	1	2	1	1
육군제5171부대2대대	1	-	1	2	1	1
한국농촌공사(안성지사)	1	-	1	2	1	1
한국전력공사(안성지사)	1	-	1	2	1	1
안성교육청	1	-	1	1	-	1
K T(안성지점)	1	-	1	2	1	1

※ 비상단계 : 안성교육청은 사무실 근무

2010년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정보발령시)

연번	시설별	부서명 [담당]	상황실 근무자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비고
1	도로, 소규모 수리시설	건설과 [건설행정]	김태희	678-2753	011-9773-9056	
2	하수시설	하수사업소 [하수행정]	임진환	678-3172	019-668-3065	
3	상수시설	상수사업소 [상수시설]	한병철	678-3142	011-662-0798	
4	공원시설 가로수 도시계획도로	산림녹지과 [공원녹지]	안상복	678-2742	010-5123-7443	
5	산사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	유상배	678-2573	010-8557-5441	
6	주택	건축과 [공동주택]	김준석	678-2854	010-4656-5507	
7	농림시설	농정과 [친환경농산]	김윤선	678-2543	010-4595-1876	
8	축산시설	축산과 [축정담당]	송기영	678-2582	016-343-0139	
9	공보	공보감사담당관 [공보]	정혜련아	692-1952	010-3505-1952	
10	차량통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김광일	678-2802	019-312-9320	
11	구조구급	보건소 [예방의약]	안성은	678-5724	011-665-9549	
12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민선희	678-2194	010-3246-5230	
13	행정지원	행정과 [행정]	박주덕	678-2133	010-2695-3815	
14	자원봉사센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김미나	678-2199	011-9886-7752	
15	문화재시설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담당]	고재권	678-2502	010-9406-3840	
16	쓰레기처리	환경과 [환경자원]	김지현	678-2653	010-8556-1230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다. 유관기관 등 파견근무자 비상근무 요령

1) 파견기관

- 안성소방서, 안성교육청, 안성경찰서, KT안성지점, 한국농촌공사(안성지사), 한국전력공사(안성지사), 육군 제5171부대2대대

2) 근무장소 :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관3층 상황실)

3) 근무요령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속된 본부요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황근무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 상황보고는 담당관 → 통제관 → 부시장 → 시장
 - ※ 긴급상황 발생보고는 즉보 (시장, 부시장, 도시건설국장)
- 관련 실·과 근무자와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가 합동으로 24시간 근무한다.
- 근무교대는 08:30까지
 - 08:30 ~ 09:3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상황파악 등을 위하여 합동 근무 실시
- 보고서 작성
 - 작성기준은 06:00 기준으로 작성 보고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 종료시까지 보고체계에 따라 실시간 수시 보고한다.
- 각 실무반은 반장에게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
- 파견근무자는 소속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간 유기적인 업무 연락 체계 유지
- 안성시 재난상황실 및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기상상황정보·재난수습상황 정보 공유 및 응원요청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라. 재난관련 실적별 및 유관기관 주요임무

관련실과	주요임무
재난안전관리과 [상황총괄반]	[상황총괄반] ○ 기상특보시 비상근무자 비상소집 및 기상상황 전파 ○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판단 회의자료 준비 ○ 통합방재시스템,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대책본부회의 등 관련 장비운영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등 ○ 댐·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등 정보수집·분석 ○ 댐·저수지 방류량 조절 등 홍수재해 대응 협의 ○ 홍수범람 및 내수침수 등 홍수재해취약지역 조사·분석 ○ 홍수재해취약지역 홍수관련 정보 조사 및 범람침수위험 정보 분석대응 ○ 홍수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한 재난 예·경보 발령 검토 및 주민대피 ○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행정과 [행정지원반]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비상근무자 확인 및 복무단속 ○ 각종 여론·정보수집 및 민심동향·민원처리 등 ○ 행정지원반의 장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안성맞춤마케팅 담당관 [비상지원반]	○ 수해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 피해복구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수해복구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지원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관련실과	주요임무
정보통신과 (비상지원반)	○ 시와 읍면동간 비상연락 통신수단 확보 및 KT간 업무협조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통신수단 증설 및 긴급통신 업무지원 ○ 재난안전대책상황실내 방재무선통신, 화상회의, 위성전화기 시스템 운영 - 재난발생시 : 시 상황실과 읍면동 현장간 직통망 확보로 신속한 상황처리 - 평상시 : 우리시 행정업무로 활용 ○ 자연재난지역 통신지원 대책 -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지휘용 통신망 지원 • 도 및 시군 비상통신망(TRS, 위성전화기)을 자연재난지역에지원 - 이재민 대피소 등 집단수용시설에 무료 공중전화 설치 및 자연재난지역 통신장비 무상수리 및 교체 지원 • 기간통신사업자(KT 등)에 요청 - 기타 자연재난지역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 • 기간통신사업자(KT 등)에 요청 ○ 자연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피해지역 지휘통제를 위한 통신망 회선을 기간통신 사업자(KT 등)과 협조하여 최우선으로 복구 • 제1순위 : 자연재난관계기관, 소방기관, 경찰서, 기상기관, 군관계시설, 수송확보에 직접 관계있는 기관 • 제2순위 : 선거관리기관, 통신기관, 금융기관 • 제3순위 : 지방공공단체
지역경제과 (비상지원반)	○ 가스시설피해 및 응급복구 ○ 산업단지·공장피해 및 단전현황 파악 조치 ○ 임시전력공급 및 전력시설 응급복구 ○ 전기료 감면 및 전기용품 수리지원 ○ 중소기업 등 소관시설 피해 및 복구

관련실과	주요임무
세무과 [비상지원반]	○ 풍수해피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 조치 - 수해로 인한 멸실된 과세대상 물건 - 건축물 및 선박피해에 대해서는 멸실 후, 신축 복구시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정도와 상황실태 등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농경지 피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농지세는 최고 5년간 전액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복구시까지 전액면제하여 단지 농작물만 피해를 입은 경우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감면 -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조치※대상세목 :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 경작목적 농경지에 대하여는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를 감면
회계과 [비상지원반]	○ 자연재난복구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체결 - 자연재난복구공사는 천재·지변·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질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적극활용 (국가계약시행령 제26조 제1항1호) - 자연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집행이 곤란할 경우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 (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 제4항 : 마감전일부터 가산하여 5일전까지 공모) ○ 신속한 자연재난복구를 위하여 선급금 의무지급율을 상향하여 지급 - 2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 ~ 70미만 - 2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이상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제192호 '05.12.30] ○ 공공청사 등 건축물공사장 현장관리책임자 정위치 쏫 공사현장 안전조치
문화체육관광과 [비상지원반]	○ 문화재 피해 및 복구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피해 및 복구 ○ 골프장·스키장 등의 피해 및 복구 ○ 관광지 등 소관시설 피해 및 복구

관련실과	주요임무
농정과 (비상지원반)	○ 농작물 침수 및 퇴수현황 파악 ○ 농경지 피해 및 복구 ○ 도복된 벼세우기 및 세척현황 파악 ○ 응급복구 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 과일 낙과피해 현황 파악
축산과 (비상지원반)	○ 가축피해 현황파악 및 조치 ○ 축사, 방목장, 가축분뇨처리장 피해 및 복구
산림녹지과 (비상지원반)	○ 시방댐, 임도 등 산림시설피해 및 복구 ○ 등산객, 대피소 인원 등 강제하산 조치 ○ 산사태 및 임도피해우려지역 점검 ○ 표고버섯재배시설 피해 현황 파악 및 조치
주민생활지원과 (비상지원반)	○ 재해구호물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 ○ 이재민 발생 및 수용시설 현황 파악 등 ○ 재난발생시 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총괄지휘 ○ 재난복구 자원봉사 참여현황 파악 ○ 피해지역과 지원 사·군간 연계
사회복지과 (비상지원반)	○ 노인복지시설 및 장묘시설 피해 및 복구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보건소 (비상지원반)	○ 전염병발생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활동 ○ 이재민 의료구호
환경과 (비상지원반)	○ 수해쓰레기 처리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파악 등
상·하수사업소 (비상지원반)	○ 상하수도 시설 피해 현황파악 및 응급조치 ○ 상수도 임시공급 등 긴급식수원 공급 ○ 이재민 수용시설 급수 ○ 먹는 샘물 업체 공급 협조체계 구축
교통행정과 (비상지원반)	○ 하천변 둔치주차장 차량 안전조치 ○ 응급복구용 건설장비 지원협조 요청 및 현황 파악 ○ 재난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한 교통대책 지원 ○ 가로등 및 신호등 전도, 감전사고 조치

관련실과	주요임무
건설과 (비상지원반)	○ 도로건설공사장의 현장관리책임자 정위치 및 공사현황 안전조치 ○ 도로두절통제 및 피해복구 ○ 도로공사장 현장관리책임자 정위치 및 공사현장 안전조치 ○ 도로공사장 피해 및 복구 ○ 응급복구 등 장비·자재·인력투입 현황 파악
건축과 (비상지원반)	○ 주택파손·유실 및 침수피해 현황 파악 및 조치
도시개발과 (비상지원반)	○ 택지개발사업 공사장의 현장관리책임자 정위치 및 공사현장 안전조치 ○ 택지개발사업 공사장 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사회복지과 (비상지원반)	○ 운영 및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시설 피해 및 복구
공보감사담당관 (공보지원반)	○ 사전홍보 - 대국민 재난방지 예방홍보 실시 • 행동요령, 사례별 매뉴얼 발간 배포 지원 - 안전사고 취약대상 안전점검 홍보 강화 • 계절별 요인별 발생 가능성 제거 등 ○ 재난 발생시 - 대 언론 신속한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집중홍보 - 실시간 상시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 - 대언론 브리핑 등 언론취재 지원 ○ 사후홍보 - 재난피해 복구상황 등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 국민화합, 갈등해소 등을 위한 도민 여론수렴 관련기관 제공 - 재발방지시스템 점검 및 보완 조치 - 피해복구지원 등 국민 불편 최소화 홍보

□ 유관기관별 파견근무자 주요임무

관련실과	주요임무
육군 제5171부대 2대대	- 인명구조, 실종자 등 수색 - 주민대피·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지원 - 지원인력·장비 등 응급복구 대민지원 현황 파악 - 재난구조활동 파악 - 기타 자료 등 요구 시 수집 보고 등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	- 가로등·신호등 전도 및 감전사고 조치 - 공장피해 및 단전조치 - 임시전력공급 및 전력시설 응급복구 - 전기료 감면 및 전력시설 응급복구 - 기타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KT 안성지점	- 통신두절 및 피해 조치 - 이재민, 응급복구 등을 위한 통신지원 - 기타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안성경찰서	- 산간, 계곡, 하천, 유원지 등 야영·등산객, 낚시꾼, 행락객 등 대피 - 교통두절·통제 및 해제 조치 - 차량 안전지대 대피 및 자동차 운행자제 계도 - 재난지역 경비 및 방법 - 기타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한국농촌공사 안성지사	- 농작물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장 가동 현황 및 저수지 사전방류 -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용·배수로,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 사전점검 - 수리시설, 농경지 피해 및 복구 - 기타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안성교육청	- 학교시설 피해파악 및 이재민수용시설 지원 - 학교 휴교조치, 학생들의 응급복구 동원현황 - 기타 자료 등 요구 시 수집 보고 등
안성소방서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인명구조구급 활동 실시 - 피해지역 주민대피 실시 - 이재민 수용시설 급수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마. 상황판단회의 운영

- 근거 :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8조
- 목적 : 재난상황 진행단계별로 대책본부의 신속한 상황대처 및 수습
- 개최시기
 - 호우, 대설 등 예비특보 발령 단계부터 필요시 수시 개최
 - 기상특보가 없을 때 특보이상에 준한 기상상황 발생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판단) 될 경우
- 회의내용
 -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범위 결정
- 참석대상

<여 름 철>

기상특보 단 계	회의개최 결정 및 회의주재 책임자	참 석 대 상	비 고
예비특보 주 의 보	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지원담당, 건설과(도로관리담당), 축산과(축정담당), 농정과(친환경농산담당), 산림복지과(산림보호담당)	
경 보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성마출마케팅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토지민원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복지과장, 환경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하수사업소, 보건소, 안성경찰서장, 안성소방서장, 육군제5171부대2대대장, 농촌공사 안성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장	

<겨 울 철>

기상특보 단 계	회의개최 결정 및 회의주재 책임자	참 석 대 상	비 고
예비특보 주 의 보	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지원담당, 건설과(도로관리담당), 축산과(축정담당), 농정과(친환경농산담당), 산림복지과(산림보호담당)	
경 보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성마출마케팅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토지민원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복지과장, 환경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하수사업소, 보건소, 안성경찰서장, 안성소방서장, 육군제5171부대2대대장, 농촌공사 안성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장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기상특보 발령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결정

1. 복구지원담당이 기상특보 단계별 회의주제자에게 기상상황 즉보
2. 회의주제 책임자(부재시에는 차 하급자)는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결정하여 참석자 소집을 지시하거나 상황판단회의 없이 즉시 비상단계 돌입 결정

바. 자연재난 사전대피계획(야간 집중호우 등 재난 예견시)

○ 내 용 :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가 판단(예견)될 경우 사전대피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피계획 수립

○ 대피단계

- ▶ 1단계 : 정보발령
- ▶ 2단계 : 주민대피 및 상황보고
- ▶ 3단계 : 대피완료

○ 사전대피지구 지정 현황

총 계	인명피해우려지역 (저수지붕괴, 침수)	돌발성인명피해 우려지역	붕괴위험지역
5	3	1	1

(※ 사전대피지구 지정 및 해당 대피소 운영지역의 자세한 현황자료는 참고자료 참조)

○ 야간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 예견시 주민대피 운영방침

- ▶ 예비특보 단계부터 재난상황 수시 전파하여 충분한 대피 준비시간 갖도록 조치
- ▶ 야간 집중호우 등 대피를 위한 자재확보 및 안내판 등 야광 보강
 - 자재(물품) : 무전기, 경광등, 경광봉, 호루라기, 반사조끼, 후레쉬 등
- ▶ 사전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야간 집중호우 등 피해우려시 일몰전 대피
 - 특히, 지속적인 강우로 토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산사태 등 피해우려시 급경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적극 대피 조치
- ▶ 유관기관 등 사전 협조체계 구축
 - 대피 거부자에 대한 강제대피 등 주민 통제, 거동 불편자 이송, 차량 통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경찰·군부대·소방서 등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
- ▶ 인명피해 우려지역(하천 세월교 등)은 사전에 Safety Line 설치로 출입통제, 안전대피 안내요원 등 현장 전진배치
 - 안전대피 안내요원은 위험지역 인근에서 지속적인 예찰활동 및 보고

여 백

제3장 자연재난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제1절 태풍 및 호우

1. 대비단계

가.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관리

1)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사항

○ 방재시설의 종류

- 소하천 및 하천시설 :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
- 도로 및 철도시설 : 교량, 높이 5m이상의 옹벽·석축 등
- 상·하수도시설 : 취수배수정수시설, 송배수관로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등
- 수리시설 : 저수지, 양수장·배수장, 하구둑, 용수로·배수로 및 보 등
- 사방시설 : 사방댐 및 야계사방 등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시 전체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4월말까지 점검 실시
 - 시(담당부서)가 시설물 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실시
- 점검 결과를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 시설별 주요 점검사항

<소하천 및 하천시설>

- 제방의 누수, 세굴 등 붕괴위험 요인
-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건물·야적 골재 제거상황, 각종 하천점용시설물 정비
- 배수문 본체 및 날개벽 균열·파손부분 확인
- 스펀돌, 권양기 및 문비(부식, 도색)상태 점검
- 붕괴위험 제방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 유수지 퇴적토사 준설 및 수초제거 등

<도로 및 산사태 위험지역>

- 도로 및 철도시설, 사방시설(산사태 위험지역) 및 기타 방재시설은 지역의 재난유형을 감안하여 점검(산사태 위험지역은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에 의하여 점검)

〈상·하수도시설〉

- 관측시설, 안전망, 동력, 비상전원, 배선관계 이상유무 등 확인
- 우수지 퇴적토 준설 및 기계·전기시설 정비
- 양·배수펌프장의 안전망 및 동력상태 이상유무 점검·정비
- 펌프장 등의 비상전원장치 및 배선상태 이상유무 확인
- 관리자 배치, 근무요령, 비상연락체계 등 정비
- 퇴적물 준설, 수초제거, 부속시설물(암거 등) 점검 등

〈수리시설〉

- 수문·여수로·방수로·취수탑, 저수지 등 주요 구조물 균열상태 및 제당 누수부분 점검·정비·보수, 우수지 잡목제거
- 누수 및 파이프, 기초 세굴부분 점검, 사석 및 피복석 탈락상태 확인 등

〈댐 시설〉

- 수문·여수로·방수로·취수탑 등 주요 구조물 균열상태 및 제당 누수부분 점검·정비·보수 등
 - ※ 지하상가 등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공간 시설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정비 실시 등 침수피해 예방대책 강구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기관의 예산으로 정비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 등 정비완료
-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재난응급대책을 강구한 후 특별관리
 - ※ 시설물관리기관 책임자와 행정기관의 간부공무원 등은 상시대비체제 기간과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 중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 실시

2) 고립예상지역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수립여부 확인 및 점검
-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수립
 -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 주민고립 예방
 - 고립예상지역은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헬기착륙장과 우회도로 등을 지정·관리
 - 인명구조 요청시 헬기 등이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인근 군부대 및 경찰·소방관서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관리

○ 고립예상지역 현황

연번	고립예상지역	가구수	인원	관할센터
	5개 지역	5	15	3개 파출소
1	안성시 서운면 인리 산 22번지 옥련사 [사찰]	1	2	미양
2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 산 10번지 약사사 [사찰]	1	4	미양
3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41번지 매산사 [사찰]	1	1	죽산
4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85번지 운수암[사찰]	1	6	공도
5	안성시 서운면 청릉 운적암[사찰]	1	2	미양

3) 대규모 공사장 점검 관리사항

○ 점검대상

- 신도시 건설, 골프장 조성, 고속도로, 댐건설, 택지조성, 관광단지개발 및 기타 50억원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으로서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 규모가 그 이하인 공사장(소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공사장 등)도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준하여 관리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점검관리방법

- 건설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카드작성 : 사업장별 시설현황, 관리책임자 연락처, 재난발생시 조치사항, 점검일지 기록
 - 관리책임자 : 공무원, 시공사, 감리원으로 복수지정
- 점검방법

• 수시점검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비상단계 기간중에는 시공사와현장감리원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 공무원에게 통보

담당과장 등 간부공무원은 재난위험 예측시 또는 출장시 점검

• 정기점검

관리책임 공무원은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비상단계 기간 중 월 1회 이상 점검실시

5월중에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사, 감리원 및 관계주민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1회이상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 보완조치

※ 상시대비체제 기간중(3~5월)에는 재난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복점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국민 불편사항 최소화 도모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유수지, 가배수로 설치 등)확보
-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침사지 설치
- 공사중인 골프장은 관리규정 준수 이행
- 절개지의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지설 설치 및 사면안전 공법시공
- 피해우려 예상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및 대피계획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대피장소를 사전에 통보

- 기타 수방자재 및 장비 사전확보 조치
 -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장은 평가사항 이행여부 확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재해사전대비 준비실태가 부적합한 부분은 우기 전까지 보완토록 조치

4) 농림시설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저수지〉

-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 수위는 평상시와 우기, 수문이 있는 저수지와 없는 저수지로 구분 관리
- 장마철대비 비상근무조 편성
-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동원계획 수립
- 주요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파괴시 재산 및 인명피해 우려저수지)
- 유역이 넓어 집중호우시 홍수량이 많고 하류에 도시 및 인구밀집 지역
- 주민대피 홍보 및 대피장소 지정
- 인명 사고시 후송병원 지정

(※ 참고자료 1 안성시 의료시설 현황참조)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 구축(안성시, 한국농촌공사 안성지사)

〈배수장〉

-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 배수장을 수시 시험 가동하여 기계·전기 점검 관리
- 하천변저지대 수문작동상태 및 제방과 토출관 접합부 안전상태 점검
- 비상대비 배수장 가동 가상훈련 실시
- 침수 및 정전시 비상대책 임무부여
 - ※ 배수장가동 조작요령을 잘 보이는 출입문 입구 등에 비치하여 숙지
- 장마철 비상근무조 편성
 - 동일수계 저수지, 배수장 등 시설물 파악
 - 주요배수장 비상대처계획 수립
 - ※ 유역이 넓어 집중호우시 홍수량이 많은 지역
 - 주민대피 홍보 및 대피장소 지정

- 인명사고시 후송병원 지정
(※ 참고자료 1 안성시 의료시설 현황참조)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 구축(도, 시, 한국농촌공사)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조치

5) 하천 위험시설물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우기전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 실시
- 연안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안전조치
- 수문부에 퇴적물제거와 역류 억제기능 상태 확인
- 하천 고수부지 주차차량의 대피계획 수립
- 하천 횡단교 및 잠수교 안내표지, 경고표지 설치 확인
- 제방, 호안, 옹벽의 범람을 억제하는 기능 시설물의 안전여부 확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조치

6) 산지재배시설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표고재배시설〉

- 표고재배시설 및 창고·관리사 등 부대시설물은 산사태·계곡물 범람 등으로 유실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 산림청에서 정한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에 의거 시설하도록 지도.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범위내에서 조정 시공할 수 있음
- 이미 시설된 표고재배시설은 동 시공지침에 의거 보완토록 하되, 특히 중간기둥은 재배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착탈식으로 시공할 수 있으나 작업후에는 반드시 세워야 함
※ 표준모델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표고재배시설은 태풍·폭설 등 자연 재해시 국가지원 복구대상에서 제외됨을 적극 홍보
- 표고재배시설 등 임업용 시설물은 결속·버팀목세우기 등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유실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표고자목 등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

〈양포장·조경수 재배지〉

- 묘포지의 유실 또는 침수가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배수로 등 정비
- 임간 묘포장은 산사태, 계곡물 범람 등 위험이 없는 장소에 조성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절개지 등은 사전에 정비
- 온실·창고·관리사 등 부대시설물은 산사태, 계곡물 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

7) 산림개발지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임도〉

- 임도시설지는 전 노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우려지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철저
- 특히, 임도시설지 하부에 가옥이 있는 곳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비닐피복 및 배수로정비, 유사시 주민대피 등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강구
- 절·성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구조개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구조물 보강설치 및 사면녹화피복 등 안전조치 강구(설계·시공 등은 “임도설치및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함)
- 측구·배수관·박스교 등이 메워져 있거나 유목(流木) 등이 걸려 있는 곳 등은 정리·보수
- 공사 중 자연물길을 변경했거나 메운 곳은 자연상태대로 정비
- 피해발생 대비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비축

〈산림의 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지〉

- 골프장·스키장 등 대규모 형질변경지의 절·성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중간복구 및 그 하부에 사방댐 또는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 군사시설 등의 형질변경지는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피해우려가 있는 곳은 우기이전까지 보수·보강 조치
- 공사 중 자연물길을 변경했거나 재해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
- 무리한 수직굴착으로 인한 낙석·붕괴위험지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 토석채취 허가취소지·채취 완료된 곳은 조속히 복구하도록 조치
- 공사현장사무소, 인부막사 등 시설물은 산사태·계곡물 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 산림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개소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담당자를 지정 책임관리 철저

〈송전철탑시설부지 및 진입로〉

- 송전철탑시설부지 및 진입로에 대하여는 우기이전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를 방지
- 진입로 하단부에 주택·농경지·산업시설 등이 있어 인명·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안전조치
- 시공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배수로시설 등 물흐름을 원활하게 한 후 시공토록 공사지도·감독 철저
-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한전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우기 전에 보수하도록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지역은 시에서 직접 보수
- 금후 시설하는 송전철탑시설부지 및 진입로에 대하여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임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 및 시설기준과 송전철탑시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부합되도록 시설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보완토록 조치

8) 산사태위험지역 및 산불피해지역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산사태위험지역〉

- 산사태위험지의 대폭적 확대지정관리로 재해사전 예방대책 강구
-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위험이 있는 곳은 추가 지정하고 여건변동으로 위험요인이 소멸된 지역은 지정해제 조치
- 안성시 소관 공·사유림내 국유림의 산사태위험지는 안성시와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에서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라 관할 시장이 위험등급별로 지정·고시하고, 소관별 관

- 리책임자를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 특별관리
- 기존의 주택·산업시설주변 등 이외에 관광지, 유원지 그밖에 인명·재산피해 방지상 필요한 지역까지 대폭 확대 지정
- 산사태위험지는 현장에 위험지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대장 작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보수·보강하는 등 특별관리
- 산사태위험지는 연차적으로 예방사방을 실시하여 해소토록 하되 가급적 자체사업으로 실행
- 재해발생 우려지역은 우기 이전까지 비닐피복, 배수로정비 등으로 응급 보완 조치

〈산불피해지역〉

- 집중호우시 산사태·토사유출우려지는 사방사업 실시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고 응급복구 등을 실시하여 2차피해 방지
- 주택가 뒷편 또는 급경사지로서 집중 호우시 산사태·무너짐 등 피해방지상 필요한 곳
- 임도시설지의 경우 집중호우시 무너짐·갈라짐이 우려되는 절·성·토부위 등
- 사방복구를 완료한 곳이라도 취약지역은 집중호우 대비 보완조치 및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보완토록 조치

9) 국민생활 필수시설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전기시설〉

- 변전소 환산망 구성으로 송전선로의 이중화사업 조기추진 (주요 공단지역 우선 시행)
- 발·변전소의 신·증설 및 노후설비 교체로 여유전력 확보(적정 예비율 : 15%)
- 발·변전소의 주요 변압기 및 기기 등의 소손시 긴급복구용 예비자재 확보와 기기별 인력관리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고장원인 사전 제거
- 발·변전설비의 일상·정기점검으로 피해예방 활동실시와 운용 요원에 대한 교육 및 가상 고장 모의훈련으로 위기대처 능력향상

- 소화취약장소에 예상 소화유형의 초기 진화용 방재시설 보강
- 이동 발전차, 예비용(이동)변압기 및 자가용 수용가의 비상발전기를 비상시 즉시 사용 가능토록 평상시 유지관리 철저
- 전력설비에 접근 시행하는 공사 장소에서 사전 선로감시 실시로 사전예방 및 안전 계몽활동 전개
-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 펌프시설 등 수방시설 점검강화 및 수방 기초자재 비축관리
- 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대응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니터 활동 전개
-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정전안내 및 전기 안전의식 제도 실시

〈가스시설〉

- 점검방법 : 가스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점검반 편성 : 안성시, 한국가스안전공사
- 정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2회
 - 점검시기 : 상반기 4 ~ 5월, 하반기 9 ~ 11월
- 특별가스 안전점검 3회
 - 점검시기 : 해빙기, 우기, 동절기
- 중점점검 사항
 - 관련규정과 시설의 적합여부
 - 각종 법정검사 이행여부(정기, 자체, 완성)
 - 공급자 의무규정,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 안전관리자 확보상태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각종위해방지시설 확보여부(독성가스 중화장치, 제독장비 등)

〈상수도시설〉

- 대상시설 : 상수시설(취수·정수·배수시설 및 송·배수관로) 및 급수 분야 전반
- 점검시기 : 매년 5월
- 점검내용
 - 상수도분야 방재계획 수립여부
 - 정수장별 비상대비 정수약품확보 및 비축여부
 - 취·정수장 및 배수관 공사현장 재해대비 관리실태 점검
 - 시설별 수방자재 확보 및 비축·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실태
 - 재해발생 취약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자체 점검·정비실태

- 취·정수장별 비상연락망 정비현황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토록 조치

10)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점검대상 : 관할지역내 시설물
 - 점검시기
 - ┌ 상시대비체제 기간중 : 3월부터 5월까지 1회이상
 -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 점검
 - └ 기 타 :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점검
 - 점검방법
 - 저지대 시설의 가로등 점멸기함, 교통신호등 제어함, 안정기 점검구 등을 침수예상높이 이상으로 재정비
 - 지중관로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및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가로등 점멸기함 및 교통신호등 제어함, 등주에 접지시설이 미비한 곳은 제3종의 접지시설 설치
 -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신호등에 대하여는 분전함 및 안정기함의 높이를 침수예상높이 이상으로 제작 설치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기관 주관하에 우기전까지 보수·보강토록 조치
 - 노후케이블 교체 등 정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및 재난대책기간중 특별관리

나.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동원장비 등 지정관리

1) 수방자재 확보관리

종 류	○ 흡수성 모래주머니(순간마대), 물매트, 포대류, 묶음줄, 말뚝, 덮개류 (비닐), 배수관(흡관, PE관), 작업공구 등 ※ 수방자재 등 현대화 추진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 평균사용량을 감안하되,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측한 소요량을 조사, 시설별로 일정량의 확보기준량을 확보 ○ 긴급용으로 일정량만 보관하고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로 보관하여 창고 공간부족현상 해소 및 내구연한 경과 자재에 대한 폐기처분 ○ 재해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방재물자 선정							
비축장소	읍·면·동 수방창고							
수 방 자 재 확 보 현 황 (2010. 04월 현재)								
읍면동	품 명	P·P마대 [장]	보온덮개 [롤]	비닐 [롤]	끈 [타래]	양수기 [대]	토 백 [장]	말 뚝 [개]
	계	282,030	640	484	459	46	1,995	270
	공 도 읍	16,600	50	32	40	3	150	20
	보 개 면	15,000	45	30	16	1	150	20
	금 광 면	15,000	50	30	16	1	150	20
	서 운 면	26,500	45	38	28	2	150	20
	미 양 면	26,680	50	32	20	2	150	20
	대 덕 면	21,000	45	34	82	2	150	20
	양 성 면	31,000	61	30	57	2	150	20
	원 곡 면	15,000	45	30	20	2	150	20
	일 족 면	17,300	45	30	42	2	150	20
	죽 산 면	21,600	50	50	40	2	150	20
	삼 족 면	37,650	45	56	48	1	150	20
	고 삼 면	20,700	50	40	26	1	150	20
	안성1동	6,000	20	15	8	9	65	10
	안성2동	6,000	24	22	8	9	65	10
	안성3동	6,000	15	15	8	7	65	10
	기 타							

사 전 조 치 및 점 검 사 항

- 수방자재 확보여부 점검 및 확인
- 점검시기
 - 상시대비체제 기간 중 : 11월부터 4월까지 1회 이상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 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
- 점검내용
 - 보관자재는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자재의 폐기처분 및 부족자재 확보여부
 - 자재의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부패예방 조치여부
 - 보관 창고내에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2) 응급복구 동원장비 지정관리

대 상	백호우, 덤프트럭, 집게차, 청소차, 분뇨수거차 등 ※ 침수피해시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게차, 청소차, 분뇨차를 필히 지정
지정기준	동원장비는 최근 10년간 최대피해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 지정
동원순위	시보유장비 ⇨ 유관기관 장비 ⇨ 군부대 지원장비 ⇨ 민간장비
사 전 조 치 및 점 검 사 항	
- 지정장비의 지정관리실태 점검 시기 • 재해기간(5~10월) : 매월 파악 • 비재해기간(11~익년4월) : 매분기 파악 - 인접 시·군간 장비동원 체계 확립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동원가능하도록 조치 -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징구 후 지정 관리 ※ 응급복구용 장비에 대해 추진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침수피해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 등 쓰레기처리장비 지정 및 확보(인근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와 응원체계 구축) - 시신운구용 차량확보(보건소, 병원의 앰블런스) - 급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청수선 등)	

3) 수난구조용 장비·자재 확보

종 류	헬기, 선박, 잠수장비, 구명복, 구조망, 구급차, 로프, 무전기 등
지정기준	재난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보유 장비·자재중 사용이 가능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수난구조장비 : 헬기, 선박, 구명복, 구조망, 구급차, 로프, 무전기 등 ※ 수방신호기 : 싸이렌, 메가폰, 앰프 등
사 전 조 치 및 점 검 사 항	
- 관할 시의 수난구조용 장비·자재 확보여부 확인 및 점검 - 소방재난본부, 지역 군부대, 민간구조기관등과 긴급 연락체계구축	

다.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 자원봉사단체 지원·협조체제 구축

○ 기관·단체간 역할분담

구분	기 관 별	준 비 사 항	비 고
행정 기관	안성시	0 안성시 재난대비 자원봉사 종합계획 수립 - 봉사단체, 유관기관, 자원봉사센터에 통보 0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재난대비 교육훈련 지도	주민생활 지원과
자원 봉사 센터	안성시 자원봉사센 터	0 재난대비 자원봉사단 운영 및 정비 - 관내 재난대비 봉사단별 비상연락망 구축 - 자원봉사단 소속단체별 역할분담 - 자원봉사단별 분야에 맞는 전문교육 실시 - 임시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요령 교육 - 재난복구활동 시 지켜야할 안전수칙 교육 - 재난대비 교육 및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 0 관내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	
민간 봉사 단체	안성시 각종 단체	0 시지부 및 읍면동 지회와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0 수해발생시 임무에 대한 회원교육 0 회원들의 전화번호 등 비상연락망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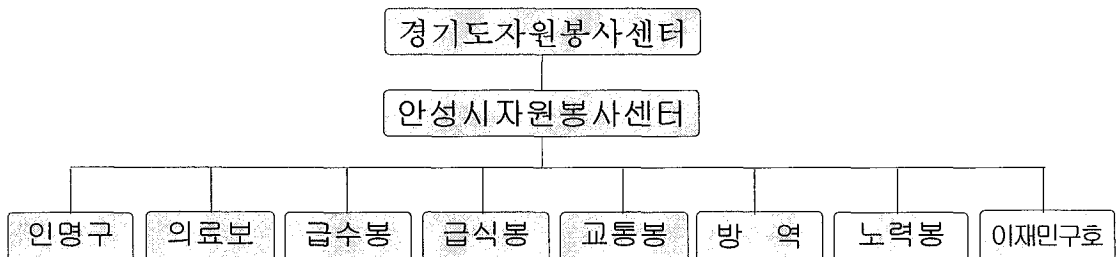
○ 자원봉사센터 현황

- 센터 수 : 1개소
- 종 사 자 : 6명
- 기 능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활동실적관리,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 봉사단 현황 : 9개분야 166단체 20,122명

○ 조 직 도



○ **봉사단 조직정비**

- 정비기한 : 2010년 3~4월중
- 정비대상 : 기 구성운영 중인 인명구조 등 9개 분야
- 정비내용
 - 봉사단별 임직원 변경사항(단체별 임원 및 실무자 변경사항 포함)
 - 자연재난대비 봉사단별 비상연락망 정비
 - 자연재난발생시 사용하는 장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인명구조장비 등)

○ **봉사단 신규모집 및 조직 확대**

- 추진기한 : 2010년 4~5월중
- 모집분야 : 인명구조 등 9개 분야
- 모집대상
 - 자원봉사포털시스템 등록자중 「자연재난대비봉사단」 미 참여자
 - 개인, 봉사단체, 기업체, 유관기관 등
- 모집방법
 -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메일링서비스(또는 SMS)를 활용하여 전산등록 봉사자중 봉사단 미 참여자에 대한 모집홍보
 - 자원봉사 홈페이지, 소식지,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활용
- 모집결과 : 기 구성된 자연재난대비자원봉사단에 편입

○ **봉사단 교육훈련**

- 기본교육
 - 교육시기 : 2010년 4~5월중
 - 교육내용
 - 자연재난 발생원인과 대처요령
 - 자연재난발생시 상황전파 등 자연재난복구 자원봉사 지휘체계
 - 자연재난발생시 봉사단별 역할과 임무 숙지
 - 기타 자연재난복구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과 자세, 준비사항 등
- 분야별 전문교육
 - 교육시기 : 2010년 4~6월중
 - 교육내용 : 사례발표, 전문강사 강의 등
 - 인명구조 : 인명구조장비 사용요령, 응급처치요령 등
 - 의료봉사 : 구성원간 유대강화, 의료단체간 역할분담 등
 - 급수봉사 : 비상급수장소 지정(제수변, 급수탑), 단체간 정보교류
 - 급식봉사 : 부식조달, 조리, 배식, 설거지 등 역할분담 등
 - 교통봉사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참여단체간 유대강화 등
 - 방역봉사 : 안전사고 예방교육, 방역장비 사용요령 등
 - 노력봉사 : 자원봉사 활동시 주의사항, 사전준비사항 등
 - 이재민구호 : 구호물품 배분시 자원봉사자 참여·지원범위 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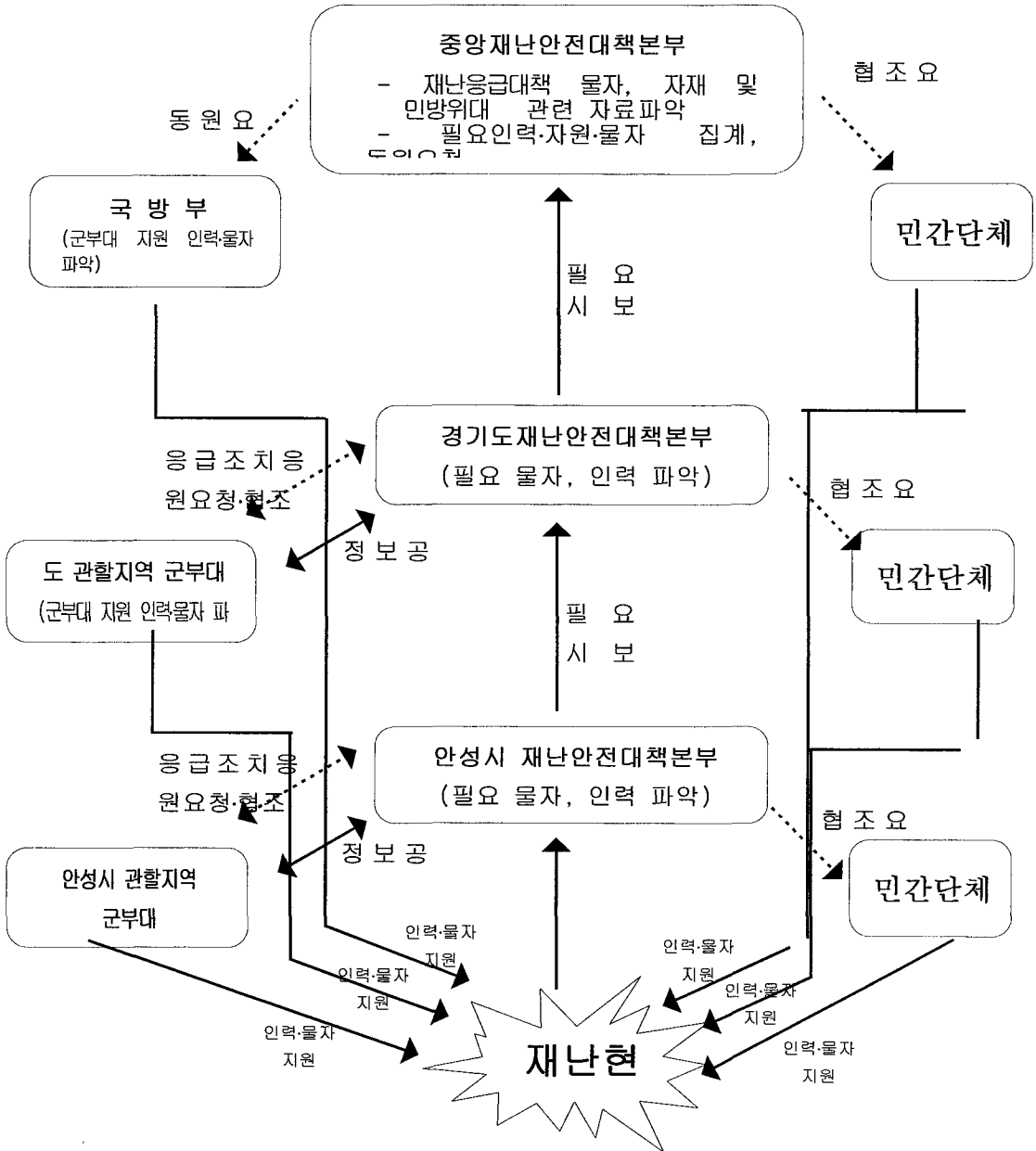
○ 재해대비 자원봉사대 구성 방안

봉사분야	구 분	주 요 내 용
인명구조대	구 성	• 해병대전우회, 수난구조대 등 인명구조봉사단체 •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인명구조 보유장비, 연락체계 파악 • 단체별 재해대비 자원봉사 전담자 지정
	운영체계	• 상황발생 → 인명구조요청(자원봉사센터, 담당부서) → 현장출동 및 구조(119, 봉사단) → 봉사실적 관리(센터)
	운영방법	• 수해 등으로 인한 고립자 구조 등 인명구조활동 전개 • 소방서, 병원, 의료봉사단과의 협력체계 유지 • 인명구조의 조직화, 체계화를 위한 단체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의료봉사대	구 성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단체로 의료업무관련 부서로 구성 •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연락체계 파악 • 단체별 재해대비 자원봉사 전담자 지정
	운영체계	• 이재민 발생 → 의료봉사요청(보건소, 자원봉사센터) → 의료활동(봉사단) → 봉사실적 통보 (보건소→자원봉사센터) → 봉사 실적 관리(센터)
	운영방법	• 재해지역 중 이재민수용소 등에 임시진료소 설치 운영 • 재해지역 보건소와 합동으로 의료봉사단 구성 의료활동 전개 • 이재민 수용시설의 진료, 응급조치 등 의료활동 전개 •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단체별 연대체계 유지 • 지역보건소와 의료봉사단과의 협력체계 유지
급수봉사대	구 성	• 소방서 및 수도운영과 협조 이동물탱크 보유 회사 등 • 기업체 및 소방서명, 보유장비, 급수용량, 연락체계 파악 • 기관별 재해대비 지원 전담자 지정
	운영체계	• 상황발생 → 급수불통지역 파악(상수사업소) → 지원요청 (상수사업소, 센터) → 급수지원(상수사업소, 소방서, 봉사대) → 봉사 실적관리(센터)
	운영방법	• 급수 불통지역 주민에 대한 식수지원 • 각 시의 수도업무 부서, 소방서, 봉사대간 협력체계 유지

봉사 분야	구 분	주 요 내 용
급식 봉사대	구 성	• 적십자 부녀봉사회,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 • 대규모 급식차량 보유 민간기업 파악 및 참여 협조요청 •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보유장비, 연락체계 파악 • 단체별 재해대비 급식봉사단 전달자 지정
	운영체계	• 이재민발생 → 수요파악 및 참여요청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 급식소설치·재료지원(주민생활지원과) → 급식 [봉사단] → 봉사실적 관리[센터]
	운영방법	• 이재민 수용시설 및 수해복구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 급식장소는 이재민수용시설, 자원봉사자 밀집지역에 설치 • 여성단체 위주로 구성(배식, 설거지 등 급식에 따른 역할분담) • 대규모 급식차량 보유 민간기업과 협조체계 유지 • 급식비, 급식장소 설비 및 부식지원(주민생활지원과)
교통 봉사대	구 성	• 모범운전자회,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교통질서단체로 구성 •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연락체계 파악구성 •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보유장비, 연락체계 파악
	운영체계	• 교통혼잡지역 발생 → 교통질서 지원요청(경찰서, 자원봉사센터) → 현장출동 및 교통질서 활동(경찰, 봉사단) → 봉사실적 관리[센터]
	운영방법	• 피해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몰리는 혼잡지역 교통정리 • 경찰과 합동으로 수해지역 진입차량 교통정리 • 지역의 교통질서봉사단체간 연대체계 유지 • 재해위험지역 진입차량 교통통제
방역 봉사대	구 성	• 보건소와 협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으로 구성 •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보유장비, 연락체계 파악 구성 • 단체별 담당자 지정 운영
	운영체계	• 재해발생 → 방역요청(보건소, 읍·면·동) → 봉사실적 관리[센터]
	운영방법	• 수해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전개 • 지역보건소, 읍·면·동과 협의 취약지역 방역 • 사고예방을 위해 보건소의 안전교육 이수 후 방역활동 참여 ※방역약품 및 유류대 지원(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봉사분야	구 분	주 요 내 용
노력봉사대	구 성	•봉사단체, 기업체, 군인, 학생 등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연락체계 파악 구성 •단체별 담당자 지정 운영
	운영체계	•피해발생 → 자원봉사 요청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참여독려 [센터] → 자원봉사자 수송 → 현장배치(임시센터) → 봉사활동(봉사단) → 귀가 → 봉사실적 관리(센터)
	운영방법	•침수가속 가재도구정리 및 청소 •무너진 비닐하우스 등 침수농작물 복구, 쓰러진 벼 일으키기, 낙과수집 •유실도로 등 공공시설물 복구, 수해 잔재물 청소 등 환경정화 활동 •삼, 장갑, 장화, 수세미, 수건, 모자 등 기본장비는 자원봉사자가 준비
이재민구호	구 성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하여 지역봉사단체로 구성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구호물품 수송용 차량, 연락체계 파악 •단체별 재해대비 자원봉사 전담자 지정
	운영체계	•이재민 발생 → 구호물품 수송 및 적재(적십자, 주민생활지원과) → 구호물품 배분(적십자, 행정기관, 봉사대)
	운영방법	•적십자사 또는 우리시 사회복지 부서와의 연계체계 구축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를 지원하여 이재민구호물품 전달

〈협력체계 구축도〉



2. 민·관·군 공동대응체제 구축

목 적	○ 재난예방 물자·자재 비축 등에 대한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체제 구축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 대응 능력 제고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 본부장은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수방·지진방재·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 긴급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동원명령) ○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민방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동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 - 군부대의 지원 요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 조 사 항	○ 재난 응급물자에 대한 파악 및 정보 공유 ○ 군부대와 응급조치 지원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 **협정체결**

□ **육군5171부대2대대**

- 인명구조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 수습복구에 필요한 기술제공 및 특수장비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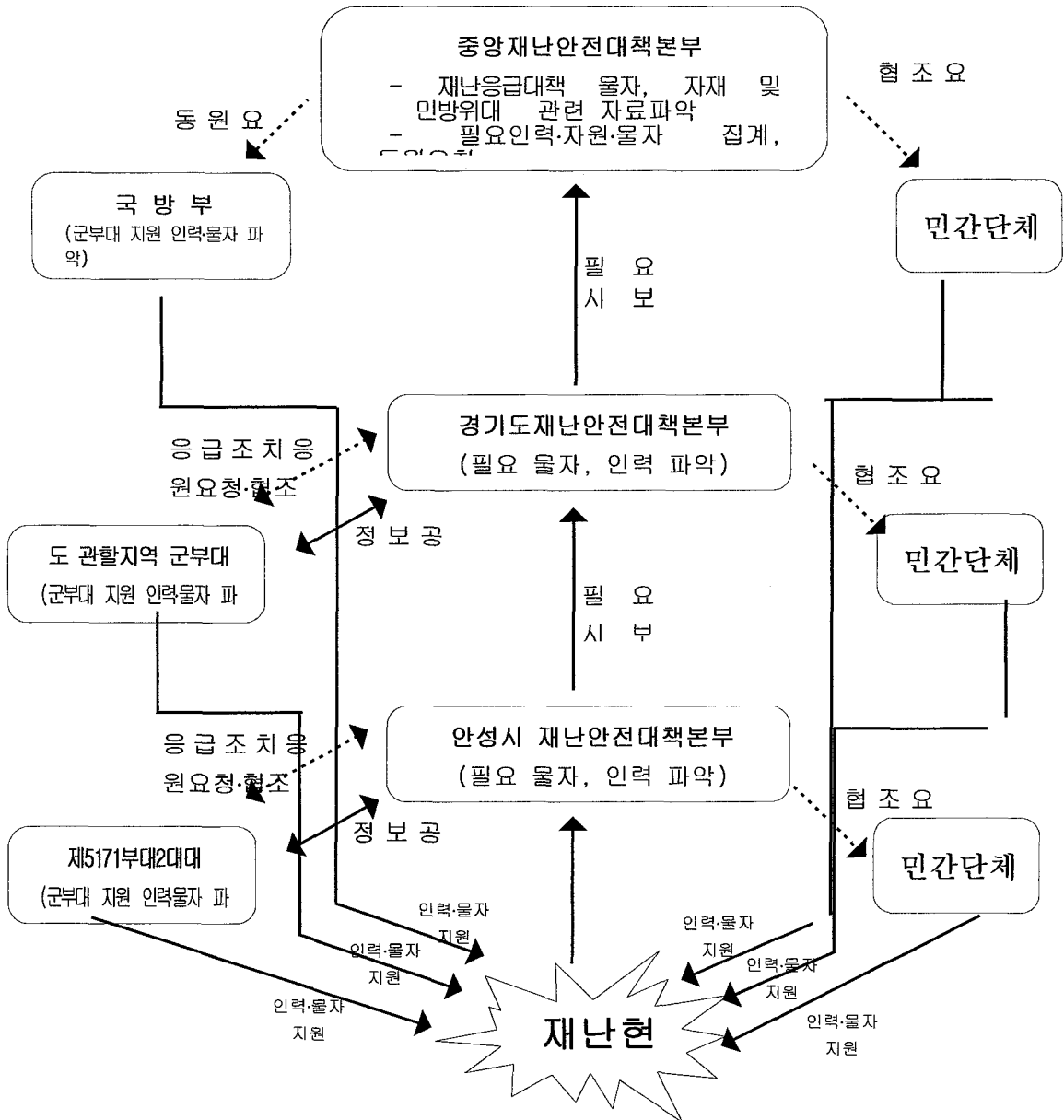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안성지회)**

- 인명구조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 **인접 시간 상호협조체제 구축**

타 시	지원가능 장비	지원가능 인력	지원가능 자재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용인시	2대	20	수방자재	복구지원담당	김만수	324-3742
평택시	2대	20	수방자재	방재복구담당	김정삼	659-5164
이천시	2대	20	수방자재	복구협력담당	이종인	644-2975

□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유관기관간 업무체계도



3) 민간모니터위원 활용

○ 목 적

- 재난발생시 지역주민들을 현장 모니터위원으로 활용,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수집 등 상황대처 기능 강화

○ 기본방향

-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단체, 운전기사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성 있는 자들을 민간모니터 위원으로 확대 지정
-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생생한 현장 정보수집, 상황대처 기능강화
- 재난위험시설 등 수시 순찰, 이상유무 확인 신고 등

○ 확대지정 대상

- 지역거주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단체, 운전자, NGO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용이한 자 중 시군별 확대 위촉·운영
 -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위험지구 주민
 - 택시기사, 자원봉사단체 회원
 - 읍·면단위 통·리장 등

○ 지정현황 : 20명

- 통리장 : 7명 - 무선봉사단 : 13명

○ 모니터위원 역할

- 평시 재난예찰활동 및 정비, 가두캠페인·전단배부 등 사전 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제방누수, 슬라이딩, 파이핑 현상 등 육안검사 실시
- 주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난대비 교육
- 재난 사전대비 예찰활동 실시 위험상황 통보 등

○ 보고방법

- 비상연락망 변동사항 수시관리(휴대전화, 전화, 주소 등)
- 모니터위원과 지역재난상황실간 상호 연락체계 구축
 - 당해지역 상황실 및 담당공무원과 모니터위원간 긴급통화가 가능하도록 상호 휴대폰에 상대방전화 입력 활용
 -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정보, 사전대비 활동정보, 유익한 생활정보, 기타정보 등 제공

라. 재난상황 홍보방안 및 자율방재의식 고취

1) 재난대비 방재교육

교육기간	○ 4월 ~ 5월중
교육대상	○ 읍면동 재난담당자, 통리장, 유관기관, 민방위대 등

2) 재난대비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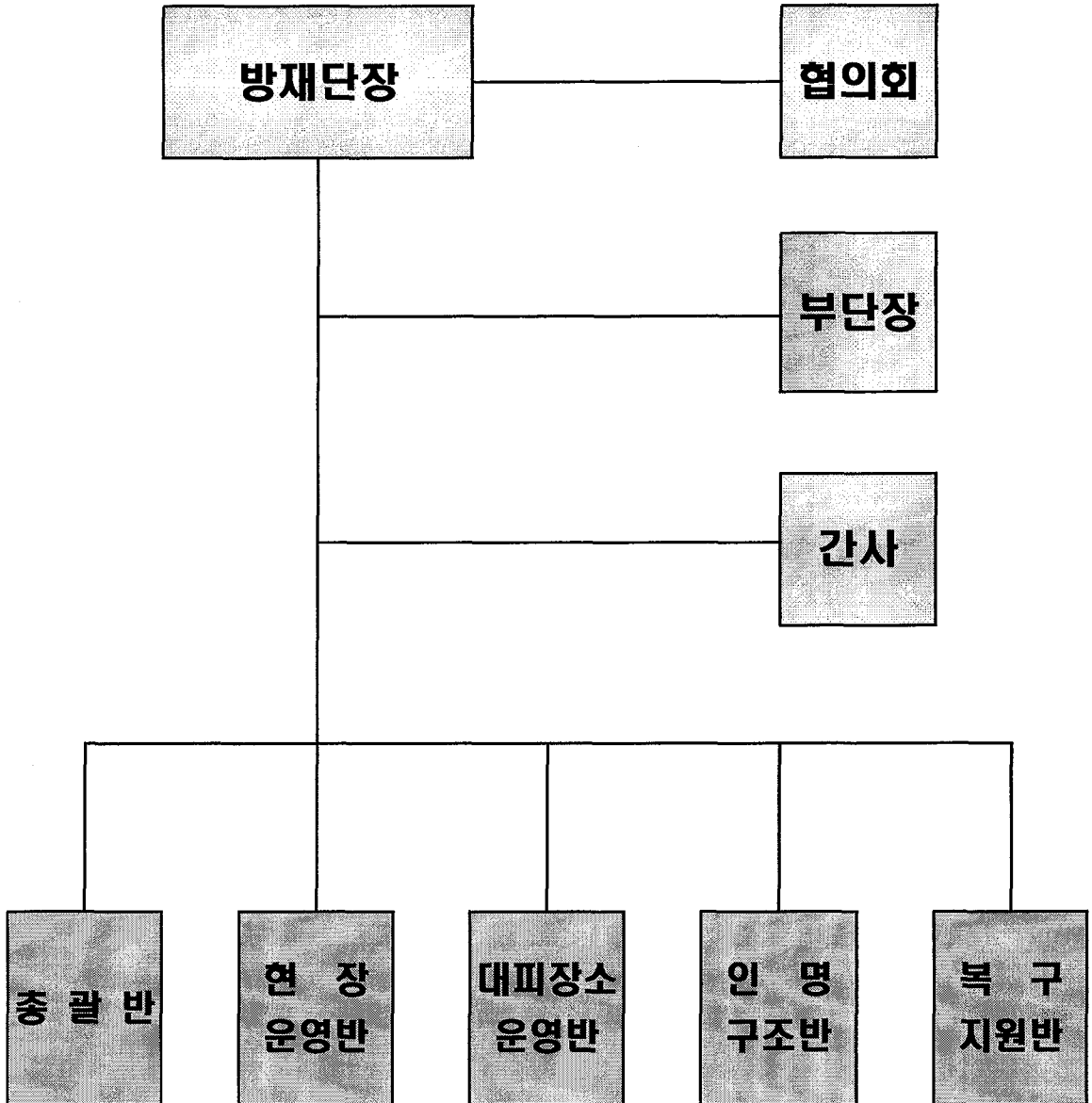
훈련목적	○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상황을 가정한 상황대처와 수습 등에 실제 필요한 도상 훈련을 실시, 안성시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 도모 ○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간 협조체제구축 및 합동대응능력 향상 등 종합적인 대비 태세 확립 ○ 피해대비, 피해발생, 사후수습 단계별로 상황대처 및 수습 등 효과적인 훈련 실시로 비상시 신속한 대책수립
훈련기간	○ 3월 ~ 5월중(3일간)
훈련방식	○ 도상훈련, 전산훈련, 지역특성훈련
도상훈련	○ 제1단계(대비단계) - 기상상황 전파(관·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 비상대비태세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재난위험지역 예찰 및 신고체계 강화 ○ 제2단계(대응단계) - 재난상황 전파(관·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 피해상황정보 전파 및 피해지역 주민대피 등 - 재난위험지역 예찰 강화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기관별 조치상황 등 협조체제 유지 - 피해지역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 ○ 제3단계(복구단계) - 복구(응급, 항구)추진의 조속한 계획수립 추진 - 주민생활시설의 최우선 복구대책 - 이재민 구호, 방역 및 분뇨·쓰레기 처리대책 - 복구완료시까지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등
전산훈련	○ 재난상황관리 피해집계 프로그램(NDMS) 조작요령 숙지 ○ 도 주관하에 피해집계 등을 위한 재난유형별 피해상황 메시지 부여 ○ 피해 및 복구관리 전산시스템 활용능력 제고 ○ 인명피해, 교통두절 등 피해·복구관리 전산시스템 조작요령 숙지 ○ 신속한 상황관리·대처, 유관기관과 상황공조체제 강화 등
지역특성훈련	○ 재난위험지역 주민과 직결되는 장소를 선정, 실제훈련효과 배양 ○ 재난발생에서부터 사태수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한 훈련시나리오에 의거 실시

3. 자원봉사단체, 기업체 등 자율방재조직 활동 지원

1)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목 적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응 뿐 아니라 민간자율 방재활동을 통해 사전대비 등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단계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기본방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지역자율방재단 참여유도 ○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NGO)적극 활용 ○ 다양한 인적계층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 인적·물적 자원분석을 통한 실천 가능한 방안 도입
기 능	○ 민간자원의 재난대비, 대응, 복구활동 지원 ○ 지역재난대비 주요 수방시설 사전점검·정비 ○ 지역주민 방재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지역 재난 응급복구지원 등
운영 및 활동	○ 자치단체장의 동원명령이나 협조요청, 방재단장의 지시에 의해 소집·활동 ○ 단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 실정에 밝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역방재전문가로 육성 ○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 공동 이용
주요임무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상시관리 ○ 재난대비 사전점검·정비 및 방재물자·장비의 확보 비축 ○ 재난취약지구의 선정·관리 및 대책강구 ○ 방재단원의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 ○ 방재관련 교육 및 연찬회, 안전점검의 날 참석 등 ○ 경보의 전달 및 주민대피유도,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 ○ 이재민 관리,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 ○ 전염병 방재를 위한 방역활동 전개 등 공중보건관리 등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2)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총괄 현황

기능반별 가입단체	계	총괄반	현장운영반	대피장소운영반	인명구조반	복구지원반
계	136	13	44	15	16	48
단장	1	신상철				
부단장	2	이신환 이영직				
간사	1	이은기				
재무	1	김상철				
기능반장	15	양승배, 최윤선, 윤중현	이기종, 양병인, 유광철, 유병권	정택훈, 조정식	송영환, 김휘배	신종진, 조윤식, 양용석, 오세공
금광면	1			이승재		
공도읍	4		조철희, 정재영			이봉균, 박영호
보개면	5		김길중, 김근성			김경환, 박좌근, 조범재
미양면	7		한정현, 박민수, 김일수			임태준, 김태현, 김세영, 최석재
서운면	6		홍성수, 이종호, 고덕수	김광석		고찬영, 안창원
양성면	7		오세용, 서광원	오세충, 김명기		서동권, 이인희, 민경동
고삼면	6					박장수, 신수택, 홍승표, 안광운, 박광덕, 박종만, 유학재, 박준구, 이동호
원곡면	5		풍우연, 이규영			이종명, 권태훈, 김죽현, 이태상
일죽면	9	임종욱, 정종현	안인찬, 김병도	최운환		장창덕, 최형구, 이한천, 이호익
죽산면	6		김기철, 신평철			
삼죽면	6		최인규, 김응섭	신태환, 김완희	장면교, 김태호	
안성2동	5	박용산	한상욱, 이인덕	윤판덕		박윤용
아마무선	16	이규필, 이하등	신종영, 김성연, 박종천, 임재현, 김효영	한만중, 박주영, 김종환, 안광명, 김명돈, 이연호, 김흥덕, 강윤환, 유일준		
해병전우회	19		정광희, 이태수, 정선기, 박우영, 오성근, 이창준, 오수우, 이인찬, 김성근	박홍서, 이용식	김현우, 김학준, 박희형, 장사익, 곽희근	윤종욱
전문건설협회	6					심상덕, 윤동희, 정호, 현정호, 고정종, 유승만
수난인명구조대	8				이백규, 김성태, 김경준, 지찬만, 유명근, 유승영, 김재인	

마. 국민행동요령 홍보대책

- 단계별 국민행동요령을 작성, 각종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
- 홍보방법
 - 인터넷, TV·라디오 방송, 신문, 반상회 회보, 홍보 전광판 등
 - 홍보 비디오, 팸플릿,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활용

2. 대응단계

가. 인명구조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

1) 인명구조 유관기관 협조

- 인명구조 관련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비상연락망 구축
 - 관할구역 내에서 재난발생시 119구조대 출동태세 구축
 - 119구조대, 군·경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조직·운영하고 있는 각종 인명구조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합동훈련 실시
 - 안성소방서장(119구조대)이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조 활동 총지휘
 - 상습침수나 고립위험이 있는 지역은 사태발생시 인근의 인명구조대를 즉각 동원, 사태수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담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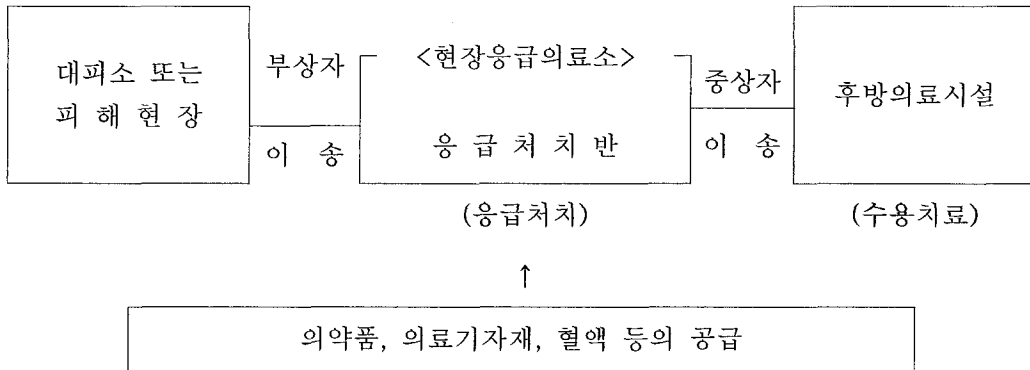
2) 고립예상지역 대책

- 안성시의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수립
 -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 주민고립 예방
 - 고립예상지역은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헬기착륙장과 우회도로 등을 지정·관리
 - 인명구조 요청시 헬기 등이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인근 군부대 및 경찰·소방관서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관리

나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1) 응급진료 및 응급환자 수송대책

<재난시 의료구호체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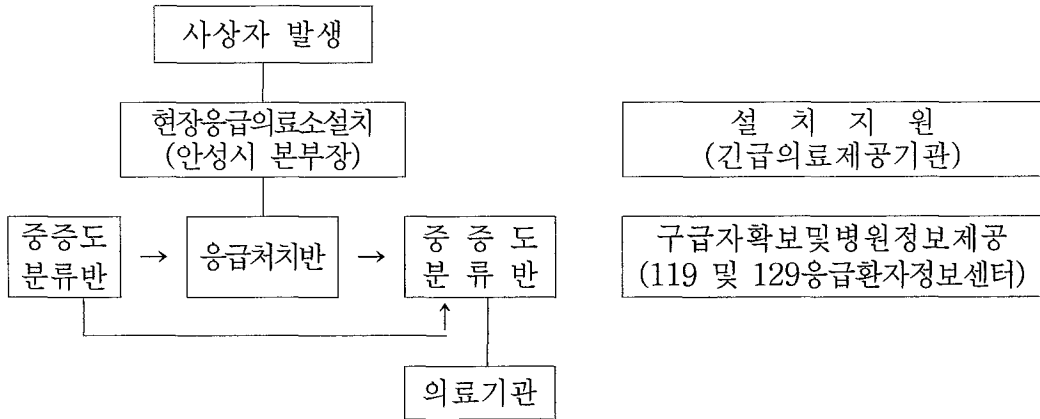
○ 현장의료구호소의 설치

- 의료구호반은 시장이 설치한 대피장소 또는 재해현장 등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 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에의 운송순위결정, 수송곤란자 및 경상자에 대한 의료실시, 조산구호, 사망자의 확인, 사체의 검안 등을 실시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 의료구호소등에서 의료 구호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조대 등을 파견 조치

○ 중상자 후송 대책

- 현장 응급의료소의 소장이 119구급대 또는 의료기관 구급차 등에 요청, 후방의료시설까지 운송 조치
- 통신망의 단절로 피해지역 의료기관의 상황파악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한 정보수집

〈사상자처리체계도〉



○ 의료시설에 대한 Life-line 대책

- 단수, 정전 등으로 인하여 의료활동 불가능에 대비 의료시설에 대한 라이프라인 대책 수립 추진

○ 긴급수송로의 지정(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운영규정)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긴급 수송로로 지정

○ 긴급운송루트의 확보(철도, 도로, 항로)

- 육·공으로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교통방송 등을 통하여 긴급수송로 확보
- 긴급수송루트, 주요우회루트를 표시한 지도정보시스템 개발
- 헬기 임시 착륙장 지정
- 대형헬기 등으로 수송장비 지정

2) 응급의료기관 확보 및 협조사항

○ 기본방침

-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후송체계 확립
- 지역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진료대책 추진

○ 의료시설 현황(※ 참고자료 1 안성시 의료시설 현황 참조)

- 환자이송 협조체계 구축
 - 대량환자 발생 시 구급차, 헬기 동원 및 이송협력체계 수립
 - 구급차량 : 관내 의료기관 등 구급차량 활용
 - 헬 기 : 소방본부와 협조
 - 이송협력체계 : 인근 응급의료기관 활용
 -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한 이송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처치 지도 적극 활용
 - 대량환자 발생 현장통제 및 구급차 이송통로 확보
 - ⇒ 안성경찰서 협조

3) 사체처리 대책

○ 안성시의 인명구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사체의 수색

- 사체의 수색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되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협조를 받아 수색

○ 사체의 운구와 보관

- 사체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 영치
- 사체의 신원 파악을 위해 매장이 지연되는 경우와 사망자 수가 많아 단시일내에 매장할 수 없는 경우는 시신을 안치하는 기관에 협조 요청

※ 사망자의 시신을 다룰 때에는 이재민에게 시신을 공손히 취급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함

- 운송 차량이 부족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 사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드라이아이스 등을 사용하며 부패로 인

하여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 사체의 검안 및 처리

- 사체의 검시, 의학적 검사, 신원 확인 등의 업무와 사체식별을 위한 세척, 봉합, 소독까지의 의료활동은 전문기관에 업무를 일임

○ 사체의 매장

- 사체를 안치 장소에서 반송하고 화장 또는 매장까지의 일련의 업무는 시에서 수행

○ 신원 불명 사체의 처리

- 신원 불명의 사체는 안성시경찰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
- 경찰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

4) 생필품 등 구호물자 확보·비축 및 공급대책

○ 재해구호물자 비축(비축현황 참고자료 첨부)

- 최근 10년간의 우리시 재해발생 현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물자는 우기전까지 확보
- 최근 10년간의 재난시 이재민발생상황을 감안하여 현재의 보유량으로 대비하되 부족시 전국 재해구호협회 제작물품을 사전 협약 후 사용
- 재해구호물자 비축시에는 소요 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수품은 개인용, 세대용 등으로 패키지화 하여 보관
 - ※ 변질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렵고 조달이 용이한 물품은 구매선을 사전 지정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조달 조치(쌀, 장류, 통조림, 라면, 단무지, 구운김, 조미료, 부탄가스 등)
- 재난구호물자 중 사용연한에 이르러 다음 재난발생시까지 비축할 경우 폐기될 우려가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은 재난이 발생한 타 시·군·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매각 후 그 대금을 재난구호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용처분하고 새로운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보관물품 상태를 수시로 파악관리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일시구호세트(1명 기준)

구 분	다목적 보온덮개	치 약	칫 솔	비 누	수 건	화장지
규 격	213cm × 132cm	20g	일회용	35g	30cm × 45cm	50매
수 량	1장	1개	1개	1개	1장	1개

○ 응급구호세트(기본용 + 개인용)

- 기본용 : 1세대 2명 기준

구 분	이 불	담 요	칫 솔	치 약	세면비누	수 건	화장지
규 격	200cm × 170cm 1.3kg	200cm × 150cm 320g/m²	일회용	175g	100g	80cm × 40cm	50m
수 량	1장	1장	2개	1개	2개	2장	2개

구 분	배 개	빨랫줄,집게	손거울,빗	반질고리	볼 펜	메모지
규 격	PVC 38cm × 28cm × 10cm	PP 5M, 8개	80mm × 60mm × 10mm	실,골목,가위,바 실,골목,실뿔	0.7mm 유성	10cm × 48cm 30매
수 량	2개	1조	1조	1개	1개	1개

- 개인용 : 남·여 각 1명 기준(의류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

구 분	남				여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 말	간소복	속내의	생리대	양 말
규 격	폴 리	면	1회용	면	폴 리	면	일반슬림	면
수 량	1벌	1벌	1개	1컬레	1벌	1벌	1조	1컬레

※ 의류(간소복·속내의) 크기에 따라 대(남 105, 여 100)·중(남 100, 여 95)·소(남 95, 여 90)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 비율은 3:5:2로 함

○ 재가구호세트(1세대 4명 기준)

구 분	가시경지	코 펠	수 저	세탁비누	세탁제	주방세제	공목소독	수세미	면장갑
규 격	휴대용	4인용	sts	250g	1kg	1kg	고급형	부직포	반코팅
수 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컬레	2개	1컬레

- 보관창고 설치 및 물자의 보관
 - 최근 10년간의 구호실적을 감안하여 교통, 재난상습지역 등을 고려한 전용 창고를 설치·운영하고, 재난구호물자 비축창고가 협소한 경우에는 전국재난구호협회가 운영하는 비축창고 등을 임차하여 보관
 -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물자의 입·출고 및 보관물자의 망실, 훼손, 보관상태 등 점검 후 적의 조치

○ 재해구호물자의 지급

-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자에 대하여, 일시구호세트를 1인당 1세트 지급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 응급구호세트 기본용은 1세대당 1세트
 - 응급구호세트 개인용은 1인당 남·여(대·중·소)에 따라 각 1세트
 - 재가구호세트는 1세대당 1세트를 지급
- 일시·응급·재가구호세트를 지급할 때에는 구호세트 종류별로 구성된 해당 개별구호물품(생수, 쌀, 부식류, 부탄가스, 락스 등)을 반드시 함께 지급
- 그 밖에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가족 수를 감안하여 생활필수품(분유 세트, 기저귀, 모기약 등)을 지급

○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구호체계 확립

- 대한적십자사 등 응급구호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파악
 - 안성시 적십자사지회 또는 민간단체현황 관리
-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 구성된 재난대비 자원봉사대 지원
 - 자연재난대비 자원봉사대 구성에 따른 교육 등 협조
 - 자연재난대비 자원봉사대와 시 담당공무원합동 Work-Shop 개최 등 협조체계 구축

5) 구호물품의 접수 및 배분계획

○ 구호품 배분시 유의사항

<<생필품 배분 전달시 반드시 확인 할 점>>

- 배분된 것을 주민 모두가 공평하다고 만족하는가?
- 적절한 양이 배분되어 다른 재해지역과 균형을 이루는가?
- 노약자, 환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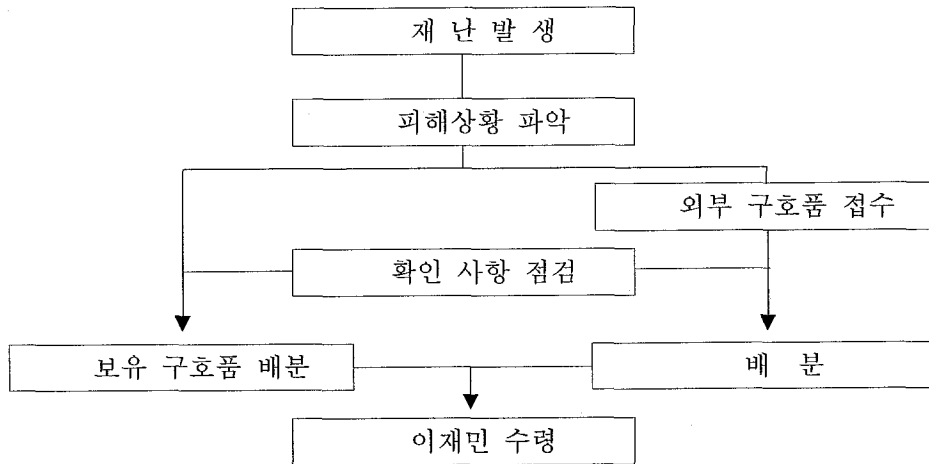
- 피해자는 신경이 날카로우므로 작은 차별대우도 크게 반발을 한다. 그러므로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 다른 지역에 비하여 품질이나 수량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건강한 사람과 재해약자를 똑같이 나누어 주면 안 된다. 상황이 악화되어 필수품의 공급이 중단되면 재해약자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재해약자에게는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한다.

○ 구호품 운송

- 우리시가 보유한 운송수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군부대나 소방서에 차량 등을 요청한다.
 -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게도 차량배송을 의뢰한다.
 - 도로 두절로 인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헬기를 동원하여 공수한다.
 - 헬기착륙이 불가능한 지역은 공수방법을 계획한다.
 - 긴급배분이 될 품목은 하역작업을 하지 않고 차량 자체로 일시 보관한다.

○ 구호품 접수, 배분

- 재난이 발생하면 이재민은 생활물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계획은 구호품이 접수되고 이를 다시 적절한 시기에 배분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호품 접수 배분 흐름도】

- 구호품의 접수

- 구호품은 종류와 수량이 다양하여 구호품을 접수할 때 정량적인 접수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구호품을 기다리는 이재민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신속한 접수와 배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접수는 현실적으로 효과 있게 처리해야한다. 구호품을 접수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물품의 확인
- 이재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쓸모 없는 물품 (예 : 수재민에게 걸레 담는 그릇 등)
- 이재민의 지역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물품 (예 : 농촌사람에게 허리청바지 등)
- 먼지나 오물이 묻어있어 상점의 재고를 처리하는 느낌이 있는 물품
- 가전제품의 경우, 불량품의 확인
- 요즘은 사용 않는 구시대 물품
- 같은 종류와 크기를 무더기로 보내온 물품 (특히 의류)

- 운반비를 지불하지 않은 물품
-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지정해 보내온 물품 (관여하지 말고 직접 달시킨다)
- 보관이 어려운 물품(쉽게 부패하는 것은 가급적 접수하지 말 것)
- 재해 구호물품 배분
 - 모집된 의연금품은 전국재해구호협회(광역구호물품창고)에서 배분하고 각 시·군으로 전달한다.
 - 위험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사전에 구매선을 확보하여 재난 발생 즉시 조달하여야 한다.(예 : 김치 등)
 - 가구별 구호세트는 사람 수를 기준하는 것보다 세대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 재해 구호의 실시
 - 이재민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해구호기간을정하되, 최대 6개월 이내로 한다.
 - 재해구호 실시 내용은 이재민수용시설의 제공, 재해구호물자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가 있다

6)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 지정기준

- 안성시의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과거 자연재해발생 빈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한 건물로 지정
- 수용시설면적은 1인 3.3㎡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수용시설은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하되, 저지대 등 상습 재해발생지역내의 시설은 지정하지 아니함.
-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양호한 지역 선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 지정
(※ 참고자료 2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참조)

○ 점검 및 관리

-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우기전 관리상태 점검
 - 환기, 조명, 보온 등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확보
 -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 상태점검 및 급수차량 확보
- 대피시설 또는 읍면동별 응급구호품과 장비(재해구호물품세트, 고무보트 등) 및 단전, 단수에 대비한 최소시설 확충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수용 이재민의 급식을 위하여 민간구호기관과 사전협의
- 수용시설 안내도 및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7) 주민대피 및 유도계획

○ 위험상황의 정보수집 및 대피 홍보

- 각급 기관은 피해가 예상되면 관계기관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요소의 조기 발견과 주민에게 경계를 당부한다.
- 대피를 준비하도록 주민에게 홍보한다.
- 대피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면 즉시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보고한다.
- 순찰차·확성기·무선통신기·라디오·TV 등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주민의 대피에 신속한 안내와 홍보를 한다.
- 노약자의 대피와 안내는 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다.

○ 대피유도

-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안내자의 파견, 안전 대피로의 확보, 대피 및 교통의 통제, 대피로내 장애물제거 등을 실시하여 대피가 원활하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와 협조하고 요소요소에 안내원을 배치함과 동시에 헬리콥터 등을 요청한다.
- 정전과 야간대피에 대비하여 조명탄과 신호탄 사용을 계획한다.

8) 대피소 운영 및 안전대책

- 시장은 대피예상인원을 판단하여 대규모 재난발생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장소의 학교·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대피장소로 지정관리
(※ 참고자료 3 대피소지정현황 참조)
- 대피주민의 상황파악 관리
 - 대피소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대피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

9) 자원봉사단체의 협조 및 역할분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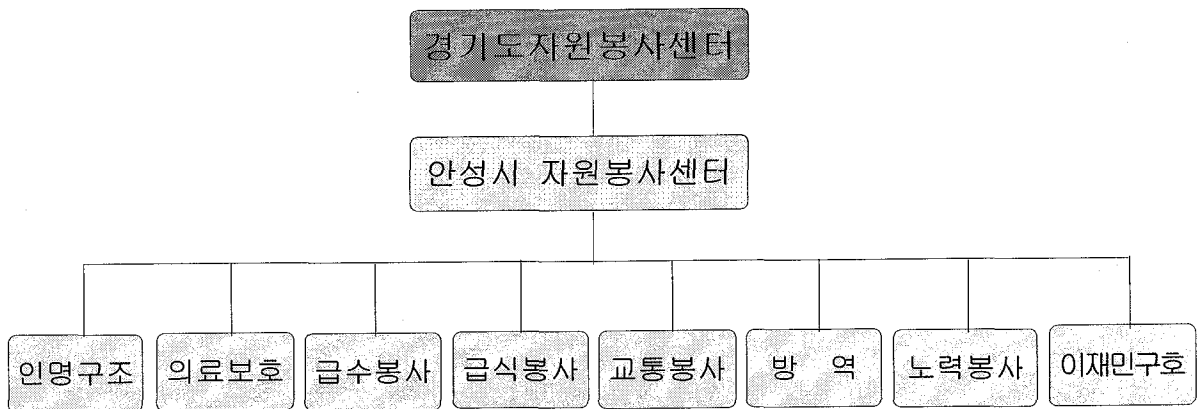
- 행정기관 (안성시)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재민 현황을 정확히 파악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운영
 - 피해 이재민의 거주지역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용 (공공건물, 교회, 회관, 학교강당 등)
 - 화장실, 간이목욕실 확보·설치
 -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 구호센터 운영
 - 필요시 단체급식소, 긴급 방역소독 및 응급의료 처치실, 구호품 보관소 등 설치
 - 구호물자 접수·관리·배포 및 이에 수반된 행정조치
- 대한적십자사 안성지사
 - 이재민구호를 위해 도 및 시와 보완적 역할담당
 -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수용시설에 집단급식 및 이동세탁차량 신속배치 운영
 - 이재민 및 구호요원에 대한 급식 및 세탁 지원
 - 구호센터 및 수용시설에 봉사요원 배치관리
 -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긴급구호물자 지원

- 적십자봉사센터 운영 :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장애인을 위한 특별활동 실시

○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 기 구축한 「재난대비 자원봉사지휘 통합시스템」 확대정비
-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재난대비 네트워크 구축
- 단체별 특성을 파악하여 자원봉사분야별 봉사대 구성
- 재난대비 기관·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

【재난대비 자원봉사대 조직도】



< 자원봉사분야 구분>

- 인명구조대 : 고립자 구조 등 인명구조활동 전개
- 의료봉사대 : 이재민 진료 등 의료활동 전개
- 급수봉사대 : 급수불통지역 주민에 대한 식수지원
- 급식봉사대 :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 교통봉사대 : 수해복구 진입로 혼잡지역 교통정리
- 방역봉사대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전개
- 노력봉사대 : 가재도구 정리, 농작물 복구, 수해잔재물 정리
- 이재민구호 :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품 전달

다. 생활필수시설 긴급복구 대책

1) 통신두절 대책

- 도청 및 읍면동 간 비상연락 통신수단 확보 및 한국통신공사간 업무협조
 - 재난종합상황실 통신수단 증설 등 긴급 통신 업무지원
- 재난종합상황실내 방재무선통신, 위성전화기 시스템 운영
 - 재난발생시 : 도 상황실과 읍·면·동간 직통망 확보로 신속한 상황처리
 - 평 상 시 : 행정업무로 활용

자연재난지역 통신지원 대책

-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지휘용 통신망 지원
 - 읍·면·동 비상통신망(위성전화, TETRA)을 자연재난지역에 지원
- 이재민 대피소 등 집단수용시설에 무료 공중전화 설치 및 자연재난지역 통신장비 무상수리 및 교체 지원
 - 기간통신사업자(KT 등)에 요청
- 기타 자연재난지역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
 - 기간통신사업자(KT 등)에 요청

자연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피해지역 지휘통제를 위한 통신망 회선을 기간통신 사업자(KT 등)과 협조하여 최우선으로 복구
 - 제1순위 : 자연재난관계기관, 소방기관, 경찰서, 기상기관, 군 관계시설, 수송확보에 직접 관계있는 기관
 - 제2순위 : 선거관리기관, 통신기관, 금융기관
 - 제3순위 : 지방공공단체

비상통신용 장비 현황

위 성 전 화 기	구분	전 화 번 호	설 치 장 소	비 고
	1	0100-33-1300	재난종합상황실	
	2	0100-33-1301	정보통신과	
	3	0100-33-1302	정보통신과	
	4	0100-33-1303	금광면사무소	
	5	0100-33-1304	죽산면사무소	
	6	0100-33-1305	양성면사무소	
TETRA 비상 무전기	구분	설 치 장 소		비 고
	1	고정용 1,휴대용5	재난종합상황실	
무선함	구분	주 파 수	주 파 수 간 격	비 고
	1	145.000	145.000 ~ 146.000	145.760(비봉산)

통신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주 간	야 간	팩 스	기 타
(주) KT 안성지점	672-0060	674-0800	676-0007	

2) 전기시설 대책

유
관
기
관
별
임
무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

-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전력보강사업
-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제조정으로 정전지역 최소화
- 사고원인조사 및 긴급복구 실시
- 복구에 필요한 전기공사업체 비상동원과 행정기관에 지원 요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평택지사**

-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자문 및 검사
- 자가 수용가의 사고원인조사 및 복구협조
- 자가 수용가 사고시 기술지원

전기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주 간	야 간	팩 스	비 고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점	675-3111	670-2268	670-2219	
한국전기안전공사 평택지사	650-5201	655-2811	651-4876	

자연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피해지역 지휘 통제를 위한통신망 회선을 기간통신 사업자(KT 등)와 협조하여 최우선으로 복구
 - 제1순위 : 자연재난관계기관, 소방기관, 경찰서, 기상기관, 군 관계시설, 수송확보에 직접 관계있는 기관
 - 제2순위 : 선거관리기관, 통신기관, 금융기관
 - 제3순위 : 지방공공단체

《신고 및 보고체제》

각 단위 발변전소
대용량 자가수용가

통보
→

읍면동장

보고
→

시장

보고
→

도지사

보고
→

행정안전부

↓
보고 →

한 전

↓
보고 →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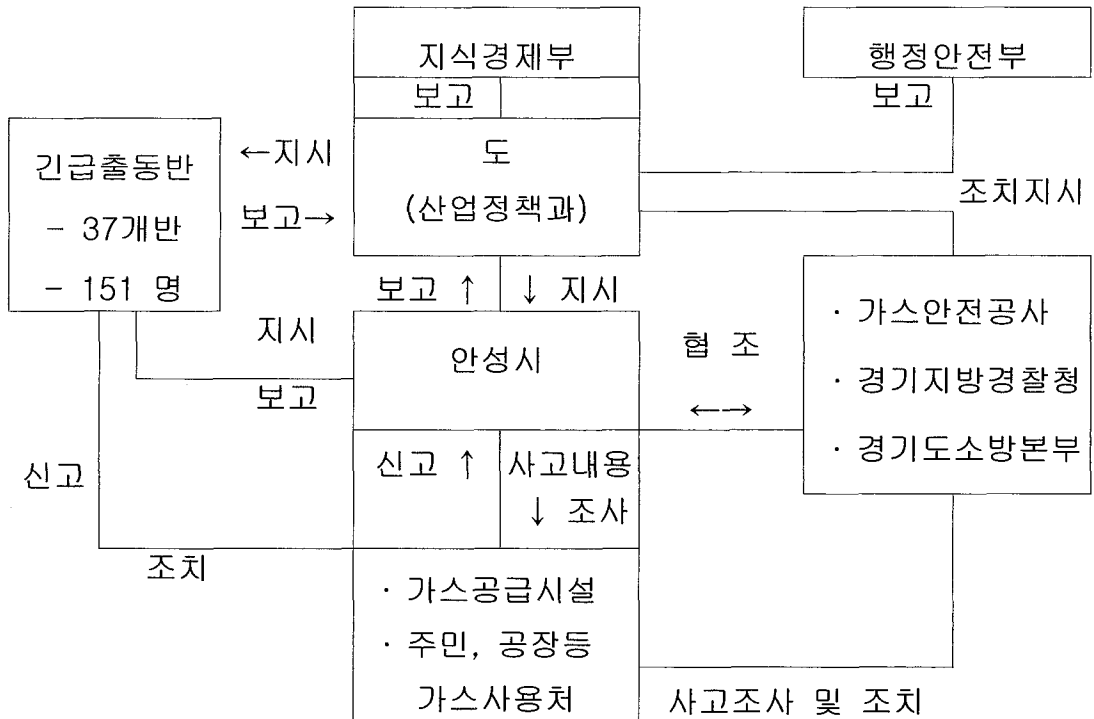
3) 가스시설 대책

유 관 기 관 별 임 무	한국가스안전공사 평택지사	○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활동 저해요인 조사 ○ 가스사고 수습 및 복구요령, 기술지원
	안성경찰서	○ 사고원인 조사, 주민동향 관리 ○ 사고지역 경계 및 출입통제
	안성소방서	· ○ 복구요령 및 기술, 장비, 인원지원 ○ 화재진압 및 인명·재산 피해 조사

전기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주 간	야 간	팩 스	비 고
가스안전공사 평택지사	675-3111	670-2268	670-2214	
[주] 삼천리도시가스(평택)	667-3002	667-3002	656-6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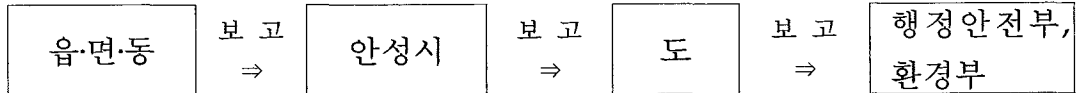
【신고(보고) 및 조치 체계도】



4) 급수 및 상·하수도시설 대책

- 평상시 상·하수도시설물 사고대비 야간 당직실 운영(정수장)
- 평상시 상·하수도시설물 사고대비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
- 상습침수 지역을 중점관리 및 지속적 점검
- 상·하수도 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장마철 정수장 안전관리 철저

- 신고 및 보고체계



5) 교통두절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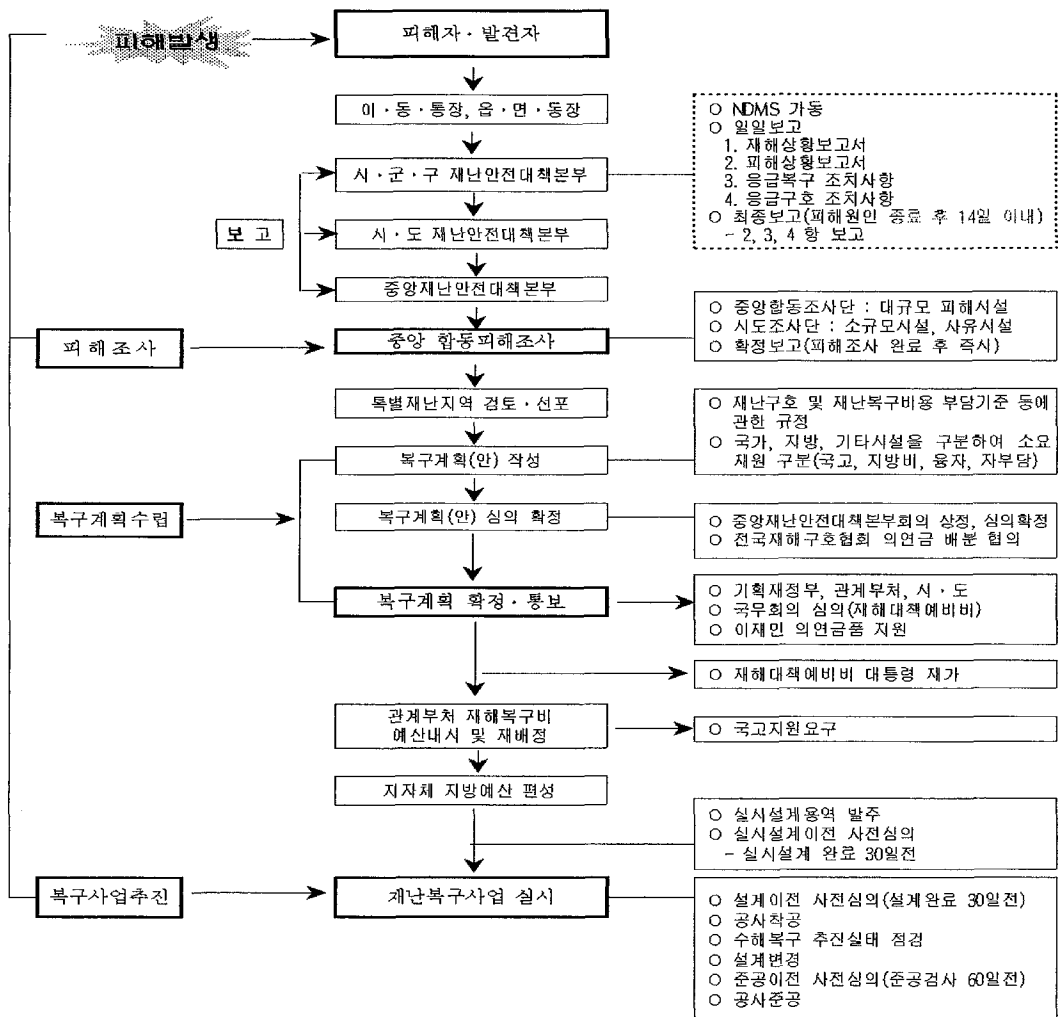
- 자연재난 대책에 따른 교통시설물 현황파악 및 수송 장애요인 분석
- 긴급수송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
 - 자연재난으로 인한 교통두절시,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 우회도로가 불가능하고 대체교통수단 필요시 즉시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 수송량 조정을 위한 불요불급한 인원·차량 통행제한
 - 피해정도에 따라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 통행 조치
 - ① 응급차량 및 재난복구차량
 - ② 공공용 차량
 - ③ 대중교통(버스, 택시)차량
 - ④ 자가용 등
- 우회교통망 안내 및 홍보
 - 우회도로 지정내용에 대한 안내 입간판 설치 및 대국민 홍보
 -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를 활용, TV등의 특별방송 홍보
 - 교통정보 전화안내 및 자동응답시스템 이용 홍보
 - ☞ 고속도로·국도 등 교통정보 및 철도·항공·기상정보 24시간 안내 [1333번]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안 강구 및 시행
- 피해 교통시설의 응급복구 방안 강구 및 시행

3. 복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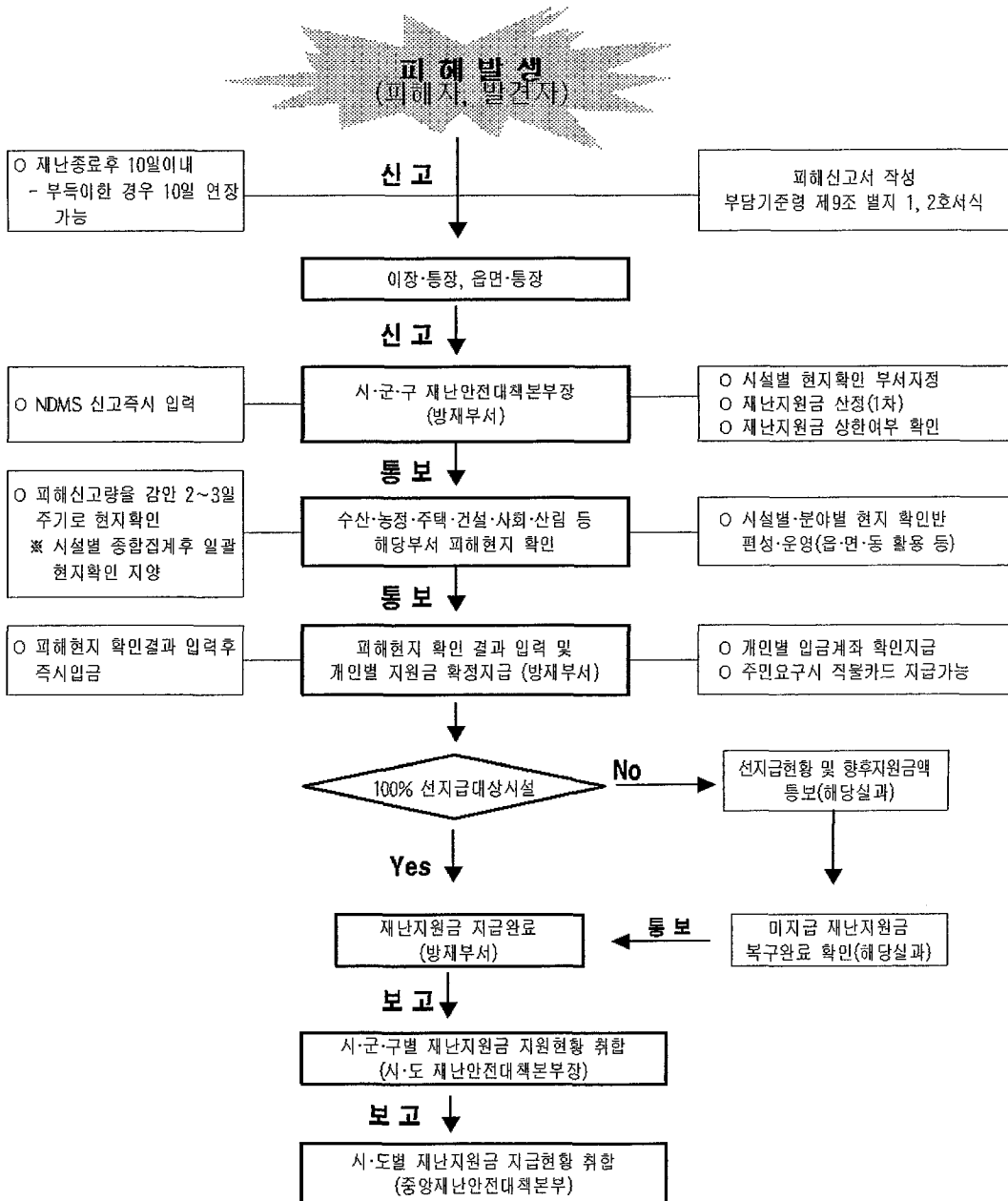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①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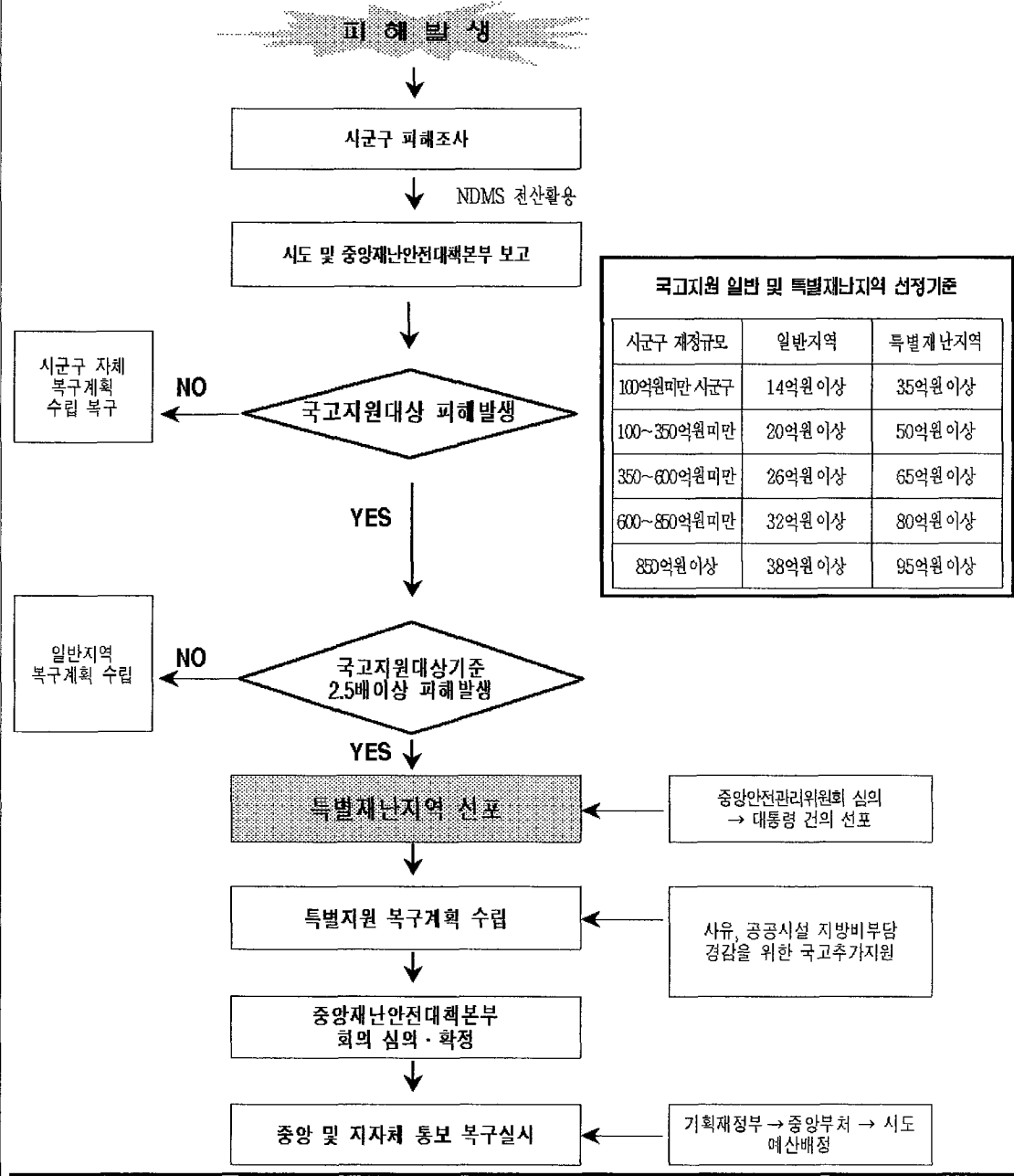
자연재난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② 피해조사 보고권자

-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피해조사 및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되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법 제20조의 피해조사보고 의무를 소홀하여 피해시설 및 이재민이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락시는 기준령 제8조를 준용 자체복구계획을 수립복구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피해보고는 하되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는 제외
- 사유시설(산사태 피해는 제외) 및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조사 실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소관시설에 대해 피해상황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생 즉시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함(기본법 제20조제3항).
- 인명 발생시는 피해자 주소지 및 선적지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물, 농경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피해가 발생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 ※ 통보 또는 보고가 늦어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락시는 피해발생 지역 관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조치하여야 함.
 - ※ 인명피해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보고 및 지원함.

③ 보고시기 및 방법

- 사유시설 피해최종보고 : 시장은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기준령 제9조에 의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일 이내에 보고하되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함
- 공공시설 피해최종보고 :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함
- 피해확정보고 :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풍수해 상황 총괄표 서식에 의거 최종피해 보고내용과 정밀피해조사 결과를 대비한 점검내역을 작성·보고함

※ 유의사항

·도 또는 시에서는 피해최종보고 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누락·과장 등의 사유로 수정보고를 할 경우 거부하지 말고 접수를 하였다가 주후 피해 확정보고 시 반영토록 하기 바람. [피해최종보고는 100%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시 또는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 효율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추가 신고시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안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특히, 사유시설은 현실적으로 피해최종 보고기일까지 정밀조사가 어려우므로 민원이 없도록 중앙합동조사기일까지 조사하고 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람.

·사유시설 피해조사시 누락·과소가 없도록 피해주민 참여, 리·통장 입회조사 실시
·공공시설 중 도로·하천·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시·군·구의 최초 보고 피해조사 시부터 주민대표 등(통·리장, 자율방재단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 기술자, 손해평가인 등) 참여 조치

- 피해보고방법 : 피해보고는 국가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하되, 피해최종 및 확정보고는 풍수해관리 피해상황총괄표 서식을 활용 서면 보고함

④ 복구계획 수립권자

- 이재민구호를 위한 복구계획수립

-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 대상 : 양봉시설, 응급·장기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간접지원

- 재해복구사업 : 시설물 소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다만, 인명 및 선박·어망은 피해자 주소지와 선적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함

- 시설물이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시설물 설치 자가 피해보고 및 복구계획을 수립함.

-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지원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단위(최소행정단위)의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가.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1)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 피해지역의 응급조치 등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은 전문인력과 기타 인력으로 구분하여 지원요청
- 장비는 민수, 관수, 기관보유 등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단계별 동원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 요청
- 대규모 재난발생에 따른 각종 방재물자·장비·인력 등이 부족할 경우 인접 자치단체와 상호 응원체계 구축
- 관내 군부대,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 협력

2) 공공시설물

- 도로·교량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 조치
 -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시로 점검
 - 피해발생시에는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하고 점검 및 복구 실시
 - 복구순서는 긴급도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일반도로 및 장애물 반출 등의 순서로 복구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응급복구계획 수립
 - 재난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 피해 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확보한 자재와 장비를 동원하여 즉시 응급복구 실시

3) 기타시설물

- 사망·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사망·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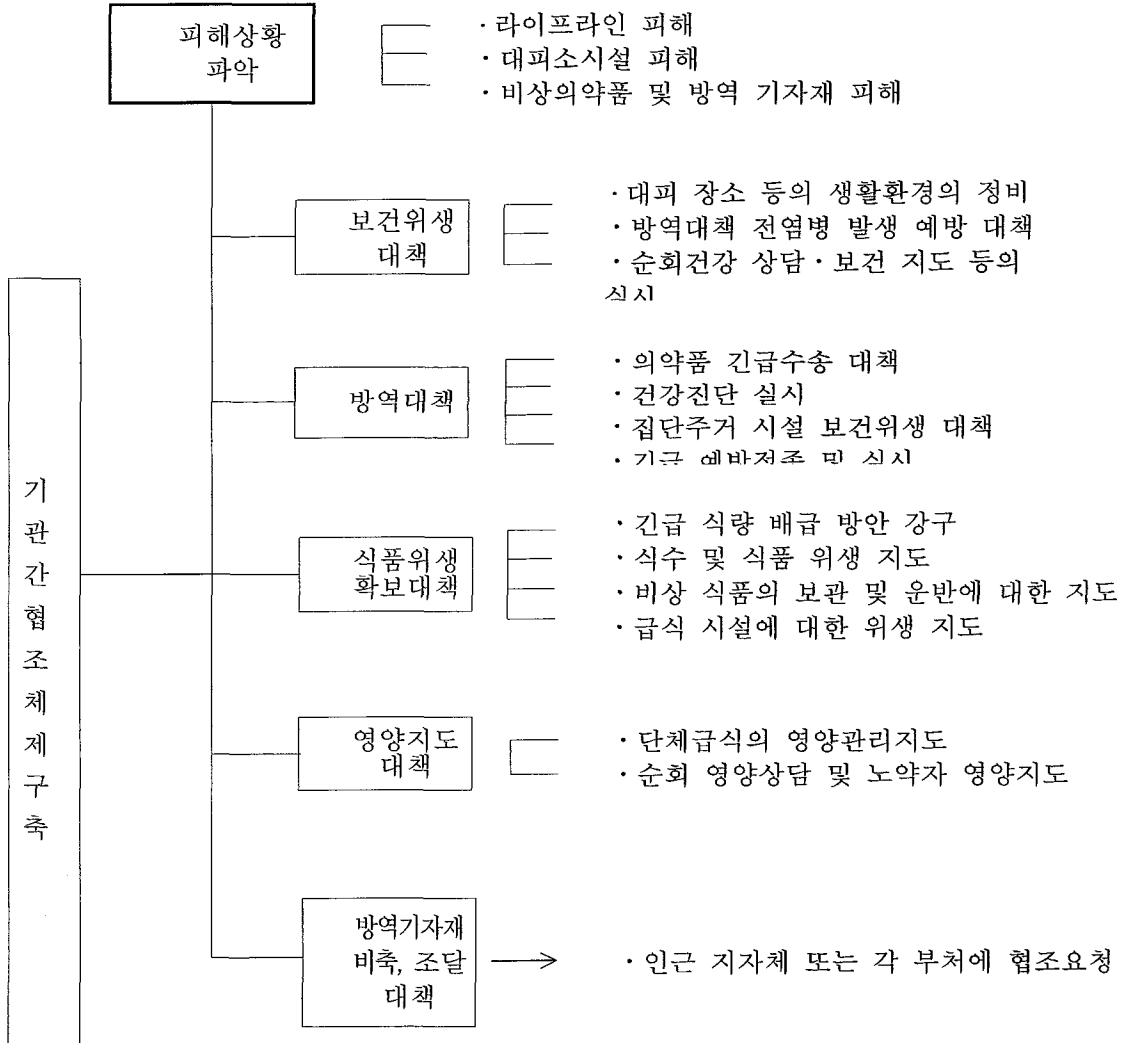
-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등
- 사회공공시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사회공공시설 관리자는 인명의 안전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등
 -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복구반을 편성하는 등 긴급 복구방안 강구

나.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1) 방역 실시계획

- 방역물자 확보·비축
 - 대상물자 :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
 - 비축기준 :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 사업지침에 의거 비축관리
 - 보관장소 : 일반 방역약품과 같이 보건소에 비축 관리
- 방역물자 관리
 - 최소한의 비축 관리량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점검
 - 유효기간이 있는 소독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 기간내에 일반 소독용으로 대체 사용하여 변질방지
- 사전 점검사항
 - 수도, 전기, 가스 등 기초생활시설의 피해상황
 - 이재민 대피소의 보건환경 및 수용 상황
 - 임시 화장실의 위생상태 및 침수 가옥의 상황
 - 방역 의약품 보관 장소의 피해상황
 - 식품 및 식품생산 보관 관련시설의 피해상황
 -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상태

【업무처리 흐름도】



○ 집단 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방역대책반 운영〉

-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 초기 역학조사 및 상황 처리반 운영

- 방역조치

- 1단계 :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관리

- 적절한 치료 제공(필요시 항생제 내성검사의뢰)

- 입원 및 격리 조치

- 확진 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

- 환자관리

- 환자의 장내배설물 및 사용물품의 철저한 관리

- 개인위생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등

- 치료 완치시까지 음식조리 및 육아 금지

- 고 위험군은 필요시 격리조치(집안격리 또는 입원격리)

- 식품위생 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상수관리자 등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환자관리 실시

- 제2단계 :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 및 공동폭로자 관리.

- 주기적 발병여부 감시

- 의심되는 질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발병여부 확인·조사

- 고 위험군에 대한 필요시 격리조치

- 보건교육 : 설사증상 발생시 즉시 보건소 내소 지도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접촉자 관리 실시(전염병역학 조사지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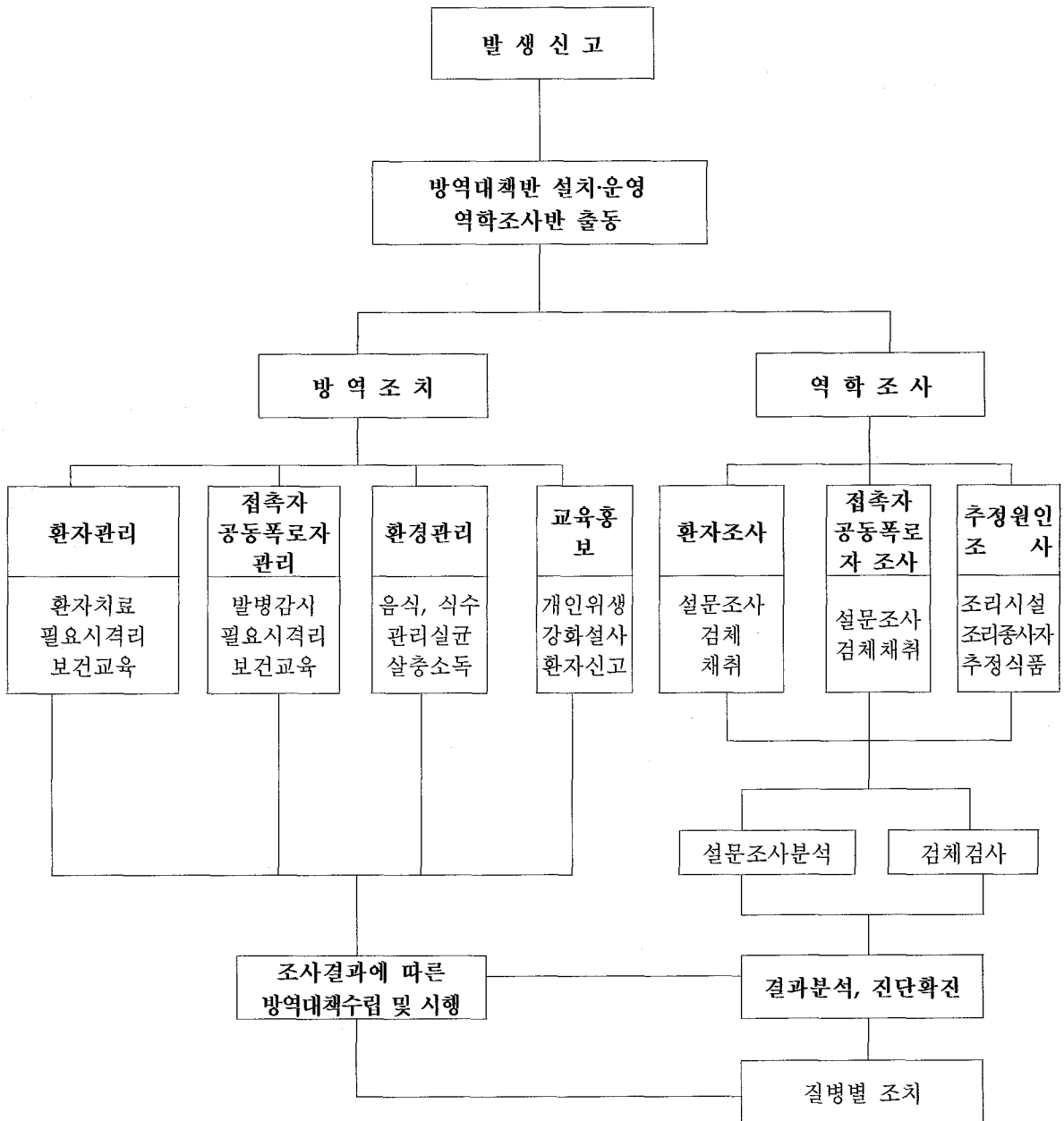
- 제3단계 : 추정 원인 혹은 전파 경로에 대한 관리

- 추정원인 음식물 폐기, 오염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조치 등

-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 소독

- 안전이 확보된 음식물 및 음용수 제공 조치

〈운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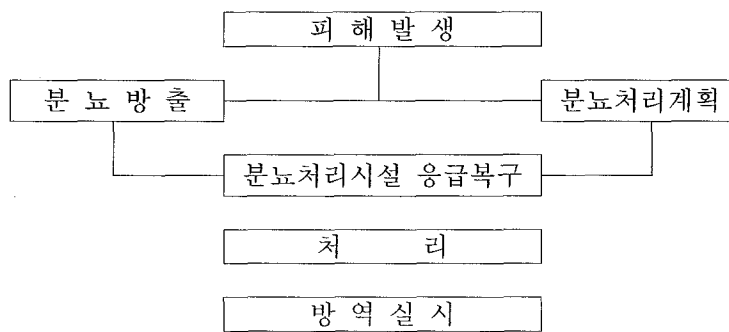


2)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대책

〈분 뇨〉

- 침수피해 발생시 피해지역과 인접한 시의 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협조
- 분뇨는 쓰레기와 처리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분뇨는 처리 후에 물 세척과 동시에 반드시 방역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뇨처리 흐름도】



○ 분뇨처리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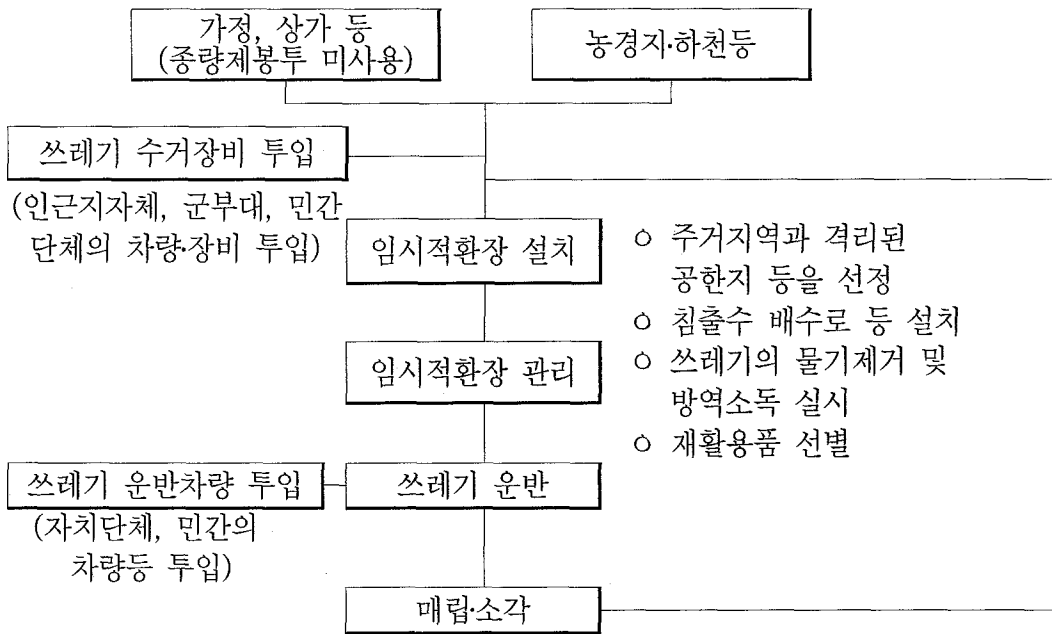
-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뇨처리시설을 점검하여 처리 능력을 확인한 후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주택 및 축사 파괴로 분뇨가 유출되면 확산을 막는 응급조치를 취한다.
-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의 확보에 노력하고, 처리 능력 이상의 배출량이 예상되거나 다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인근 지방행정기관에 요청한다.
- 분뇨의 처리와 수거가 완료되면 즉시 보건당국에 연락하여 방역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쓰 레 기〉

○ 수해쓰레기 발생량 파악

- 쓰레기 발생량은 수해지역의 특징 및 수해정도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가옥, 구조물 등 피해정도에 따라 추정 산정
- 읍·면·동에서 발생량 파악 및 보고

○ 수거·처리계획



○ 긴급 수거지역 선정 및 임시 적환장 설치

- 쓰레기 장기 적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교통소통 및 피해복구 장애지역쓰레기를 최우선 수거지역으로 선정
- 수거 즉시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장비 부족, 쓰레기 물기제거 등 불가피하게 야적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해지역 인근에 임시적환장을 설치
 - 임시적환장은 재침수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없고 주거지역과 격리된 지역을 선정
 - 임시적환장은 매일 2~3회 소독 및 탈취제를 살포하여 위생적 관리
 - 임시적환장 바닥은 침출수 수집이 가능토록 2%이상의 구배와 주변 배수로를 설치하고, 고밀도 PE 필름을 바닥에 포설함

○ 수해지역 쓰레기 배출에 관한 임시 조치사항

- 수해지역의 주민부담 경감 및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피해 지역의 쓰레기 배출에 임시조치사항을 환경부와 협의조치

- 침수지역 등 피해 우심지역에 한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를 결정

○ 긴급 수거를 위한 운송장비·인력 확보 조치

- 자체 수거·운송장비 부족시 인근 자치단체, 한국자원재생공사 및 관련 민간단체에 수거·운송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 침수쓰레기 수거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집계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아 수거조치
- 수거된 쓰레기의 매립지 운송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중장비를 지원 받아 수거·운송 조치

○ 수해쓰레기의 쓰레기매립지 반입·처리

- 수해지역 침수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의 반입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지 운영·관리기관과 임시 반입허용에 관한 협의를 우선 실시
- 수도권매립지 반입대상 이외의 자치단체는 수해쓰레기 반입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매립지 운영·관리기관과 별도 협의 실시
- 타 기관에서 지원된 차량으로 쓰레기매립지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시차량 등록을 실시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조치 후 반입
- 타기관 등의 지원차량의 경우 매립지 운영기관에 등록신청 및 수해쓰레기 수송차량 스티커 부착 등 행정적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여 혼선초래 사전방지
- 매립지 관리운영기관은 임시차량이 수해쓰레기 이외의 다른 사업장 폐기물 등이 반입하지 않도록 관리
- 폐사된 가축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처리
-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물처리

○ 수해쓰레기 매립지 반입비용 지원

- 수해쓰레기는 매립장에서 계근하여 정상매립 후(증빙서류 확보) 재난대책비 지원요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후)

○ 수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강화

- 수해지역쓰레기의 긴급 수거·처리시 사업장폐기물 등을 매립지에 위장반입하거나 수해지역에 불법 배출·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실시

○ 수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강화

- 수해지역 쓰레기의 긴급 수거·처리시 사업장 폐기물 등을 매립지에 위장 반입하거나 수해지역에 불법 배출·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실시

○ 폐사가축 처리방안

- 폐사 가축은 매몰 후 축사에 대한 소독 실시
- 가축 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3) 부상자 진료 및 예방접종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의료구호반은 대피장소 및 재난현장에 구호소 설치
- 중상자 응급처치 및 후방 의료기관으로 운송, 수송 곤란자 및 경상자 의료조치, 조산구호, 사망자 확인 사체 검안

○ 의약품, 의료기자재 비축

- 5일간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비축 보관

○ 수인성전염병 예방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단계별 대응체계

구 분			구 체 적 대 응 체 계
예방 단계	신속한 현황 파악 및 장비인력 동원체계 구축		○ 폐기물 처리대책 상황실 운영체계 구축 - 침수현황 및 쓰레기 발생량 파악 - 임시 적환장 확보 - 수해쓰레기 처리계획 수립 등 - 장비·인력 비상대기 근무 조치 ○ 집게차 및 덤프트럭 등 장비·인력 동원체계 구축 - 장비·인력 동원계획 수립 - 장비 운용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 장비·인력 긴급동원 시 즉시 투입체계 구축 - 재해시 비상대기 근무 조치
	공조체계		○ 유관기관 공조체계 확보 및 임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해쓰레기 반입 협조 - 한국도로공사 : 재해복구장비 고속도로비 감면
수습 단계	초 동 대 책		○ 폐기물 처리대책 상황실 운영 - 쓰레기 발생량 조사 - 임시 적환장 설치 - 쓰레기 처리 임무 부여 - 장비·인력 비상근무 조치 ○ 집게차 등 장비·인력 신속 투입 - 인근 시군 장비·인력 1차 투입 - 1차 투입 외 장비 및 인력 대기 조치 ○ 피해지역에 임시적환장 설치 ○ 수도권 매립지 수해쓰레기 반입 협조의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반입관리팀 이재일 032-562-2544] ○ 재해복구장비 고속도로비 감면의뢰 [한국도로공사 : 영업처 영업계획과장 02-2230-4442]
	복 구 대 책		○ 집게차 및 덤프트럭 등 장비·인력 최대 투입 - 도내 시군보유 장비·인력 최대 투입 [집게차 45대, 덤프차등 50대, 환경미화원 200명] - 장비 운용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 1차 투입 장비·인력 대체투입 체계 구축 - 신규 장비·인력 2차 투입 - 피해정도에 따른 추가 장비·인력 투입 검토 ○ 수도권 매립지 수해쓰레기 반입 처리
	자원 동원 체계	인력 동원 체계	○ 집게차 운용요원 : 90명(1차 45명, 2차 45명) ○ 덤프차 운용요원 : 100명(1차 50명, 2차 50명) ○ 차량운용 지원요원(환경미화원) : 200명
		장비 동원 체계	○ 집게차 45대 ○ 덤프차 50대

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기본방침 및 추진방침

가) 기본방침

-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복구사업 수립 시행
- 민생관련 시설의 조기복구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
- 현지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시행으로 피해재발 방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선지원 후정산』 복구지원체제 정착

나) 추진방침

- 피해시설별 특성을 고려 완공목표 설정 추진
- 복구계획 확정 즉시 용역발주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계 등 조기 착공
- 개량복구 사업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피해재발 방지
- 시설별 세부복구추진지침에 의거 신속·정확한 복구비 집행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지보상 등 각종 지원단 구성 운영
- 통합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구공사 부실방지
- 복구사업 집행의 투명성·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점검 강화

2) 복구의 종류

가) 기능복원 복구

-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에 맞게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복구하는 것을 말함

나) 개선복구

- 기능복원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원인이 해소되지 않거나 제방 등 피해방지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반복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안전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선복구 대상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 필요한 시설 등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
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3) 피해조사

○ 우심 시·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 상 : 경미한 피해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 : 14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 ~ 350억원인 시·군 : 20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 ~ 600억원인 시·군 : 26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 ~ 850억원인 시·군 : 32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 : 38억원 미만
- 조사기관 : 경기도 및 자체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이내
- 조사방법

- | | |
|------------|---|
| · 조사반 편성 : |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 · 기 간 : | 1주일 이내 |
| · 조 사 내 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 · 조 사 방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 · 보고서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등 |

↓ 보 고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 우심 시·군이 발생한 경우

- 대 상 : 우심 시·군이 발생하더라도 1개 도에 국한되거나 중앙합동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 상 : 여러 시·군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중앙합동)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 이내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 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 건의사항
 - 기타 참고자료

↓ 보 고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라.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1) 일반피해지역

- 시·군 단위로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 : 14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 ~ 350억원인 시·군 : 20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 ~ 600억원인 시·군 : 26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 ~ 850억원인 시·군 : 32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 : 38억원 이상
- 공공시설의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임
-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재난 기간중 전국에 걸쳐 1개이상의 시·군·구에 중앙지원을 하게 될 경우는 다음의 피해에 한하여 피해 전시·군·구 전지역에 복구비를 지원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2) 국고의 추가지원기준

- 법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에 의거 국고 추가지원

지원기준	구 분	국고의추가지원액
시·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	[시·군비 총부담액-3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100 ~ 35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5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350 ~ 60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6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600 ~ 85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8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군비 총부담액-9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text{국고추가지원율} = \text{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times 0.9 + \text{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times 0.1$$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정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시·군의 경우 :
$$\frac{\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2. 자치구의 경우 :
$$\frac{\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3.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1.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 재해예방사업이라 함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 2.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군·구의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산점을 추가지원율에 부여할 수 있다.

마. 복구비 지원절차

○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복구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확정시달
 - 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부처 및 도에 통보

○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해의연금은 소관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지방 예산조치
 - 시장·군수는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3항)

○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 기획재정부에서는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 각 부처는 예산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바. 풍수해보험제도의 시행

- 풍수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물에 대한 기존의 무상복구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운영의 안전성 제고 및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
- 풍수해보험법령 제정으로 제도 시행 기틀 마련
 -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 주체, 보험가입, 손해평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법률로 명시
 - 보험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손실보전준비금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 협의, 효율적인 법령제정 추진
- 풍수해보험사업 전면 실시
 - 풍수해보험사업은 '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도가 낮아 가입실적이 다소 저조.
 - 언론매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체계 강화 계획.

제2절 대 설

1. 대비단계

가. 설해예방대책

○ 도로별 제설 및 교통대책 강구

폭설시 교통두절 예상구간 등을 사전 지정관리하고 제설장비와 자재를 비축, 유사시 제반사태 수습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로 국민불편 최소화

— 사전준비기간 : '10.10.16 ~ 11.30 & 설해대책기간 : '10.12.1 ~ '11. 3.15 —

가. 사전대비 태세확립

○ 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철저

- 제설차, 덤프트럭, 모래(염화칼슘)살포기, 제설삽날(덤프트럭용), 염화칼슘 습염 살포기, 굴삭기, 카고트럭 등

○ 제설작업요원의 제설취약구간현장 적정 배치

- 조종원, 도로보수원, 일용제설원, 미화원 등 기타 제설요원

○ 제설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제설자재의 적정량 확보
- 교량 또는 노건이 협소하여 적사함 설치가 곤란한 지점은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으로 현장 비축
- 적사함은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터널입·출구 등 제설취약지점에 설치하고 염화칼슘, 모래, 삽 등 비치

※ 염화칼슘 구입시 품질검사 및 보관관리 철저

○ 도로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 시·도 경계구간 등
-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군도
 - 국도 및 대로와 시·군간 연결도로
 - 지방도 및 시군도로서 읍·면·동간 연결도로
 - 농어촌도로등 기타도로로서 마을간 연결도로

나. 관내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연장[km]	폭설시교통두절 에 상 구 절 간	비 고
계	217	931	5개소	
고속국도	3	29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	3	71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국 지 도	4	128	3개소 (가치레미고개, 밤고개, 만세고개)	시 관 리
지 방 도	7	135	2개소 (옥정고개, 배티고개)	시 관 리
시 도	18	110		시 관 리
농어촌도	182	458		시 관 리

다. 제설장비 및 자재보유 현황

○ 제설장비

구 분	구 격	대수	대기장소	비 고
계		111		
보 유 장 비	순찰차	짚 형 1	시 청	제설작업 지휘 차량
	트랙터부착제설기	62	읍·면	제설작업
	백호우	0.6m³ 1	시 청	염화칼슘 및 모래상차
	덤 프	8톤 1	시 청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15톤 3	시 청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2.5톤 더블캡 1	시 청	자재운반 및 인력운송
	제설기	덤프부착 7	시 청:2 소 방 서:3 55 사단 :2	제설작업
	염화칼슘살포기	15톤용 4	시 청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8톤용 1	시 청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1톤용 15	읍·면·동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더블 캡	1톤 15	읍·면·동	모래 및 염화칼슘 살포

○ 제설자재(확보예정)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염화칼슘	25kg 기준	52,800포 (1,320톤)	·시청 비치(적사장) : 46,480포 ·읍면동 재배정 : 6,320포
모 래		1,750m ³	·시청 비치(적사장) : 1,500m ³ ·읍면별 배치 : 250m ³
적 사 장		296개소	·노선별 주요지점에 설치
모 래 주 머 니	30cm×60cm	40,000개	·20,000개 현장비치 ·20,000개 시청비치(적사장)

라. 인력·장비 및 제설우선 순위

○ 인력 및 장비투입 우선순위

구 분	동원구간	투입인력(명)	투 입 장 비					비 고
			살포기	덤 프 부 착 제설기	굴삭기	덤 프 트 렉 [임차]	기타	
1 순위	교통두절 예상구간	시청 제설반 [20]	6	2	1	6(3)		
2 순위	국도 및 읍면동 주요지점	시청,읍면동제설반, 유관기관(120명)	20	7	1	3(3)		
3 순위	지방도 및 시도(30노선)	전직원 및 유관기관(419명)	20	7	1	6(3)		
4 순위	농어촌도로 및 이면도로 (187노선)	읍면동 제설반 및 지역주민	15				62 트랙터 부착제 설기	

○ 주요 노선별 제설계획

제 설 단 계	제 설 경 로	비고
1단계	● 안성 ⇒ 평택방면 국도38호선 · 내리고가차도 → 대림동산입구 → 풍림아파트 → 공도우회도로 → 평택시계	
	● 안성 ⇒ 죽산방면 국도38호선 · 동신삼거리 → 종합운동장 삼거리 → 부림관광농원 → 동아방송대앞 → 늑박재고개 → 죽산우회도로 → 걸미고개 → 칠장사	
	● 안성터미널 교차로 ⇒ 동광아파트 국지도57호선 ⇒ 남안성IC	
	● 안성 ⇒ 입장방면 국지도23호선 · 안성대교 → 계동삼거리 → 제2공단 → 금화아파트 · 안성대교 → 강변로 → 백성교 → 봉산로타리 → 동신삼거리 → 비봉터널 → 당왕 고가차도 → 대덕터널 → 모산 고가차도 → 내리입구 → 대학인마을 → 강변로 → 안성대교	
	● 안성⇒오산방면 국지도23호선 · 모산사거리 → 쇠골고개 → 양성사거리 → 만세고개 → 양성장서사거리 → 밤고개 → 월향고개 → 가치레미고개	
	● 안성시가지 · 한경대앞 → 서인로타리 → 봉산로타리 → 동신아파트앞 사거리 → 금산로타리 → 영성재사거리 → 쌍용아파트 → 대우아파트 → 농심사거리 → 공단사거리 → 인지사거리 → 봉산로타리 → 비봉터널 진입램프 → 당왕고가 램프 → 모산고가 램프	
2단계	● 옥정고개 방면 지방도 302호선 · 백성교 → 금광저수지 → 옥정리 → 옥정고개	
	● 배티고개 방면 지방도 325호선 · 옥천교 → 마둔저수지 → 상중리 → 배티고개	

○ 읍·면·동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읍 면 동	위 치	비 고
공 도 읍	①시도3호선(AMP옆) ②송정아파트 입구 ③동방제약 앞 삼거리	
보 개 면	①가사교 주변 진출입지역 ②가치레미고개	
금 광 면	①금광저수지 옆 ②시도8호선(면사무소 옆 고개)	
서 운 면	①북산리 앞 고개 ②서운감리교회 주변	
미 양 면	①보체리 입구 ②갈전리 성당 앞 ③안성공고 앞	
대 덕 면	①중앙대 앞 고개 ②쇠꼴고개 ③내리교 앞.	
양 성 면	①만세고개 ②미리내 저수지 앞	
원 곡 면	①성은고개 ②만세고개 ③원곡공단 앞 ④시도2호선 성은고개.	
일 족 면	①화봉고개 ②방초리고개 ③죽화초교 앞 고개 ④울정고개	
죽 산 면	①용설저수지 옆 ②칠장리 진입도로 ③늑박재고개	
삼 족 면	①가치레미고개 ②을곡리 앞 피고개 ③면사무소 앞 주변 ④용머리 앞 고개 ⑤늑박재고개	
고 삼 면	①검산태 앞 고개 ②향림마을 앞 ③밤 고개	
안성 1동	①안성대교 앞 ②옥천교 앞 ③백성교 앞 ④안성교 앞	
안성 2동	①한경대 옆 도로 ②이양주공입구 사거리	
안성 3동	①쌍용 상가 앞 ②만복식당 앞 ③백성초교 옆 ④솔밭 옆 삼거리 ⑤고가차도 진출입 부분	

마. 유관기관 및 단체 공조체계 현황

유관기관명	전 화	관 할 구 간	협 조 내 용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031) 675-3514	전 노선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교통통제 및 안전유도 (순찰차 및 인력)
55사단 5171부대 2대대	031) 674-3113 031) 672-6113	< 국지도70호선 > 안성시 당왕동 ~ 삼죽면 배태리	장비 및 병력지원 (제설기 2대)
172연대 3대대	031-339-4113	< 국지도82호선 > 양성면 난실리 ~ 고삼면 가유리	
공군8991부대	031) 656-7408 656-7308	성은고개(국지도23호)	병력지원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031) 284-2202 284-2205	국도 3개 노선	자체제설작업 제설자재지원
안성소방서	031) 676-0119	전 노선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사고발생시 구조·구급 (제설기 2대)
경기도 건설본부	031) 290-6383 290-6384	국지도, 지방도13개 노선	제설자재 지원
아마추어무선연맹 안성사무소	031) 672-2612	전 노선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위험지역 홍보 및 상황협조
충북도로관리사업소	043-220-5546	도 경계지역 (금광면 옥정, 배티고개)	교통두절 예방을 위한 상황 및 연락체계 유지
충북 진천군청 (토목팀)	043-539-3661		
백곡면사무소	043-539-4381		
이 천 시 (도로보수팀)	031) 644-2445	시 경계지역 (일죽면 고은고개)	“
평 택 시 (도로정비팀)	031) 659-6210	시 경계지역 (공도읍 승두, 진사리)	“
충북 음성군 (교통팀)	043) 871-3532	도 경계지역 (일죽면 태봉고개)	“

2) 산악 · 고립지역 및 등반객 안전대책

가) 산악 · 고립지역 안전대책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시의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수립여부 확인 및 점검
-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수립
-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 주민고립 예방
- 고립예상지역은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헬기착륙장과 우회도로 등을 지정·관리
- 인명구조 요청시 헬기 등이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인근 군부대 및 경찰·소방관서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관리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정비토록 조치

나) 등반객 조난사고 예방대책

○ 폭설시 산악지역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관리 및 통제소 설치운영, 고립예상지구 중점관리 및 대피장소 지정

○ 겨울철 등산객 조난대비 안전대책 강구

- 등산로 입구에 겨울철 조난대비 등산요령 홍보
- 기상특보 발효시 입산금지, 입산자 하산계도 및 안전대피 조치

○ 구조대책합동상황실 운영 및 구조활동 체계 정비

- 군부대,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헬기 동원체계 정비
-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찰산악기동대, 민간산악구조대원 동원체계 및 구조장비 정비

3) 농림시설 피해경감 대책

가) 비닐하우스시설

단기대책

- 폭설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눈 쓸어내리기 등 사전대비 철저
- 폭설시 휴작중인 비닐하우스는 양수기를 작동하여 보온을 실시함으로써 비닐하우스의 눈을 녹여 피해예방
- 특히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로 인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단계부터 적극 가운을 실시하고 폭설로 인하여 시설물 보호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눈을 제거
- 농림부 발행 표준규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복구 대상에서 제외
-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및 행정지도 강화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반드시 「표준설계도」에 의한 규격설치를 준수하도록 지도강화
 - 대국민 교육 실시
 -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재료구입방법, 재난예방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홍보 실시

장기대책

- 비닐하우스시설 설치기준 강화
 - 재래식하우스에서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설치로 개량권장
 - 1,000㎡이상 비닐하우스 시설은 읍·면·동 신고제 실시
 - 이동형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 미신고 또는 무허가시설에 대하여 피해발생시 복구비 지원 제한
 - 간이축사용 등의 비닐하우스 설치 억제
- 첨단기술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나) 인삼재배시설의 대책

- 지역별 기후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표준 인삼재배시설 모델을 개발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에 수록고시
- 인삼재배시 표준 인삼재배시설 모델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난 발행시 표준모델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습해우려가 없는 지역은 가을철에 차광막을 지면으로 내려 피해 예방
- 폭설시 경작자 스스로 눈쓸어 내리기, 차광막제거 등 적극 대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인삼재배경작자들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다) 인삼재배시설 우수사례

- 차광망은 걷어 올리고 차광지를 사용한 경우

사 진	특 징																												
 〈전 경〉  〈내 부〉	<table border="1"> <tr> <td>1. 적설량</td><td>29cm</td></tr> <tr> <td>2. 피해 정도</td><td>정상</td></tr> <tr> <td>3. 해가림 종류</td><td>후주연결식</td></tr> <tr> <td>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 간격</td><td>전: 180, 후: 120cm, 칸당 간격: 180cm×90cm</td></tr> <tr> <td>5. 지주목 자재 및 두께</td><td>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3.6×3.2cm</td></tr> <tr> <td>6. 보조지주목 설치 유무</td><td>무</td></tr> <tr> <td>7. 도리목 자재 및 규격</td><td>무</td></tr> <tr> <td>8. 연목 재질 및 두께</td><td>아피톤, 신자재 사용, 두께 3.6×3.2cm</td></tr> <tr> <td>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td><td>무</td></tr> <tr> <td>10. 버팀목 설치 유무</td><td>무</td></tr> <tr> <td>11. 차광망 및 차광지</td><td>폭: 160cm, 직조방법: 흑2 차광지: 청색 PVP</td></tr> <tr> <td>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td><td>13mm 양쪽 1개씩/두둑</td></tr> <tr> <td>13. 결속방법</td><td>철사, 끈</td></tr> <tr> <td>14. 기타 특징</td><td>차광망은 말아 올리고 차광지 재질은 PVP</td></tr> </table>	1. 적설량	29cm	2. 피해 정도	정상	3. 해가림 종류	후주연결식	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 간격	전: 180, 후: 120cm, 칸당 간격: 180cm×90cm	5. 지주목 자재 및 두께	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3.6×3.2cm	6. 보조지주목 설치 유무	무	7. 도리목 자재 및 규격	무	8. 연목 재질 및 두께	아피톤, 신자재 사용, 두께 3.6×3.2cm	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	무	10. 버팀목 설치 유무	무	11. 차광망 및 차광지	폭: 160cm, 직조방법: 흑2 차광지: 청색 PVP	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	13mm 양쪽 1개씩/두둑	13. 결속방법	철사, 끈	14. 기타 특징	차광망은 말아 올리고 차광지 재질은 PVP
1. 적설량	29cm																												
2. 피해 정도	정상																												
3. 해가림 종류	후주연결식																												
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 간격	전: 180, 후: 120cm, 칸당 간격: 180cm×90cm																												
5. 지주목 자재 및 두께	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3.6×3.2cm																												
6. 보조지주목 설치 유무	무																												
7. 도리목 자재 및 규격	무																												
8. 연목 재질 및 두께	아피톤, 신자재 사용, 두께 3.6×3.2cm																												
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	무																												
10. 버팀목 설치 유무	무																												
11. 차광망 및 차광지	폭: 160cm, 직조방법: 흑2 차광지: 청색 PVP																												
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	13mm 양쪽 1개씩/두둑																												
13. 결속방법	철사, 끈																												
14. 기타 특징	차광망은 말아 올리고 차광지 재질은 PVP																												

○ 차광망을 위·아래로 말아 놓음

사 진	특 징																												
 〈차광망을 말아 내림〉  〈차광망을 말아 올림〉	<table border="1"> <tr><td>1. 적설량</td><td>50cm</td></tr> <tr><td>2. 피해 정도</td><td>없음</td></tr> <tr><td>3. 해가림 종류</td><td>후주연결식, A-1형</td></tr> <tr><td>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 간격</td><td>전: 150, 후: 100cm, 칸당 간격: 180cm×90cm</td></tr> <tr><td>5. 지주목 자재 및 두께</td><td>아피톤, 신자재 사용, 두께 3.6×3.0cm</td></tr> <tr><td>6. 보조지주목 설치유무</td><td>무</td></tr> <tr><td>7. 도리목 자재 및 규격</td><td>아피톤, 두께 3.6×3.0cm 두둑의 양끝부분만 설치</td></tr> <tr><td>8. 연목 재질 및 두께</td><td>아피톤, 신자재 사용, 두께 3.6×3.0cm</td></tr> <tr><td>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td><td>무</td></tr> <tr><td>10. 버팀목 설치 유무 및 간격</td><td>무</td></tr> <tr><td>11 차광망 및 차광지</td><td>폭:150cm, 직조방법: 흑2+청2 차광지: 청색 포장</td></tr> <tr><td>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td><td>무</td></tr> <tr><td>13. 결속방법</td><td>전: 타카못 후: 끈</td></tr> <tr><td>14 기타 특징</td><td>해가림 피복물을 위·아래로 말아 놓음</td></tr> </table>	1. 적설량	50cm	2. 피해 정도	없음	3. 해가림 종류	후주연결식, A-1형	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 간격	전: 150, 후: 100cm, 칸당 간격: 180cm×90cm	5. 지주목 자재 및 두께	아피톤, 신자재 사용, 두께 3.6×3.0cm	6. 보조지주목 설치유무	무	7. 도리목 자재 및 규격	아피톤, 두께 3.6×3.0cm 두둑의 양끝부분만 설치	8. 연목 재질 및 두께	아피톤, 신자재 사용, 두께 3.6×3.0cm	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	무	10. 버팀목 설치 유무 및 간격	무	11 차광망 및 차광지	폭:150cm, 직조방법: 흑2+청2 차광지: 청색 포장	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	무	13. 결속방법	전: 타카못 후: 끈	14 기타 특징	해가림 피복물을 위·아래로 말아 놓음
1. 적설량	50cm																												
2. 피해 정도	없음																												
3. 해가림 종류	후주연결식, A-1형																												
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 간격	전: 150, 후: 100cm, 칸당 간격: 180cm×90cm																												
5. 지주목 자재 및 두께	아피톤, 신자재 사용, 두께 3.6×3.0cm																												
6. 보조지주목 설치유무	무																												
7. 도리목 자재 및 규격	아피톤, 두께 3.6×3.0cm 두둑의 양끝부분만 설치																												
8. 연목 재질 및 두께	아피톤, 신자재 사용, 두께 3.6×3.0cm																												
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	무																												
10. 버팀목 설치 유무 및 간격	무																												
11 차광망 및 차광지	폭:150cm, 직조방법: 흑2+청2 차광지: 청색 포장																												
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	무																												
13. 결속방법	전: 타카못 후: 끈																												
14 기타 특징	해가림 피복물을 위·아래로 말아 놓음																												

○ 전주 결속 부위를 높게 하여 경사각이 커짐

사 진	특 징																												
 〈전경〉  〈내부〉	<table border="1"> <tr><td>1. 적설량</td><td>50cm</td></tr> <tr><td>2. 피해 정도</td><td>부분 파손(거의 온전)</td></tr> <tr><td>3. 해가림 종류</td><td>전후주연결식, B-1형</td></tr> <tr><td>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 간격</td><td>전: 180, 후: 100cm, 칸당 간격: 180cm×90cm</td></tr> <tr><td>5. 지주목 자재 및 두께</td><td>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4.3cm×3.2cm, 3.6×3.2cm</td></tr> <tr><td>6. 보조지주목 설치유무</td><td>무</td></tr> <tr><td>7. 도리목 자재 및 규격</td><td>대나무: 2개(전, 후)</td></tr> <tr><td>8. 연목 재질 및 두께</td><td>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3.6×3.2cm</td></tr> <tr><td>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td><td>주로 아피톤 1개/칸, 대나무</td></tr> <tr><td>10. 버팀목 설치 유무 및 간격</td><td>무</td></tr> <tr><td>11 차광망 및 차광지</td><td>폭:180cm 직조방법: 흑2+청2</td></tr> <tr><td>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td><td>무</td></tr> <tr><td>13. 결속방법</td><td>끈사용</td></tr> <tr><td>14 기타 특징</td><td>전주 높이를 표준(150cm)보다 높게함(180cm)으로써 경사각이 커짐, 5년근(2004)</td></tr> </table>	1. 적설량	50cm	2. 피해 정도	부분 파손(거의 온전)	3. 해가림 종류	전후주연결식, B-1형	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 간격	전: 180, 후: 100cm, 칸당 간격: 180cm×90cm	5. 지주목 자재 및 두께	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4.3cm×3.2cm, 3.6×3.2cm	6. 보조지주목 설치유무	무	7. 도리목 자재 및 규격	대나무: 2개(전, 후)	8. 연목 재질 및 두께	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3.6×3.2cm	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	주로 아피톤 1개/칸, 대나무	10. 버팀목 설치 유무 및 간격	무	11 차광망 및 차광지	폭:180cm 직조방법: 흑2+청2	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	무	13. 결속방법	끈사용	14 기타 특징	전주 높이를 표준(150cm)보다 높게함(180cm)으로써 경사각이 커짐, 5년근(2004)
1. 적설량	50cm																												
2. 피해 정도	부분 파손(거의 온전)																												
3. 해가림 종류	전후주연결식, B-1형																												
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 간격	전: 180, 후: 100cm, 칸당 간격: 180cm×90cm																												
5. 지주목 자재 및 두께	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4.3cm×3.2cm, 3.6×3.2cm																												
6. 보조지주목 설치유무	무																												
7. 도리목 자재 및 규격	대나무: 2개(전, 후)																												
8. 연목 재질 및 두께	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3.6×3.2cm																												
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	주로 아피톤 1개/칸, 대나무																												
10. 버팀목 설치 유무 및 간격	무																												
11 차광망 및 차광지	폭:180cm 직조방법: 흑2+청2																												
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	무																												
13. 결속방법	끈사용																												
14 기타 특징	전주 높이를 표준(150cm)보다 높게함(180cm)으로써 경사각이 커짐, 5년근(2004)																												

○ 지주목 간격을 좁힘

사 진	특 징																												
 <눈 내린 직후>	<table border="1"> <tr> <td>1. 적설량</td><td>42.5cm</td></tr> <tr> <td>2. 피해 정도</td><td>부분 파손(20~30%)</td></tr> <tr> <td>3. 해가림 종류</td><td>후주연결식</td></tr> <tr> <td>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간격</td><td>전: 150, 후: 100cm, 칸당 간격: 150cm×90cm</td></tr> <tr> <td>5. 지주목 자재 및 두께</td><td>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4×3.2cm</td></tr> <tr> <td>6. 보조지주목 설치유무</td><td>무</td></tr> <tr> <td>7. 도리목 자재 및 규격</td><td>대나무: 2개(중)</td></tr> <tr> <td>8. 연목 재질 및 두께</td><td>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3.6×3.2cm</td></tr> <tr> <td>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td><td>무</td></tr> <tr> <td>10. 버팀목 설치 유무 및 간격</td><td>무</td></tr> <tr> <td>11. 차광망 및 차광지</td><td>폭:120cm 직조방법: 흑 2, 차광망/대나무 짚이영</td></tr> <tr> <td>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td><td>20mm 양쪽 1개/1두둑(후주쪽)</td></tr> <tr> <td>13. 결속방법</td><td>일반못, 끈 사용</td></tr> <tr> <td>14 기타 특징</td><td>구지목을 사용하였으나 지주목 간격이 150cm이며 차광막 폭이 120cm로 비교적 건전함</td></tr> </table>	1. 적설량	42.5cm	2. 피해 정도	부분 파손(20~30%)	3. 해가림 종류	후주연결식	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간격	전: 150, 후: 100cm, 칸당 간격: 150cm×90cm	5. 지주목 자재 및 두께	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4×3.2cm	6. 보조지주목 설치유무	무	7. 도리목 자재 및 규격	대나무: 2개(중)	8. 연목 재질 및 두께	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3.6×3.2cm	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	무	10. 버팀목 설치 유무 및 간격	무	11. 차광망 및 차광지	폭:120cm 직조방법: 흑 2, 차광망/대나무 짚이영	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	20mm 양쪽 1개/1두둑(후주쪽)	13. 결속방법	일반못, 끈 사용	14 기타 특징	구지목을 사용하였으나 지주목 간격이 150cm이며 차광막 폭이 120cm로 비교적 건전함
1. 적설량	42.5cm																												
2. 피해 정도	부분 파손(20~30%)																												
3. 해가림 종류	후주연결식																												
4. 전주와 후주 높이 및 칸당간격	전: 150, 후: 100cm, 칸당 간격: 150cm×90cm																												
5. 지주목 자재 및 두께	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4×3.2cm																												
6. 보조지주목 설치유무	무																												
7. 도리목 자재 및 규격	대나무: 2개(중)																												
8. 연목 재질 및 두께	아피톤, 구자재 사용, 두께 3.6×3.2cm																												
9. 보조 연목 설치 유무 및 자재 규격	무																												
10. 버팀목 설치 유무 및 간격	무																												
11. 차광망 및 차광지	폭:120cm 직조방법: 흑 2, 차광망/대나무 짚이영																												
12. 철근설치 유무 및 규격	20mm 양쪽 1개/1두둑(후주쪽)																												
13. 결속방법	일반못, 끈 사용																												
14 기타 특징	구지목을 사용하였으나 지주목 간격이 150cm이며 차광막 폭이 120cm로 비교적 건전함																												
 <눈이 녹은 후>																													

나. 설해 대비대책

1)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 및 비축 현황

가) 제설장비

구 분		규 격	대수	대기장소	비 고
계			111		
보 유 장 비	순찰차	짚 형	1	시 청	제설작업 지휘 차량
	트랙터부착제설기		62	읍·면	제설작업
	백호우	0.6m³	1	시 청	염화칼슘 및 모래상차
	덤프	8톤	1	시 청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15톤	3	시 청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2.5톤 더블캡	1	시 청	자재운반 및 인력운송
	제설기	덤프부착	7	시청:2 소방서:3 55 사단 :2	제설작업
	염화칼슘살포기	15톤용	4	시 청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8톤용	1	시 청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1톤용	15	읍·면·동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더블 캡	1톤	15	읍·면·동	모래 및 염화칼슘 살포

나) 제설자재(확보예정)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염화칼슘	25kg 기준	52,800포 (1,320톤)	·시청 비치(적사장) : 46,480포 ·읍·면·동 재배정 : 6,320포
모 래		1,750m³	·시청 비치(적사장) : 1,500m³ ·읍·면·별 배치 : 250m³
적 사 장		296개소	·노선별 주요지점에 설치
모 래 주 머 니	30cm×60cm	40,000개	·20,000개 현장비치 ·20,000개 시청비치(적사장)

2)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 주 관 : 안성시장

○ 적 립

-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운 용

-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
-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사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3) 민·관·군 공동협력대응체계 구축

가) 민·관 · 군 협약

○ 목 적

- 재난예방 물자·자재 비축 등에 대한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확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대응 능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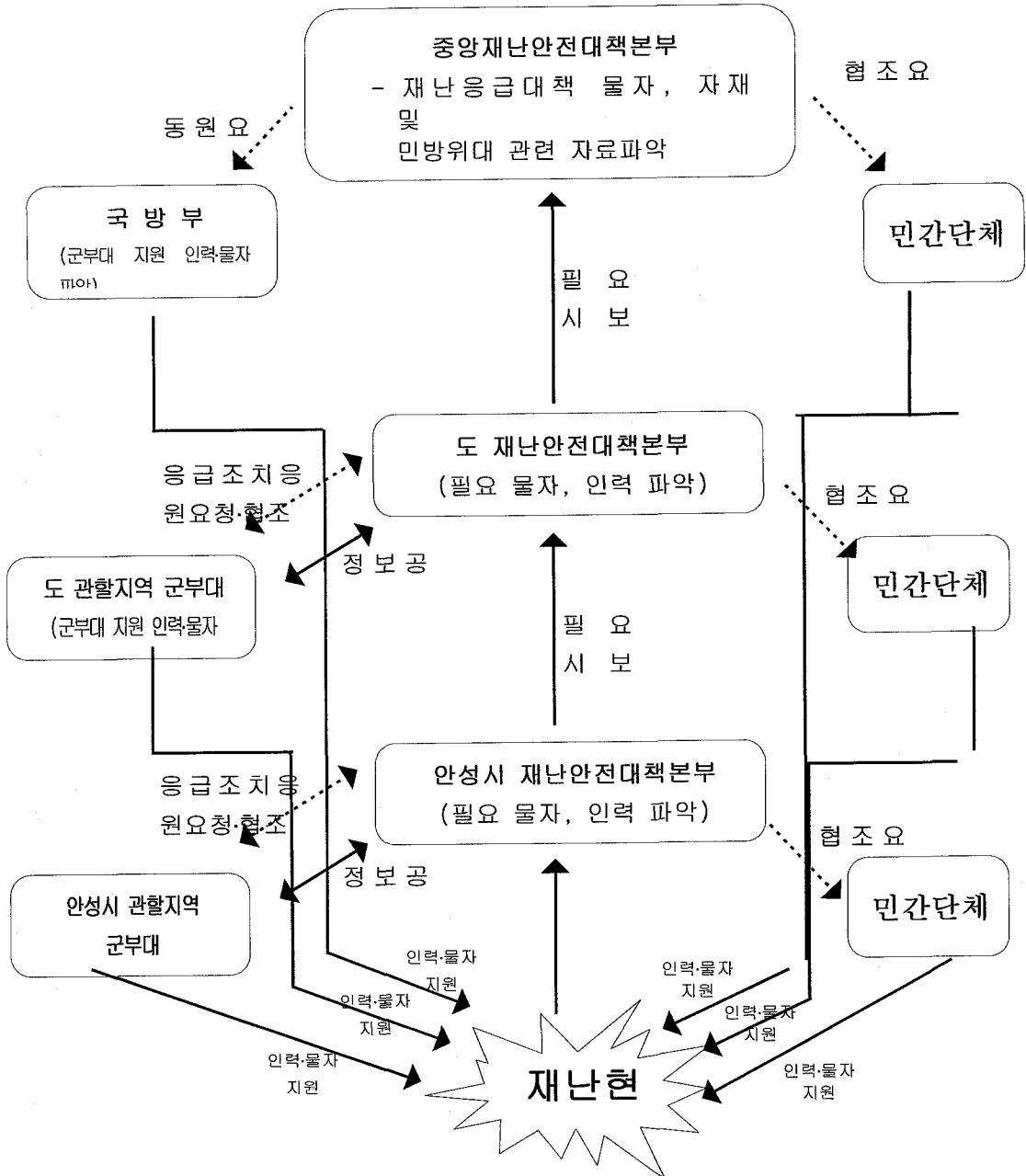
○ 근 거

- 재난발생시 지역본부장이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 확보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
 - 현장 지휘통신체계 확보
- 지역본부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군부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응원요청 가능(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
-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방부에 물적·인적자원 동원요청 가능(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 협조사항

유관기관명	전 화	관 할 구 간	협 조 내 용
안성경찰서	031) 672-5000	전 노선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교통통제 및 안전유도 (순찰차 및 인력)
55사단 5171부대 2대대	031) 674-3113 031) 672-6113	< 국지도70호선 > 안성시 당왕동 ~ 삼죽면 배터리	장비 및 병력지원 (제설기 2대)
5171부대 3대대	031-339-4113	< 국지도82호선 > 양성면 난실리 ~ 고삼면 가유리	
공군8991부대	031) 656-7408 656-7308	성은고개(국지도23호)	병력지원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031) 284-2202 284-2205	국도 3개 노선	자체제설작업 제설자재지원
안성소방서	031) 676-4193	전 노선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사고발생시 구조·구급 (제설기 3대)
경기도 건설본부	031) 210-2938	국지도, 지방도13개 노선	제설자재 지원
아마추어무선연맹 안성사무소	031) 672-2612	전 노선 (국도,국지도,지방도,시도)	위험지역 홍보 및 상황협조
충북도로관리사업소	043-220-5546	도 경계지역 (금광면 옥정, 배티고개)	교통두절 예방을 위한 상황 및 연락체계 유지
충북 진천군청	043-539-3488		
백곡면사무소	043-539-3635		
이 천 시	031) 633-8003	시 경계지역 (일죽면 고은고개)	“
평 택 시	031) 635-3000	시 경계지역 (공도읍 승두, 진사리)	“
충북 음성군	043) 672-2101	도 경계지역 (일죽면 태봉고개)	“

< 민·관·군 협력체계도 >



4)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 주 관 : 시장

○ 지정·관리기준

-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가능한 건물을 지정
- 최근 10년간 이재민 발생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지역실정과 재해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 지정하고,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대피 및 수용계획 수립
- 이재민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관리상태 수시점검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운영관리

지정기준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과거 자연재해발생 빈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등 수용이 용이한 건물로 지정 ○ 수용시설면적은 1인 3.3㎡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수용시설은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하되, 저지대 등 상습 재해발생 지역내의 시설은 지정하지 아니함. ○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양호한 지역 선정 ○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 지정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						
구 분	시 설 수 [개]	학교시설	기타시설	수용가능면적 [㎡]	수용가능인원 [명]	기 타
계	54	42	12	47,562	8,629	
점검 및 관리						
○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우기전 관리상태 점검 - 환기, 조명, 보온 등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확보 -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 상태점검 및 급수차량 확보 ○ 대피시설 또는 읍면동별 응급구호품과 장비(재해구호물품세트, 고무보트 등) 및 단전,단수에 대비한 최소시설 확충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수용 이재민의 급식을 위하여 민간구호기관과 사전협의 ○ 수용시설 안내도 및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 비치						

○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 참고자료 2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현황 참조)

5) 설해방재의 홍보 강화 및 건축물주변 책임 제설 협조

가) 건축물 소유자 · 관리자 등의 제설책임 홍보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내 용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 의무

6) 표준행동매뉴얼 활용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가) 「표준행동매뉴얼」 적극 활용

-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 상황단계별로 유기적·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상황에 적용가능토록 작성된 행동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재난상황대처

나) 국민행동요령 홍보

- 차량운전자
 -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시다.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합시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등에는 서행 운전합시다.
 -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수시 파악 운행합시다.
 -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삼갑시다.
 - 지하철 공사구간의 복공판 통행시에는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서행 운전합시다.
 -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 합시다.
 - 브레이크 사용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합시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 서는 감속운전 합시다.
- 보행자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시다.
 - 외출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 착용합니다.
 - 눈길을 걸을 때에는 미끄러우므로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시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합니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합니다.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맙시다

○ 가정에서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니다.
- 내 집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시다.
- 적설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위에 눈을 치웁시다.
- 노후 가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직장에서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합니다.
-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니다.
-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 치워 건전한 주인정신을 발휘 합니다
-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농촌에서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의 보호조치를 합니다.
- 비닐찢기 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합니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라디오, TV 등을 청취, 폭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응단계

가. 설해발생 직전의 대책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제 확립

- 근무체제 : 연중무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 구축
 - 평상시 : 재난종합상황실
 - 강설시 : 적설량에 따라 1, 2단계(사전대비, 비상)로 구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비상근무 실시

단 계	상황별	근무인원			비 고
		계	대 본 책 부	사무실	
사전 대비	•대설에 관한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으로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사전 대비 체제 가동이 필요한 경우	76	7	69	•대책본부(7명) - 차장(1) - 통제관(1) - 재난관리과(4) - 건설과(1) •사무실(69명) - 재난관리과(1) - 관련실과(68)
비상 단계	•대설에 관한 경보발령으로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실제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비상근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210	26	184	•대책본부(26명) - 본부장(1) - 차장(1) - 통제관(1) - 재난관리과(5) - 재난실과(17) - 관련유관기관(1) •사무실(184명) - 재난관리과(13) - 관련실과(181)

※ 상황실 근무요령

- 근무자는 반드시 상황근무복(상의) 또는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시간 동안 상황실에 정위치 근무(자리 이석시에는 행정지원반장에게 보고)
- 근무자는 관련업무의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협조 유지
- 비상근무조 투입시는 전 근무조 다음 조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 상황근무는 평일·휴일 09:00~익일 09:00 교대하되 교대시간 전 30분 동안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과악 등을 위하여 합동근무 실시
- 상황보고 : 상황총괄반장(담당)→담당관(과장)→통제관(국장)→차장(부시장)→본부장(시장)

⇒ 긴급상황 발생 보고는 즉보 부시장·시장

○ 보고단계

-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재난 발생시 지체없이 서면·모사전

송·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 중간보고 :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재난수습기간 중 수시로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 후 종합보고

2)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3)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4) 민·관협력체계 구축

- 국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주민 스스로 협의체제를 구성, 재난예방·경감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재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가 대상지역의 소요인력·장비 등을 파악하여 통보함으로써 적시·적소에 신속 투입 가능

5) 「민간모니터」 위원 확대·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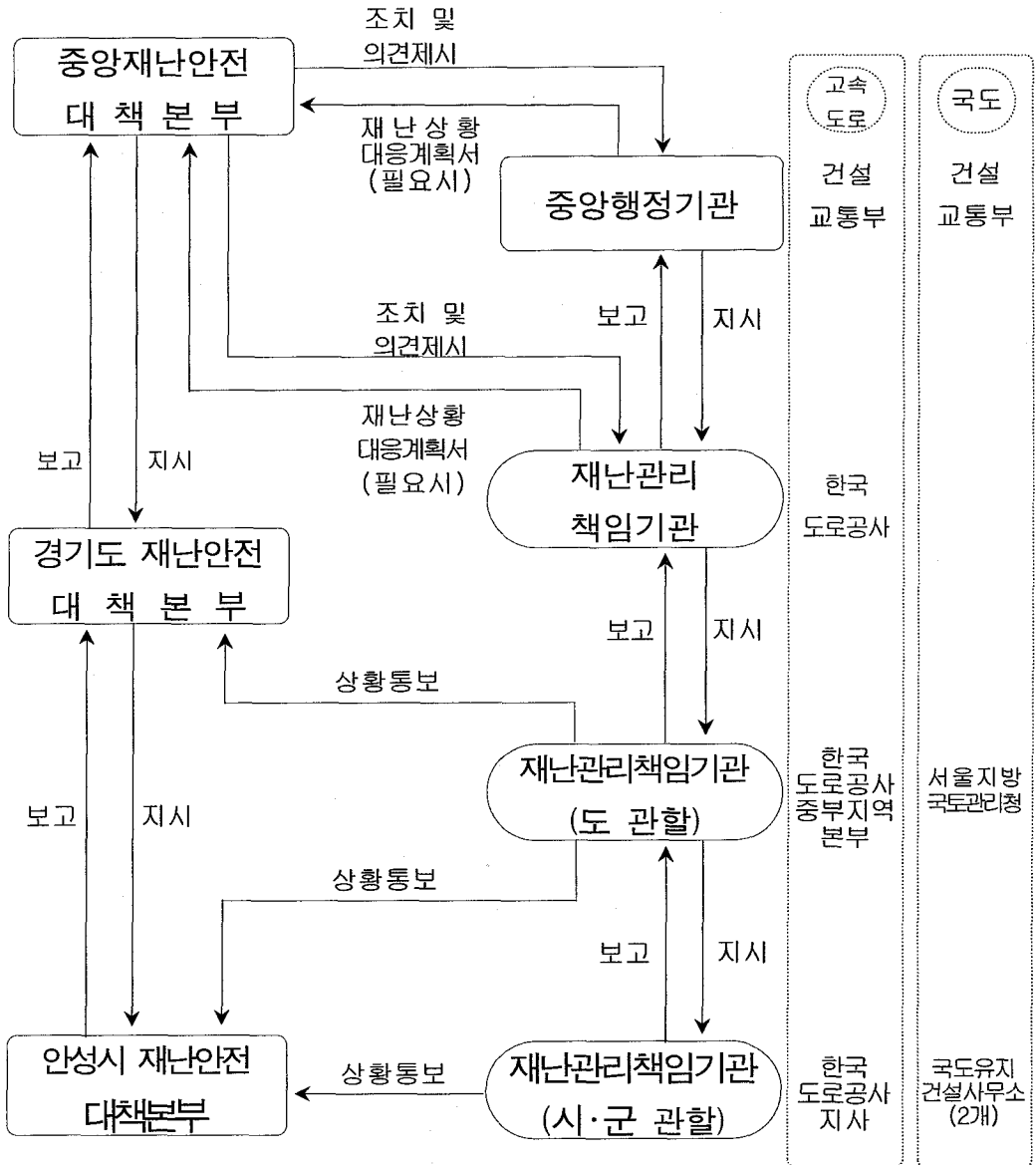
- 재난상황관련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하고,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활성화
- 지역실정에 밝은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민간단체대표, NGO 등 확대 운영

6) 상황판단회의제 도입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결정 등

기상특보 단 계	회의개최 결정 및 회의주재 책임자	참 식 대 상	비 고
예비특보 주 의 보	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지원담당, 건설과도로관리담당, 축산과축정담당, 농정과친환경농산담당, 산림복지과산림보호담당	
경 보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성마춤마케팅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토지민원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복지과장, 환경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하수사업소, 보건소, 안성경찰서장, 안성소방서장, 육군제5171부대2대대장, 농촌공사 안성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장	

상황보고 체계도



7) 도로별 제설현황 파악

○ 도로관리청별 제설작업 파악

- 건설과 주관하에 위험구간 우선 실시
 -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 제설자재, 장비 집중배치 및 제설 실시
- 제설작업은 가능한 정상운행하에 실시하되, 필요시 제설차량 통행에 필요한 교통통제 실시
- 국도와 지방도의 연결구간, 시·군 경계구간 등 제설 취약지구는 합동제설작업 실시

나. 관련 실과 유관기관별 주요 협조 (임무)

1) 공통사항

- 각급 기관장 정위치 근무 등 비상근무태세 유지
- 소속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 긴급대응체계 구축
- TV, 케이블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소관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대책 강구

2) 관련 실·과별 주요임무

관련기관	주요 임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매스컴을 통한 각종 기상정보의 신속전파 ◦폭설대비 대국민 행동요령의 대대적인 홍보 추진
공보감사담당관실	◦설해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
정보통신과	◦도와 시·군간 비상연락통신 수단 확보 및 KT간 업무협조 ◦설해지역 통신지원대책 ◦설해피해시설 응급복구

관련기관	주요임무
지역경제과	◦전기·가스시설 관리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대책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설해피해지역내 인명구조, 의료보호, 급수봉사, 급식봉사, 방역, 노력봉사, 이재민구호 등 지원
세무과	◦설해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조치
회계과	◦자연재난복구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체결
농정과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 피해대책 강구 ◦시설원에 등 특작시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강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민 홍보 및 계몽교육 실시
상수사업소	◦설해피해지역내 먹는 물 공급계획 수립
축산과	◦축산시설 피해대책 강구
산림녹지과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 산림시설 피해대책 강구 ◦피해최소화를 위한 농민 홍보 및 계몽교육 실시
건축과	◦주택 및 소규모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대책 강구
보건소	◦이재민 의료구호대책 수립 ◦설해피해지역 방역 및 보건위생계획 수립 등
교통행정과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통제 및 제설대책 추진 ◦지방국토관리청, 자치단체와 협조, 교통소통대책 강구 ◦철도, 버스, 지하철 등 비상시 대중교통 수단 강구
안성소방서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제설작업 ◦소방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및 구호물자 공급 ◦고립예상지역에 대한 인명구조 및 대피활동 전개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대설주의보 발효시부터 비상경계근무 실시 ◦비상연락망 점검 및 소방순찰 실시 등

관련기관	주요임무
건설과	◦도로제설대책 수립 - 도로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 제설작업 요인의 제설취약구간 현장 배치계획 수립 - 제설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 도로 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대책 강구 ◦도로제설 중점관리대상 지정 관리 - 타 시도 연결도로 - 교통두절 예상구간 -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 중요도에 따른 제설우선순위 설정 운영 - 도로 신설 및 확장 개통구간의 제설대책 강구 - 시 관리 국도구간의 제설장비 급유 및 자재확보 방안 강구 - 폭설시 농·축·수산물 수송지연에 따른 물가폭등 현상방지를 위한 간선 및 지선수송도로 제설방안 구축 - 시 및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제 구축 •시 ⇄ 건설본부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군부대 등

3) 유관기관 파견근무자 주요임무

유관기관	주요임무
안성교육청	◦폭설 피해지역 임시휴교, 단축수업 등 검토 ◦언론매체를 이용, 학생보호를 위한 홍보 강화
육군5171부대 제2대대	◦군[軍] 보유 제설장비 및 동원 병력 지원체계 구축 ◦제설 및 응급복구 작업 동원 가능 군부대 투입 검토 ◦응급복구 예하 군부대 주변도로의 제설작업 실시
안성경찰서	◦폭설상황에 따른 교통통제 등 비상근무 실시 ◦주요 교통취약구간 기동순찰반 배치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 흐름 조정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등 정체구간 조기 소통대책 추진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교통취약지구 집중 관리 ◦방송사와 협조, 고속도로 교통정보 등 수시 제공

다. 재난 예·경보의 발령

- 발령권자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 상 : 자연재난 및 대형·광범위한 재난피해
- 시 기 :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는 때
- 발령방법 : 전기통신시설 또는 방송의 우선 사용 요청
 - 기상상황과 재난예·경보 및 재난상황
 - 피해경감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 국민의 협조사항 및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등

라. 응급조치

- 조치명령 : 시장
- 시 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
- 조치내용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동원명령 및 응원요청

- 동원명령 :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민방위대 동원 및 군부대의 지원 요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직원 출동과 물자 및 인력·장비 동원 요청
- 응원요청 : 시장
 - 다른 시·군 또는 관내 군부대 등 유관기관·단체에 응원요청
 -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가 지휘

바. 위험구역 설정·대피 및 응급부담

○ 조치권자 : 시장

○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 시 기 : 위해방지·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 조치내용 : 퇴거·대피와 출입 및 행위의 금지·제한

○ 강제대피 조치

- 시 기 : 대피명령 불이행으로 위급한 때
- 조치내용 : 위험구역안에 있는 자를 강제대피·강제퇴거

○ 통행제한

- 시 기 : 물자수송·긴급구조상 필요한 때
- 조치내용 : 도로구간 및 기간을 명시 차량의 통행금지·제한

○ 응급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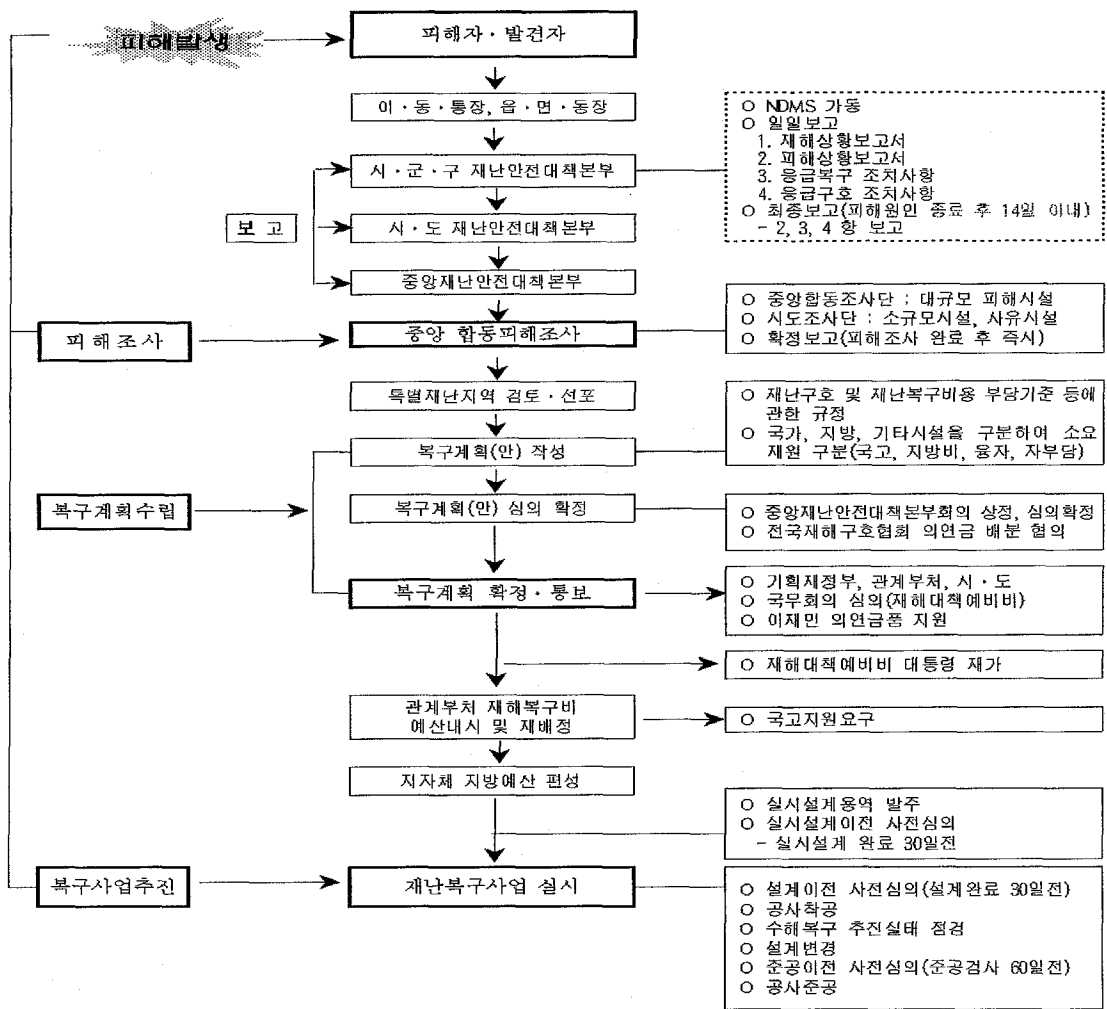
- 종사명령 : 당해 재난현장에 있는자, 인근 거주자
- 일시사용 :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

3. 복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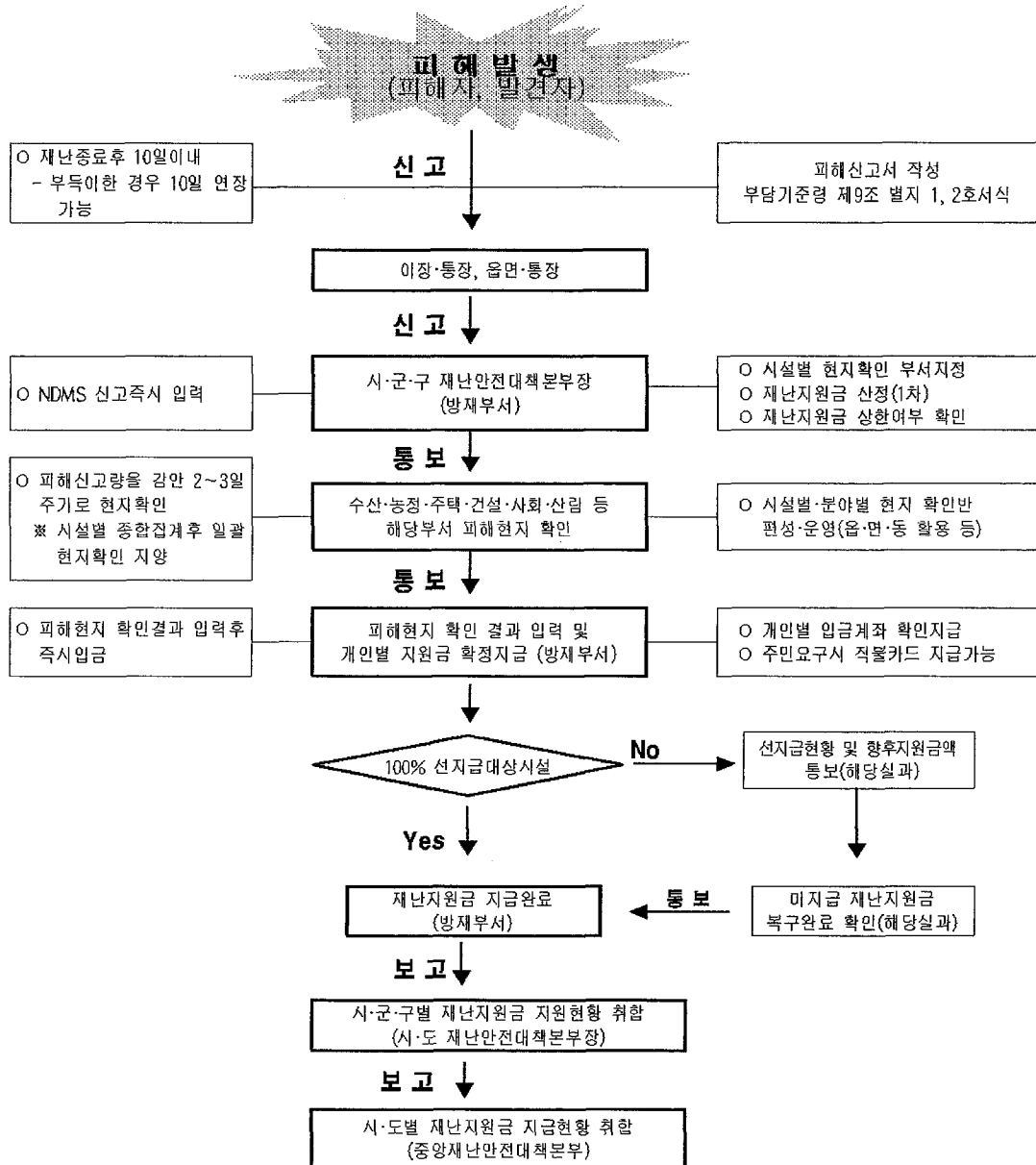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①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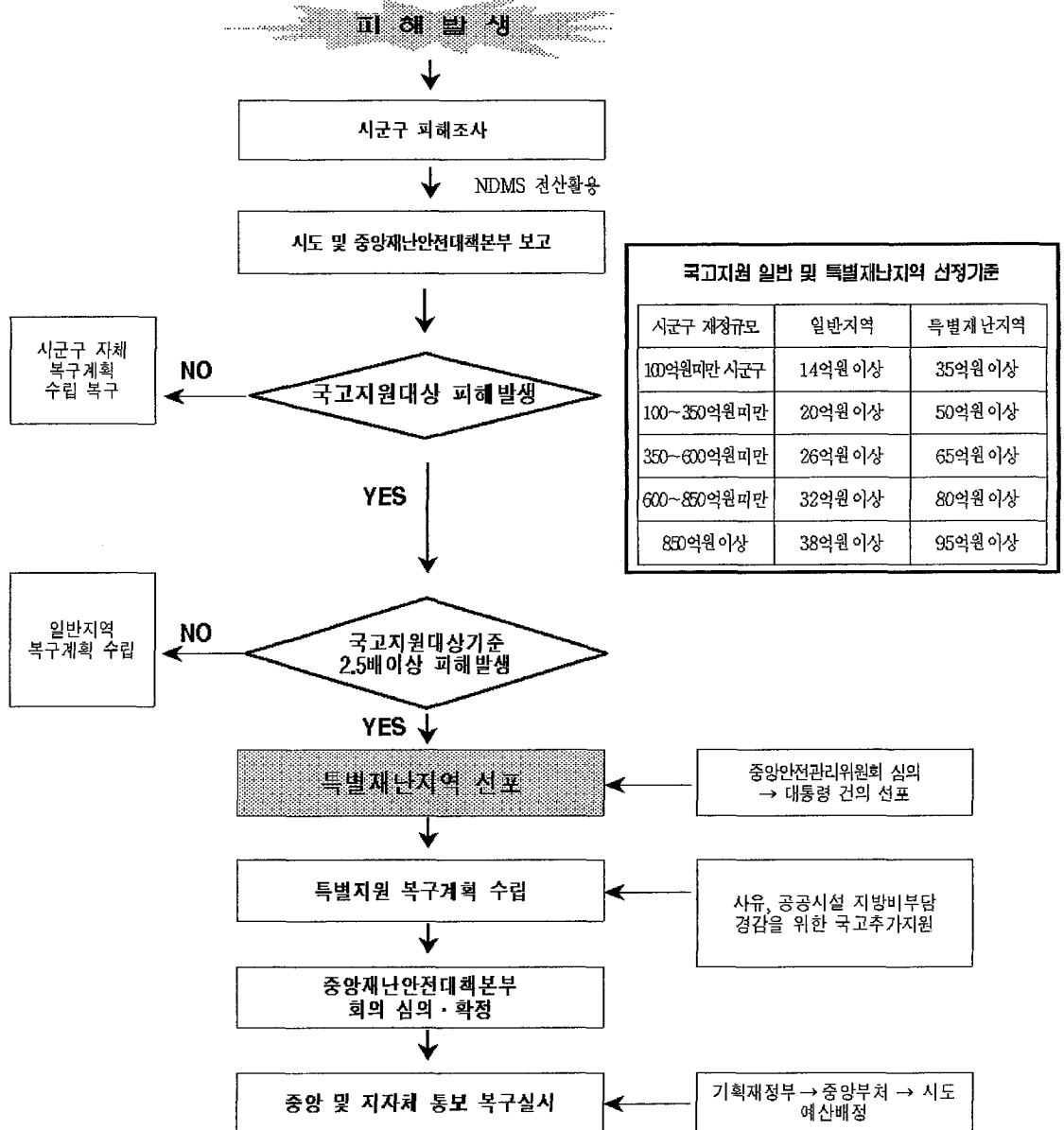
자연재난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② 피해조사 보고권자

-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피해조사 및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되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법 제20조의 피해조사보고 의무를 소홀하여 피해시설 및 이재민이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누락시는 기준령 제8조를 준용 자체복구계획을 수립복구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피해보고는 하되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는 제외
- 사유시설(산사태 피해는 제외) 및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조사 실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소관시설에 대해 피해상황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생 즉시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함(기본법 제20조제3항).
- 인명 발생시는 피해자 주소지 및 선적지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물, 농경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피해가 발생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 ※ 통보 또는 보고가 늦어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락시는 피해발생 지역 관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조치하여야 함.
 - ※ 인명피해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보고 및 지원함.

③ 보고시기 및 방법

- 사유시설 피해최종보고 : 시장은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기준령 제9조에 의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일 이내에 보고하되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함
- 공공시설 피해최종보고 :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함
- 피해확정보고 :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풍수해 상황 총괄표 서식에 의거 최종피해 보고내용과 정밀피해조사 결과를 대비한 증감내역을 작성·보고함

※ 유의사항

·도 또는 시에서는 피해최종보고 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누락·과장 등의 사유로 수정보고를 할 경우 거부하지 말고 접수를 하였다가 추후 피해 확정보고 시 반영토록 하기 바람. [피해최종보고는 100%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시 또는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 효율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추가 신고시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안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특히, 사유시설은 현실적으로 피해최종 보고기일까지 정밀조사가 어려우므로 민원이 없도록 중앙합동조사기일까지 조사하고 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 안정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람.

·사유시설 피해조사시 누락·과소가 없도록 피해주민 참여, 리·통장 임회조사 실시
·공공시설 중 도로·하천·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시·군·구의 최초 보고 피해조사 시부터 주민대표 등(통·리장, 자율방재단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 기술자, 손해평가인 등) 참여 조치

- 피해보고방법 : 피해보고는 국가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NOMS)으로 전산보고 하되, 피해 최종 및 확정보고는 풍수해관리 피해상황총괄표 서식을 활용 서면 보고함

④ 복구계획 수립권자

- 이재민구호를 위한 복구계획수립
 -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 대상 : 양봉시설, 응급·장기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간접지원
- 재해복구사업 : 시설물 소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다만, 인명 및 선박·어망은 피해자 주소지와 선적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함
 - 시설물이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시설물 설치 자가 피해보고 및 복구계획을 수립함.
-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지원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단위(최소 행정단위)의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1) 기본방침 및 추진방침

가) 기본방침

-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복구사업 수립 시행
- 민생관련 시설의 조기복구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
- 현지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시행으로 피해재발 방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 정착

나) 추진방침

- 피해시설별 특성을 고려 완공목표 설정 추진
- 복구계획 확정 즉시 용역발주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계 등 조기착공
- 개량복구 사업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피해재발 방지
- 시설별 세부복구추진지침에 의거 신속·정확한 복구비 집행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지보상 등 각종 지원단 구성 운영
- 통합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구공사 부실방지
- 복구사업 집행의 투명성·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점검 강화

2) 복구의 종류

가) 기능복원 복구

-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에 맞게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복구하는 것을 말함

나) 개선복구

- 기능복원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원인이 해소되지 않거나 제방 등 피해방지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반복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안전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선복구 대상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 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3) 피해조사

○ 우심 시·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 상 : 경미한 피해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 : 14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 ~ 350억원인 시·군 : 20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 ~ 600억원인 시·군 : 26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 ~ 850억원인 시·군 : 32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 : 38억원 미만
- 조사기관 : 도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이내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1주일 이내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등

↓ 보 고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 우심 시·군이 발생한 경우

- 대 상 : 우심 시·군이 발생하더라도 1개 도에 국한되거나 중앙합동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 상 : 여러 시·군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중앙합동)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 이내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 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 건의사항
 - 기타 참고자료

↓ 보 고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 재난원인분석조사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강구를 위해 학계·민간전문가 등을 위주로 편성·운영
- 직무범위
 - 재난원인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홍수범람 흔적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측량,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재난원인 분석관련 기술검토와 자문 등

4)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가) 일반피해지역

- 시·군 단위로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 : 14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 ~ 350억원인 시·군 : 20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 ~ 600억원인 시·군 : 26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 ~ 850억원인 시·군 : 32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 : 38억원 이상
- 공공시설의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 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임
-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재난 기간중 전국에 걸쳐 1개이상의 시·군구에 중앙지원을 하게 될 경우는 다음의 피해에 한하여 피해 전시·군구 전지역에 복구비를 지원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나) 국고의 추가지원기준

- 법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에 의거 국고 추가지원

지원기준	구 분	국고의추가지원액
시·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 산한 금액의 연평균 액이	100억원 미만	[시·군비 총부담액-3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100 ~ 35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5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350 ~ 60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6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600 ~ 85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8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군비 총부담액-9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text{국고추가지원율} = \text{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times 0.9 + \text{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times 0.1$$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정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시·군의 경우 :
$$\frac{\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2. 자치구의 경우 :
$$\frac{\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3.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해 예 방 노 력 지 수	주 가 지 원 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1.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 재해예방사업이라 함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군·구의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산점을 추가지원율에 부여할 수 있다.

5) 복구비 지원절차

○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복구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확정시달
 - 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부처 및 도에 통보

○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해의연금은 소관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지방 예산조치
 - 시장·군수는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3항)

○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 기획재정부에서는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 각 부처는 예산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6) 과학적 피해원인조사 및 복구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

○ 피해조사 체계 개선

- 피해규모를 감안한 조사기간 차등 적용
 - 수해발생 규모에 따라 피해조사기간 탄력적용 규정 마련
- 피해조사 장비 현대화
 - 피해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장비 현대화

○ 복구지원체계 개선

- 복구계획수립 허위·과장보고 방지대책 강구
 - 복구계획 수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강화
 - 중앙·자치단체 복구계획수립 담당자 교육 실시
- 자율적 재해예방 노력 유도를 위한 복구비 지원대상 상향조정
 - 우심 및 비우심 시·군 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사업 상향조정
- 복구비 국고 추가지원방법 개선
 - 지방비 국고 추가지원 산정방법을 인구수, 재정력, 재해예방사업투자 정도 등을 고려한 지수개발 활용
 - 현행 3단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국고 차등지원 방안 마련

○ 재해복구사업 실시절계 및 공사준공 이전 중앙본부장의 사전심의

- 복구비(용지보상비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30억원 미만인 사업은 도본부장이 사전심의(단, 도지사가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외)

○ 복구사업 정산·집행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수해복구예산의 총괄 집행·정산
 - 시설별·부처별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용
- 수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분석·평가 등 사후분석기능 강화
 - 재해복구계획으로 확정된 복구사업비(용지보상 포함)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
 - 분석·평가 결과는 재해경감대책 반영 등 정책 환류기능 강화

7) 풍수해보험제도 시행

- 풍수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물에 대한 기존의 무상복구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운영의 안전성 제고 및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시행
- 풍수해보험법령 제정으로 제도 시행 기틀 마련
 -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 주체, 보험가입, 손해평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법률로 명시
 - 보험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손실보전준비금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 협의, 효율적인 법령제정 추진
- 풍수해보험사업 전면 실시
 - 풍수해보험사업은 '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도가 낮아 가입실적이 다소 저조.
 - 언론매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체계 강화 계획.

8)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대책

- 임시수용 조치
 - 인근 학교, 공공시설 등에 수용, 생필품 및 의료지원
- 생계안정 지원
 - 이재민의 구호,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농림어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

제3절 황 사

1. 대비단계

가. 예방·대비 대책

1)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 자체교육 : 재난종합상황실 및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수시로 실시
- 교육대상 : 공무원, 유관기관 실무자, 시민안전봉사대, 인명구조대, 민방위대 등

2) 황사대비 홍보 및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에 관한 홍보 활용 독려(방송·신문사, 지자체 등), 반상회보 게재,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중금속, 유해대기물질 등 영향 분석 결과 홍보 경각심 고취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

□ 황사발생전 □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과일, 채소류 등 미포장 식품의 야적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 시설원에 등 농가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씌우기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발생중 □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금지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행구어 주고,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유지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축산· 시설원에 등 농가	- 방목장의 가축이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고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야적된 사료용 건조,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황사발생후 □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축산· 시설원에 등 농가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가축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3) 황사특보 발령단계 및 행동요령

구 분	발 령 기 준	행 동 요 령
정 보	먼지농도가 $3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1)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권고 2)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자제 권고 3)일반인(중고생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권고
주의보	먼지농도가 $5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1)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권고 2)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금지 권고 3)일반인(중고생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권고
경 보	먼지농도가 $1,0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1)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2)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보호조치 강구 권고 3)일반인(중고생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4)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권고

2. 대응 · 복구 단계

가. 황사 예보 및 특보 발령시 신속한 전파

- 안성시 : 읍·면·동 앰프, 전광판을 활용한 황사 발생 상황 전파 및 관리, 피해상황의 집계 및 복구 등
- 수원기상대 : 휴대폰 문자메시지, FAX, 이메일 등을 이용한 신속한 전파

나. 황사피해 방지대책 적극 추진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여 홍보추진
- 교육, 산업, 식품, 질병 등 분야별 단계별 조치사항, 행동요령 등은 관련 실·과별 시행

제4절 가 물

1. 대비단계

1) 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지역방송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실시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2)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3) 가뭄대처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 지역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CATV, 경기방송 등을 통한 홍보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범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전개
 - 기존건물의 수세식 변기물통에 벽돌 및 물주머니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 달기운동 등
-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및 빗물모으기 운동 홍보

2. 대응단계

가.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 읍·면·동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단계별 급수대책 수립
-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30% 감량공급)~4단계(급수중단)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실시토록 조정

구 분		기 준	내 용
1단계	1-1단계	10% 감량공급시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 방송 · 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1-2단계	10~30% 감량공급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 물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공공건물, 대형빌딩에서의 절수 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 각 가정에서의 절수 적극 유도 - 식수용 지하수 개발 - 격일제 또는 3일제로 제한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 농업용수원지(저수지 지하수)활용조치
2단계	2단계	30~50% 감량공급시	- 인근 지자체간 긴급급수지원 - 물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실시 - 식수용 관정개발 확대 - 민방위 비상관정 이용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 군부대 인력 · 장비 지원 비상급수
3단계	3-1단계	50~60% 감량공급시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 산업용수 공급 감축 · 중단 -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3-2단계	60% 이상 감량공급시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단계	4단계	급수중단	- 먹는샘물 공급 -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 개인관정 공동이용

나.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유희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등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군, 소방서 등)
- 먹는 샘물업체와 협조, 긴급 식수 공급

다.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 부족 예상지역은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지역은 양수공급 실시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소형관정, 집수정 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상굴착, 포강, 이동식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라. 절수운동전개 등 대국민 홍보

-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홍보영화 제작·상영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저수, 절수, 용수개발』
- 범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 기존건물의 수세식 변기물통에 벽돌 및 PET 병 넣기, 수도 꼭지에 절수디스크 달기운동 등

마. 유관기관별 주요 협조사항

1) 육군5171부대제2대대

- 가뭄극복을 위한 병력 및 장비 총동원 지원
 - 기본임무수행과 작전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를 제외한 전역량 집중 지원
 - “농촌일손 돕기운동”을 “가뭄극복 일손돕기운동”으로 전환, 범국민적인 가뭄극복운동 동참
- 시추기 및 인력을 지원하여 용수원 개발 추진
- 급수·제독차 및 청수선을 지원하여 가뭄지역 운반급수
- 굴삭기·도저 등을 투입 간이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
- 가뭄해갈시 하상굴착, 물웅덩이 등의 원상복구 지원

2) 한국농촌공사 안성지사

- 지자체, 농기공 등 농업관련단체 가뭄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가뭄대비 예비 못자리 추가설치 및 육묘관리 강화
-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전기시설 조속설치 협조요청(한전)
- 영농단계별 가뭄대책 추진
- 물 빠진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
- 하상굴착, 간이용수원 개발 등 긴급 용수개발비 지원
- 가뭄극복 추진상황 홍보 및 언론보도 추진
- 토양 수분조사 실시
 - 월동작물 등 작물생육 조사 실시

3)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

- 가뭄대책기간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 가뭄대책 양수시설에 대한 전기공사 긴급가설 지원
- 수요가 집중되는 양수기 생산관리로 차질 없는 공급
- 산업단지내 절수운동 및 용수수요 분산유도

3. 복구단계

가. 피해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

- 중앙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당 농작물 피해면적이 50ha 이상시 지원
- 자치단체 지원
 -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뭄피해에 대하여 지원

나. 가뭄대책 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

- 유류대 및 전기료
 - 가뭄 예방용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 지원
- 장비구입비
 - 가뭄 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지원
- 시설비 지원
 - 양수용 펌프 및 관정설치비 지원

다. 가뭄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1에 정한 대상자
- 지원항목
 - 이재민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제5절 지진

1. 대비단계

가. 예방대책

1) 재난취약시설 점검

○ 다중이용시설

- 5층 이상 아파트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각종 시설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 공공시설

- 도로, 철도, 댐, 하천 등 대규모 재난 유발요인이 있는 공공시설은 특별법 또는 각종 시설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 산사태, 토석류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도로, 하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 철도역사, 각종 집회시설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 화약류 저장소, 취급업소 등 폭발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지하철 공사현장, 지하 굴착 작업장 등 붕괴우려가 있는 대형공사장

2) 지진관련 실무자 방재전문교육 실시방안 마련

○ 지진방재교육

- 민방위대 실무교육 강사 및 각급 기관의 지진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중앙 집체교육 및 전파교육 실시

○ 지진대비 도상 및 실제훈련

-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연 1회이상 지역특성에 맞게 훈련 실시
- 지역 및 직장단위의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규모 6.0의 지진피해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훈련 실시
- 관련 기관별·기능별로 훈련 실시

- 재난 유형별로 경찰, 소방, 군을 비롯한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자 모두가 참가하는 종합훈련 실시
- 가정, 기업 등에 구급약품 및 피난복을 상시 비치토록 의무화

3) 자율방재의식 고취

가) 교육 강화 방안

- 초·중·고등학생 및 예비군, 민방위 등 교육대상자별 교육교재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제도화 방안 마련

나) 지진대비 홍보 방안

- 대국민 행동요령을 건물종류 및 지역특성, 홍보대상 등에 맞게 특성화 방안 추진
-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장소의 다양한 효율적 국민행동요령 및 홍보방안 검토
 - 만화, 삽화, 동영상 등 친근감 있는 홍보방안 및 행동요령 개발

다)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지원

- 재난책임관리기관별로 지진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지진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활용

나. 대비대책

1) 응급대응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 방재담당 공무원
 - 직원의 비상소집체계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방재관계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 비상무선통신의 이용
- 위성통신 네트워크, 행정무선, 행정전화 외에 핫라인 설치

2) 재난 예·경보 및 정보의 수집·전달

-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재난발생, 응급조치, 복구상황을

- 수집된 각종 피해정보를 인터넷,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신속 전파

3) 재난대비 E-30분 대피계획 수립 추진

- E-30분 주민대피계획의 효율적인 주민대피 방안 강구
- 대피체계 및 대피장소의 정비
 - 대피장소 및 대피로를 사전 지정, 평소부터 주민에게 홍보
 - 재난발생시 대피유도에 관한 계획의 사전 작성·훈련
 -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의 대피유도체계 정비
 - 공원,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구, 지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와 규모의 대피장소 지정
 - 저수조, 우물, 간이화장실, 통신기기 등 대피장소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정비 및 대피생활에 필요한 물자 비축

2. 대응단계

가. 지진발생 직후의 대책

1) 지진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가) 지진발생 초기단계의 대응

-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교통통제 및 현장 경비요원 지원
- 화재진압 지원
- 피해상황 신고 접수
- 보도지원
- 자원봉사자 접수관리
- 유관기관간 협조 또는 지원요청(시·군 구조·구난본부, 경찰서, 군부대 등)
- 피해지역주민 대피권고·지시 및 유도

나) 지진발생 수습단계의 대응

- 피해사항 자체조사
- 방역실시
- 인력 및 장비 지원

- 음료수·식료·생활필수품 등의 보급
- 긴급도로 확보 등
- 쓰레기 처리 및 장비 지원
- 응급복구용 자재 및 물자지원
- 교육 및 금융지원계획 수립추진
-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 국민생활 필수시설(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 토목공공시설 복구(도로·교량, 사방·산사태 방지시설, 사회공공시설 등)

2)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 협조 강화

3) 피해수습체계 구축

- 피해상황 보고
 - 주요피해상황 : 읍·면·동 → 시 대책본부 → 도 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피해상황집계 : 읍·면·동 → 시 대책본부
- | | |
|---|-------------|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 |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
- 대규모피해(즉보) : 주민 → 읍·면·동 → 시 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

-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자체물자 및 장비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인근 시·군간 상호협력 지원체제 구축
-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군·경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민간단체 등과도 비상연락망 정비 등 상호 지원·협력체제 구축

- 재난규모별·분야별로 지원협력 매뉴얼을 작성 활용
- 광역협력체제 구축
 - 비축물자나 장비 등의 규격을 통일하여 유사시 신속한 지원체제 유지

5) 군·경의 치안유지 지원 요청

- 대규모 피해지역의 치안유지 및 시민안정화를 위하여 군·경의 지원 요청

나. 초동대응 이후의 대응대책

1) 2차 재난방지 대책 수립

- 폭발,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 이상고조, 파랑, 조위의 변화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해안 보전시설을 점검하고, 재난 우려시 신속한 대피조치

2)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가능 여부 판정 방안

- 여진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방안 수립
 - 다양한 시설별 학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단 구성

3)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 건축·토목기술자 등 전문 인력은 노동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요청
- 기타 인력지원 국방부에 요청
- 공공시설
 - 도로·교량
 - 각 도로관리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 등을 선정하여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각 시설의 복구담당기관은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 사전 확보, 피해 상황 발생시에는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 점검 및 복구
 - 도로·교량시설의 복구순서는 긴급도로를 최우선 개설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시설 순찰 강화
 -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기 확보 또는 지정된 자재와 장비를 동원, 즉시 응급조치

- 사방·산사태방지,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공공의 안전확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은 우선 복구 실시
- 사회공공시설
 - 시설별로 환자, 장애인, 학생 등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대피유도반 편성 운영
 - 단전, 단수, 통신두절 등에 대비한 자체 조치계획 수립
 -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업체 사전 지정

4) 긴급 수송계획

- 긴급 수송로의 지정·운영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를 긴급 수송도로로 지정
- 긴급 운송로의 확보(도로)
 - 교통네트워크 수단 확보
- 긴급도로 확보
 - 피해지역내 도로상에 낙하된 장애물 제거 등 긴급도로 확보 계획 수립
- 수송차량 등의 확보
 - 공공기관으로 소속차량은 1차 동원 차량으로 지정
 - 부족할 경우에 대비 민간소유 차량으로 추가 지정 확보

5) 청소, 방역, 사체 처리

- 쓰레기 처리
 - 지진발생시 건물의 붕괴, 화재 등으로 발생한 다량의 폐기물 신속히 처리
- 분뇨 처리
 - 이재민 수용소 등 집단수용 시설에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처리
- 장애물의 제거
 - 장애물 정리는 시장 주관으로 우선 처리
 - 유해물질 회수계획 수립
- 방역대책
 - 지진발생지역 및 집단수용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방역반 편성 운영

○ 실종자 수색 처리

- 실종자 수색은 긴급구조통제단 주관으로 실시하되, 실종자를 사망 처리할 경우에는 행방불명 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 사체 운구시 운구한 사체는 피해지역 인근의 병원에 안치하고, 관계기관의 검안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화장

6) 구조 · 구급 및 의료대책

가) 구조 · 구급체제의 정비

- 구조체제 정비
- 구조·구급대 정비 및 보강
- 응급조치가 완료된 부상자의 병원후송을 위하여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나) 자원봉사자 대책

-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훈련·파견을 위한 센터의 설립 추진
 -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양성
-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방재훈련 실시
 -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위치 배정
 - 행정과의 역할 분담
- 재해자원봉사자의 모집·훈련, 파견 등의 제도화(종류 : 의료, 건축, 소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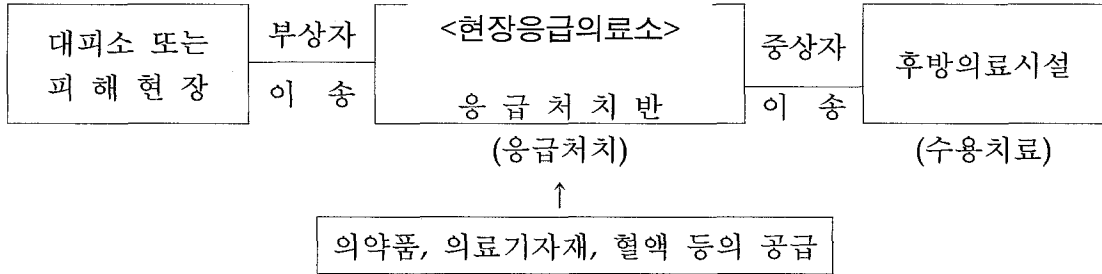
다) 피해자 신상관리

- 지진에 의한 정신적인 충격이나 피난소 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피로에 대한 치유계획 수립

라) 의료 · 구호계획

- 초동의료체제 구축

■ 재해시 의료구호 체계 흐름도 ■



- 현장의료구호소의 설치
- 의약품·의료기자재의 비축
- 후방의료기관의 지정 관리
- 중상자 후송 대책 수립
- 의료시설에 대한 필수시설(Life-Line) 대책 수립

7)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가) 비상급수 계획

- 음료수의 공급계획
 - 대피소로부터 2km이내의 지역에 응급 급수조 또는 정수조를 설치하여 응급 급수활동 실시
 - 일시적 단수에 대비 통상 식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에 대한 수질관리
- 비상급수대책
 -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지하양수시설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 비상급수시설 확보

구 분	일 반 건 축 물	공 동 주 택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	20세대이상
설치기준	- 지정시설 : 1일 100톤/개소 - 비지정시설 : 10㎡마다 1일 양수량 0.4톤 이상 20톤 미만	- 지정시설 : 1일 100톤/개소 - 비지정시설 : 1일 양수량 세대당 0.2톤 이상

- 수도법 제26조(긴급 급수지원)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에 도지사나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비상급수토록 지시

○ 급수목표량 기준

- 지진발생에서 3일까지 : 1인1일 4ℓ(음료수)
- 10일까지 : 1인1일 20ℓ(생활용수 포함)
- 20일까지 : 1인1일 100ℓ(문화적 최소수준 용수공급)
- 28일까지 : 1인1일 250ℓ(정상적 급수)

○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 개인우물,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등을 활용
- 수영장을 저수탱크로 전환 사용
- 간이상수도의 정비 및 개량
- 현행 평균 3시간분의 배수지 용량을 8 ~ 12시간분으로 확충

나) 생필품 공급계획

- 식료비축계획의 수립
- 시장은 수송로가 확보되어 식음료 및 생필품의 수송이 가능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3일 이상 공급할 식음료 및 생필품 비축
- 식음료 등 긴급물자 수송시스템의 확립
- 시장이 식음료 등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물자 방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양곡보관소 등 파악 관리
- 대규모 지진발생으로 식료품 공급기능의 정지 또는 정체로 인한 확보곤란, 물가의 폭등 등으로 피해주민에 공급할 식품확보가 곤란할 것에 대비하여 유통 통제
- 이재민 수용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필요물자의 추가 확보

8)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확보 대책

가) 상수도시설

- 수도사업자별로 긴급 복구반 편성, 운영
- 수도시설의 설계도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긴급복구에 대비
- 지진대비 수도물 공급시스템 개선
- 상수원 수계별 전환 급수체계 강구 및 단기대체 수원의 확보

나) 하수도시설

- 자치단체별 복구반 편성 운영
- 양수기, 공기압축기, 수중펌프, 콘크리트 브레이커 등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 비치
- 하수도시설의 복구순서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관거 등 중요도에 따라 실시

다) 전기시설

- 지진발생시 전력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 발전·송변전 설비

라) 가스시설

- 가스시설 관리책임자는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 복구반 편성 운영
- 피해시설물의 복구는 제조소, 정압소, 고·중·저압관 순으로 복구 실시

마) 통신시설

- 통신의 두절로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 복구반 편성 운영
- 피해발생 지역에는 임시전화 접수처와 공중전화 등을 설치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순회점검 실시

9) 군부대 복구 지원요청

-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군부대 장비의 지원 요청
- 군부대는 수색구조, 응급복구지원, 응급의료·구호·방역, 인원 및 물자의 긴급수송, 위험물의 제거 등 지원

다. 위험구역 설정 및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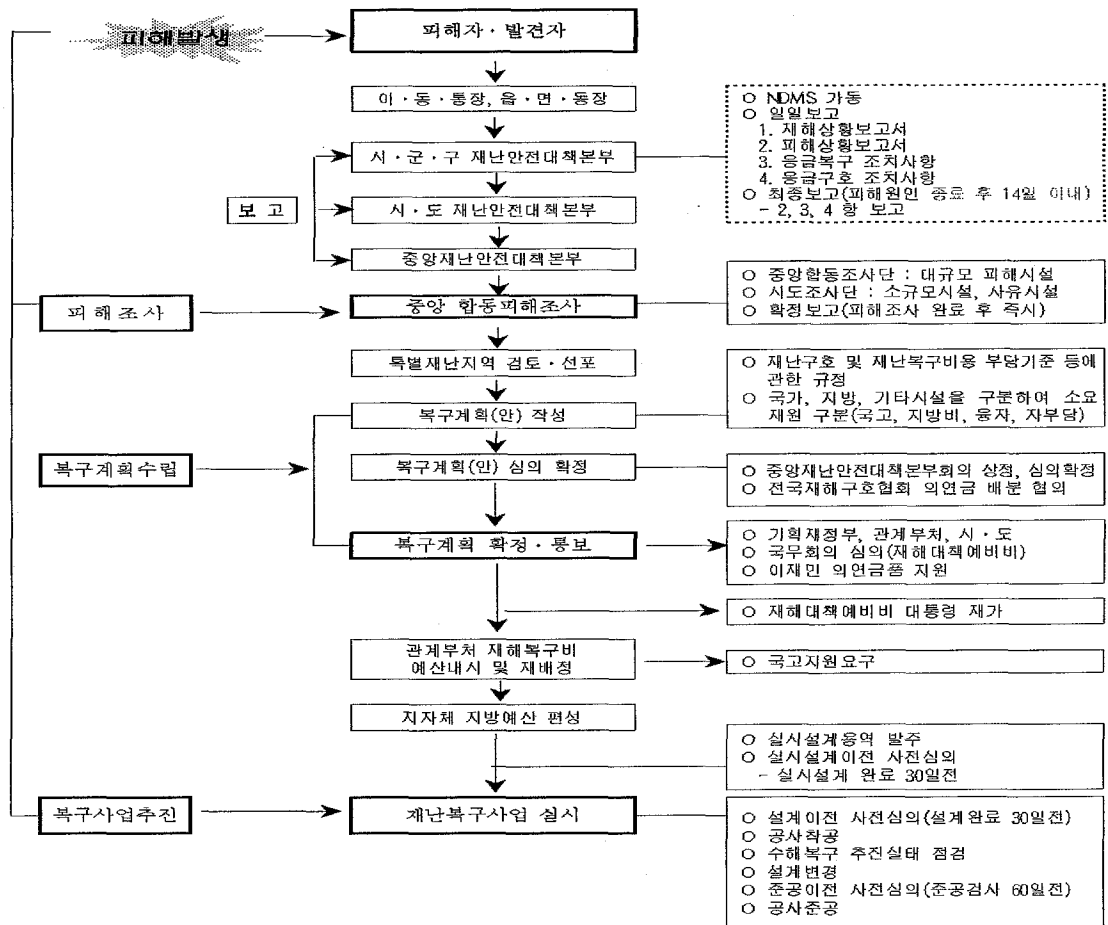
- 조치권자 :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긴급구조에 한함) 및 시장
-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 시 기 : 위해방재·질서유지상 필요할 때
 - 조치내용 : 퇴거·대피와 출입 및 행위의 금지·제한
- 강제대피 조치
 - 시 기 : 대피명령 불이행으로 위급한 때
 - 조치내용 : 위험구역안에 있는 자를 강제대피·강제퇴거
- 통행제한
 - 시 기 : 물자수송·긴급구조상 필요할 때
 - 조치내용 : 도로구간 및 기간을 명시 차량의 통행금지·제한

3. 복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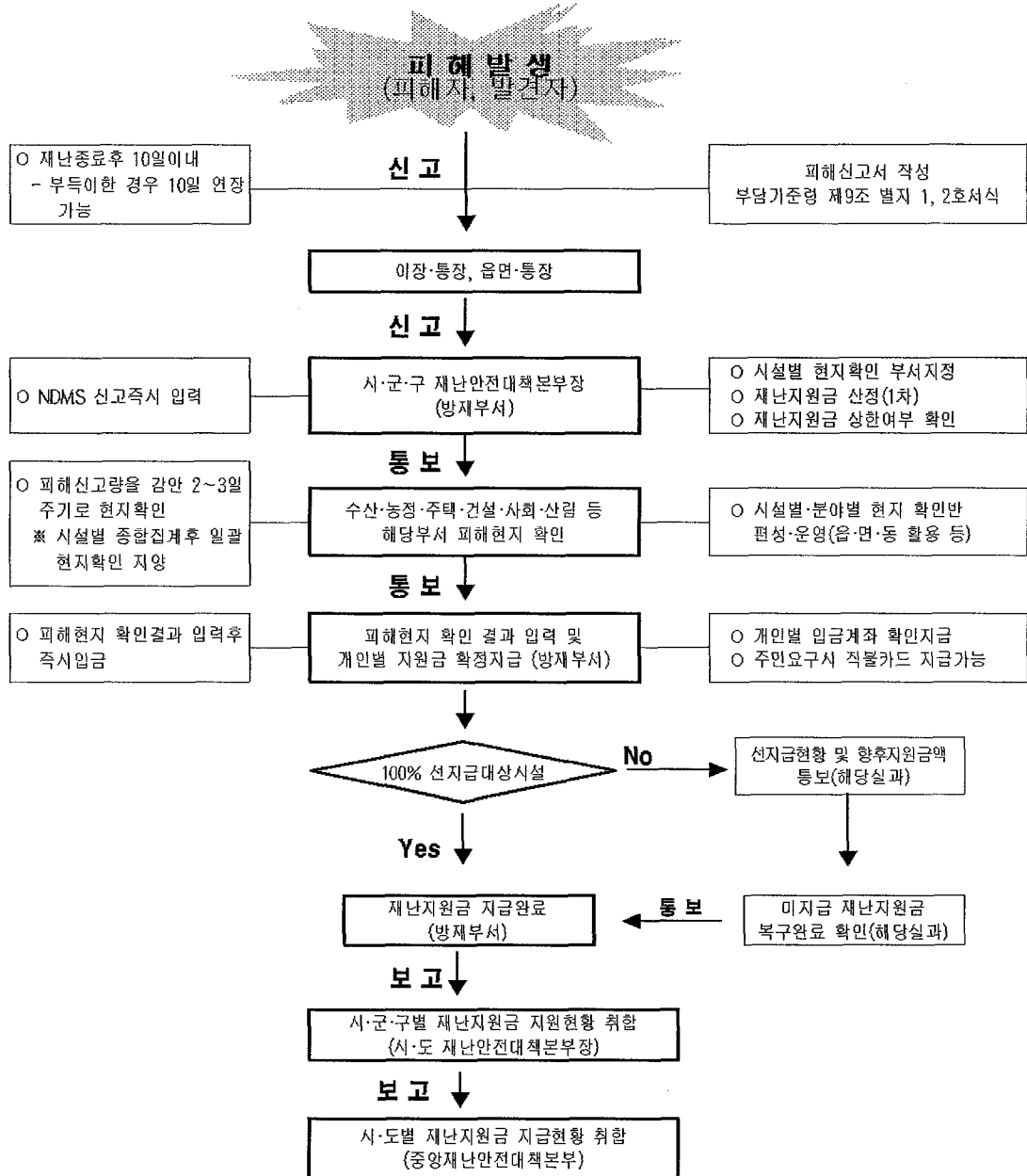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①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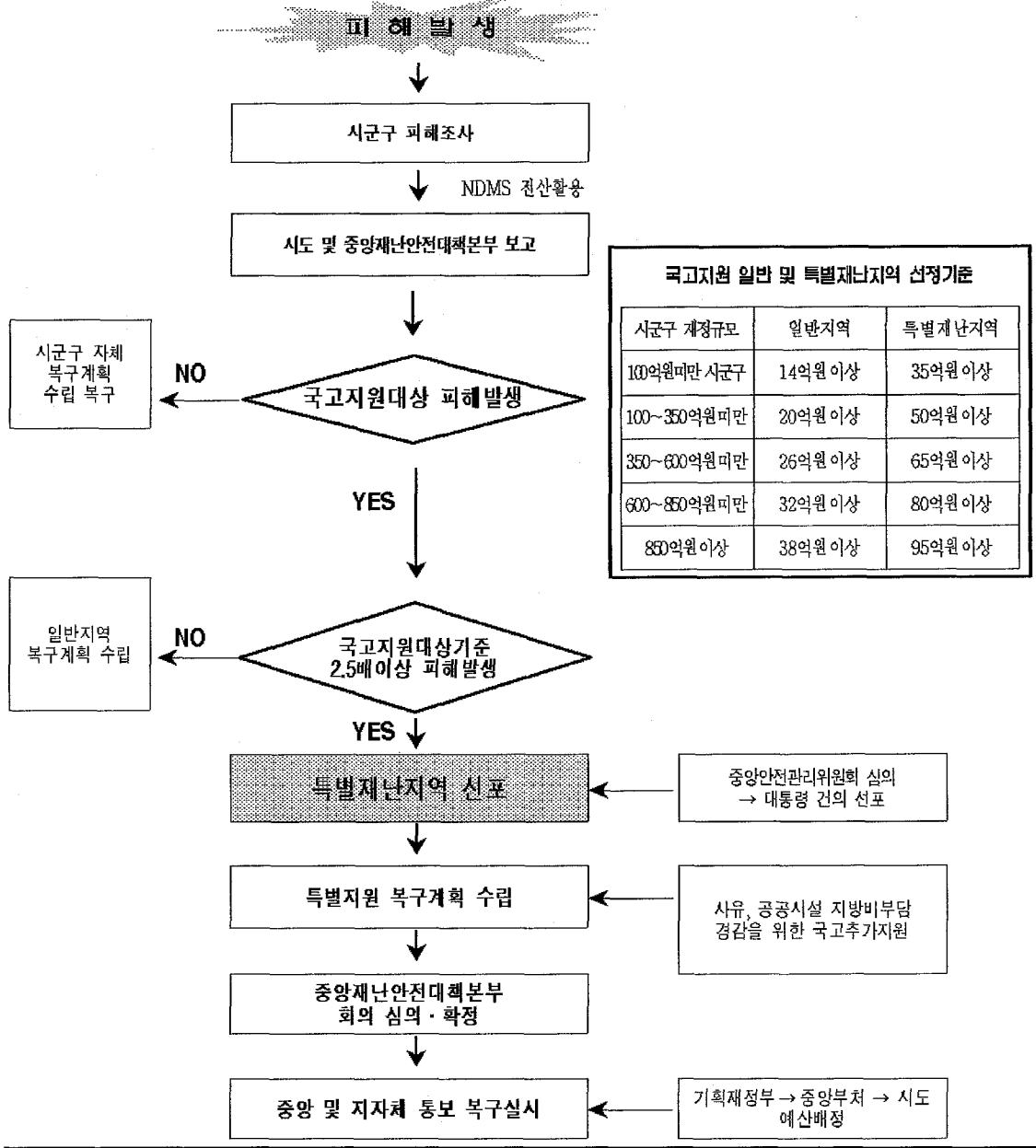
자연재난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② 피해조사 보고권자

-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피해조사 및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되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법 제20조의 피해조사보고 의무를 소홀하여 피해시설 및 이재민이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누락시는 기준령 제8조를 준용 자체복구계획을 수립복구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피해보고는 하되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는 제외
- 사유시설(산사태 피해는 제외) 및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조사실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소관시설에 대해 피해상황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생 즉시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함(기본법 제20조제3항).
- 인명 발생시는 피해자 주소지 및 선적지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물, 농경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피해가 발생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 ※ 통보 또는 보고가 늦어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락시는 피해발생 지역 관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조치하여야 함.
 - ※ 인명피해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보고 및 지원함.

③ 보고시기 및 방법

- 사유시설 피해최종보고 : 시장은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기준령 제9조에 의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일 이내에 보고하되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함
- 공공시설 피해최종보고 :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함
- 피해확정보고 :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풍수해 상황총괄표 서식에 의거 최종피해 보고내용과 정밀피해조사 결과를 대비한 증감내역을 작성·보고함

※ 유의사항

·도 또는 시에서는 피해최종보고 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누락·과장 등의 사유로 수정보고를 할 경우 거부하지 말고 접수를 하였다가 추후 피해 확정보고시 반영토록 하기 바람. [피해최종보고는 100%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시 또는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 효율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추가 신고시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안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특히, 사유시설은 현실적으로 피해최종 보고기일까지 정밀조사가 어려우므로 민원이 없도록 중앙합동조사기일까지 조사하고 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람.

·사유시설 피해조사시 누락·과소가 없도록 피해주민 참여, 리·통장 임회조사 실시
·공공시설 중 도로·하천·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시·군·구의 최초 보고 피해조사 시부터 주민대표 등(통·리장, 자율방재단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 기술자, 손해평가인 등) 참여 조치

- **피해보고방법** : 피해보고는 국가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하되, 피해최종 및 확정보고는 풍수해관리 피해상황총괄표 서식을 활용 서면 보고함

④ 복구계획 수립권자

- **이재민구호를 위한 복구계획수립**

-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 대상 : 양병시설, 응급·장기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간접지원

- **재해복구사업** : 시설물 소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다만, 인명 및 선박·

어망은 피해자 주소지와 선적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함

- 시설물이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시설물 설치 자가 피해보고 및 복구계획을 수립함.

-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지원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단위(최소행정단위)의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가. 기본방침 및 추진방침

1) 기본방침

-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복구사업 수립 시행
- 민생관련 시설의 조기복구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
- 현지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시행으로 피해재발 방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제 정착

2) 추진방침

- 피해시설별 특성을 고려 완공목표 설정 추진
- 복구계획 확정 즉시 용역발주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계 등 조기 착공
- 개량복구 사업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피해재발 방지
- 시설별 세부복구추진지침에 의거 신속·정확한 복구비 집행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지보상 등 각종 지원단 구성 운영
- 통합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구공사 부실방지
- 복구사업 집행의 투명성·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점검 강화

나. 복구의 종류

1) 기능복원 복구

-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에 맞게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복구하는 것을 말함

2) 개선복구

- 기능복원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원인이 해소되지 않거나 제방 등 피해방지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반복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안전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선복구 대상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

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 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다. 피해조사

○ 우심 시·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 상 : 경미한 피해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 : 14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 ~ 350억원인 시·군 : 20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 ~ 600억원인 시·군 : 26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 ~ 850억원인 시·군 : 32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 : 38억원 미만
- 조사기관 : 도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이내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등

↓ 보 고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 우심 시·군이 발생한 경우

- 대 상 : 우심 시·군이 발생하더라도 1개 도에 국한되거나 중앙합동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 상 : 여러 시·군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중앙합동)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 이내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 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 건의사항
 - 기타 참고자료

↓ 보 고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 재난원인분석조사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강구를 위해 학계·민간전문가 등을 위주로 편성·운영
- 직무범위
 - 재난원인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홍수범람 흔적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측량,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재난원인 분석관련 기술 검토와 자문 등

라.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1) 일반피해지역

- 시·군 단위로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 : 14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 ~ 350억원인 시·군 : 20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 ~ 600억원인 시·군 : 26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 ~ 850억원인 시·군 : 32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 : 38억원 이상
- 공공시설의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 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임
-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 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재난 기간중 전국에 걸쳐 1개이상의 시·군구에 중앙지원을 하게 될 경우는 다음의 피해에 한하여 피해 전시·군구 전지역에 복구비를 지원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2) 국고의 추가지원기준

- 법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에 의거 국고 추가지원

지원기준	구 분	국고의추가지원액
시·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	[시·군비 총부담액-3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100 ~ 35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5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350 ~ 60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6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600 ~ 85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8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군비 총부담액-9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text{국고추가지원율} = \text{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times 0.9 + \text{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times 0.1$$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정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시·군의 경우 :
$$\frac{\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2. 자치구의 경우 :
$$\frac{\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3.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1.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 재해예방사업이라 함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군·구의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산점을 추가지원율에 부여할 수 있다.

마. 복구비 지원절차

○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복구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확정시달
 - 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부처 및 도에 통보

○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해의연금은 소관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지방 예산조치
 - 시장·군수는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3항)

○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 기획재정부에서는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 각 부처는 예산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제6절 폭염

1. 대비단계

가. 예방대책

1)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 폭염 피해현황 및 발생원인 분석을 통한 무더위 전망 분석
- 폭염대비 중앙·지역대책본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단기대책 및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 물부족 전력수급 대책 및 농작물 병충해, 전염병, 가축질병, 적조 예방대책 등

2) 폭염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무수용) 구축 방안 강구

-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시 모든 국공·사립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 강구

3) 건설·산업현장 무더위 휴식시간제 (Heat break) 운영 검토

-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 건설·산업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별 안전대책 방안 검토
 - 20분 이내의 낮잠 및 낮잠을 위한 별도 시설 마련 의무화 방안
 - 개인별 아이스팩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 방안
 - 작업시간 단축 및 폭염지속시 공사중지 의무화 방안

4) 수업단축 및 휴교조치 방안 강구

- 폭염예견 또는 발생시 초·중·고등학교 수업단축·휴교 또는 야외수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검토

5) 도민대상 폭염준비요령 홍보

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 언론사·방송사에 폭염대비 『주민준비요령』 홍보자료 배포

나) 홍보용 브로셔 제작·배포

- 폭염대비 일반적 준비요령과 단계별·분야별 준비요령을 담은 홍보용 브로셔를 제작하여 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학교·산업공단 등에 비치

다) 대형문자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 시내 문자전광판에 폭염 예견시 폭염행동요령을 표출

라) 사이버 홍보

○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폭염종합대책 및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게재
마) 시민단체 등 NGO를 활용한 홍보

○ 시민단체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 폭염종합대책을 설명하고 폭염
에 대비한 주민준비요령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6) 폭염대비 고령·독거노인 보호체계 구축·홍보

- 관련 과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특별대
책을 강구토록 하고 시스템을 적극 홍보
 - 독거노인 부모맺기, 효사랑봉사대 등을 확대하여 폭염발생시 고
령·독거노인의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1일 2시간 이상 냉방시
설에 머무르게 하는 시스템 마련

7) 각종 안전대책 추진

-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 중점 추진
 - 마을앰프, 가두방송차량, 언론, 유선방송, 전광판, 자동우량경보
시설 등을 활용한 대대적 홍보 실시
-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에서는 전력수급 대책 강구
 - 공급 예비율 저하에 따른 단계별 전기소비 절약지침 마련 및 홍
보대책 필요
 - 노후된 공급시설 등 주요시설 점검 정비
 - 아파트 등 시설별 변압기 등 과부하에 따른 대비책 강구
- 물부족 대책
 - 시·군에서는 지역별 급수 상황에 따른 다량 물소비 영업장 사전
파악, 구체적인 영업시간 단축계획 수립 시행
 - 생수 공급업체 수질관리 및 유통실태 수시 지도 점검
 - 가정이나 기업 및 학교 등 단체에서는 덥지 않을 때 생수 등을
평소보다 2배 정도 미리 구입토록 권장
- 전염병 및 가축질병·농작물 병충해 대책 등
 - 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대책 필요
 - 양로원 냉방시설 유무실태 등을 파악 지원방안 강구
 - 벼 잎도열병, 이삭 도열병 등 병충해 방제대책 강구
 - 양계장, 목축업, 양돈업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2. 대응 · 복구 단계

가. 폭염대책 홍보

- 언론매체와 시민단체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기상예보시 폭염발생 상황, 지역별 열파지수의 신속한 홍보
- 폭염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별 폭염대책 추진

1)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임무

- 민단체를 통한 폭염대책 홍보
 - 시민단체 등으로 하여금 폭염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 강구
- 폭염대비 「주민준비요령」 적극적 홍보
 - 주민준비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다중이용시설, 터미널, 학교 등에 비치하여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폭염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체 등의 도우미를 이용한 건강체크 활동
 - 오후 2시 전후로 대피센터를 운영 및 거동불편자 교통편 제공

2) 관련 실·과별, 유관기관별 주요임무

■ 보건소, 안성교육청

- 초·중·고등학교 수업단축 및 휴교 검토
- 급식소 식중독 발생우려 방역활동 실시 및 식품위생상태 점검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 농업용수 부족 및 가뭄대책 추진
- 벼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방제대책 추진
- 고온기 가축질병 예방대책 추진
- 양계장, 목축업, 양돈업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 밀집 사육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축사 위생 관리 및 소독 등 방역 실시

■ 지역경제과,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

- 전력예비율 점검 및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이상 고온에 따른 광역 정전시 단계별 긴급복구 대책 추진
- 공급 예비율 저하에 따른 단계별 전기소비 절약지침 마련 및 홍보 대책 추진

- 공장 근로사고 사례 및 예방정책 추진(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 야외작업 관련 행동요령 등 안전자료의 발간·배포 및 안전교육 실시
- 노후된 공급시설 등 주요시설 점검 및 정비
- 아파트 등 시설별 변압기 등 과부하에 따른 대비책 마련

■ 보건소, 사회복지과

- 긴급의료상황에 대비한 긴급의료지원체계 수립·추진
- 전염병 대비 비상방역 대책 추진
- 고령자, 독거 노인 등의 건강대책 추진
 - 일부 동단위별로 추진중인 독거노인 부모맺기, 효사랑기능봉사대 등을 연계확대하여 도우미를 이용한 건강체크시스템 구축 및 매일 1~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냉방시설 설치
 - 폭염시 특별주간을 설정, 노약자·독거노인 등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전국 양로원 냉방시설 유무 실태 등을 파악 지원대책 추진
- 독거노인 거주지역에 대한 구조 구급요원 수시 순회 관찰

■ 상수사업소

- 물소비 감소방안 강구
- 생수 공급업체 수질관리 및 유통실태 지도·점검
- 정수장 등의 수질오염 사전예방대책 추진
- 가정이나 기업 및 학교 등 단체에서는 덥지 않을 때 생수 등을 평소보다 2배 정도 미리 구입토록 권장
- 물절약 홍보요원 위촉 및 주부들 대상 물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 건설과, 건축과, 안성소방서

-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의 물차, 병물, 비상급수 지원
- 아파트 및 도로 건설현장 등 현장노동자의 안전대책 추진
 - 개인별 아이스팩 안전조끼 착용 및 20분 이내의 낮잠 권장
- 도로포장 표면변형 대비, 살수차 동원 살수 실시
 -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구간의 대기온도 35℃이상 예보시

■ 안성경찰서

- 최근 인명 경시 풍조에 편승하여 폭염과 불쾌지수 상승에 따른 우발적, 무조건적 강도·살인 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

제7절 강 풍

1. 대비단계

가.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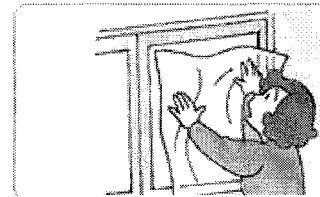
- 1) 피해발생 우려 시설 점검(대형간판 등)
 - 기상상황에 따른 예찰활동 강화
 - 강풍에 의한 간판탈락이 안되도록 결박상태 확인 및 보강
- 2) 대규모 공사장 점검
- 3) 농림시설 점검
- 4)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점검

나. 국민행동요령 홍보

- 단계별 국민행동요령을 작성, 각종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
- 홍보방법
 - 인터넷, TV·라디오 방송, 신문, 반사회 회보, 홍보 전광판 등
 - 홍보 비디오, 팜플릿,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활용

강풍에 대비합시다

- 문·창문을 닫고 집 안에서 머무릅니다.
- 유리 창문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신문지, 비닐 또는 테이프를 창문에 붙입니다.
- 해안지역에서는 바닷가로 가지 않습니다.
- 라디오나 TV의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들읍시다.
- 날아 갈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안으로 들어놓으세요.



강풍이 몰아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 지붕 위나 바깥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나무 밑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 바닷가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 외출을 삼가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속도를 줄입니다.

나.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자원봉사단체 지원·협조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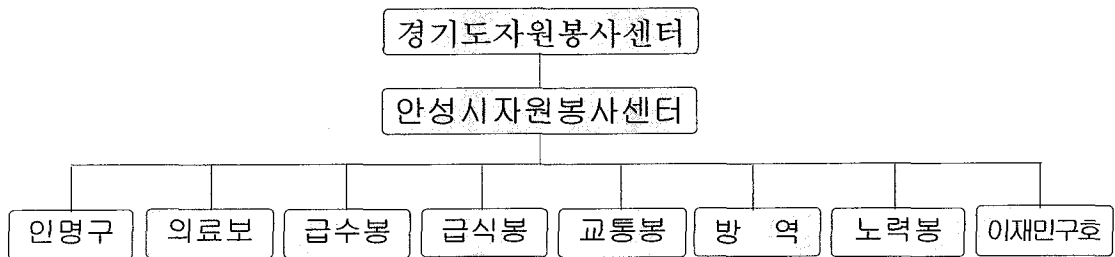
○ 자원봉사센터 현황

- 센터 수 : 1개소
- 종 사 자 : 6명
- 기 능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활동실적관리,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 봉사단 현황 : 9개분야 166단체 20,122명

○ 조 직 도



○ 봉사단 조직정비

- 정비기한 : 2010년 3~4월중
- 정비대상 : 기 구성운영 중인 인명구조 등 9개 분야
- 정비내용
 - 봉사단별 임직원 변경사항(단체별 임원 및 실무자 변경사항 포함)
 - 자연재난대비 봉사단별 비상연락망 정비
 - 자연재난발생시 사용하는 장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인명구조장비 등)

○ 봉사단 신규모집 및 조직 확대

- 추진기한 : 2010년 4~5월중
- 모집분야 : 인명구조 등 9개 분야
- 모집대상
 - 자원봉사포털시스템 등록자중 「자연재난대비봉사단」 미 참여자

- 개인, 봉사단체, 기업체, 유관기관 등
- 모집방법
 -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메일링서비스(또는 SMS)를 활용하여 전산등록 봉사자중 봉사단 미 참여자에 대한 모집홍보
 - 자원봉사 홈페이지, 소식지,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활용
- 모집결과 : 기 구성된 자연재난대비자원봉사단에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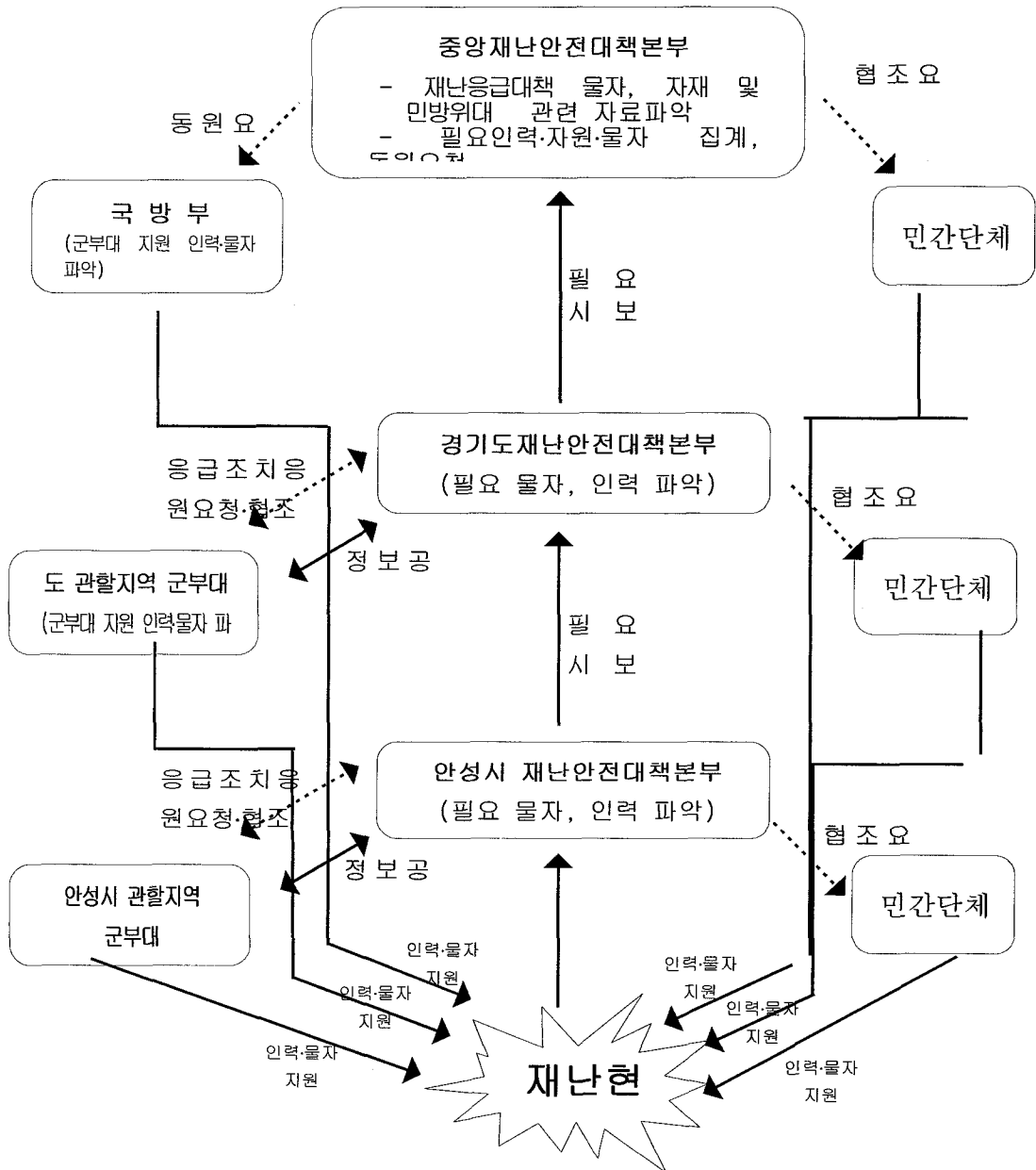
○ 봉사단 교육훈련

- 기본교육
 - 교육시기 : 2010년 4~5월중
 - 교육내용
 - 자연재난 발생원인과 대처요령
 - 자연재난발생시 상황전파 등 자연재난복구 자원봉사 지휘체계
 - 자연재난발생시 봉사단별 역할과 임무 숙지
 - 기타 자연재난복구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과 자세, 준비사항 등
- 분야별 전문교육
 - 교육시기 : 2010년 4~6월중
 - 교육내용 : 사례발표, 전문강사 강의 등
 - 인명구조 : 인명구조장비 사용요령, 응급처치요령 등
 - 의료봉사 : 구성원간 유대강화, 의료단체간 역할분담 등
 - 급수봉사 : 비상급수장소 지정(제수변, 급수탑), 단체간 정보교류
 - 급식봉사 : 부식조달, 조리, 배식, 설거지 등 역할분담 등
 - 교통봉사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참여단체간 유대강화 등
 - 방역봉사 : 안전사고 예방교육, 방역장비 사용요령 등
 - 노력봉사 : 자원봉사 활동시 주의사항, 사전준비사항 등
 - 이재민구호 : 구호물품 배분시 자원봉사자 참여·지원범위 등 교육

○ 기관·단체간 역할분담

구분	기 관 별	준 비 사 항	비고
행정 기관	안성시	○ 안성시 재난대비 자원봉사 종합계획 수립 - 봉사단체, 유관기관, 자원봉사센터에 통보 ○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재난대비 교육훈련 지도	
자원 봉사 센터	안성시 자원봉사 센터	○ 재난대비 자원봉사단 운영 및 정비 - 관내 재난대비 봉사단별 비상연락망 구축 - 자원봉사단 소속단체별 역할분담 - 자원봉사단별 분야에 맞는 전문교육 실시 - 임시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요령 교육 - 재난복구활동 시 지켜야할 안전수칙 교육 - 재난대비 교육 및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 ○ 관내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	
민간 봉사 단체	안성시 각종 단체	○ 시지부 및 읍면동 지회와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 수해발생시 임무에 대한 회원교육 ○ 회원들의 전화번호 등 비상연락망 유지	

<협력체계 구축도>



2. 대응단계

가. 인명구조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

1) 인명구조 유관기관 협조

- 인명구조 관련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비상연락망 구축
 - 관할구역 내에서 재난발생시 119구조대 출동태세 구축
 - 119구조대, 군·경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조직·운영하고 있는 각종 인명구조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합동훈련 실시
 - 안성소방서장(119구조대)이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조활동 총지휘
 - 상습침수나 고립위험이 있는 지역은 사태발생시 인근의 인명구조대를 즉각 동원, 사태수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담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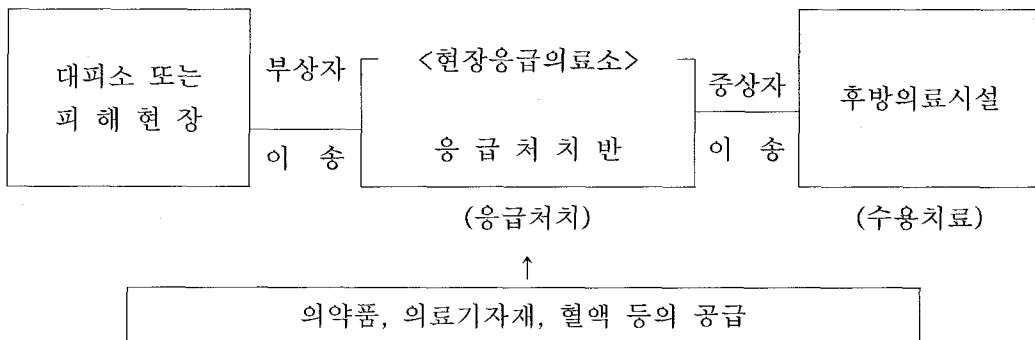
2) 고립예상지역 대책

-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수립
 -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 주민고립 예방
 - 고립예상지역은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헬기착륙장과 우회도로 등을 지정·관리
 - 인명구조 요청시 헬기 등이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인근 군부대 및 경찰·소방관서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관리

나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1) 응급진료 및 응급환자 수송대책

<재난시 의료구호체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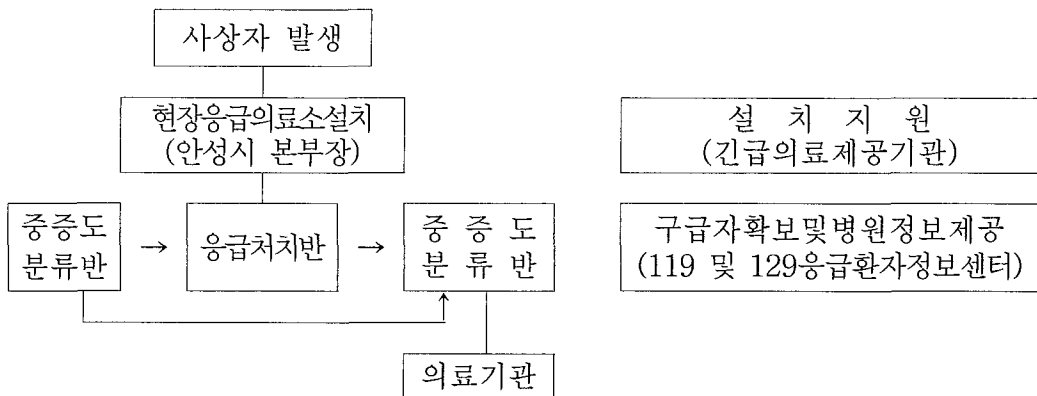
○ 현장의료구호소의 설치

- 의료구호반은 시장이 설치한 대피장소 또는 재해현장 등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 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에의 운송순위결정, 수송곤란자 및 경상자에 대한 의료실시, 조산구호, 사망자의 확인, 사체의 검안 등을 실시
-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 의료구호소등에서 의료 구호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조대 등을 파견 조치

○ 중상자 후송 대책

- 현장 응급의료소의 소장이 119구급대 또는 의료기관 구급차 등에 요청, 후방의료시설까지 운송 조치
- 통신망의 단절로 피해지역 의료기관의 상황파악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한 정보수집

〈사상자처리체계도〉



○ 의료시설에 대한 Life-line 대책

- 단수, 정전 등으로 인하여 의료활동 불가능에 대비 의료시설에 대한 라이프라인 대책 수립 추진

○ 긴급수송로의 지정(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운영규정)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긴급 수송로로 지정

○ 긴급운송루트의 확보(도로, 항로)

-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교통방송 등을 통하여 긴급수송로 확보
- 긴급수송루트, 주요우회루트를 표시한 지도정보시스템 개발
- 헬기 임시 착륙장 지정
- 대형헬기 등으로 수송장비 지정

2) 응급의료기관 확보 및 협조사항

○ 기본방침

-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후송체계 확립
- 지역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진료대책 추진

○ **의료시설 현황**

(※ 참고자료 1 안성시 의료시설 현황참조)

- 환자이송 협조체계 구축
 - 대량환자 발생 시 구급차, 헬기 동원 및 이송협력체계 수립
 - 구급차량 : 관내 의료기관 등 구급차량 활용
 - 헬 기 : 소방본부와 협조
 - 이송협력체계 : 인근 응급의료기관 활용
-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한 이송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처치 지도 적극 활용
- 대량환자 발생 현장통제 및 구급차 이송통로 확보
⇒ 안성경찰서 협조

3) 사체처리 대책

○ 관할 인명구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사체의 수색

- 사체의 수색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되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협조를 받아 수색

○ 사체의 운구와 보관

- 사체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 영치

- 사체의 신원 파악을 위해 매장이 지연되는 경우와 사망자 수가 많아 단시일내에 매장할 수 없는 경우는 시신을 안치하는 기관에 협조 요청
※ 사망자의 시신을 다룰 때에는 이재민에게 시신을 공손히 취급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함
- 운송 차량이 부족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 사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드라이아이스 등을 사용하며 부패로 인하여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 사체의 검안 및 처리

- 사체의 검시, 의학적 검사, 신원 확인 등의 업무와 사체식별을 위한 세척, 봉합, 소독까지의 의료활동은 전문기관에 업무를 일임

○ 사체의 매장

- 사체를 안치 장소에서 반송하고 화장 또는 매장까지의 일련의 업무는 시에서 수행

○ 신원 불명 사체의 처리

- 신원 불명의 사체는 시 관할 경찰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
- 경찰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

4) 생필품 등 구호물자 확보·비축 및 공급대책

○ 재해구호물자 비축(비축현황 참고자료 첨부)

- 최근 10년간의 시·군별 재해발생 현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물자는 우기전까지 확보
- 최근 10년간의 재난시 이재민발생상황을 감안하여 현재의 보유량으로 대비하되 부족시 전국 재해구호협회 제작물품을 사전 협약 후 사용
- 재해구호물자 비축시에는 소요 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수품은 개인용, 세대용 등으로 패키지화 하여 보관
※ 변질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렵고 조달이 용이한 물품은 구매선을 사전 지정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조달 조치
(쌀, 장류, 통조림, 라면, 단무지, 구운김, 조미료, 부탄가스 등)
- 재난구호물자 중 사용연한에 이르러 다음 재난발생시까지 비축할 경우 폐기될 우려가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은 재난이 발생한

타 시·도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매각 후 그 대금을 재난 구호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용처분하고 새로운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함

※ 보관물품 상태를 수시로 파악관리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일시구호세트(1명 기준)

구 분	다목적 보온덮개	치 약	칫 솔	비 누	수 건	화장지
규 격	213 _{cm} × 132 _{cm}	20g	일회용	35g	30 _{cm} × 45 _{cm}	50매
수 량	1장	1개	1개	1개	1장	1개

○ 응급구호세트(기본용 + 개인용)

- 기본용 : 1세대 2명 기준

구 분	이 불	담 요	칫 솔	치 약	세면비누	수 건	화장지
규 격	200 _{cm} × 170 _{cm} 1.3kg	200 _{cm} × 150 _{cm} 320g/m ²	일회용	175g	100g	80 _{cm} × 40 _{cm}	50m
수 량	1장	1장	2개	1개	2개	2장	2개

구 분	배 개	빨랫줄,집게	손거울,빗	반질고리	블 펜	메모지
규 격	PVC 38 _{cm} × 28 _{cm} × 10 _{cm}	PP 5M, 8개	80mm × 60mm × 10mm	실,골무,가위,바늘,실 웨이	0.7 _{mm} 유성	10 _{cm} × 48 _{cm} 30매
수 량	2개	1조	1조	1개	1개	1개

- 개인용 : 남·여 각 1명 기준(의류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

구 분	남				여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 말	간소복	속내의	생리대	양 말
규 격	폴 리	면	1회용	면	폴 리	면	일반슬림	면
수 량	1벌	1벌	1개	1컬레	1벌	1벌	1조	1컬레

※ 의류(간소복·속내의) 크기에 따라 대(남 105, 여 100)·중(남 100, 여 95)·소(남 95, 여 90)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 비율은 3:5:2로 함

○ 재가구호세트(1세대 4명 기준)

구 분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면장갑
규격	휴대용	4인용	sts	250g	1kg	1kg	고급형	부직포	반코팅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켢레	2개	1켢레

- 보관창고 설치 및 물자의 보관

- 최근 10년간의 구호실적을 감안하여 교통, 재난상습지역 등을 고려한 전용 창고를 설치·운영하고, 재난구호물자 비축창고가 협소한 경우에는 전국재난구호협회가 운영하는 비축창고 등을 임차하여 보관
-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물자의 입·출고 및 보관물자의 망실, 훼손, 보관상태 등 점검 후 적의 조치

○ 재해구호물자의 지급

-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자에 대하여, 일시구호세트를 1인당 1세트 지급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 응급구호세트 기본용은 1세대당 1세트
 - 응급구호세트 개인용은 1인당 남·여(대·중·소)에 따라 각 1세트
 - 재가구호세트는 1세대당 1세트를 지급
- 일시·응급·재가구호세트를 지급할 때에는 구호세트 종류별로 구성된 해당 개별구호물품(생수, 쌀, 부식류, 부탄가스, 락스 등)을 반드시 함께 지급
- 그 밖에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가족 수를 감안하여 생활필수품(분유 세트, 기저귀, 모기약 등)을 지급

○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구호체계 확립

- 대한적십자사 등 응급구호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파악
 - 안성시 적십자사지회 또는 민간단체현황 관리
-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 구성된 재난대비 자원봉사대 지원
 - 자연재난대비 자원봉사대 구성에 따른 교육 등 협조
 - 자연재난대비 자원봉사대와 시 담당공무원합동 Work-Shop 개최 등 협조체계 구축

5) 구호물품의 접수 및 배분계획

○ 구호품 배분시 유의사항

<<생필품 배분 전달시 반드시 확인 할 점>>

- 배분된 것을 주민 모두가 공평하다고 만족하는가?
- 적절한 양이 배분되어 다른 재해지역과 균형을 이루는가?
- 노약자, 환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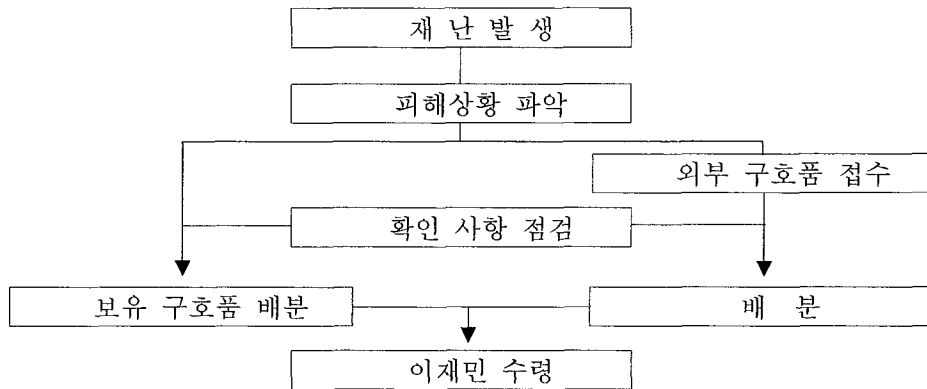
- 피해자는 신경이 날카로우므로 작은 차별대우도 크게 반발을 한다. 그러므로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 다른 지역에 비하여 품질이나 수량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건강한 사람과 재해약자를 똑같이 나누어 주면 안 된다. 상황이 악화되어 필수품의 공급이 중단되면 재해약자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재해약자에게는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한다.

○ 구호품 운송

- 우리시가 보유한 운송수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군부대나 소방서에 차량 등을 요청한다.
 -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게도 차량배송을 의뢰한다.
 - 도로 두절로 인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헬기를 동원하여 공수한다.
 - 헬기착륙이 불가능한 지역은 공수방법을 계획한다.
 - 긴급배분이 될 품목은 하역작업을 하지 않고 차량 자체로 일시 보관한다.

○ 구호품 접수, 배분

- 재난이 발생하면 이재민은 생활물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계획은 구호품이 접수되고 이를 다시 적절한 시기에 배분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호품 접수 배분 흐름도】

- 구호품의 접수

- 구호품은 종류와 수량이 다양하여 구호품을 접수할 때 정량적인 접수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구호품을 기다리는 이재민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신속한 접수와 배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접수는 현실적으로 효과 있게 처리해야한다. 구호품을 접수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물품의 확인
- 이재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쓸모 없는 물품 (예 : 수재민에게 걸레 담는 그릇 등)
- 이재민의 지역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물품 (예 : 농촌사람에게 허리 청바지 등)
- 먼지나 오물이 묻어있어 상점의 재고를 처리하는 느낌이 있는 물품
- 가전제품의 경우, 불량품의 확인
- 요즘은 사용 않는 구시대 물품
- 같은 종류와 크기를 무더기로 보내온 물품 (특히 의류)
- 운반비를 지불하지 않은 물품
-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지정해 보내온 물품 (관여하지 말고 직접 배달시킨다)
- 보관이 어려운 물품(쉽게 부패하는 것은 가급적 접수하지 말 것)

재해 구호물품 배분

- 모집된 의연금품은 전국재해구호협회(광역구호물품창고)에서 배분하고 각 시·군으로 전달한다.
- 위험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사전에 구매선을 확보하여 재난발생 즉시 조달하여야 한다.(예 : 김치 등)

- 가구별 구호세트는 사람 수를 기준하는 것보다 세대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 재해 구호의 실시
 - 이재민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해구호기간을정하되, 최대 6개월 이내로 한다.
 - 재해구호 실시 내용은 이재민수용시설의 제공, 재해구호물자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가 있다

6)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 지정기준

- 안성시의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과거 자연재해발생 빈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한 건물로 지정
- 수용시설면적은 1인 3.3㎡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수용시설은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하되, 저지대 등 상습 재해발생지역내의 시설은 지정하지 아니함.
-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양호한 지역 선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 지정

○ 점검 및 관리

-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우기전 관리상태 점검
 - 환기, 조명, 보온 등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확보
 -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 상태점검 및 급수차량 확보
- 대피시설 또는 읍면동별 응급구호품과 장비(재해구호물품세트, 고무보트 등) 및 단전, 단수에 대비한 최소시설 확충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수용 이재민의 급식을 위하여 민간구호기관과 사전협의
- 수용시설 안내도 및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 참고자료 2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참조)

7) 주민대피 및 유도계획

○ 위험상황의 정보수집 및 대피 홍보

- 각급 기관은 피해가 예상되면 관계기관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요소의 조기 발견과

주민에게 경계를 당부한다.

- 대피를 준비하도록 주민에게 홍보한다.
- 대피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면 즉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보고한다.
- 순찰차·확성기·무선통신기·라디오·TV 등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주민의 대피에 신속한 안내와 홍보를 한다.
- 노약자의 대피와 안내는 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다.

○ 대피유도

-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안내자의 파견, 안전 대피로의 확보, 대피 및 교통의 통제, 대피로내 장애물제거 등을 실시하여 대피가 원활하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와 협조하고 요소요소에 안내원을 배치함과 동시에 헬리콥터 등을 요청한다.
- 정전과 야간대피에 대비하여 조명탄과 신호탄 사용을 계획한다.

8) 대피소 운영 및 안전대책

- 시장·군수는 대피예상인원을 판단하여 대규모 재난발생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장소의 학교·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대피장소로 지정관리

(※ 참고자료 3 대피소지정현황 참조)

○ 대피주민의 상황파악 관리

- 대피소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대피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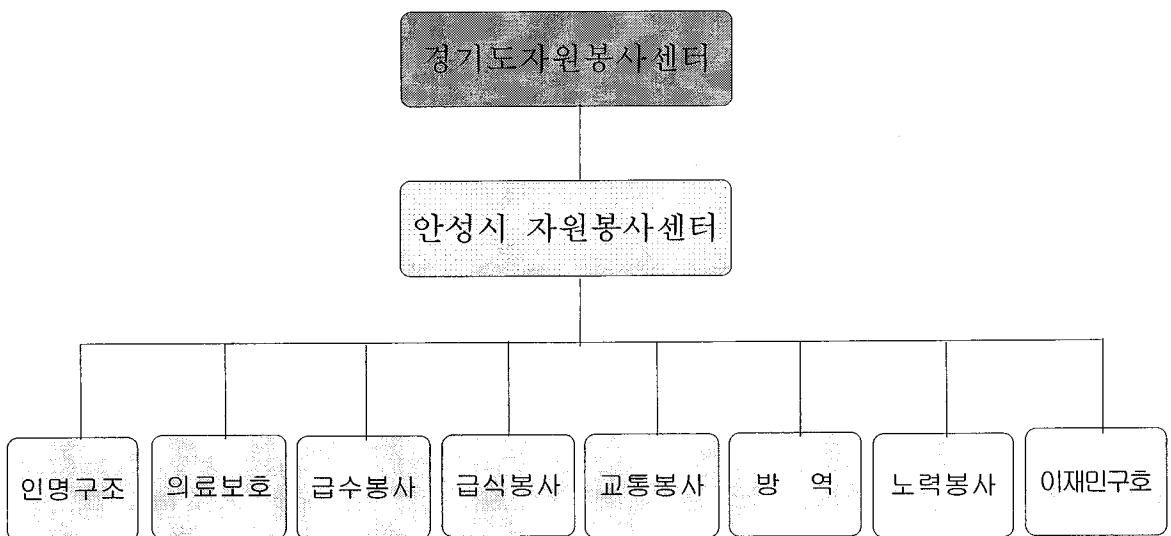
9) 자원봉사단체의 협조 및 역할분담 방안

○ 행정기관 (안성시)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재민 현황을 정확히 파악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운영
 - 피해 이재민의 거주지역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용(공공건물, 교회, 회관, 학교강당 등)
 - 화장실, 간이목욕실 확보·설치
 -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 구호센터 운영

- 필요시 단체급식소, 긴급 방역소독 및 응급의료 처치실, 구호품 보관소 등 설치
- 구호물자 접수·관리·배포 및 이에 수반된 행정조치
- 대한적십자사 안성지사
 - 이재민구호를 위해 도 및 시와 보완적 역할담당
 -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수용시설에 집단급식 및 이동세탁차량 신속배치 운영
 - 이재민 및 구호요원에 대한 급식 및 세탁 지원
 - 구호센터 및 수용시설에 봉사요원 배치관리
 -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긴급구호물자 지원
 - 적십자봉사센터 운영 :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장애인을 위한 특별활동 실시
-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 기 구축한 「재난대비 자원봉사회 통합시스템」 확대정비
 -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재난대비 네트워크 구축
 - 단체별 특성을 파악하여 자원봉사분야별 봉사대 구성
 - 재난대비 기관·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

【재난대비 자원봉사대 조직도】



< 자원봉사분야 구분>

- 인명구조대 : 고립자 구조 등 인명구조활동 전개
- 의료봉사대 : 이재민 진료 등 의료활동 전개
- 급수봉사대 : 급수불통지역 주민에 대한 식수지원
- 급식봉사대 :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 교통봉사대 : 수해복구 진입로 혼잡지역 교통정리
- 방역봉사대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전개
- 노력봉사대 : 가재도구 정리, 농작물 복구, 수해잔재물 정리
- 이재민구호 :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품 전달

다. 생활필수시설 긴급복구 대책

1) 통신두절 대책

○ 도청 및 읍면동 간 비상연락 통신수단 확보 및 한국통신공공간 업무협조 - 재난종합상황실 통신수단 증설 등 긴급 통신 업무지원 ○ 재난종합상황실내 방재무선통신, 위성전화기 시스템 운영 - 재난발생시 : 도 상황실과 읍·면·동간 직통망 확보로 신속한 상황처리 - 평 상 시 : 행정업무로 활용				
자연재난지역 통신지원 대책				
○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지휘용 통신망 지원 - 읍·면·동 비상통신망(위성전화, TETRA)을 자연재난지역에 지원 ○ 이재민 대피소 등 집단수용시설에 무료 공중전화 설치 및 자연재난지역 통신장비 무상수리 및 교체 지원 - 기간통신사업자(KT 등)에 요청 ○ 기타 자연재난지역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 - 기간통신사업자(KT 등)에 요청				
자연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피해지역 지휘통제를 위한 통신망회선을 기간통신 사업자(KT 등)와 협조하여 최우선으로 복구 - 제1순위 : 자연재난관계기관, 소방기관, 경찰서, 기상기관, 군 관계시설, 수송확보에 직접 관계있는 기관 - 제2순위 : 선거관리기관, 통신기관, 금융기관 - 제3순위 : 지방공공단체				
비상통신용 장비 현황				
위 성 전 화 기	구분	전 화 번 호	설 치 장 소	비 고
	1	0100-33-1300	재난종합상황실	
	2	0100-33-1301	정보통신과	
	3	0100-33-1302	정보통신과	
	4	0100-33-1303	금광면사무소	
	5	0100-33-1304	죽산면사무소	
	6	0100-33-1305	양성면사무소	
TETRA 비상 무전기	구분		설 치 장 소	비 고
	1	고정용 1,휴대용5	재난종합상황실	
	2	차량용1	재난안전관리과 관용차	
무선랜	구분	주 파 수	주 파 수 간 격	비 고
	1	145.000	145.000 ~ 146.000	145.760(비봉산)
통신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주 간	야 간	팩 스
(주) KT 안성지점		672-0060	674-0800	676-0007

2) 전기시설 대책

유 관 기 관 별 임 무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	○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전력보강사업 ○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제조정으로 정전지역 최소화 ○ 사고원인조사 및 긴급복구 실시 ○ 복구에 필요한 전기공사업체 비상동원과 행정기관에 지원 요청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자문 및 검사 ○ 자가 수용가의 사고원인조사 및 복구협조 ○ 자가 수용가 사고시 기술지원		
전기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주 간	야 간	팩 스	비 고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점	675-3111	670-2268	670-2219	
한국전기안전공사 평택지사	650-5201	655-2811	651-4876	
자연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피해지역 지휘통제를 위한통신망 회선을 기간통신 사업자(KT 등)과 협조하여 최우선으로 복구 - 제1순위 : 자연재난관계기관, 소방기관, 경찰서, 기상기관, 군 관계시설, 수송확보에 직접 관계있는 기관 - 제2순위 : 선거관리기관, 통신기관, 금융기관 - 제3순위 : 지방공공단체				

3) 가스시설 대책

유 관 기 관 별 임 무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활동 저해요인 조사 ○ 가스사고 수습 및 복구요령, 기술지원			
	경 찰 서	○ 사고원인 조사, 주민동향 관리 ○ 사고지역 경계 및 출입통제			
	소 방 서	○ 복구요령 및 기술, 장비, 인원지원 ○ 화재진압 및 인명·재산 피해 조사			
전기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주 간	야 간	팩 스	비 고
가스안전공사 평택지사		675-3111	670-2268	670-2214	
(주) 삼천리도시가스(평택)		667-3002	667-3002	656-6564	

4) 급수 및 상·하수도시설 대책

- 평상시 상·하수도시설을 사고대비 야간 당직실 운영(정수장)
- 평상시 상·하수도시설을 사고대비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
- 상습침수 지역을 중점관리 및 지속적 점검
- 상·하수도 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장마철 정수장 안전관리 철저

5) 교통두절 대책

- 자연재난 대책에 따른 교통시설을 현황파악 및 수송 장애요인 분석
- 긴급수송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
 - 자연재난으로 인한 교통두절시,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 우회도로가 불가능하고 대체교통수단 필요시 즉시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 수송량 조정을 위한 불요불급한 인원·차량 통행제한
 - 피해정도에 따라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 통행 조치
 - ① 응급차량 및 재난복구차량
 - ② 공공용 차량
 - ③ 대중교통(버스, 택시)차량
 - ④ 자가용 등
- 우회교통망 안내 및 홍보
 - 우회도로 지정내용에 대한 안내 입간판 설치 및 대국민 홍보
 -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를 활용, TV등의 특별방송 홍보
 - 교통정보 전화안내 및 자동응답시스템 이용 홍보
 - ☞ 고속도로·국도 등 교통정보 및 철도·항공·기상정보 24시간 안내(1333번)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안 강구 및 시행
- 피해 교통시설의 응급복구 방안 강구 및 시행

6) 사태발생시 신고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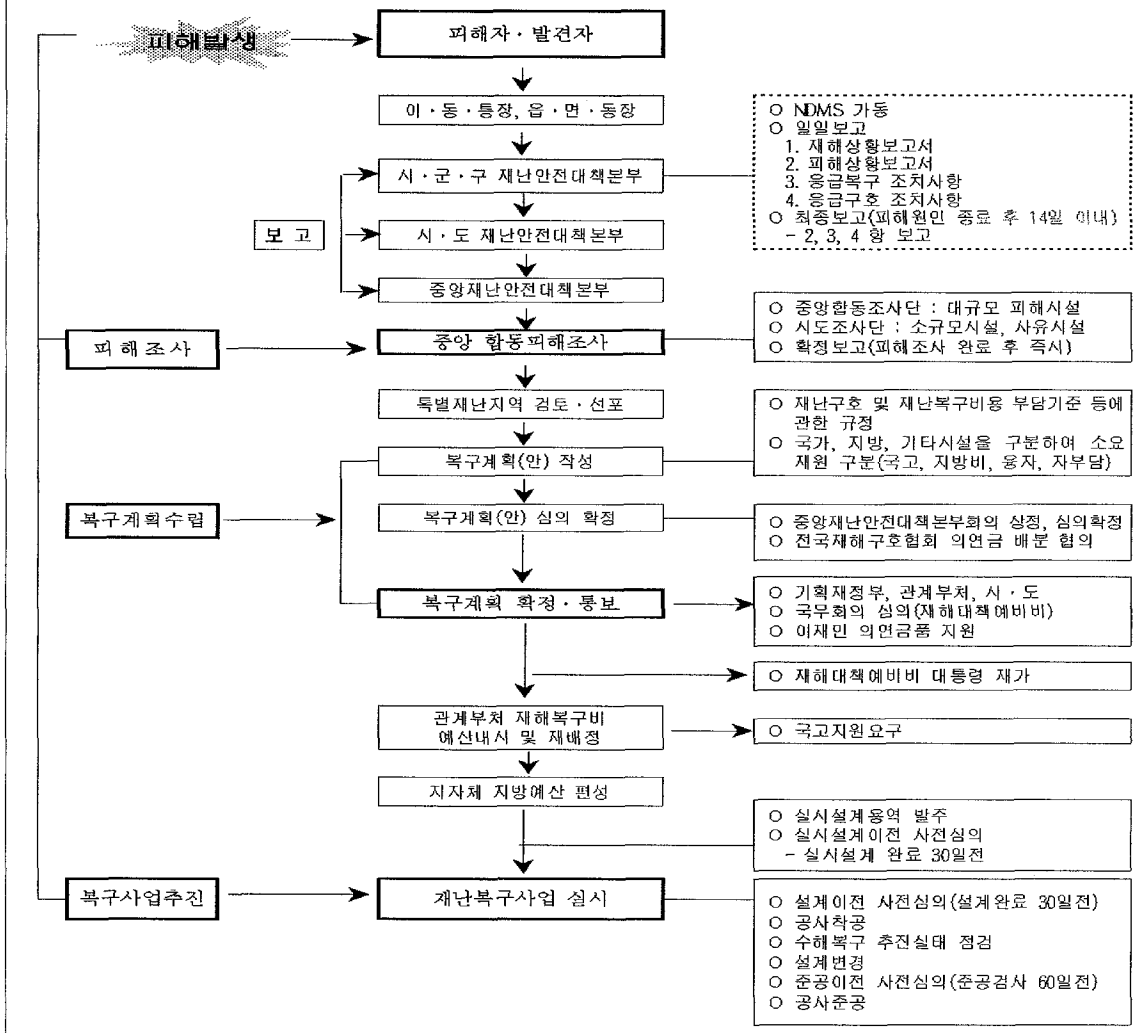
- 근무실시 및 보유장비로 신속한 응급복구 실시
 - 상습침수 지역을 중점관리 및 지속적 점검
 - 상·하수도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장마철 정수장 안전관리 철저

3. 복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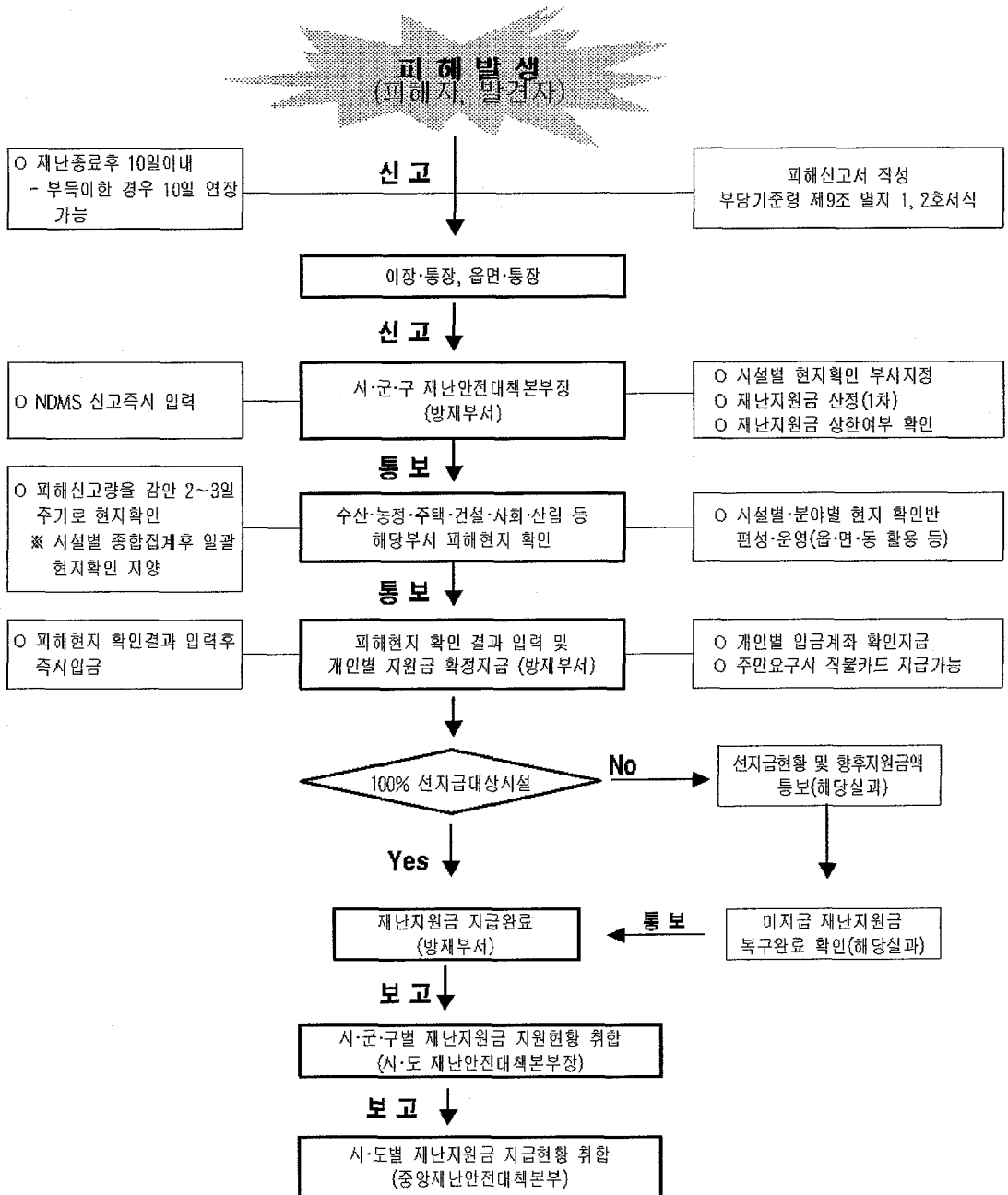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①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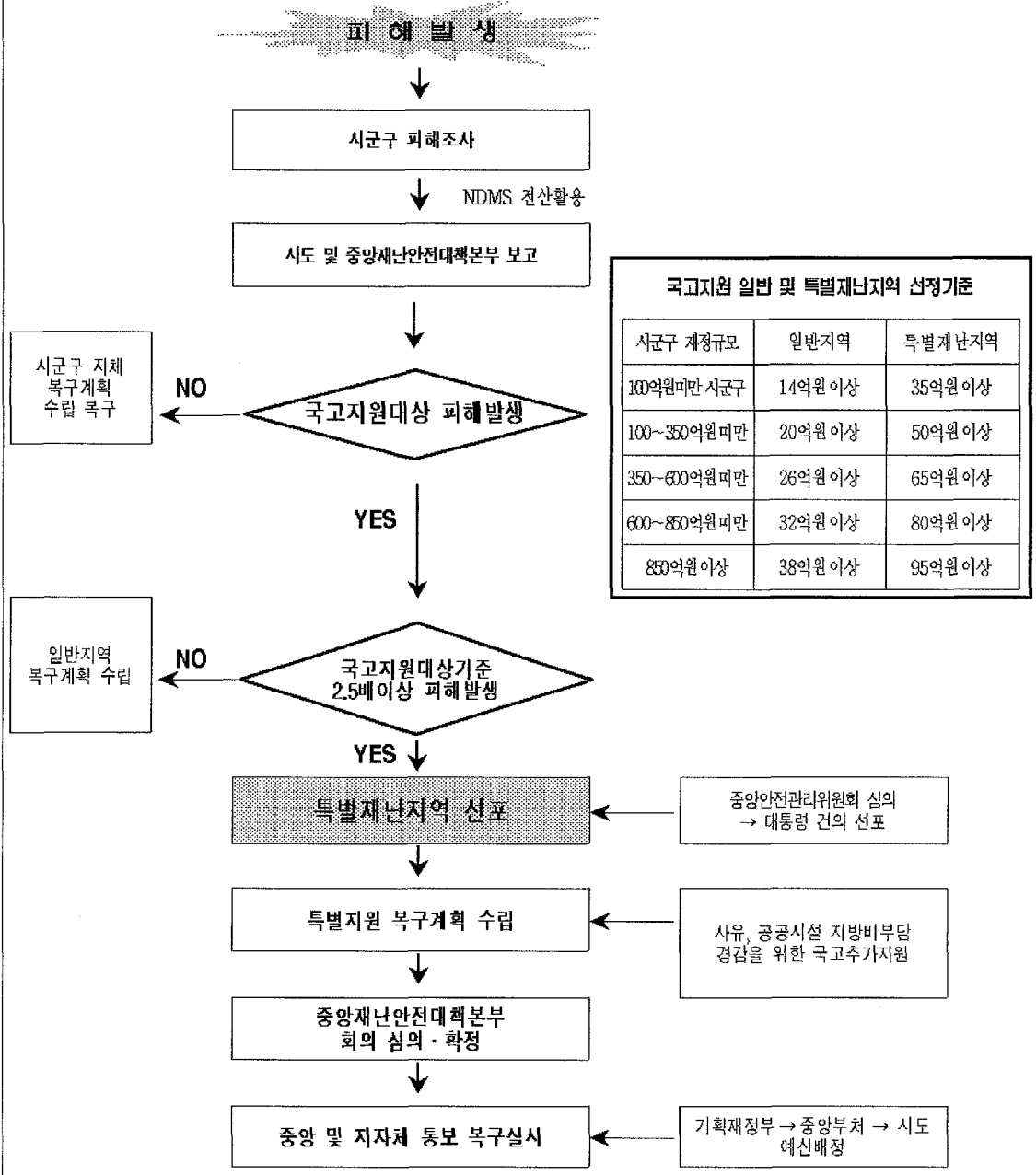
자연재난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② 피해조사 보고권자

-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피해조사 및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되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법 제20조의 피해조사보고 의무를 소홀하여 피해시설 및 이재민이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락시는 기준령 제8조를 준용 자체복구계획을 수립복구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피해보고는 하되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는 제외
- 사유시설(산사태 피해는 제외) 및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조사 실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소관시설에 대해 피해상황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생 즉시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함(기본법 제20조제3항).
- 인명 발생시는 피해자 주소지 및 선적지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물, 농경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피해가 발생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 ※ 통보 또는 보고가 늦어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락시는 피해발생 지역 관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조치하여야 함.
 - ※ 인명피해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보고 및 지원함.

③ 보고시기 및 방법

- 사유시설 피해최종보고 : 시장은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기준령 제9조에 의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일 이내에 보고하되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함
- 공공시설 피해최종보고 :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함
- 피해확정보고 :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풍수해 상황총괄표 서식에 의거 최종피해 보고내용과 정밀피해조사 결과를 대비한 증감내역을 작성·보고함

※ 유의사항

- 도 또는 시에서는 피해최종보고 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누락·과장 등의 사유로 수정보고를 할 경우 거부하지 말고 접수를 하였다가 추후 피해 확정보고

- 시 반영토록 하기 바람. [피해최종보고는 100%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시 또는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 효율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추가 신고시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안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특히, 사유시설은 현실적으로 피해최종 보고기일까지 정밀조사가 어려우므로 민원이 없도록 중앙합동조사기일까지 조사하고 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 안정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람.
 - 사유시설 피해조사시 누락·과소가 없도록 피해주민 참여, 리·통장 임회조사 실시
 - 공공시설 중 도로·하천·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시·군·구의 최초 보고 피해조사 시부터 주민대표 등(통·리장, 자율방재단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 기술자, 손해평가인 등) 참여 조치
- **피해보고방법** : 피해보고는 국가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하
되, 피해최종 및 확정보고는 풍수해관리 피해상황총괄표 서식을 활
용 서면 보고함
- ④ **복구계획 수립권자**
- **이재민구호를 위한 복구계획수립**
 -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 대상 : 양봉시설, 응급·장기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간접지원
 - **재해복구사업** : 시설물 소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다만, 인명 및 선박·어망은 피해자 주소지와 선적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함
 - 시설물이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시설물 설치 자가 피해보
고 및 복구계획을 수립함.
 -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지원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단위(최소 행정단위)의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가.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1)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 피해지역의 응급조치 등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은 전문인력과 기타 인력으로 구분하여
 -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노동부에 지원 요청
 - 기타 인력은 군인, 민방위대, 수방단 등 동원이 가능한 인력 지원 요청
- 장비는 민수, 관수, 기관보유 등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단계별 동원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 요청

- 대규모 재난발생에 따른 각종 방재물자·장비·인력 등이 부족할 경우 인접 자치단체와 상호 응원체계 구축
- 관내 군부대,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 협력

2) 공공시설물

- 도로·교량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 조치
 -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시로 점검
 - 피해발생시에는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하고 점검 및 복구 실시
 - 복구순서는 긴급도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일반도로 및 장애물 반출 등의 순서로 복구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응급복구계획 수립
 - 재난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 피해 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확보한 자재와 장비를 동원하여 즉시 응급복구 실시

3) 기타시설물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등
- 사회공공시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사회공공시설 관리자는 인명의 안전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등
-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복구반을 편성하는 등 긴급 복구방안 강구

나.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1) 방역 실시계획

○ 방역물자 확보·비축

- 대상물자 :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
- 비축기준 :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 사업지침에 의거 비축관리
- 보관장소 : 일반 방역약품과 같이 보건소에 비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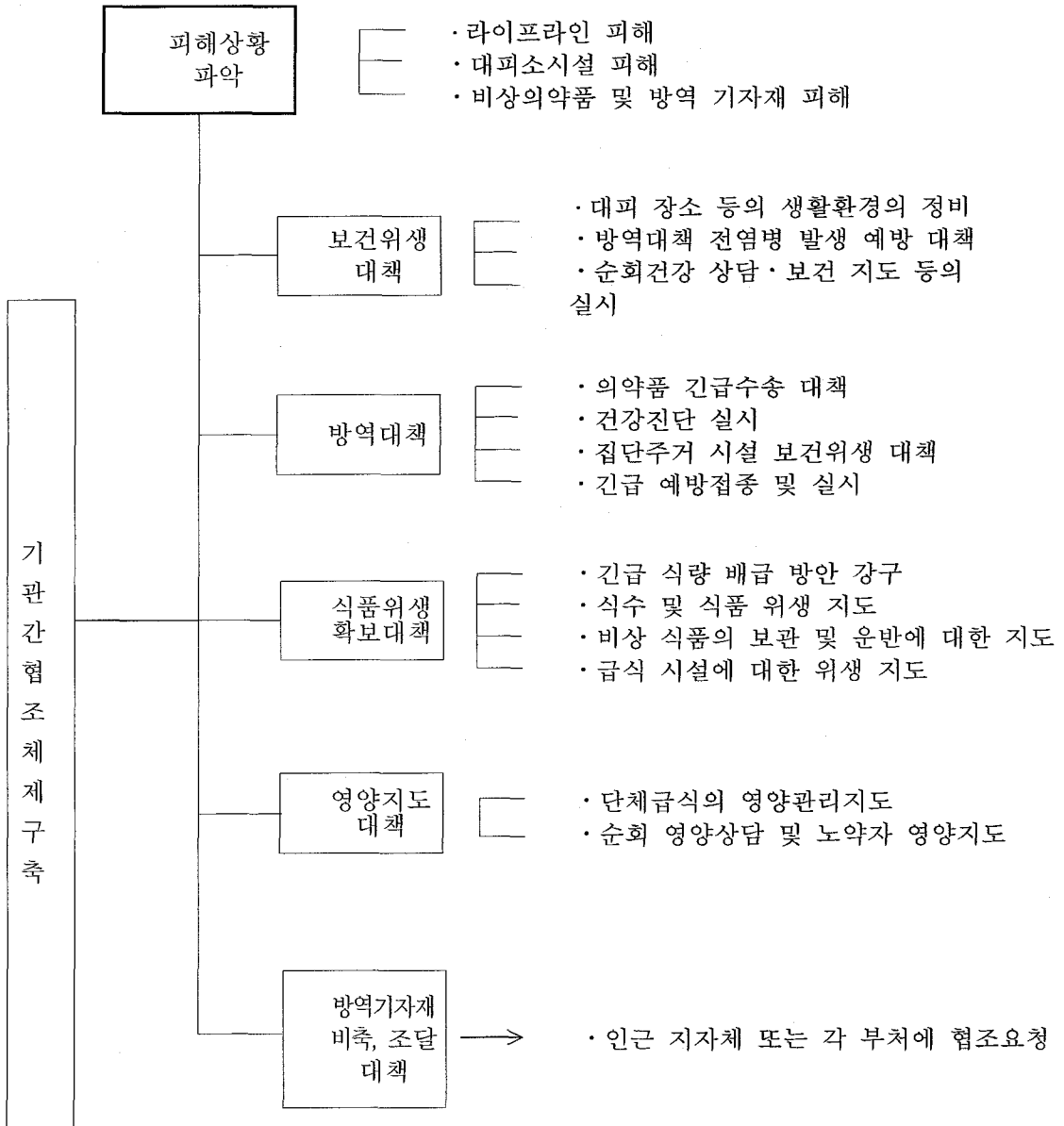
○ 방역물자 관리

- 최소한의 비축 관리량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점검
- 유효기간이 있는 소독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 기간내에 일반 소독용으로 대체 사용하여 변질방지

○ 사전 점검사항

- 수도, 전기, 가스 등 기초생활시설의 피해상황
- 이재민 대피소의 보건환경 및 수용 상황
- 임시 화장실의 위생상태 및 침수 가옥의 상황
- 방역 의약품 보관 장소의 피해상황
- 식품 및 식품생산 보관 관련시설의 피해상황
-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상태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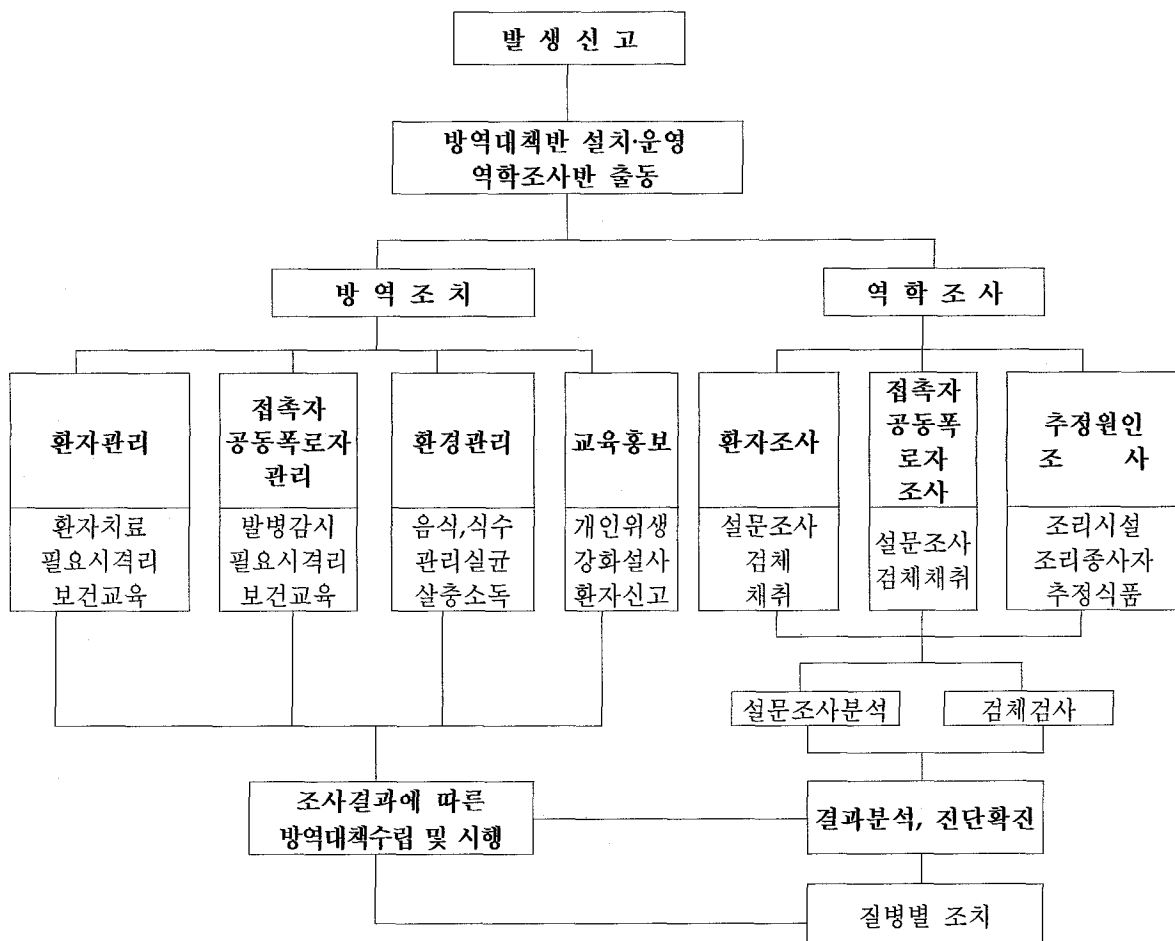


○ 집단 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방역대책반 운영〉

-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 초기 역학조사 및 상황 처리반 운영
- 방역조치
 - 1단계 :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관리
 - 적절한 치료 제공(필요시 항생제 내성검사의뢰)
 - 입원 및 격리 조치
 - 확진 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
 - 환자관리
 - 환자의 장내배설물 및 사용물품의 철저한 관리
 - 개인위생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등
 - 치료 완치시까지 음식조리 및 육아 금지
 - 고 위험군은 필요시 격리조치(집안격리 또는 입원격리)
 - 식품위생 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상수관리자 등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환자관리 실시
 - 제2단계 :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 및 공동폭로자 관리.
 - 주기적 발병여부 감시
 - 의심되는 질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발병여부 확인·조사
 - 고 위험군에 대한 필요시 격리조치
 - 보건교육 : 설사증상 발생시 즉시 보건소 내소 지도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접촉자 관리 실시(전염병역학조사지침 참조)
 - 제3단계 : 추정 원인 혹은 전파 경로에 대한 관리
 - 추정원인 음식물 폐기, 오염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조치 등
 -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 소독
 - 안전이 확보된 음식물 및 음용수 제공 조치

〈운영체제도〉



2) 부상자 진료 및 예방접종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의료구호반은 대피장소 및 재난현장에 구호소 설치
 - 중상자 응급처치 및 후방 의료기관으로 운송, 수송 곤란자 및 경상자 의료조치, 조산구호, 사망자 확인 사체 검안
- 의약품, 의료기자재 비축
 - 5일간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비축 보관
- 수인성전염병 예방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기본방침 및 추진방침

가) 기본방침

-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복구사업 수립 시행
- 민생관련 시설의 조기복구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
- 현지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시행으로 피해재발 방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선지원 후정산』 복구지원체제 정착

나) 추진방침

- 피해시설별 특성을 고려 완공목표 설정 추진
- 복구계획 확정 즉시 용역발주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계 등 조기 착공
- 개량복구 사업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피해재발 방지
- 시설별 세부복구추진지침에 의거 신속·정확한 복구비 집행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지보상 등 각종 지원단 구성 운영
- 통합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구공사 부실방지
- 복구사업 집행의 투명성·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점검 강화

2) 복구의 종류

가) 기능복원 복구

-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에 맞게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복구하는 것을 말함

나) 개선복구

- 기능복원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원인이 해소되지 않거나 제방 등 피해방지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반복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안전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선복구 대상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

- 제가 있는 시설 등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3) 피해조사

○ 우심 시·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 상 : 경미한 피해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 : 14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350억원인 시·군 : 20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600억원인 시·군 : 26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850억원인 시·군 : 32억원 미만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 : 38억원 미만
- 조사기관 : 경기도 및 자체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 이내
- 조사방법

- | | |
|------------|---------------------|
| • 조사반 편성 : |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자출 |
| • 기 간 : | 1주일 이내 |
| • 조 사 내 용 | - 피해원인 |
| | - 피해액 확인 |
| |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 • 조 사 방 법 | - 현지조사 |
| |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 • 보고서 내용 | - 조사 복명서 |
| | - 피해원인 분석 |
| |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 | - 재해대장 등 |

↓ 보 고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 우심 시·군이 발생한 경우

- 대 상 : 우심 시·군이 발생하더라도 1개 도에 국한되거나 중앙합동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 상 : 여러 시·군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중앙합동)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 이내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 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 건의사항
 - 기타 참고자료

↓ 보 고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 재난원인분석조사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강구를 위해 학계·민간전문가 등을 위주로 편성·운영
- 직무범위
 - 재난원인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홍수범람 흔적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측량,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재난원인 분석관련 기술검토와 자문 등

라.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1) 일반피해지역

- 시·군 단위로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 : 14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350억원인 시·군 : 20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600억원인 시·군 : 26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850억원인 시·군 : 32억원 이상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 : 38억원 이상
- 공공시설의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 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임
-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재난 기간중 전국에 걸쳐 1개이상의 시·군·구에 중앙지원을 하게 될 경우는 다음의 피해에 한하여 피해 전시·군·구 전지역에 복구비를 지원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2) 국고의 추가지원기준

- 법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에 의거 국고 추가지원

지원기준	구 분	국고의추가지원액
시·군의 최근 3년간 보통 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 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이	100억원 미만	[시·군비 총부담액-3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100 ~ 35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5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350 ~ 60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6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600 ~ 850억원	[시·군비 총부담액-8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군비 총부담액-9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국고추가지원율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정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시·군의 경우 :
$$\frac{\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2. 자치구의 경우 :
$$\frac{\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3.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해 예 방 노 력 지 수	추 가 지 원 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1.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 재해예방사업이라 함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군·구의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산점을 추가지원율에 부여할 수 있다.

마. 복구비 지원절차

○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복구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확정시달
 - 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부처 및 도에 통보
-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해의연금은 소관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지방 예산조치
 - 시장·군수는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3항)
-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 기획재정부에서는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 각 부처는 예산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바. 풍수해보험제도의 시행

- 풍수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물에 대한 기존의 무상복구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운영의 안전성 제고 및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
- 풍수해보험법령 제정으로 제도 시행 기틀 마련
 -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 주체, 보험가입, 손해평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법률로 명시
 - 보험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손실보전준비금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 협의, 효율적인 법령제정 추진

여 백

제4장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행동요령

1. 본부장(시장)

관할 구역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가. 대비단계

1.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수립 시행(법 제4조)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협조 및 파견요청(법 제17조)

- 재난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밖의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재난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 재난진행단계별 조치계획
 -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관할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3.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작성한 계획을 종합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확정된 안전관리계획을 경기도를 거쳐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법 제26조]

-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재난의 예측과 정보 전달체계의 구축
 -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 관리 규정의 제정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 그 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난피해 원인의 조사·분석
-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재난위험 요인 검토
- 재난과 관련된 통계의 조사·분석
-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 재난예방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함.
-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시행하는 재난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함.
-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조치 결과를 소방방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지정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정비·보수

2)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법 제30조]

- 특정관리대상시설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긴급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함.
 - 긴급한 사유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 계절적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3)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법 제31조)

-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안전조치명령서 통지]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설에 한한다]
- 보수 또는 보강 등 실시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안전조치명령서 내용

- 안전점검의 결과
-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 안전조치 실시기한
-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안전조치 방법
-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시킬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

4) 물자·자재의 비축 등(법 제35조)

-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 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함.
- 재난방지시설
 -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부속물 중 댐·하구둑·재방·호안·보·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 국토계획법에 의한 방재시설,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 시설
 - 농업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 사방시설, 댐
 - 유람선·낙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재난 예보·경보시설, 항만시설 등
- 물자 및 자재
 - 포대류·뭍음줄 등 수방자재
 -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 등 건설자재
 -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다. 대응단계

1. 재난발생시 동원명령(법 제39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민방위대의 동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
 - 군부대의 지원 요청

2. 대피명령 및 통행제한 등(법 제40조, 제 43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지역 안의 주민이나 당해지역 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다해 긴급수송 등을 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라. 복구단계

1. 복구계획의 수립 및 집행(법 제66조)

-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함.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가 부담하는 기준은 재난구호및재난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부담

2.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법 제67조)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법 제68조)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 제외)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

4.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61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고의 특별지원과 재난복구사업에 있어서 자부담분의 국고 및 지방비로 전환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에 있어서의 지원
 -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용자, 상환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2. 차장(부시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사고시 직무 대행
-

3. 통제관(도시건설국장)

-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며 비상단계에서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 단계별 근무체계의 개시 및 해제 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관계기관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 요청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지도 감독
 -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보·관리
 - 군장비 등 지원요청 및 협의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4. 담당관(재난안전관리과장)

- 본부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 실무반 복무 지도 감독
 - 본부 근무명령 및 근무상태 지도점검
 - 재해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수난구조 상황파악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상황 파악
 - 기상자료, 피해상황 자료 등 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5. 실 무 반

가. 상황총괄반

담 당 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반 장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반 원	재난안전관리과 5

○ 대비단계

- 상황실 관련 장비 운영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비상근무조 투입시 실무반별 좌석 배치 및 상황실 정리
- 비상근무자 도착시 실무반 비상근무수칙·실무반별 상황관리절 (유관기관 파견 근무일지철 포함)배포 및 미흡사항 처리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준비 및 개최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대응단계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특별지시사항 처리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정보 수집·보고
-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긴급상황관리 (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복구단계

- 인명피해 자료 취합 및 분석 관리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미담사례 분석
- 본부장 및 주요인사 현장 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무반에게 협조 요청

나. 행정지원반

담 당 관	행정과장
반 장	행정과 (행정담당)
반 원	행정 7

○ 대응단계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및 시정에 관한 보고자료 작성
- 당일 근무자 확인 및 복무단속

○ 복구단계

- 현장 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지원
- 각종 여론·정보수집 및 민심동향·민원처리
- 미담사례 조사 및 취합 보고
- 파악된 모든 상황을 상황총괄반에 제출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 시 신속한 정보 수집 및보고 등

다. 구조구급반

담 당 관	보건소장, 방호구조 과장, 경비교통 과장
반 장	보건행정담당, 방호구조 팀장, 경비교통 팀장
반 원	보건소 7, 안성소방서 10, 안성경찰서 10 ※ 1명 종합상황실 상주근무, 1명 긴급구조통제단 근무

○ 대비단계

- 의료시설, 물자·장비 확보
- 유관기관 구조구급 협조체계 가동
- 구조구급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장비, 응급실, 구조요원 등)

○ 대응단계

-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상황파악 관리

○ 복구단계

- 부상자 치료 및 후송 지원 협조
- 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자료제출
- 파악된 모든 자료를 상황총괄반에 제출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 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보고 등

※ 구조·구급 업무는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라. 비상지원반

담당관	해당과소 과장
반장	해당과소 담당
반원	해당과소 및 유관기관 파견자로 구성

○ 대비단계

- 관련실과 및 파견기관별 소관 현황 파악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대응단계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지도
- 파견기관의 언론보도·정보사항 등 확인 및 조치결과 보고
- 파견기관별 상황대처 관련 각종 회의, 대책, 지침, 지시사항 등에 대한 자치단체·관련기관의 이행실적 및 조치결과 파악

○ 복구단계

- 응급복구 및 구호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 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장비지원 협조요청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감독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확인
- 대국민 공지가 필요한 주요사항 상황관리
 - ① 철도, 교량, 도로, 항공 등 교통통제 및 해제 사항
 - ② 침수지역 퇴수 및 인명·대규모 피해지역 응급조치상황 등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위주로(도로 유실 : 도로교통과, 농경지 매몰 : 건설과) 최대한 활용, 상황파악
- 파악된 모든 자료를 상황총괄반에 제출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 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보고 등

마. 자원봉사지원반

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반장	주민생활서비스담당
반원	주민생활지원과 5
○ 대비단계 - 자원봉사단체 협조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 현황파악 - 자원봉사 장소, 인원 등 정확한 수요조사 및 자원봉사자의 적재적소 배 분·배치(지원내용, 필요장비 등 양식 작성) -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취약지역 예찰활동 ○ 대응단계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자원봉사단체 합동근무 실시 ○ 복구단계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자원봉사자 응급복구 투입현황 파악 -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민간단체 유기적인 협조하에 자원봉사자 정보수집 및 전달 - 파악된 모든 자료를 상황총괄반에 제출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 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보고 등	

바. 공보지원반

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반장	기획담당, 공보담당, 정보기획담당
반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2, 공보감사담당관실2, 정보통신과1
○ 대비단계 - 재난상황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민간공보위원, 시장 등의 정례·수시 브리핑 지원 ○ 대응단계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TV·라디오·신문사) - 홍보상황·실적 기록 및 정리·보고 -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 전파(TV·라디오·CATV·지역방송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직접 배포, 이메일·문자메시지 전송)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근무방법 》

1. 상황총괄반은 24시간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2. 근무장소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구조구급반은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5장 실·과·소별 주요임무

1.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2	-	2

○ 수해지역에 대한 지방재정지원

- 피해복구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함
- 수해복구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지원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2. 공보감사담당관실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5	1	4

가. 사전홍보

- 대국민 재난방지 예방홍보 실시
 - 행동요령, 사례별 매뉴얼 발간 배포 지원
- 안전사고 취약대상 안전점검 홍보 강화
 - 대형건물 및 다중이용 장소
 - 계절별 요인별 발생 가능성 제거 등

나. 재난발생시

- 대 언론 신속한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집중홍보
- 대언론 브리핑 등 언론취재 지원

다. 사후홍보

- 재난피해 복구상황 등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 국민화합, 갈등해소 등을 위한 대국민 여론 수렴 관련부서 제공
- 피해복구지원 등 국민 불편 최소화 홍보

대) 자연재난홍보방법 : 지역방송, 전광판 등

- 재난홍보 방법
 - 시내 소재 언론사
 - 안성시 출입 언론매체
 - 방 법 : 언론사 이메일 송부 [시출입 언론 : 직송]
- 홍보내용[협조사항]
 - 재난 유형별 보도자료 사전 제공(관련부서 매뉴얼로 수록)
 - 재난 상황대응 요령, 재난의 예상에 대한 정보
 - 대피의 시기, 장소, 요령에 대한 정보
 - 식수, 식량,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전달 받을 수 있는 방법
 - 주거시설의 복구 지원과 계획에 관한 정보
 - 그 외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 자연재난홍보방법 : CATV, 경기방송, 지방일간지, 라디오, 전광판, 인터넷 등

3. 행 정 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7	1	6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및 시정에 관한 보고자료 작성
- 당일 비상 근무자 확인 및 복무단속
- 근무명령 발령 (공문발송전 해당 부서와 서무에게 유선통보)

4. 주민생활지원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5	2	3

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식 확산 및 분위기 조성
- 자원봉사자의 발굴, 교육, 연계 배치 및 유지관리
- 자원봉사 활동기관 및 단체의 활동 조정
- 자원봉사자 및 단체 발굴 및 육성
-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나. 사전조치 및 대책수립

- 이재민 수용시설 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계획 수립
- 이재민 구호체계 확립 및 관계기관 협조 강화
- 자원봉사자 현황파악
- 자원봉사자 수요 조사 및 자원봉사자 적재적소 배분배치
- 자원봉사자 응급복구 투입 현황 파악

다. 재해구호 체계확립

- 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효율적인 구호와 복구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 및 시에 재해구호활동반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대처

라. 이재민 구호시설 운영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운영
 - 피해 이재민의 거주지역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용
 - 화장실, 간이목욕실확보·설치
 -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업무연락 지원
-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지원

마. 구호센터 설치 운영

- 구호센터는 이재민 구호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필요시 천막촌 설치
- 필요시 단체급식소, 긴급 방역소독 및 응급 의료 처치실, 구호품 보관소 등 설치
- 구호물품 접수·관리·배포 및 이에 수반된 행정조치

- 자원봉사단체 활용 및 육성
 - 대한적십자사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보완적 역할 담당
 - 기타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호반 내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봉사단체와 협조체제 유지
 - 재해복구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유도와 자원봉사 임시 센터 설치운영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장소 안내 및 자원봉사자 참여현황 및 실적 파악

바. 재해발생시

- 피해예상지역 주변 대피 등 동향파악

5. 사회복지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3	-	3

가. 사회복지시설 점검관리

- 사전대피 요령교육 및 시설물 안전점검(정기·수시)
- 시설운영 주체와 비상연락망 정비

나. 공설묘지 등 점검관리

- 우기동안 묘지담당공무원의 현장, 관리, 감독 등 점검강화
 - 묘원별 현장지도 감독책임자 지정·운영

6. 세 무 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	-	-	5	-	5

○ 지방세 감면 조치

- 수해로 인하여 멸실된 과세대상 물건
- 건축물 및 선박피해에 대해서는 멸실후, 신축복구시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정도와 상황실태 등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농경지 피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농지세는 최고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복구시까지 전액 면제하여 단지 농작물만 피해를 입은 경우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감면
- 피해주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조치 (※대상세목 :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전세목)
- 경작목적 농경지에 대하여는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를 감면

7. 회 계 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	-	-	5	-	5

가. 자연재난복구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 체결

- 자연재난복구공사는 천재·지변·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질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1호)
- 자연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집행이 곤란할 경우 긴급 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 : 마감전일부터 가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나. 신속한 자연재난복구를 위하여 선금 의무지급율을 상향하여 지급

- 2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이상
- 2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50% 이상

다. 청사내 시설물 및 정전시 비상발전기 가동계획 수립

8. 정보통신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3	-	3

가. 통신 상황파악

- 비상근무에 따른 정보·통신장비유지·관리지원
- 재난상황실용 통신회선 일제 점검 이상유무 확인
-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조체제 유지로 피해상황에 관한 정보 신속하게 수집 및 상황전파
- 기상관측장비 및 재해정보통신을 위한 회선 점검 이상유무 확인

나. 응급대책

- 중요회선 및 특설 전화설치(KT와 협조하여 설치)
-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직통전화 설치

다. 응급복구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실시하고 피해지역 지휘 통제를 위한 통신망 회선을 기간통신 사업자(KT 등)와 협조하여 최우선으로 복구
 - 제1순위 : 자연재난관계기관, 소방기관, 경찰서, 기상기관, 군관계시설, 수송확보에 직접 관계있는 기관
 - 제2순위 : 선거관리기관, 통신기관, 금융기관
 - 제3순위 : 지방공공단체

9. 문화체육관광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4	1	3

-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화재 및 재난사고 사전예방
- 안전점검실시
 - 기 간 : 2010. 1. 1. ~ 2010. 12. 31(연중실시)
- 중점점검사항
 - 문화재 및 주변시설물 등의 배수시설, 담장, 석축, 성벽, 축대, 산비탈면 절개지와 도요지 및 고분군 등에 대한 균열, 붕괴, 파손, 토사유실, 우려부 분 및 위험 요소 점검
 - 목조건축물 지반누수 여부점검 및 기와 고르기 등 정비
 - 시설물의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 이완상태 발생여부
 - 건조물 전기누전, 가스누설 점검 및 주변 전기선 정리
 - 소화기, 방화수, 소화전등 소화장비, 시설 작동상태 점검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현지보수 조치
 -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도-문화재청 합동으로 예방대책 강구 [문화재 전문가 현지조사 확인하여 도-문화재청 보고]
- 문화재 및 체육시설, 관광지 등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피해문화재 및 주변시설은 우선응급복구를 실시하여 피해확대를 방지하고 추후 완 벽 한 복구 실시
-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문화재청과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설치

10. 지역경제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2	-	2

1) 가스관련시설 재난대책

- 가스시설 안전점검
- 중점점검 사항
 - 관련규정과 시설의 적합여부
 - 각종 법정검사 이행여부(정기, 자체, 완성)
 - 공급자의무규정,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 안전관리자 확보상태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각종위해방지시설 확보여부(독성가스중화장치, 제독장비 등)
-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 자체점검 강화
 - 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자체시설 주기적 점검 실시
 - 타공사장 현황(노출배관, 시공자 현장 입회자, 공사내용 등) 중점 관리
 - 간부사원 가스시설 책임관리자 도입으로 가스사고 예방 및 가스 안전의식 고취
 -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가스시설 법정검사 강화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법정검사 : 완성검사(최초 시설 완성시), 정기검사(1회/년), 자체검사(2회/년)실시
 - 중점 점검사항
 - 각종배관, 탱크, 용기의 기밀유지 및 누설검사
 - 가스누설 자동차단기 등 안전장치류 작동상태 검사
 - 법정검사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검사실시
 - 가스책임배상보험 가입여부 조사

2) 일반가스 사고 발생시

- 사고구분 : 대형가스 사고 범위이외의 가스사고
 - 대책반 구성
 - 시 : 대책본부 가동 및 복구반 현장출동
 - 인접한시·군 : 기편성된 복구반을 사고지역에 출동지원
- 단계별 조치(행동)요령
 - 시장이 책임, 지도하에 복구작업 실시
 - 단계별 조치(행동)요령은 대형가스사고시와 동일

11. 농 정 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6	1	5

10.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가. 원예작물 및 하우스 시설관리

1) 수해대책

- 이랑을 높게 하고 적절한 배수로 확보
- 홍고주의 조기수확 및 지주보강과 결속보완
- 세력이 약한 어린나무, 열매가 많이 달린 가지는 지주 및 받침대를 설치하여 폭우로 인한 쓰러짐 방지
- 침·관수 지역은 조기배수, 작물의 잎줄기에 묻은 흙양금 등 불순물세척
- 배수후 표토를 긁어주어 토양의 공기유통을 촉진
- 병충해 방제 및 염면시비 실시
-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보파, 보식 또는 대파 실시

2) 풍해대책

- 풍해 상습지역은 방풍림, 방풍벽 설치
- 지주 재배작물은 지주대의 보강과 결속보완
- 과실, 낙과방지제를 살포하고 낙과시 상처방지를 위해 짚, 산야초 등 으로 표토 피복
- 수확기에 도달한 과실은 가능한 조기 수확
- 쓰러진 과수목은 일으켜 세우고 찢어진 가지는 제거후 약제를 살포하여 병해 방지
- 파열된 비닐하우스는 보수하여 풍해 경감
- 영농기전 수리시설 점검·정비
- 우기전 배수시설 중점 점검·정비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 재난취약시설은 재난위험지구로 중점관리하면서 개보수사업 우선추진
- 저지대 상습 침수농경지에 배수개선 우선추진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기 완료로 피해확산 방지 및 영농재개
- 저수지, 배수장 등 원상복구시 재난의 재발이 우려되는 주요 피해시설은 항구복구추진

나. 주요추진사항

- 장단기 기상예보, 하천수위 및 조고(潮高) 등의 재난관련 정보와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재난대비 행동요령을 마을 앰프, 라디오, TV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 농민 홍보·지도

12. 축 산 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3	1	2

- 가축 및 축산시설 피해상황 조사 및 보고
- 피해상황조사에 의한 응급 및 복구계획수립
- 방역반 동원 피해지역내 축사내외 긴급 소독 실시
- 축사내 오물, 흙 퍼내기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가축 매몰에 필요한 장비, 비닐, 석회 공급
- 사료·집유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 피해시설 응급복구로 피해확산 방지
- 현지 방문하여 시설피해상황 확인 및 조사·보고
- 재난대장 작성 및 복구액 산정

가. 축사·잡사

- 축사주위, 방목장, 분뇨처리장 등 배수로 정비
- 낡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 비상사료를 10일분 이상을 사전에 비축
- 가마니, 마대, 모래, 새끼 등을 준비
- 홍수, 폭설 등에 의한 위험 예상지역의 축사 및 가축을 사전 조사하여 우회도로 및 대피장소, 수송수단 등을 사전에 확보

나.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 긴급 방역비(지방비) 확보로 소독약, 예방약 등 사전에 비축
- 폐사 가축은 매몰 후 축사에 대한 소독 실시
- 가축 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13. 산림녹지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4	2	2

가. 꽃길·화단·화분관리

- 소형 4각 화분 안전장소 이동
- 꽃길·화단 조성지 배수상태 점검(침수지역 물빼기 실시)
- 상가, 가정내 비치 화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홍보
- 대형화분 결박 등 안전조치

나. 공원관리

- 공원이용통제 및 이용객 귀가 조치
- 공원시설물에 대한 순찰강화 및 보호조치
- 공원조경수에 대한 지주목 설치
- 피해상황조사에 의한 응급 및 복구계획수립
- 피해시설 응급복구로 피해확산 방지
- 현지 방문하여 시설피해상황 확인 및 조사·보고

- 재난대장 작성 및 복구액 산정
- 다. 초지관리 및 사료작물관리
 - 재난예방대책 지도 및 홍보
 - 침수·유실·매몰 등 피해예상 지역은 배수로정비 등 예방조치 계획을 통보
 - 피해지의 복구지원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등의 신속한 지원
 - 재파종 대상지역은 소요종자를 알선하고 파종지도

14. 환 경 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6	1	5

가. 수해발생에 따른 쓰레기 예상 발생량 파악

1) 수해쓰레기의 분류

- 수해쓰레기는 발생처에 따라 침수지역 쓰레기 및 수해지역 적체생활 쓰레기, 농경지·하천쓰레기, 댐 부유쓰레기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
- 수해쓰레기 발생량 파악
 - 쓰레기 발생량은 수해지역의 특징 및 수해정도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가옥,구조물 등 피해정도에 따라 추정 산정

나. 수해발생 긴급수거를 위한 조치

- 긴급 수거지역 선정 및 임시적환장 설치
- 수해지역 쓰레기 배출에 관한 임시조치 사항
 - 수해지역의 주민부담 경감 및 신속한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피해 지역의 쓰레기배출에 관한 임시조치
 - 침수지역 등 피해중심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종량제 봉투 미사용 수거
- 긴급 수거를 위한 운송장비·인력확보 조치

다. 수해쓰레기의 안전처리 실시

- 수해쓰레기의 쓰레기매립지 반입처리
 -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처리
- 수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강화
 - 수해지역쓰레기 긴급 수거·처리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지에 위장 반입하거나 수해지역에 불법 배출·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실시
 - 침수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은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정관리

라. 수해피해지역 일제 대청소 및 피해시설 복구

- 수해피해지역 일제 대청소 실시
- 수해피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완벽한 복구

마. 수해분뇨 수거·처리대책

- 수해분뇨 발생량 파악
- 수해분뇨의 긴급 수거 및 처리
- 수해피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완벽한 복구실시

15. 도시정책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2	-	2	3	-	3

- 인허가 취약지역 시설확인 및 지원대책 강구
- 현지 방문하여 시설피해상황 확인 및 조사·보고
-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지원

16. 건설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2	-	2	7	1	6

가. 도로 및 사회기반시설

-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
- 재해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교통두절대비 우회도로 지정 관리
- 재해취약지점의 장비 및 인력 사전배치 운용
- 장기 계속공사의 공정계획에 수방대책 및 동절기 제설, 결빙대책 반영 시행

나. 사업장의 수방대책 수립

- 공통사항
 - 공사장 주변 저지대 및 수해상습지를 조사하여 강우량 또는 하천수위를 기준으로 한 침수 구역도를 작성 비치
 - 수방체제를 정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 방재활동 실시
 - 피해 확대방지 및 복구공사를 위하여 보고체계 정비, 수방자재·장비 사전확보
 - 대외 관계기관과의 상호협조체계 강화로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처
 - 안전 등 수방의식을 고취시키고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다. 도 로

- 정비기간 : 우기이전(5월 15일 이전)
- 주요 취약요인
 - 호우시 도로파괴의 원인이 되는 균열노면과 매몰 우려 측구
 - 하천과 접하고 있는 도로법면 호안시설
 - 홍수시 침수 또는 유실 등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위험한 구간
 - 상습 침수도로 및 노후 위험교량 우회도로 지정

○ 재해위험에 대한 대비

라. 수리시설(농업기반시설)

- 저수지관리 행동요령
 -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 수위는 평상시와 우기, 수문이 있는 저수지와 없는 저수지로 구분 관리
 - 장마철대비 비상근무조 편성
 -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동원계획 수립

마. 피해상황 조사 및 보고

- 현지 방문하여 시설피해상황 확인 및 조사·보고
- 재난대장 작성 및 복구액 산정

17. 교통행정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5	1	4

- 긴급수송지원체제 구축
- 자체 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
 - 설치시기 : 자연재해 규모가 지역적이고 정부차원의 긴급 수송대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 자체 구성
 - 참여기관 : 관련행정기관, 단체 및 업체
- 특별수송대책의 내용
 - 자연재해 대책에 따른 교통시설물 현황파악 및 수송장애요인 분석
 - 긴급수송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
 - 수송량 조절을 위한 불요불급한 인원·차량 통행제한
 - 우회교통망 안내 및 홍보
 - 피해 교통시설의 응급복구 방안 강구 및 시행 등
- 교통시설물 관리

18. 토지민원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2	-	2

-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업무연락 지원
-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지원

19. 건축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5	1	4

가. 피해상황 파악

1) 주택 파손·유실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 1인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거용 1동만 피해로 함.
- 피해구분 : 전파·반파 구분은 피해면적을 및 용적을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2) 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점포, 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전·월세임주자도 포함(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시는 대상에 포함)
- 1인 소유의 건물에 2동 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 세입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피해보고는 하되 주택소유자에게 침수수리비 지급

나. 피해상황 보고

1) 피해 최초보고

- 즉시 유선보고, 주민 피해신고서 작성 후 전산보고서(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

2) 피해 최종보고

- 피해원인 종료후 14일 이내
- 재난확인조서 및 재난복구계획서(별첨)에 의한 공문 보고

3) 피해 확정보고

- 최종보고후 2일 이내
- 정밀피해조사결과 증감내역 및 재난대장 작성 보고

다. 복구계획 수립

- 복구포기와 관계없이 전 피해 동수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집행시 정산
- 반파 또는 침수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 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
-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보조금 및 융자금 전액 지원
- 피해가옥을 다른 시군구로 이축 복구할 경우 피해가옥의 복구비를 지원

라. 업무처리지침

1) 주택복구비 지급

- 주택전파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액을 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하지 아니함
- 주택반파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액의 2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80%는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되,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
- 반파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개축을 희망하는 경우 전파기준지원 금액의 50%를 공사착공시 선지급하고 공정율 50% 달성시 나머지 50%를 지급하되,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
- 적법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 수해(전파, 반파, 침수)를 입은자가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는 위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유의사항
 -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즉시 재난주택복구비 지원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지급 할 것
 - 전파의 경우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충분히 확보 할 것

2) 건축법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복구소요기간 단축

- 전파주택 건축허가 대상은 인·허가부서에서 직접 일괄 작성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즉시 일괄 처리(One-Stop)
- 신고대상 주택은 해당기관에서 즉시 처리
- 개인별 주택복구 일정을 파악 관리

3) 주택융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 피해사실확인서를 일괄발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통보 등으로 시간 단축
- 금융기관 주택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직접 면담 안내

- 용자신청 서류중 토지등기부등본, 허가서 사본 등은 자체 발급 및 대행으로 용자기 관에 직접 송부

20. 재난안전관리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5	4	1	17	5	12

가. 재해비상근무실시

- 재해 시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준비체제, 비상체제의 2단계로 구분 운영
- 비상연락망 정비로 신속하게 재해대책업무 수행
- 재해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복구장비 활용계획 수립
- 예비군, 민방위, 군부대 인력동원 및 장비지원 요청
- 민방위 경보시설 등을 통한 재해경보방송 실시
- 재해위험 시설물을 조사 연차적으로 개·보수 계획 수립 시행

나. 방재시설물 관리

- 배수펌프장(3개소)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24시간 근무체제로 집중호우시 신속한 펌프장 가동
- 배수펌프장의 동력상태 이상유무 및 비상발전기 점검
- 유수지 퇴적토사 준설 및 수초제거
- 민간인 책임관리자 지정운영

다. 응급복구용 물자 등 사전확보

-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말뚝, PP마대 등을 충분히 확보
- 재해시 장비가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체제 유지

라.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 유역별 종합치수대책 수립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조기추진
 - 하천유지관리 강화
-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근원적 수해방지에 역점
 - 개발사업 시행시 방재사전심의 기능강화
 - 유수유출 저감시설의 정비
- 재해위험요인 조기해소
 - 재해위험지구 조기정비 및 체계적 관리
 - 배수문·배수펌프장 정비
- 신속한 방재정보 제공으로 피해최소화
 -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운영
 - 수위·우량 자동관측시설 관리·운영

마. 하천시설

- 하천제방 및 부속공작물 유지관리 철저
 - 하천구역내 불법점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단속 철저
 - 하천의 통수단면 축소 등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공사용 자재 등의 사전 제거
 - 기존 제방은 봄, 가을 정기점검 외 수시로 점검하여 피해예방에 최선

바. 수리시설(농업기반시설)

1. 평상시(봄·가을철 및 동절기)

- 저수지관리 행동요령
 -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 수위는 평상시와 우기, 수문이 있는 저수지와 없는 저수지로 구분 관리
 - 장마철대비 비상근무조 편성
 -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동원계획 수립
 - 주요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파괴시 재산 및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
 - ① 유역이 넓어 집중 호우시 홍수량이 많고 하류에 도시 및 인구 밀집지역
 - ② 주민대피 홍보 및 대피장소 지정
 - ③ 인명 사고시 후송병원 지정
 - ④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 구축(도, 농업기반공사)
- 배수장관리 행동요령
 -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 배수장을 수시 시험 가동하여 기계, 전기 점검 관리
 - 하천변 저지대 수문작동상태 및 제방과 토출관 접합부 안전상태 점검
 - 비상대비 배수장 가동 가상훈련 실시
 - 침수 및 정전시 비상대책 임무부여
 - 배수장 가동 조작요령을 잘 보이는 출입문 입구 등에 비치하여 숙지
 - 장마철 비상근무조 편성
 - 동일수계 저수지, 배수장 등 시설물 파악
 - 주요배수장 비상대처계획 수립
 - ① 유역이 넓어 집중 호우시 홍수량이 많은 지역
 - ② 주민대피 홍보 및 대피장소 지정
 - ③ 인명 사고시 후송병원 지정
 - ④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 구축(도, 농업기반공사)

2. 초기대응(예비특보 발효시)

- 저수지관련 행동요령
 - 기상상황유지 및 비상근무실시
 - 재해취약시설 및 취약지역 순찰강화
 - 저수율이 높은 저수지는 물을 빼내어 수위를 낮춤
- 배수장관리 행동요령
 - 비상근무실시 및 취약지역 담당자 배치
 - 재해취약시설 및 취약지역 순찰 강화
 - 배수장은 즉시 가동상태로 준비

3. 사태진전(집중호우시)

- 저수지관련 행동요령
 - 비상근무 및 취약지역 담당자 근무
 - 방송 및 기상정보 청취
 - 저수지 수문개방 및 방류상황을 관련기관(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관리시설 위험여부 파악하여 붕괴위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배수장관리 행동요령
 - 비상근무실시 및 취약지역 담당자 근무
 - 방송 및 기상정보 청취
 - 배수장 가동 및 농경지 침수상황 파악
 - 하천수위 및 홍수배제량 점검
 - 하천제방에 설치된 토출관 접속구간 제방유실 여부 조사
 - 상류지역 방류량 및 도달시간 파악
 - 하천제방 붕괴 및 정전으로 배수장이 가동되지 않을 시
 - ① 정전시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여 응급복구
 - ② 감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 및 접근금지 표지판 설치
 - ③ 배수장 흡입부 오염물질 제거
- 피해상황 파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4. 복구단계

- 저수지 및 배수장관리 행동요령
 - 피해시설 응급복구로 피해확산 방지
 - 현지 방문하여 시설피해상황 확인 및 조사·보고
 - 제방붕괴 등 피해규모가 큰 시설은 농촌공사 기술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임시설계 및 시설진단
 - 재난대장 작성 및 복구액 산정

21. 도시개발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2	0	2

- 택지개발사업 공사장의 현장관리책임자 정위치 및 공사현장 안전조치
- 택지개발사업 공사장 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 피해조사 및 보고
 - 피해시설 응급복구로 피해확산 방지
 - 현지 방문하여 시설피해상황 확인 및 조사·보고
 - 재난대장 작성 및 복구액 산정

22. 보건소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7	1	6

가. 방역물자 확보·비축

- 대상물자 :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
- 비축기준 :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 사업지침에 의거 비축관리
- 보관장소 : 일반 방역약품과 같이 보건소에 비축 관리

나. 방역물자 관리

- 최소한의 비축 관리량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점검
- 유효기간이 있는 소독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 기간내에 일반 소독 용으로 대체 사용하여 변질방지

다. 이재민 의료구호

-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후송 체계 확립
- 방역 및 보건위생을 위한 사전점검
 - 이재민 대피소의 보건환경 및 수용상황
 - 임시화장실의 위생상태 및 침수가옥의 상황
 - 방역 의약품 보관 장소의 피해상황
 -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상태

라. 방역대책반의 운영(집단 환자 발생시)

- 초기역학조사 및 상황 처리
- 방역조치
 - 1단계 : 초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관리
 - ① 적절한 치료 제공(필요시 항생제 내성검사 의뢰)
 - ② 입원 및 격리 조치
 - ③ 확진 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
 - ④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환자관리 실시
 - 2단계 : 확산방지를 위해 접촉자 및 공동 폭로자 관리
 - ① 주기적 발병여부 감시
 - ② 고 위험군에 대한 필요시 격리 조치
 - ③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접촉자 관리 실시(전염병 역학조사 지침 참조)
 - 3단계 : 추정원인 혹은 전파 경로에 대한 관리
 - ① 추정원인 음식을 폐기, 오염 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조치 등
 - ②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 소독
 - ③ 안전이 확보된 음식물 및 음용수 제공 조치

23. 상수사업소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4	1	3

가. 긴급식수원확보 및 생활용수공급

- 비상급수시설, 인근정수장,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등을 활용하여 생활용수 공급
- 소방서,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 먹는샘물 업체의 협조를 받아 먹는샘물 공급

나. 수도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 피해시설 복구
 - 한국수자원공사, 시공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신속한 복구 작업 추진
 - 시설의 각종 기기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에 신속한 연락, 긴급복구
 -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정부의 복구계획에 따라 적정예산 확보·지원

24. 하수사업소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1	-	1	4	1	3

가. 하수시설

- 배수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순찰 실시 도로변 집수구 이물질 제거, 관로 준설
- 하수 관거 시설물 지속 점검

나. 하수·폐수·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 피해상황 파악 및 주민 대피명령
- 피해시설 복구
 - ① 시공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신속한 복구 작업 추진
 - ② 시설의 각종 기기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에 신속히 연락, 긴급복구
 - ③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정부의 복구계획에 따라 적정예산 확보·지원

25. 의회사무과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	-	-	2	-	2

-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업무연락 지원
-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지원

26. 농업기술센터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	-	-	7	-	7

- 농작물 및 과수 수방대책 수립 시행
- 농작물 및 과수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농작물 및 과수 피해복구 계획 수립

27. 시립도서관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	-	-	2	-	2

- 시민 및 학생 등 도서관 이용자 통제 여부 결정
-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계획 수립

28. 읍·면·동

상황단계별 근무인원	사전대비단계(주의보발효시)			비상단계(경보발효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45	-	45	75	-	75

- 가. 재해위험 및 취약지역 현황 파악
- 나. 주민 홍보 강화
 - 마을방송, 차량방송(태풍의 규모 및 내습 예상일, 지붕, 하우스 등 시설보호)
- 다. 수방·구조·복구·대민지원 장비점검
 - 양수기, 안전로프, 우의 등
 - 필요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장비지원 요청
- 라. 재해위험지역 순찰 및 주민통제 계획 수립
 - 비상근무조 6편성(근무조, 근무위치, 근무시간 등)
- 마. 재해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 출입금지 팻말 설치 등
- 바. 피해상황 접수, 유형별 분류 및 보고, 긴급조치
- 사. 자체복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응급복구 계획 수립
- 아. 피해보고 및 복구계획 수립
 - 피해시설물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및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시설피해상황 확인 및 조사·보고(관련 부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대장 작성 및 복구액 산정

제6장 국민행동요령

제1절 태 풍

1. 태풍주의보 발령시

가. 도시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정비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천둥·번개 등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의 도피 또는 누전·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국전력공사에 동시 연락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등

나. 농촌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 준비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천둥·번개 등 뇌우시 가로수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지붕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의 도피 또는 누전·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국전력공사에 동시 연락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점검
- 소하천 및 간이 취입보 등의 정비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촌시설보호 및 보강 등

다. 하천주변·해안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조치
- 가로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해안도로 운행제한
- 천둥·번개 등 뇌우시 낮은지역 또는 인근 가옥으로 대피
- 입간판, 가옥지붕 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의 도괴 또는 누전·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국전력 공사에 동시 연락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해안·저지대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준비
-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결박 및 조업어선 신속조치
- 철거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
- 해수욕장 폐쇄 및 가 시설물 철거 등

2. 태풍경보 발령시

가. 도시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접근 금지
-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천둥·번개 등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위험 시설물의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나. 농촌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 준비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천둥·번개 등 뇌우시 가로수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위험시설물의 사전제거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보수
- 논둑 보수 및 물꼬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산사태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림시설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 이웃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 확인
-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결박조치 등

다. 하천주변·해안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천둥·번개 등 낙뢰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 시설물의 사전제거
- 해안도로 차량이용 통제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연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 소규모 교량 등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어구 등 안전지대 이동조치
- 고층건물, 해안가, 항구, 낙하물 발생예상지역 등 접근금지
-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제2절 호 우

1. 호우주의보 발령시

가. 도시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정비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천둥·번개 등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의 도괴 또는 누전·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국전력공사에 동시 연락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 청취 등

나. 농촌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 준비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천둥·번개 등 뇌우시 가로수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지붕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의 도괴 또는 누전·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국전력 공사에 동시 연락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 청취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점검
- 소하천 및 간이 취입보 등의 정비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촌시설보호 및 보강 등

다. 하천주변·해안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조치
- 가로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해안도로 운행제한
- 천둥·번개 등 뇌우시 낮은지역 또는 인근 가옥으로 대피
- 입간판, 가옥지붕 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의 도괴 또는 누전·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국전력

공사에 동시 연락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 청취
- 해안·저지대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준비
-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결박 및 조업어선 신속조치
-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
- 해수욕장 폐쇄 및 가 시설물 철거 등

2. 호우정보 발령시

가. 도시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접근 금지
-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천둥·번개 등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위험 시설물의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나. 농촌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 준비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천둥·번개 등 뇌우시 가로수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위험시설물의 사전제거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보수
- 논둑 보수 및 물꼬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산사태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림시설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 이웃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 확인
-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결박조치 등

다. 하천주변 · 해안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천둥·번개 등 낙뢰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 시설물의 사전제거
- 해안도로 차량이용 통제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연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 소규모 교량 등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어구 등 안전지대 이동조치
- 고층건물, 해안가, 항구, 낙하물 발생예상지역 등 접근금지
-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제3절 홍 수

가. 홍수가 예상될때

-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나 등을 준비
-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 두기
-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밖으로 외출 금지
-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접근금지
-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무릎 위로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걸어다니지 말고 자동차 운전 금지
-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만약 도로를 지날 경우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
- 연못, 구덩이 등에 관한 안전표지판을 잘 살펴보기
- 우물은 오염될 수 있으니 마실 물은 미리 준비

나. 물이 밀려들어 올때

-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
- TV와 라디오를 주의 깊게 청취
- 하천의 물이 갑자기 많아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
- 만일 독의 물이 넘치고 하수도로 물이 나온다면 다음의 사항을 준비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주변을 정비
 -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그기
 -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받아두기
- 홍수에 의하여 밀려온 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
-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말기
-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금지

다. 물이 빠져나가고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지기(기름이나 오수로 오염되었을 경우가 많음)
-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려 갈수 있으니 주의
-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화되어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
- 재난발생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말기
-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기

제4절 대 설

1. 가정

- 내집앞,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우기
- 빙판길에 모래를 뿌려서 미끄럼사고 방지하기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하기

2. 농어촌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 시설은 받침대 보강 등 보호 조치하기
- 빈 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 보호하기
- 비닐찍기 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기

3. 해안

- 각종 선박 등 대피, 결박 조치하기
- 수산 중·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기 않도록 보온 조치하기
- 주민, 낚시객, 행락객 등 해안가 접근 하지 않기

4. 차량운전자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하기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삽 등) 휴대하기
- 라디오 등을 청취하여 교통상황 파악하기
- 용이한 눈 치우기를 위해 도로변 주차 삼가기
- 미끄럼방지를 위해 짐과 사람 뒤쪽에 태우기
- 비상시 대비 보험회사 등 긴급출동번호 알아두기

제5절 황 사

1. 황사 발생전

가. 가정에서 대비사항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등을 준비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등을 준비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등을 준비

나. 교육기관에서 대비사항

- 기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신중히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휴업 조치시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발생대피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다. 농축산 농가에서 대비사항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장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2. 황사 발생중

가. 가정에서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을 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한 실내 적정습도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나. 교육기관에서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황사발생기간중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중지 및 연기 조치

다. 농축산 농가에서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에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노출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조,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생산공정 불량률 발생방지를 위한 작업일정 조정 및 상품포장, 청결상태 유지

3. 황사발생후

가. 가정에서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 정화
-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후 사용

나. 교육기관에서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 학생건강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사후조치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 황사발생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 실시

다. 농축산 농가에서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실시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소독제 등을 이용 분무소독 실시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

대상가축 및 의심증상

- 대상가축 : 소, 양, 염소, 사슴, 돼지 등 우제류동물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
- 구제역, 감염가축의 의심증상
 - 고열, 식욕부진, 유량감소
 - 심한 거품성 침을 많이 흘림
 - 코, 입, 입술 및 혀 등에 물집(수포) 또는 궤양형성
 - 젖꼭지에 수포, 가피, 궤양이 형성
 - 발굽(지간부)에 수포, 가피 및 궤양으로 발을 찢뚫거리다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 등

※ 기타 사업장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자재, 제품 등은 세척

제6절 가 물

1. 가정에서

- 변기에 벽돌을 넣어 수세식 화장실 물을 아낀다.
- 세탁물을 모아서 한번에 한다.
- 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를 달아서 사용한다.
- 이웃 주민과 절수운동을 계획한다.
- 공공시설물 물 낭비를 확인한다.
- 자동차 세차의 횟수를 줄인다.
- 물탱크 누수를 확인한다.
- 오래된 수도 파이프의 누수를 확인한다.
- 가정마다 10% 절수운동을 시작한다.
- 세탁 행굼물을 화장실 청소 등으로 재사용한다.
- 목욕물을 수세식 변기 등에 재사용한다.

2. 농가에서

가. 벼

벼 생육단계별 가뭄피해 양상

- 발 아 기 : 발아불량
- 줄 아 기 : 발아 및 줄아지연·불량, 유아생장 억제
- 묘 대 기 :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활 착 기 : 활착 지연·불량,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분 얼 기 : 새끼치기 지연·감소,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유수형성기 : 유수분화 지연, 지경 및 영화수 감소,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감수분열기 : 불임 유발,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출수개화기 : 출소 및 개화지연, 불임유발, 백수발생,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 등 숙 기 : 등숙지연·불량, 임중 및 미질저하, 잎 위조, 황변 및 고사

1) 못자리 설치전

- 논물가두기 추진
 - 수리불안전답, 천수답, 저수율 부족지역 등 중점 추진
- 용수부족대책 수립
 - 용수확보 가능답 : 다단양수, 양수논물가두기, 물아껴대기 실천

- 용수확보 불가능지역 : 건답직파, 만식재배 유도
- 늦모내기에 강한 품종 및 건답직파 적응품종 확보
 - 늦모내기에 강한 품종(만파만식에 “중강”이상 품종) : 20품종
 - 조생종(11품종) : 오대, 운봉, 금오, 진부, 상주, 대진, 신운봉, 그루, 운두, 만안, 문장
 - 중생종(9품종) : 화영, 안산, 서진, 금오벼1호, 영해, 금오벼2호, 소비, 해평, 만풍벼
 - 건답직파 적응품종
 - 조생종(10) : 소백, 운봉, 상주, 상산, 삼백, 삼천, 중화, 대진, 오대, 금오
 - 중생종(16) : 화성, 팔공, 장안, 서안, 안중, 간척, 농안, 주안, 안산, 내풍, 서진, 광안, 중안, 화안, 화중, 화선찰
 - 만생종(12) : 일품, 화남, 대안, 금남, 일미, 화삼, 동안, 대산, 화명, 남평, 만금, 향남

2) 못자리 관리

- 모 노화 방지(물 걸러대기, 질소 감비, 상자 떼어놓기)
- 관수가 어려운 못자리는 육묘상자를 물이 있는 곳에 임시 저장
- 모가 노화되어 모내기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리 어린모로 대파
- 예비모로 어린모 파종시는 적기 파종 늦심기에 강한 조생종 선택

3) 모내기 추진

- 물 확보 논부터 모내기 추진

【이앙용수 기준(3cm 담수)】

(‘81 농기연)

수분상태	양 수 시(kℓ/10a)			강 우 시(mm)		
	사 질	양 질	식 질	사 질	양 질	식 질
백 건(25%)	114	127	133	71	77	80
균 열(50%)	86	75	98	56	61	63
실 금(75%)	50	62	64	40	48	49
포 화(100)	30	30	30	30	30	30

※ 기준강우 : 20mm이상

- 불시 출수 되기 쉬운 품종, 늦심기에 약한 품종, 모를 기른 일수가 긴 순으로 모내기 추진
 - 불시출수 되기 쉬운 품종 : 소백, 운봉, 둔내, 오봉, 오대, 금오, 신운봉, 상주, 진부울, 상산, 진부찰, 남원, 조령, 삼백, 운장, 삼천, 진부, 진미,

중화, 대진, 화동, 그루, 상주찰벼, 등 조생종

- 늦심기 할 때는 논을 잘 고르고 논물을 알이 대고 얇게 심기
- 늦심기 때는 생육이 짧고 건토 효과가 있으므로 질소질비료 20~30% 감량시용(밀거름 80%, 이삭거름 20%)
- 웃자란 모는 잎 끝을 잘라 내고(상자료 20cm) 도열병약과 살충제를 섞어 뿌린 후 모내기(배계 심고 포기당 6~7본으로 밀식)
- 건답직파 질수 재배시에는 파종량을 10a당 10kg정도 늘려 파종

4) 본논관리

- 모낸 후에도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급수 대책 강구
 - 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활착기, 분얼기, 유수형성기에 중점적으로 관개 실시
 - 특히 이삭 생길때부터 이삭 쫄 때는 반드시 양수급수 추진

【논토양별(3cm 담수시)수분 지속일수】

(‘81 농기연)

구분	포화(수분100%)	실금(75%)	균열(50%)	백건(25%)
사질논	2일	4	9	18
양질논	4일	9	16	27
식질논	5일	11	18	30

- 물 걸러대기 실시 및 물 손실 방지
(수로, 제방, 논두렁 등 정비 및 비닐깔기)
- 물이 부족할 때 생육 단계별 물 아껴 대기 실천
-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수로, 논두렁 정비 및 비닐깔기 등

【물이 부족할 때 물아껴대기 요령】

생육단계	물이 약간 부족할 때	물이 심히 부족할 때
참새끼 치는 동안	습윤상태 유지	물 끊 기
헛새끼 치는 동안	물 끊 기	“
어린이삭이 생길 때	1~2회 물대기	습윤상태 유지
이삭이벌때	“	1~2회 물대기
이삭이떨때	“	“
풀익음 때(유숙기)	습윤상태 유지	물 끊 기

- 찬물대는논 물온도 높여대기 : 우회수로, 온수지 설치
- 새끼칠거름 알맞은 양 주기(논물마른논은 주지 않음)
- 늦모내기로 불시 출수 되었을 때는 새끼칠거름 주기 등 정상관리로 새끼치기 촉진
- 도열병, 저온성 해충 등 침투성농약 살포로 병해충 방제 철저
- 출수지연시 특수비료 엽면살포로 등숙향상
 - 다찌가렌 : 출수전 15일~출수기에 500배액으로 90ℓ/10a 살포
 - 인산·칼리 : 출수후 10일에 0.5%액으로 140ℓ/10a 살포

5) 건답직파논 관리

- 내한발성 품종선택, 파종시 논표면 진압
- 가급적 휴립파종으로 가뭄시 용수로 및 폭우가 내릴 경우 배수로로 활용
- 도복방지 대책
 - 적량파종, 질소질비료 덜주기, 도복, 경감제 사용

6) 대파작물 재배

-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를 못낸 논은 대파작물 재배
 - 대파작물 : 메밀, 가을감자, 당근, 무, 배추, 시금치, 상추 등

나. 밭작물

1) 콩, 고구마, 참깨, 땅콩

- 파종전 대책
 - 토양수분이 적습포장(60%이상)은 적기내에 파종
 - 토양수분이 건조한 포장(40%미만)은 강우후 파종
 - 만파시는 적기 파종시보다 20~30% 증량 파종
 - 수분증발 억제를 위한 피복재배지도
 - 파종한계기 이후 대파작물 파종
- 파종후 대책
 - 물대기 가능지역은 헛골에 물대기 실시
 - 관수 불가능지는 산야초 및 비닐 피복으로 수분 증발 억제
 - 김매기를 겸한 표토천경 및 배토로 수분흡수 경합 완화
 - 결주 보식용 예비묘판 설치

2) 마늘·양파

- 관수 가능포장은 구 비대기에 10일 간격 관수
- 관수 불가능지역은 천경 실시후 이랑 유기물 피복

(절단벚짚, 퇴비, 왕겨 등)

- 가뭄우려지역은 비닐피복 재배
 - 가뭄시 스프링클러를 가동하여 물뿌리기 실시
 - 추비는 물비료로 사용

3) 고 추

- 육묘중인 고추묘 관리
 - 관수 가능한 포장에 육묘상 설치
 - 가뭄으로 아주심기가 늦어질 경우 포트 간격을 넓혀 주고 물주기를 제한하여 생육 조절(아주심기에 알맞은 잎 수 : 10~13매)
- 생육기간이 연장되어 생육이 불량한 묘는 요소 0.2%액을 5~7일 간격으로 엽면시비하여 모 노화 방지
- 정식 포장 관리
 - 정식전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하여 관수
 - 관수 가능 포장은 5~7일 간격으로 관수
 - 비닐피복 재배로 토양수분 증발 억제
 - 경사지는 분무기 노즐을 빼고 호스로 고추 포기에 관주
(주당 0.5~1.0ℓ 정도 관주)
 - 관수가 불가능한 포장은 이동식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 관수
 - 생육 불량 포장 요소 0.2%액 엽면시비
 - 한발시는 진딧물 등 충해 방제로 바이러스 감염 예방
 - 가뭄시 석회 결핍증 발생우려 : 엽화칼슘 0.3%액 엽면 살포

4) 봄무·배추

- 육묘중인 배추
 - 하우스내 또는 관수 가능한 포장에 육묘상 설치
(관수 가능한 묘상은 5~7일 간격으로 오전중에 관수)
 - 본포에 아주심기가 늦어질 경우 포트 간격을 넓혀 주고 물주기를 제한하여 생육 조절
 - 생육이 불량한 묘는 요소 0.2%액 엽면 살포
- 본포 정식 및 관리
 - 비닐피복재배로 토양수분 증발 억제
 - 정식시 정식 구덩이 관수후 정식
 - 무 줄뿌림시는 평이랑으로 파종하되 파종량을 늘려 파종
 - 웃거름은 물비료로 사용
 - 관수 불가능한 포장은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후 관수

- 김매기를 겸하여 겉흙을 긁어 주고 고랑 피복으로 수분증발 억제
- 진딧물 사전 방제
- 건조시에는 무게 감소 및 석회 결핍 발생

5) 과채류(수박, 참외)

- 육묘중인 과채류 관리
 - 관수 가능한 포장에 육묘상 설치
 - 가뭄으로 아주심기가 늦어질 경우 포트 간격을 넓혀 주고 물주기를 제한하여 생육 조절(아주심기 알맞은 잎 수 4~5매)
 - 생육기간이 연장되어 생육이 불량한 묘는 요소 0.2%액을 5~7일 간격으로 엽면 시비하여 묘 노화 방지
- 본포정식 및 관리
 - 정식후에는 충분하게 물을 주고 일시적으로 햇빛을 가려줌
 - 점적관수시설 이용 물주기
 - 관수 불가능포장은 이동식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
 - 물덜 수 없는 밭은 6~10일 간격으로 분무기 노즐을 빼고 포기당 0.5~1.0ℓ 정도 물을 대줌
 - 짚, 풀, 비닐 등을 덮어 수분 증발 억제
 - 가뭄으로 생육이 불량한 밭은 요소 0.2%액을 4~5일 간격으로 2~3회 잎에 뿌려 줌
 - 벚짚이나 풀 등으로 열매를 덮어 줌
 - 진딧물 사전 방제
 - 순뻗이 현상, 변형과, 열과 등 생리장애 사전 방지

다. 과 수

1) 수분증발 및 소모방지

- 유목은 뿌리가 분포된 지면을 두껍게 복토
- 잡초제거후 얇이 갈이 및 불필요한 도장지 제거
- 나무 뿌리가 분포된 부분의 지면에 토비, 짚, 풀, 비닐 등을 깔아주기
- 조기 꽃봉오리 및 열매숙기로 과일간의 양수분 소모 및 흡수경쟁 방지, 불량과 수시 적과

2) 관 수

- 수원을 개발하여 최대한 물주기(20~30M/T/10a)
- 물주기는 7~15일간 30mm정도의 강우가 없을 때 시작하고 일단

- 물주기를 시작하면 일정한 간격을 지켜서 계속 실시
- 개화기 고온·건조시 살수처리로 착과율 향상(2000. 원예연, 나주배연)
 - 착과율(공시품종 : 행수) : 지표살수 146%, 수관살수 122, 무살수 100

【과수원 1회 관수량 및 관수간격】

토 양	관 수 량	관 수 간 격
사 질	20mm	4일
양 질	30mm	7일
점 질	35mm	9일

- 비닐 공대 이용 관수
 - 비닐 공대에 물을 담고 나뭇가지 등에 고정 시킨후 바늘구멍을 내어 점적관수 대응
- 과수원의 물주기는 물 소비량이 적고 노력이 절감되는 토양수분 감응센서 이용 자동관수 실시

【배 과수원 관수량 절감효과】

(‘95 원예연)

관수제어방식	관수량(㎡/ha/월)	총관수량(㎡/ha/년)	관수시물값(원/ha)
토양수분감응센서	46	184	58,880(74%)
관행(관수시간조절)	62	248	79,360(100%)

3) 시 비

- 가뭄으로 양분흡수가 잘 안되어 생육이 불량한 때는 요소 0.3%액을 잎에 뿌려주고 포도원이나 사과 유목원에서는 붕소 0.2%액 엽면 살포

4) 병해충 방제

- 각종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되 특히 가물 때에는 진딧물, 응애, 잎말이 나방 등의 발생이 많으므로 중점 방제

5) 기 타

- 과실 햇볕 데임, 수분 증발 및 소모 방지
- 가능한 한 살균제는 석회보르도액 사용
- 염화칼슘 0.3~0.4%액을 잎과 열매에 살포

제7절 지 진

1.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가. 집안에 있을 때

-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함.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임.
 -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꼭 잡고 몸을 피함.
 -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함.
※ 가구 등이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불이 났을 경우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함.
 - 대지진 발생시에는 소방차에 의한 소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불을 끄려는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지진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됨.
 - 가족은 물론 이웃사람들과도 서로 협력해서 초기 소화를 하는 것이 큰 화재를 막기 위하여 극히 중요함.
※ 평소부터,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히도록 함.
-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 나가지 말아야 함.
 - 최근에 건축된 건물은 내진성을 고려해서 무너질 우려는 적음.
 - 블록담이나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가까이에 가서는 안됨.
※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 나가면 유리창이나 기와,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대단히 위험함.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여야 함.
 -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등은 지진에 의한 문이 비뚤어져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힌 사례가 있음.
 - 만일 갇혀질 사태를 대비해서 대피방법에 관해 미리 준비해 둬.

나. 집 밖에 있을 때

- 블록담이나 대문 기둥 등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함.
 - 땅이 크게 흔들리고 서 있을 수 없게 되면 무엇인가 기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함.
 - 가까이에 있는 대문기둥이나 담이 우선 그 대상이 될 것임.
 -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실은 매우

위험한 것임.

※ 과거 대지진시 블록담이나 대문기둥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음.

- 변화가나 빌딩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낙하물임.
 - 손이나 가방 등 들고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음.
 - 빌딩가 등에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건물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함.

다. 다중이용시설에 있을 때

-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큰 혼란의 발생임.
- 이러한 장소에서는 종업원이나 경비원 등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함.
-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연기가 짙아지게 되므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도록 함.
- ※ 지하상가는 지진에 대해서 비교적 안전하며 또한 정전되더라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함.

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 만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신속하게 내려서 안전을 확인한 후 대피함.
- 고층빌딩이나 최근에 건설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관제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지진 발생시에는 제어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서 엘리베이터는 가까운 층에서 정지하도록 되어 있음.
- 만일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해서 구조를 구함.
- ※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됨.

마. 전철을 타고 있을 때

- 큰 충격이 닥쳐오므로 화물 선반의 횡축이나 손잡이 등을 꼭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함.
- 그 후 차내방송 등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선부른 행동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면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됨.
- 진도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철은 일시적으로 운행이 정지되며 정차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다칠 위험이 있음.
- 지하철역에서는 정전되었을 때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도록 되어 있음.

서둘러서 출구로 뛰어나가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며, 큰 혼란의 원인이 되니 구내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함.

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난 듯한 상태가 되어 핸들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제대로 운전을 못하게 되니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정차시킴.
-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부분을 비워 둠.
-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금지이니 카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함.
-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화재발생시에 차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열쇠를 꽂은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도록 함.

사.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함.
- 해안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지진을 느끼거나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시·군의 안내방송이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정보를 시청해서 신속한 곳으로 대피함.

아.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 대지진이 발생한 경우 많은 부상자의 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정전이나 교통정체 등으로 구급대, 의료기관도 평상시와 같은 활동을 못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재해발생시에는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평소부터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배워둠.

자. 피난은 마지막 수단

- 지진에 의한 화재가 크게 확대되어서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속히 대피함.
- 대피방법은 방재시민조직이나 수방단 등을 단위로 해서 관계공무원이나 경찰관등의 안내에 따르고, 최소한의 소지품만을 가지고 걸어서 가는 것이 원칙임.
-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한 대피는 절대 안됨.
-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등의 피난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평소부터 이웃사람들과 대피방법에 대하여 미리 의논해서결정해 두는 것이 필요함.

차. 올바른 정보를 따라서 올바른 행동을

- 대지진 발생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되므로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사람 한사람이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극히 중요함.
- 휴대 라디오 등으로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며 시나 경찰, 소방서 등 방재기관에서 직접 얻은 정보를 신뢰하고, 결코 근거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믿고 행동해선 안 됨.

2. 지진발생시 안전수칙

- 몸의 안전이 최우선
 -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며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가리고, 엎드리고, 붙잡아 몸을 안전하게 보호함.
- 전열기구는 신속하게 끌 것
 - 절대 당황하지 말고 사용하던 전열기구, 가스렌지 등을 확실하게 끄.
- 비상탈출구 확보
 -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함.
- 화재는 초기에 소화
 - “불이야”하고 크게 소리질러 주위의 도움을 청하고 소화기 등으로 즉시 소화함.
- 침착하게 행동
 -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 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함.
- 대피할 장소 사전 확인
 - 좁은 길, 담 근처로 피신하지 말고 벽, 문기둥, 자판기 등은 넘어지기 쉬우므로 주의함.
- 산사태와 해일에 주의
 - 산악지역이나 해안에서 지진을 만나면 산사태의 위험이 없는 평지나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언덕이나 산으로 신속히 대피함.
- 대피는 도보로 짐은 최소로
 - 지정된 장소에 걸어서 대피하고 짐은 최소로 짊어져 양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서로 도와 구조
 - 먼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한 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므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먼저 구조, 구급, 구호함.
-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 것
 - 라디오, TV,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함.

3. 평소의 지진 대비사항

- 우리집의 안전대책은 완전한가?
 - 옷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등이 넘어 지지 않도록 고정 기구 등으로 고정해 둬.
 - 그릇장이나 창문 등의 유리부분에는 깨졌을 때 흩어지지 않도록 투명필름이나 테이프를 붙여 둬.
 - 지진의 진동으로 안에 있는 물건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찬장의 문 등은 고정기구로 단단히 고정해 둬.
 - 텔레비전이나 화병 등을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함.
 - 마루에 흩어진 유리 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평소부터 두꺼운 슬리퍼 등을 준비해 둬.
 - 가구의 배치 등에 유의해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둬.
 - 열기구나 위험물의 보관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함.
 - 블록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두며 가능하면 블록담을 피하고 산울타리로 함.
 - 불을 사용하는 장소 주위에 소방기구를 비치해 둬.
 - 건물이나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리함.
- 가정에서는 비상용품을 항상 준비해 두자!
- 가정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방재회의를 갖자!
 - 집안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 소화기구 설치장소의 확인 및 사용요령 숙지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가족간의 연락방법
 - 대피장소, 대피도로의 확인
 - 응급조치의 지식을 배워 둬.
 - 화기기구 등의 안전점검
 - 비상휴대품용 상자의 점검, 보관장소의 확인
 - 가족의 역할분담
- 평소부터 이웃집과의 협력체제를
 -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넓은 범위에 걸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평소부터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람들과의 친목을 가져화재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협력체제를 구축해 두는 것이 필요함.
 - 평소부터 이웃사람들과 급할 때의 협력체제에 대해서 논의
 - 방재시민조직에 적극적으로 참가
 - 방재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

제8절 폭 열

1. 폭염시 국민행동 요령

가.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한다.

-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가
-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식힌다.
- 외출시 가볍고 밝은 색 계통의 헐렁하고 얇은 옷을 입고,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써서 얼굴을 보호한다.
-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한다.

나.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마신다.

- 육류, 생선, 콩, 잡곡 등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한다. 단,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한다.
-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즐겨 먹는다.
- 탄산, 알코올,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신다.

다. 위생적인 생활을 습관화 한다.

- 반드시 끓인 물을 섭취하고, 날 음식은 삼간다.
- 손발을 깨끗이 하고 손톱은 짧게 깎는다.
-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리고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조리기구는 청결히 사용한다.

라.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한다.

- 실내외 온도차는 5℃ 내외로 유지, 냉방병을 예방한다.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
- 50분 가동 후 10분은 꼭 환기하고, 2주에 한번 필터 청소를 한다.
- 밤새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는 것은 위험하므로 방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는 전원을 끈다.
- 에어컨 가동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 냉방효과를 향상시킨다.

마. 동료이웃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

- 주변의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 건강상태를 보살핀다.
- 야외 현장이나 고온 작업장에서 동료 몸상태에 서로 유의하고 필요시도움을 준다.

- 응급환자 발생시 119, 1339 등에 연락하고, 구급차 도착시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한다.

바. 만일의 정전사태에 대비한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등을 마련한다.
- 정전시 주요 뉴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한다.
- 정전시에 아파트에서는 관리 사무소에, 일반주택의 경우 123번으로 신고한다.

사. 농가에서는 가축 및 작물관리에 유의한다.

- 축사 천장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한다.
- 축사주변과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한다.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한다.
- 돈사, 계사 천장에 물 분무장치 설치로 복사열을 방지한다.
- 축사 및 운동장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인다.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주지 않는다.
- 모기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축사소독을 한다.
- 하우스내 피해 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한다.
- 병해충 발생 증가 대비, 방제를 강화한다.
- 노지 재배 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한다.

아. 양식어장에서는 어장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환수량을 최대한 늘이고, 먹이 공급량과 사육밀도는 하향 조절한다.
-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폭기시설을 설치한다.
-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는다.
- 어체의 생리적 약화에 의한 어병 확산을 방지한다.
- 고온과 습기로 인한 사료부패 예방에 힘쓴다.

자. 편안한 잠자리를 갖는다.

-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숙면에 좋다.
-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잠은 오래 자지 않는다.
- 자기 전 심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 수분은 많이 섭취하지 말고, 허기질 때는 우유 한 잔 정도로 배를

채우고 잠자리에 든다.

- 커피와 홍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와 술, 담배는 지양한다.
- 잠들기 전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게임 등은 하지 않는다.
-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간단한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한다.

2. 열대야 불면증 예방수칙

가. 일반성인

-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전날 밤을 설쳤더라도 낮잠을 오래 자지 않아야 함
- 과식은 피하고 수분도 너무 많이 섭취하지는 말아야 하며, 우유한잔 정도로 가볍게 배를 채워 줌
- 커피와 홍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와 과음은 지양
- 숙면에는 찬물 샤워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음
- 공포영화를 보거나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아야 함
- 늦은 시간 과도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최소한 3시간 전에 가볍게 하는 것이 좋음
-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지 않도록 함

나. 아이들

- 아침엔 온 가족이 같이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아이도 자연스럽게 깰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낮잠시간을 더욱 규칙적으로 유지함
- 낮 시간에는 아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 피곤함으로 밤잠을 잘 자게 함
- 실내 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편안한 수면상태 유지
- 에어컨을 1시간 이상 가동하면 실내 습도가 내려가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50분 정도 틀고 10분 정도는 환기를 시켜 줌
- 취침 1시간 전까지 바깥에서 더위를 식히며 산책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취침 직전까지 야외에 머물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함

제9절 대 설

1. 눈이 많이 내릴때

- 설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준비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30cm이상 눈이 쌓이면 자동차, 대문, 지붕,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시로 치웁시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동네 골목길은 스스로 치웁시다.
- 집 주변 빙판 길에는 모래 또는 염화칼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 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정보를 알아봅시다.
-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2. 대설주의보·경보 발령시

가. 도시지역

-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자가용차량을 이용할 때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안전장구와 고립에 대비하여 담요와 양초를 휴대하고 안전하게 운행합시다.
- 염화칼슘, 모래 등을 준비해둡시다.
-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시다.
- 오래되거나 약한 주택에서는 이웃, 친지 집으로 대피합시다.
- 노약자 및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제설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 주변에 자동차를 세우지 맙시다.
- 라디오, TV 등을 청취하여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에 대해 알아둡시다.

나. 농촌지역

- 자가용차량 이용 시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의 안전장구를 휴대하고 안전하게 운행합시다.
-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시다.
- 오래되거나 약한 주택에서는 이웃, 친지 집으로 대피합시다.
- 노약자 및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를 보강하거나 비닐을 찢어 재배시설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합시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하우스의 비닐은 걷어냅니다.

-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합시다.
- 라디오, TV 등을 청취하여 기상상황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 외딴 집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비상연락을 합시다.

다. 하천주변·해안지역

- 각종 선박의 적하물을 내리고 단단히 묶어둡시다.
- 양식시설의 물고기에게 줄 사료를 준비합시다.
- 염화칼슘, 모래를 준비하고 내 집 앞, 우리 동네의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 방파제, 선착장 등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해안도로 운행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체인 등 안전장치를 부착합시다.
- 오래되거나 약한 주택에서는 이웃이나 친지 집으로 대피합시다.
- 노약자 및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라디오·TV·인터넷을 통해 기상정보를 잘 알아 둡시다.
- 외딴집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비상연락을 합시다.

제10절 강 풍

1. 평상시

-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고, 지붕, 옥상 등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 비상물품과 가정상비약을 준비한다

2. 강풍 주의보·경보가 예보된 경우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금지한다.
- 출입문을 굳게 닫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커튼, 블라인드 등을 치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 골방 등으로 피한다.
- 지붕, 안테나를 결박하고 낙하의 위험이 입간판 등의 시설물은 제거한다.
- 가옥 내·외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는다.
- 지붕위 등 지상보다 높은 곳에서는 가능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외부에 있을 때는 신속히 건물안으로 대피하고,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아래로 대피하지 않는다.
-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놀이시설, 공사장의 크레인, 리프트 등은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 전주, 송전철탑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낡은 집이나, 위험담장, 축대 인근을 접근하지 않는다.
- 공사장에서는 가시설, 안전장비를 점검하며,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을 결박, 보강조치를 취한다.

제11절 한 파

1. 평상시

- 손가락, 발가락, 컷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 심한 한기·피로,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을 느낄 경우에는 저체온증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 급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노인·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뇨병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며 동상 부위를 잘 씻고 말려야 합니다.

2. 겨울 운동에

- 운동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관절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준비운동은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합니다.
-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것이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은 이뇨(利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 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맙시다.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3. 수도관 및 계량기

- 수도계량기의 보온을 위해서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따뜻한 물 등으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여야 합니다.

4. 보일러 배관 보온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합니다.
- 장기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끄지 말고 동파방지 또는 외출 기능으로 두어야 합니다.
- 배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온열기(헤어드라이어 등)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5. 외출 시에는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 가족·친지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 둡시다.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합니다.
- 만약 자동차에 고립될 경우에는
 - 휴대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구조요청을 하고
 - 동승자가 있을 경우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 차례로 수면을 취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차량 내 온도와 체온을 유지하고 구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색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6. 자동차의 안전대책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등을 준비합시다.
-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 성에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야를 넓혀서 빙판길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합시다.
- 미끄러운 길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은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은 가속기를 서서히 밟으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 앞바퀴를 직진상태로 하고 출발해야 헛도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커브 길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커브를 돌면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빙판길에서 멈출 때에는 엔진브레이크(저속엔진 + 저속기어)로 속도를 충분히 줄인 후 서서히 풋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야 합니다.
- 저속 운행,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수칙을 준수합시다.

7. 농림 분야

-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보온해야 합니다.
- 온실의 작물이 동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난방, 온실커튼·물 커튼·축열주머니 설치 등)
- 온실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고 북쪽에는 보온벽(방풍벽)을 설치합시다.
- 온실의 둘레는 단열재를 두르고 위쪽은 보온덮개를 덮어야 합니다.
- 정전으로 난방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태우거나 난로를 피워서 난방해야 합니다.
- 기온이 급강하할 것에 대비하여 난방·보온재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정비합시다.
- 축사 등은 바람구멍을 막고 보온재와 난방기를 준비합시다.
-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온으로 동파를 방지합시다.
- 한파관련 기상특보를 수시청취하고 미리 미리 대비합시다.

8. 수산 분야

- 축제식 양식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에 어장 면적의 1%이상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합시다.
- 육상양식장은 방풍망 설치 등 보온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장기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한파가 예상될 경우에는 양식어류를 조기출하 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한파가 임박한 경우에는 수위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집어하여 동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 어류가 동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냉동·저장하였다가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9. 전기 분야

- 전열기나 난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에서 용량이 큰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1시간 사용 15분 정지」를 생활화하여 과부하(정전)를 방지해야 합니다.
-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 하나의 콘센트를 다시 여러 개의 콘센트로 분리시켜, 많은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꽂아 쓰지 말아야 합니다.
- 전기 고장 시 즉시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개인이 임의로 조작하지 맙시다.
- 전기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퓨즈로 사용하지 맙시다.

참 고 자 료

1. 안성시 의료시설 현황
2.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3. 대피소 지정현황
4. 자연재난대비 비상연락망(시장, 부시장 등)
5. 기상특보 발령기준
6. 기상, 영상(CCTV), 수위관측장비현황
7. 읍·면·동 재난관리담당자
8.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편성표
9. 재난상황관리 비상연락망
10. 방재시설물 현황(배수펌프장, 저수지)
11. 농촌공사관리 저수지 현황
12. 소류지 현황
13. 재난관련 IP 및 Password 현황
14. 인명피해우려지역 지정현황

1. 안성시 의료시설 현황

구분	의료기관명	위 치	진료과목	병상수	연락처	비고
계						
종합병원(1)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당왕동 455	내과, 외과, 정형외과, 마취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안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신경과(14)	130	675-0136	
병원(5)	의료법인 청천의료재단 안성성모병원	서인동 14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일반내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소아과, 치과(8)	135	676-1946	
	안성동인병원	인지동 412	일반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소아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흉부외과(9)	65	671-0645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안성서울병원	서인동 72	결핵과, 산업의학과, 방사선과(3)	58	676-2061	
	안성요양병원	연지동 146-3	소아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3)	43	677-2312	
	의료법인청천의료재단 성요셉병원	당왕동 135	내과, 소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5)	180	671-7001	
의원 (59)	한외과	대천동 59	일반외과, 가정의학과(2)	-	673-4567	
	최내과	창전동 607-3	내과, 소아과(2)	-	675-3159	
	이선경산부인과	대천동 116	산부인과(1)	4	674-2251	
	홍석정내과	서인동 60-3	내과, 소아과(2)	-	675-2478	
	윤이비인후과	서인동 82-1	이비인후과(1)	-	674-8498	
	조상용내과	연지동 5, 5-1	내과, 소아과(2)	-	675-2255	
	자애의원	일죽면 송천리 15-24,32	일반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7)	10	674-1198	
	성모의원	죽산면 죽산리 435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5)	-	675-0644	
	박내과	석정동 5	내과, 가정의학과(2)	-	676-1669	
	성바오로의원	공도읍 만정리 417-88	일반외과, 일반내과, 소아과, 정형외과(4)	-	651-0150	
	연세의원	죽산면 죽산리 516-4	일반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임상병리과, 이비인후과(7)	2	676-6248	

의 료 시 설 현 황						
구분	의료기관명	위 치	진료과목	병상수	연락처	비고
의원 (59)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성농민의원	인지동 414-5	가정의학과, 일반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5)	-	675-0227	
	고비뇨기과	대천동 55	비뇨기과, 피부과, 임상병리과(3)	-	675-7195	
	장길동정형외과	인지동 414-1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3)	25	676-0083	
	성가흠의원	인지동 355-1, 355-4	정신과, 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4)	48	676-4057	
	유희범소아과	서인동 62-1	소아과, 일반내과(2)	-	675-5500	
	이돈희의원	서인동 6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4)	-	677-0434	
	워치타워부속	공도읍 양기리 377	내과, 외과(2)	-	618-0033	
	권소아과	서인동 53-4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3)	-	677-0134	
	임영욱이비인후과	서인동 53	이비인후과(1)	-	672-9738	
	성심의원	대천동 130-3	방사선과, 일반내과, 소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5)	-	672-2567	
	이비뇨기과	대천동 130-3	비뇨기과, 피부과(2)	-	674-8275	

중앙산부인과	대천동 55	산부인과	5	677-6733	
성모가정	공도읍 진사리 20-4 공도 우림APT상가 208호	가정의학과, 일반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7)	-	654-7511	
청설의원	공도읍 진사리 산52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피부과, 비뇨기과(6)	-	618-8097	
일죽제일의원	일죽면 송천리 23-5	일반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소아과, 이비인후과(10)	19	674-0470	
우리생협의원	금산동 81-2 주은청설APT 상가B동 201-203	가정의학과, 일반내과, 소아과, 부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8)	-	671-9157	
서울정형외과	석정동 30-1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일반내과, 소아과(5)	28	671-1588	
윤소아과	석정동 30-1	소아과	-	671-0130	
황인선 소아과	인지동 409-4	소아과, 일반내과, 이비인후과(3)	-	671-1771	
현대내과	대천동 57-4	일반내과, 진단방사선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6)	-	675-1100	
사회복지법인연꽃마을 안성경로의원	봉남동 4	일반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단방사선과(6)	-	676-2677	
자산의료재단 안성연합의원	서인동 72	신경외과, 일반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8)	-	676-7582	
차외과	대천동 116	일반외과(1)	4	675-2251	
서울신경외과	석정동 278-14	신경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일반내과, 피부과, 비뇨기과(8)	29	672-7497	
우리들소아과	공도읍 용두리 752 주은 풍림APT상가 2층	소아과, 일반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4)	-	654-6700	
현대정형외과	공도읍 만정리 424-55	정형외과, 일반내과, 일반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 신경외과(7)	29	656-3114	
풍림연세의원	공도읍 용두리 752 주은 풍림APT상가 2층	일반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6)	-	653-3537	
최이비인후과	대천동 82	이비인후과(1)	-	675-7421	
강남성모안과	석정동 22-1	안과(1)	-	671-1505	
한주가정의학과	서인동 60 남경빌딩2층	가정의학과, 일반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임상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일반외과(7)	-	674-7501	
서울의원	죽산면 죽산리 119-1 죽산해밀리타운	소아과, 일반내과,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형외과(6)	-	676-1568	
한마음메디스	가사동 78-2	정형외과, 일반외과, 일반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신경외과(8)	29	671-3200	
소망의원	양성면 동창리 288-11	정형외과, 일반외과, 일반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7)	-	674-9977	
경희마취통증의학과	석정동 11-3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내과(5)	-	675-7319	
해성내과	공도읍 만정리 417-122	일반내과, 소아과, 비뇨기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방사선과(6)	-	656-0464	
고려의원	석정동 22-1 하평플러스 204, 205호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내과(4)	-	676-9152	
하나EQ의원	석정동 22-1 하평플러스 206호	정신과, 신경과, 일반내과(3)	-	671-0075	
모아산부인과	석정동 30-1	산부인과	9	674-7744	

의 료 시 설 현 황						
구분	의료기관명	위 치	진료과목	병상수	연락처	비고
의원 (59)	하나로연합의원	석정동 22-1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방사선과, 이비인후과, 외과(6)	1	672-2475	
	하안피부과	석정동 22-1	피부과, 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	674-5592	
	안성제일정형외과	영동 30-1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일반내과, 피부과, 비뇨기과(6)	29	673-2119	
	하나산부인과	석정동 278-14	산부인과, 외과, 내과, 소아과(4)	10	677-7700	
	미래소아과	공도읍 진사리 348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3)	-	658-7535	

		서지프라자 208			
	서울이비인후과	서인동 53-1	이비인후과, 소아과(2)	1	676-9975
	일죽한양의원	일죽면 송천리 244	재활의학과, 외과, 내과, 소아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8)	22	674-7568
	서울중앙의원	보개면 상삼리 209-15	정신과, 내과, 신경과, 소아과(4)	49	671-7575
	삼성서울안과	서인동 85	안과, 성형외과	-	677-1119
	한양의원	서인동 96-1, 100	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24	675-7567
치과(30)	연산	영동 435	치과	-	675-2348
	안성	대천동 152-4	치과	-	673-1333
	서울	서인동 85	치과	-	672-2657
	김관중	영동 420	치과	-	673-0913
	지성	서인동 53	치과	-	674-5566
	정	대천동 57-4	치과	-	677-0855
	한동인	석정동 5	치과	-	676-0101
	예인	대천동 55-1, 2	치과	-	675-0446
	유희돈	죽산면 죽산리 435-2	치과	-	675-9475
	광선	대천동 64	치과	-	677-0453
	김동철	일죽면 송천리 23	치과	-	672-0381
	박종환	죽산면 죽산리 119-1 웨이리타운 3층	치과	-	675-0005
	좋은	인지동 8	구강외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6)	-	673-7522
	정중희	석정동 22-1 하평플러스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치과보존과(4)	-	672-2805
	허균행	서인동 71	치과	-	672-6762
	박송현	당왕동 쌍용APT상가 221호	치과	-	674-7582
	이사람	공도읍 진사리 산52 주은청설APT상가B동201	치과	-	658-2850
	현대	대천동 82-1	치과	-	675-4654
	연세	대천동 82	치과	-	671-0077
	안성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생협	인지동 414-5	치과	-	675-0227
	하얀이	공도읍 만정리 417-83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가강악안면방사선과, 예방치과(9)	-	691-2804
	가나	공도읍 용두리 752 주은풍림APT상가317,318호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가강악안면방사선과, 예방치과(9)	-	658-2875
	주	공도읍 진사리 20-19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소아치과, 치주과, 구강안면외과(5)	-	618-7599
	자애	일죽면 송천리 15-32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6)	-	
	한양	공도읍 만정리 47-168	구강외과, 치주교정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치주과, 예방치과, 소아과치과(7)	-	652-7526
	나&오	공도읍 만정리 417-88	치과	-	618-7522
	이앤김치과의원	대천동 130-3	치과	-	671-2875
	수치과	공도읍 용두리 717-18	치과	-	658-7528

의 료 시 설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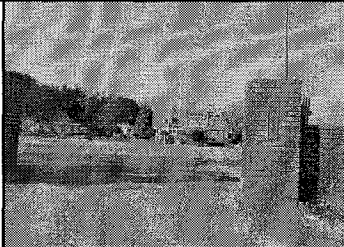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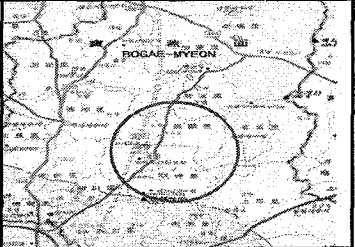
구분	의료기관명	위 치	진료과목	병상수	연락처	비고
치과	경희이편한치과	일죽면 송천리 24-1	치과	-	674-7528	
	해맑은치과의원	공도읍 진사리 348 서지프라자 207호	치과	-	652-7522	
한의원(17)	경희	인지동 6	한방내과, 부인과(2)	-	675-2041	
	소생당	동본동 458	한방내과, 침구과(2)	-	675-3017	
	안성농민	인지동 414-7	한방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4)	-	676-3435	
	새서울	서인동 15	침구과, 한방내과, 부인과, 신경정신과(4)	-	675-2329	
	석정	동본동 37	한방내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침구과(4)	-	676-7373	
	활	서인동 5, 6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침구과(6)	-	676-3232	
	죽산	대천동 130-2	한방내과, 소아과, 부인과, 신경정신과,	-	675-1015	
	동진	죽산면 죽산리 475-1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침구과(6)	-	676-7300	
	이	공도읍 승두리 56-7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침구과(6)	-	653-1075	
	중국	대천동 76	한방내과, 안이비인후과, 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9)	-	676-8896	
	재일	공도읍 만정리 417-83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침구과(5)	-	651-7533	
	해성	공도읍 진사리 20-19	한방내과, 안이비인후과, 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9)	-	652-1275	
	나무그늘	석정동 22-1 하평플러스 304호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침구과(5)	-	674-1075	
	대자연	일죽면 송천리 249-7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침구과, 신경정신과(5)	-	674-2301	
	공도경희	공도읍 용두리 752 주은풍림상가 315-1호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침구과, 사상체질과(6)	-	653-8448	
	김정수한의원	공도읍 진사리 348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침구과, 재활의학과(6)	-	691-2606	
	지정수한의원	서인동 82-1	한방내과, 안이비인후과, 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9)	-	671-7582	

2.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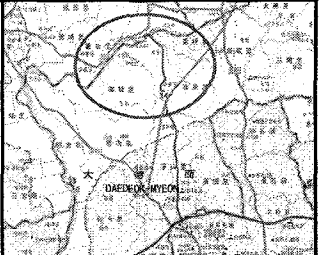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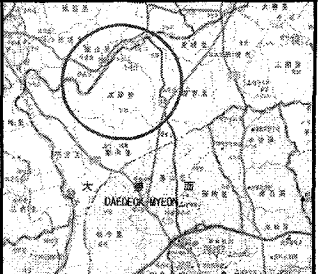
구분	위 치	시설명	수용가능면적 (㎡)	수용가능인원 (명)	관리자 연락처		비고
					성 명	전화번호	
계	54 개소		47,562	8,629			
1	공도읍 만정리 418-1	공도중학교	1,076	166	박민자	651-5552	공도읍
2	공도읍 용두리 187	공도초등학교	132	20	조원호	651-2004	
3	공도읍 양기리332-25	문기초등학교	532	82	서상영	618-0559	
4	공도읍 용두리 187	용마리초등학교	1,984	305	박미정	658-0730	
5	공도읍 진사리 124	양진초등학교	132	60	박수정	656-0152	
6	보개면 동신리 229-2	동신초등학교	150	50	임경순	671-3995	보개면
7	보개면 남풍리 1070	서삼초등학교	264	80	정병진	672-4082	
8	보개면 이천리 347-2	가을초등학교	200	50	정환기	676-4082	
9	보개면 북평리 162	보개초등학교	184	50	김주석	675-3481	
10	금광면 금광리145-2	금광경로당	112	20	윤영석	672-3080	금광면
11	금광면 사흘리 751	석암경로당	122	20	이재권	674-8620	
12	금광면 개산리 180	개산초등학교	165	30	김민관	672-3082	
13	서운면 동촌리 150	서운초등학교	454	150	정영배	672-9080	서운면
14	서운면 산평리 160-2	산평초등학교	1,112	200	임장남	673-9086	
15	서운면 현매리 193	현매초등학교	338	100	장기갑	673-2386	
16	서운면 인리 67	남사당전수관	584	50	오세웅	672-9052	
17	미양면 양지리 201	미양초등학교	225	100	이종구	673-1997	미양면
18	미양면 개정리 304	개정초등학교	194	90	이덕재	672-8887	
19	미양면 보채리 31-5	보채초등학교	203	100	박광수	677-8082	
20	대덕면 오산리 463	대덕초등학교	455	200	이유화	676-0630	대덕면
21	대덕면 내리697	광덕초등학교	264	50	심순익	676-8943	
22	대덕면 진현리 285	영덕초등학교	574	173	조영란	676-9825	
23	양성면 동항리 423	양성초등학교	1,610	300	이영택	672-2081	양성면
24	양성면 노곡리 443	미곡초등학교	12,300	184	김전석	672-6544	
25	양성면 명목리159-3	남극경로당	79	40	최광석	674-8429	
26	원곡면 내가천리 78	원곡초등학교	458	120	최종민	653-6443	원곡면
27	원곡면 외가천리 229-2	원곡경로당	66	20	이호명	653-3201	
28	원곡면 산하리 465-10	산하경로당	99	30	정광순	018-354-6915	
29	원곡면 성은리 352-14	성은경로당	117	30	유동근	656-6940	
30	원곡면 칠곡리 436-4	칠곡경로당	177	20	이규식	652-9971	
31	원곡면 반제리 362	주정경로당	81	10	장원철	653-1214	
32	일죽면 송천리 243-1	일죽중고등학교	309	50	김찬식	672-5016	일죽면
33	일죽면 주천리 300	일죽초등학교	1,331	214	박진진	672-5080	
34	일죽면 방초리 459	방초초등학교	173	150	이순덕	674-5048	
35	죽산면 죽산리 405-2	죽산초등학교(강당)	755	200	박영희	675-1127	
36	죽산면 죽산리 318	죽산중학교	297	200	류준섭	676-6321	죽산면
37	죽산면 죽산리321	죽산종합고등학교	97	50	김법식	676-6013	
38	삼죽면 덕산리 269	삼죽초등학교	990	300	심화섭	672-4081	
39	삼죽면 마전리 37-1	마전초등학교	40	20	황규택	672-4083	삼죽면
40	삼죽면 덕산리 826	삼죽성결교회	66	20	윤철수	674-4074	
41	삼죽면 덕산리 826	삼죽노인회	33	10	최상만	673-6083	
42	삼죽면 마전리38-13	마전노인회	33	10	윤옥	674-1514	
43	고상면 가유리329-1	고상초등학교	1,616	300	조성결	673-0464	고상면
44	안성시 구포동 170	안성초등학교	673	300	유정아	674-5803	
45	안성시 낙원동 609-1	영륜여자중학교	2,310	700	신수철	675-3538	안성1동
46	안성시 봉남동 360	안성여자중학교	938	200	박옥희	677-6032	
47	안성시 아양동 292-1	내혜초등학교	1,980	600	행정실장	671-1084	안성2동
48	안성시 금산동 33-1	안성고등학교	264	80	경용호	673-1922	
49	안성시 신소현동 110	안성여자고등학교	65	35	박동순	673-1911	안성3동
50	안성시 금산동 33-12	안성중학교	1,039	500	박명재	673-2143	
51	안성시 당왕동 10-1	안청중학교	1,592	700	김기하	673-3124	
52	안성시 당왕동 536-1	비룡중학교	136	40	윤승근	677-0633	
53	안성시 금산동 119	백성초등학교	204	50	김영식	674-3232	
54	안성시 당왕동536-2	비룡초등학교	8,178	1,000	김정환	676-0282	

3. 대피소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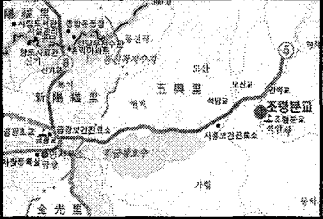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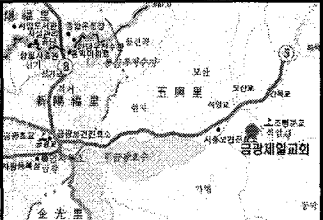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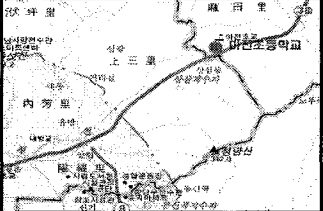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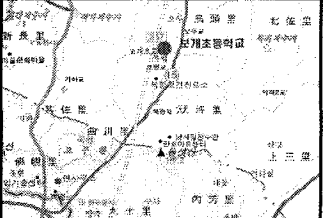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 동안 지구 》			
대피소	현황 사진	대피소 현황	위 치 도
보개초등학교		▶ 위 치 : 보개면 북평리 162번지 ▶ 수용가능면적 : 194㎡ ▶ 수용가능인원 : 60명 ▶ 연락처 : 675-3481 ▶ 시설관리자 : 손규영 ▶ 대피담당자 : 보개면 산업담당 ▶ 대피로 : 시도15호선	

● 붕괴위험 지역

《 소동산 지구 》			
대피소	현황 사진	대피소 현황	위 치 도
대덕초등학교		▶ 위 치 : 대덕면 모산리 463번지 ▶ 수용가능면적 : 455㎡ ▶ 수용가능인원 : 200명 ▶ 연락처 : 676-0630 ▶ 시설관리자 : 오인환 ▶ 대피담당자 : 대덕면 산업담당 ▶ 대피로 : 시도14호선	
면덕초등학교		▶ 위 치 : 대덕면 진현리 285 ▶ 수용가능면적 : 574㎡ ▶ 수용가능인원 : 173명 ▶ 연락처 : 676-9825 ▶ 시설관리자 : 윤기수 ▶ 대피담당자 : 대덕면 산업담당 ▶ 대피로 : 시도14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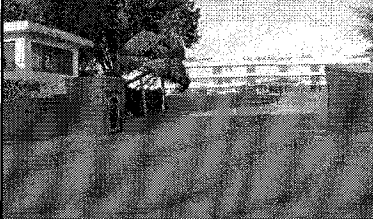
● P-EP 사전대피 지구(금광저수지 붕괴시)

《 금 광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현황	위 치 도
조령초등학교		▶위 치 : 금광면 사흥리 686 ▶수용가능면적 : 330㎡ ▶수용가능인원 : 100명 ▶연락처 : 672-3084 ▶시설관리자 : 최희규 ▶대피담당자 : 금광면 산업담당 ▶대피로 : 시도5호선	
금광제일감리교회		▶위 치 : 금광면 사흥리 602-4 ▶수용가능면적 : 330㎡ ▶수용가능인원 : 100명 ▶연락처 : 672-9934 ▶시설관리자 : 김태웅 ▶대피담당자 : 금광면 산업담당 ▶대피로 : 시도5호선	
《 보 개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마전초등학교		▶위 치 : 삼죽면 마전리 37-1 ▶수용가능면적 : 40㎡ ▶수용가능인원 : 20명 ▶연락처 : 672-4083 ▶시설관리자 : 박광수 ▶시설담당자 : 보개면 산업담당 ▶대피로 : 국도38호선	
마전리노인회관		▶위 치 : 삼죽면 마전리 38-13 ▶수용가능면적 : 33㎡ ▶수용가능인원 : 10명 ▶연락처 : 674-1514 ▶시설관리자 : 허수만 ▶대피담당자 : 보개면 산업담당 ▶대피로 : 국도38호선	
보개초등학교		▶위 치 : 보개면 북평리 162 ▶수용가능면적 : 10,656㎡ ▶수용가능인원 : 60명 ▶연락처 : 675-3481 ▶시설관리자 : 손규영 ▶대피담당자 : 보개면 산업담당 ▶대피로 : 시도15호선	

《 안 성 1 동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안 청 중 학 교		▶위 치 : 당왕동 10-1 ▶수용가능면적 : 1,195㎡ ▶수용가능인원 : 700명 ▶연락처 : 673-3124 ▶시설관리자 : 김기하 ▶대피담당자 : 안성1동 주무담당 ▶대피로 : 국도38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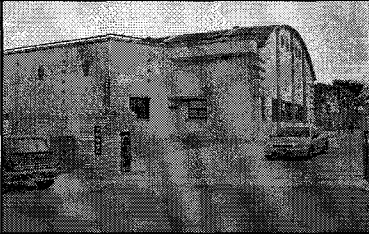
가 온 고 등 학 교		▶위 치 : 안성시 발화동 215-7 ▶수용가능면적 : 3,500㎡ ▶수용가능인원 : 300명 ▶연락처 : 674-5027 ▶시설관리자 : 심연보 ▶대피담당자 : 안성1동 주무담당 ▶대피로 : 발화대길	
----------------------------	---	--	--

안 성 여 자 중 학 교		▶위 치 : 봉남동 360 ▶수용가능면적 : 3,201㎡ ▶수용가능인원 : 200명 ▶연락처 : 672-3084 ▶시설관리자 : 박옥희 ▶대피담당자 : 안성1동 주무담당 ▶대피로 : 안성맞춤로	
---------------------------------	--	---	---

안 성 초 등 학 교		▶위 치 : 구포동 170 ▶수용가능면적 : 673㎡ ▶수용가능인원 : 300명 ▶연락처 : 672-9934 ▶시설관리자 : 이상덕 ▶대피담당자 : 안성1동 주무담당 ▶대피로 : 동서1, 2, 3로	
----------------------------	---	--	--

《 안 성 2 동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백 성 초 등 학 교		▶위 치 : 금산동 119 ▶수용가능면적 : 120㎡ ▶수용가능인원 : 50명 ▶연락처 : 674-3232 ▶시설관리자 : 김영식 ▶대피담당자 : 안성2동 주무담당 ▶대피로 : 안성맞춤로	

안성중학교		▶ 위 치 : 금산동 33-12	
		▶ 수용가능면적 : 152㎡ ▶ 수용가능인원 : 500명 ▶ 연락처 : 673-2142 ▶ 시설관리자 : 박명재 ▶ 대피담당자 : 안성2동주무담당 ▶ 대피로 : 안성맞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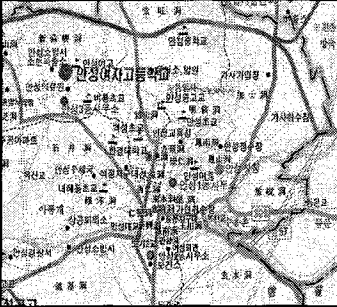
안성고등학교		▶ 위 치 : 금산동 33-1	
		▶ 수용가능면적 : 264㎡ ▶ 수용가능인원 : 80명 ▶ 연락처 : 673-1922 ▶ 시설관리자 : 경용호 ▶ 대피담당자 : 안성2동주무담당 ▶ 대피로 : 안성맞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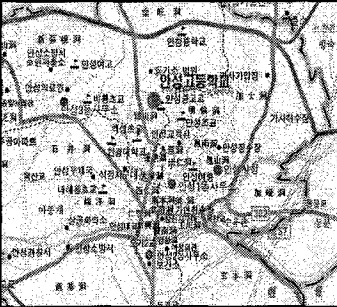
비룡초등학교		▶ 위 치 : 당왕동 536-2	
		▶ 수용가능면적 : 8,178㎡ ▶ 수용가능인원 : 40명 ▶ 연락처 : 676-0282 ▶ 시설관리자 : 윤승근 ▶ 대피담당자 : 안성2동주무담당 ▶ 대피로 : 중앙로	

안성여자고등학교		▶ 위 치 : 신소현동 33-12	
		▶ 수용가능면적 : 130㎡ ▶ 수용가능인원 : 70명 ▶ 연락처 : 673-1911 ▶ 시설관리자 : 박동순 ▶ 대피담당자 : 안성2동주무담당 ▶ 대피로 : 교수2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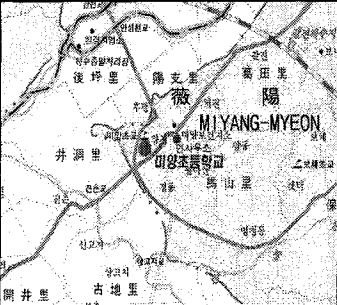
《 안 성 3 동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백성초등학교		▶ 위 치 : 금산동 119	
		▶ 수용가능면적 : 120㎡ ▶ 수용가능인원 : 50명 ▶ 연락처 : 674-3232 ▶ 시설관리자 : 김영식 ▶ 대피담당자 : 안성3동주무담당 ▶ 대피로 : 안성맞춤로	

안성여자고등학교		▶ 위 치 : 신소현동 33-12	
		▶ 수용가능면적 : 130㎡	
		▶ 수용가능인원 : 70명	
		▶ 연락처 : 673-1911	
		▶ 시설관리자 : 박동순	
▶ 대피담당자 : 안성3동주무담당			
▶ 대피로 : 교수2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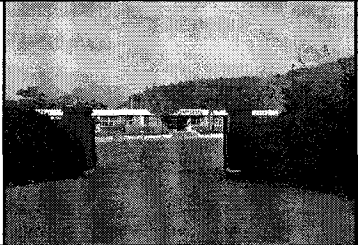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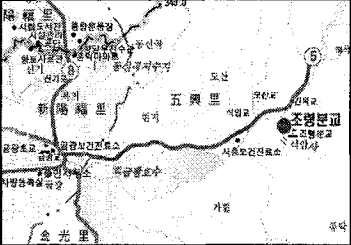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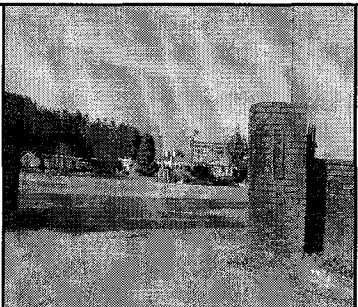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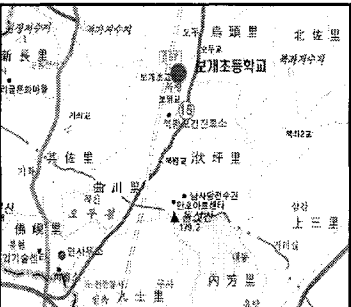
안성고등학교		▶ 위 치 : 금산동 33-1	
		▶ 수용가능면적 : 264㎡	
		▶ 수용가능인원 : 80명	
		▶ 연락처 : 673-1922	
		▶ 시설관리자 : 경용호	
▶ 대피담당자 : 안성3동주무담당			
▶ 대피로 : 안성맞춤로			

《 미 양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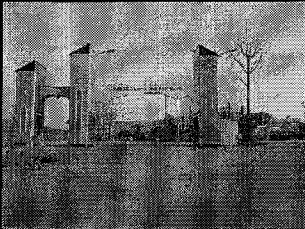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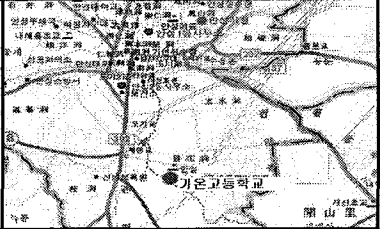
미양초등학교		▶ 위 치 : 미양면 양지리 201	
		▶ 수용가능면적 : 216㎡	
		▶ 수용가능인원 : 100명	
		▶ 연락처 : 672-8081	
		▶ 시설관리자 : 박수연	
▶ 대피담당자 : 미양면 산업담당			
▶ 대피로 : 국지도70호선			

개정초등학교		▶ 위 치 : 미양면 개정리 304	
		▶ 수용가능면적 : 175㎡	
		▶ 수용가능인원 : 80명	
		▶ 연락처 : 672-8082	
		▶ 시설관리자 : 김경숙	
▶ 대피담당자 : 미양면 산업담당			
▶ 대피로 : 국지도70호선			

● P-EP 사전대피 지구(마둔저수지 붕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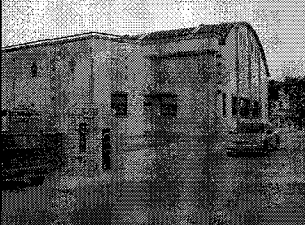
《 금 광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현황	위 치 도
조령초등학교		▶위 치 : 금광면 사흥리 686 ▶수용가능면적 : 330㎡ ▶수용가능인원 : 100명 ▶연락처 : 672-3084 ▶시설관리자 : ▶대피담당자 : 금광면 산업담당	
개산초등학교		▶위 치 : 금광면 개산리 180 ▶수용가능면적 : 330㎡ ▶수용가능인원 : 100명 ▶연락처 : 673-3082 ▶시설관리자 : 김도훈 ▶대피담당자 : 금광면 산업담당	
《 보 개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동신초등학교		▶위 치 : 보개면 동신리 229-2 ▶수용가능면적 : 360㎡ ▶수용가능인원 : 120명 ▶연락처 : 673-3995 ▶시설관리자 : 임경순 ▶대피담당자 : 보개면 산업담당 ▶대피로 : 국지도57호선→38국도	
보개초등학교		▶위 치 : 보개면 북평리 162 ▶수용가능면적 : 10,656㎡ ▶수용가능인원 : 60명 ▶연락처 : 675-3481 ▶시설관리자 : 손규영 ▶대피담당자 : 보개면 산업담당 ▶대피로 : 시도15호선	

《 안 성 1 동 지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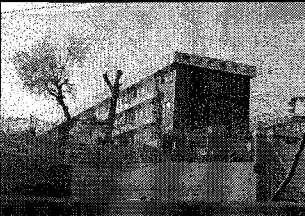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가온고등학교		▶ 위 치 : 안성시 발화동 215-7 ▶ 수용가능면적 : 3,500㎡ ▶ 수용가능인원 : 300명 ▶ 연락처 : 674-5027 ▶ 시설관리자 : 심연보 ▶ 대피담당자 : 안성1동 주무담당 ▶ 대피로 : 발화대길	

안성여자중학교		▶ 위 치 : 봉남동 360 ▶ 수용가능면적 : 3,201㎡ ▶ 수용가능인원 : 500명 ▶ 연락처 : 672-3084 ▶ 시설관리자 : 박명재 ▶ 대피담당자 : 안성1동 주무담당 ▶ 대피로 : 안성맞춤로	
---------	---	--	--

안성초등학교		▶ 위 치 : 구포동 170 ▶ 수용가능면적 : 330㎡ ▶ 수용가능인원 : 100명 ▶ 연락처 : 672-9934 ▶ 시설관리자 : 김태웅 ▶ 대피담당자 : 안성1동 주무담당 ▶ 대피로 : 동서1, 2, 3로	
--------	--	---	---

안성중학교		▶ 위 치 : 금산동 33-12 ▶ 수용가능면적 : 152㎡ ▶ 수용가능인원 : 60명 ▶ 연락처 : 673-2142 ▶ 시설관리자 : 백승로 ▶ 대피담당자 : 안성1동 주무담당 ▶ 대피로 : 안성맞춤로	
-------	---	---	--

《 안 성 2 동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백성초등학교		▶ 위 치 : 금산동 119 ▶ 수용가능면적 : 120㎡ ▶ 수용가능인원 : 30명 ▶ 연락처 : 674-3232 ▶ 시설관리자 : 김영식 ▶ 대피담당자 : 안성2동 주무담당 ▶ 대피로 : 안성맞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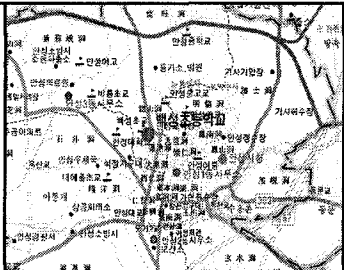
비룡초등학교		▶ 위 치 : 당왕동 536-2 ▶ 수용가능면적 : 8,178㎡ ▶ 수용가능인원 : 1,000명 ▶ 연락처 : 676-0282 ▶ 시설관리자 : 김정환 ▶ 대피담당자 : 안성2동주무담당 ▶ 대피로 : 중앙로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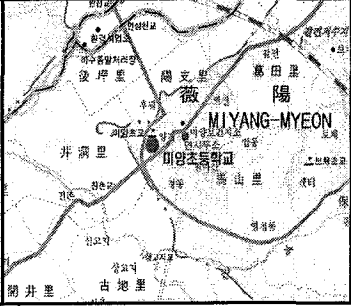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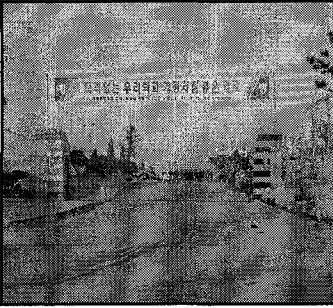
안성여자고등학교		▶ 위 치 : 신소현동 33-12 ▶ 수용가능면적 : 130㎡ ▶ 수용가능인원 : 70명 ▶ 연락처 : 673-1911 ▶ 시설관리자 : 박동순 ▶ 대피담당자 : 안성2동주무담당 ▶ 대피로 : 고수2로	
----------	---	--	--

《 안 성 3 동 지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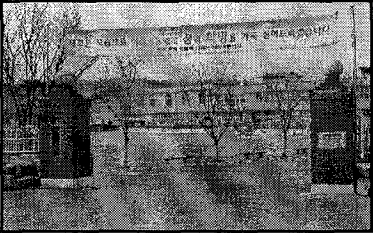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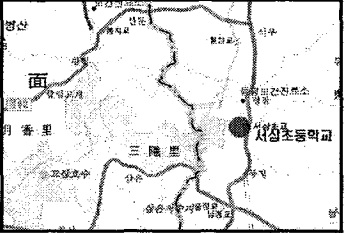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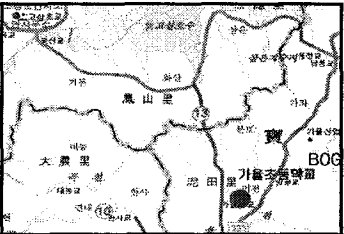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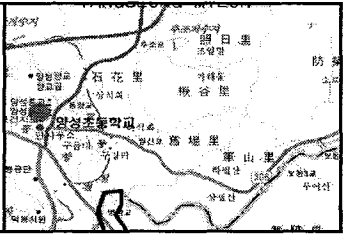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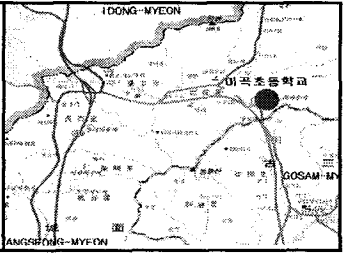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	---------	--------------	-------

안성여자고등학교		▶ 위 치 : 신소현동 33-12 ▶ 수용가능면적 : 130㎡ ▶ 수용가능인원 : 70명 ▶ 연락처 : 673-1911 ▶ 시설관리자 : 박동순 ▶ 대피담당자 : 안성2동주무담당 ▶ 대피로 : 고수2로	
----------	---	--	--

백성초등학교		▶ 위 치 : 금산동 119 ▶ 수용가능면적 : 120㎡ ▶ 수용가능인원 : 30명 ▶ 연락처 : 674-3232 ▶ 시설관리자 : 김영식 ▶ 대피담당자 : 안성2동주무담당 ▶ 대피로 : 안성맞춤로	
--------	---	--	--

《 미 양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미양초등학교		▶위 치 : 미양면 양지리 201 ▶수용가능면적 : 216㎡ ▶수용가능인원 : 100명 ▶연락처 : 672-8081 ▶시설관리자 : 박수연 ▶대피담당자 : 미양면 산업담당 ▶대피로 : 국지도70호선	
개정초등학교		▶위 치 : 미양면 개정리 304 ▶수용가능면적 : 175㎡ ▶수용가능인원 : 50명 ▶연락처 : 672-8082 ▶시설관리자 : 김경숙 ▶대피담당자 : 미양면 산업담당 ▶대피로 : 국지도70호선	

● P-EP 사전대피 지구(고삼저수지 붕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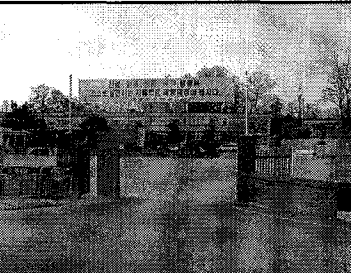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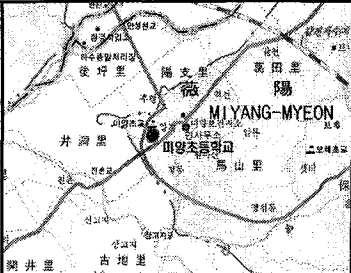
《 고 삼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현황	위 치 도
서삼초등학교		▶ 위 치 : 보개면 남풍리 1070 ▶ 수용가능면적 : 264㎡ ▶ 수용가능인원 : 80명 ▶ 연락처 : 673-4427 ▶ 시설관리자 : 모영채 ▶ 대피담당자 : 고삼면 산업담당 ▶ 대피로 : 국지도82호선	
가을초등학교		▶ 위 치 : 보개면 이진리 347-2 ▶ 수용가능면적 : 845㎡ ▶ 수용가능인원 : 120명 ▶ 연락처 : 673-4082 ▶ 시설관리자 : 모정미 ▶ 대피담당자 : 고삼면 산업담당 ▶ 대피로 : 시도13호선	
《 양 성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양성초등학교		▶ 위 치 : 양성면 동항리 423 ▶ 수용가능면적 : 1,678㎡ ▶ 수용가능인원 : 250명 ▶ 연락처 : 672-2081 ▶ 시설관리자 : 이영택 ▶ 대피담당자 : 양성면 산업담당 ▶ 대피로 : 지방도306호선	
미곡초등학교		▶ 위 치 : 양성면 노곡리 443 ▶ 수용가능면적 : 1,294㎡ ▶ 수용가능인원 : 200명 ▶ 연락처 : 672-6544 ▶ 시설관리자 : 김천묵 ▶ 대피담당자 : 양성면 산업담당 ▶ 대피로 : 시도 19호선	

《 대 덕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명덕초등학교		▶ 위 치 : 대덕면 진현리 285 ▶ 수용가능면적 : 352㎡ ▶ 수용가능인원 : 80명 ▶ 연락처 : 676-9825 ▶ 시설관리자 : 이지범 ▶ 대피담당자 : 대덕면 산업담당 ▶ 대피로 : 국지도70호선	
--------	---	--	--

대덕초등학교		▶ 위 치 : 대덕면 모산리 463 ▶ 수용가능면적 : 352㎡ ▶ 수용가능인원 : 40명 ▶ 연락처 : 676-8030 ▶ 시설관리자 : 전필하 ▶ 대피담당자 : 대덕면 산업담당 ▶ 대피로 : 국지도23호선	
--------	---	--	--

《 미 양 지 구 》			
대피소	현 황 사 진	대피소 및 대피로 현황	위 치 도

미양초등학교		▶ 위 치 : 미양면 양지리 201 ▶ 수용가능면적 : 216㎡ ▶ 수용가능인원 : 100명 ▶ 연락처 : 672-8081 ▶ 시설관리자 : 박수연 ▶ 대피담당자 : 미양면 산업담당 ▶ 대피로 : 국지도70호선	
--------	---	---	--

개정초등학교		▶ 위 치 : 미양면 개정리 304 ▶ 수용가능면적 : 175㎡ ▶ 수용가능인원 : 50명 ▶ 연락처 : 672-8082 ▶ 시설관리자 : 김경숙 ▶ 대피담당자 : 미양면 산업담당 ▶ 대피로 : 국지도70호선	
--------	---	--	--

4. 자연재난대비 비상연락망

구 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통 제 관 [도시건설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성 명	부재	양 진 철	이 경 선	유 은 형
사무실	-	678-2010	678-2700	678-2970
자택	-	678-2015	675-4848	217-9518
휴대폰	-	010-9854-9700	010-3370-9307	017-335-9518
F A X	678-2009	678-2019	678-2129	678-2979

5. 기상특보 발령기준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도 갑작스런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국민들에게 더욱 상세하게 날씨 변화에 대해 알려 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악기상 발생이 예상될 때는 발표한다. 기상특보는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가 있다. 기상청은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예비특보를 발표하는데 예비특보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 기상 특 보 발 표 기 준 》

종 류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이상이 예상 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 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 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 우		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될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이 예상될 때
해 일	폭풍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 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 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 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 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 될 때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 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한 파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균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 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 온 평균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황 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 ₁₀)농도 400 μ g/㎥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PM ₁₀)농도 800 μ g/㎥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다만, 태풍경보는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구 분	3 급	2 급	1 급
바람(m/s)	17~24	25~32	33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이상

6. 기상, 영상(CCTV), 수위관측장비현황

가. 강우량 수집 현황

지역명	위 치	장비내역		유지관리 가능 업체	
		회선구분	IP-Address	업체명	연락처
계	15개소				
본 청	봉산동 31-3	TCP-IP	105.30.7.50	한성전자	02-574-4556
공도읍	공도읍 송두리 60-4	TCP-IP	105.30.46.195	한성전자	02-574-4556
보개면	보개면 불현리	AWS	105.30.40.200	화진티엔아이	02-3461-0060
금광면	금광면 금광리 104	TCP-IP	105.30.41.200	한성전자	02-574-4556
금광면	금광면 사흘보건지소	무선CDMA	010-2042-2994	한성전자	02-574-4556
서운면	서운면 인리 107	AWS	105.30.42.196	화진티엔아이	02-3461-0060
미양면	미양면 양지리 190	TCP-IP	105.30.43.195	한성전자	02-574-4556
대덕면	대덕면 건지리 425-1	TCP-IP	105.30.44.125	한성전자	02-574-4556
양성면	양성면 동항리 327	AWS	105.30.45.200	화진티엔아이	02-3461-0060
원곡면	원곡면 외가천리 273-1	TCP-IP	105.30.47.195	한성전자	02-574-4556
일죽면	일죽면 송천리 253	AWS	105.30.51.200	화진티엔아이	02-3461-0060
죽산면	죽산면 죽산리 348	TCP-IP	105.30.49.195	한성전자	02-574-4556
삼죽면	죽산면 용설리 산27-8	TCP-IP	105.30.50.195	한성전자	02-574-4556
고삼면	고삼면 가유리 산76	AWS	105.30.51.200	화진티엔아이	02-3461-0060
안성 3동	안성 3동 한경대학교	AWS	-	진양공업	기상청 유지관리

※ 참고사항

- 한경대 기상청 AWS자료 등록(2005. 7월 14일)으로 총15개 지역 강우자료 수집 · 표출
- AWS은 강우,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자료 수집 및 제공
- 안성시 ARCS(Automatic Rainfall Collection System) 접속주소 : <http://105.30.7.39>

나. 재해감시 CCTV

지역명	위 치	장비내역		유지관리업체	
		카메라 개수	회선	유지보수	연락처
계	10개소	12			
금광저수지 수문상류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산 65-2	1	광케이블	현대영상	031-676-0646
금광저수지수문하류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536-22	1	광케이블	현대영상	031-676-0646
마둔저수지	안성시 금광면 오산리산 34-4	1	광케이블	현대영상	031-676-0646
고삼저수지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산 74-2	1	광케이블	현대영상	031-676-0646
옥천교	안성시 옥천동 200-35	1	광케이블	현대영상	031-676-0646
여성회관	안성시 도기동 55	1	광케이블	현대영상	031-676-0646
배수펌프장	안성시 가현동 155-3	3	광케이블	현대영상	031-676-0646
서운면농협양곡창고 앞	안성시 서운면 송산리116-3	1	광케이블	현대영상	031-676-0646
일죽면 구청미교	안성시 일죽면 능곡리 566-3	1	광케이블	현대영상	031-676-0646
공도읍	안성시 공도읍 중북리 154	1	광케이블	현대영상	031-676-0646

※ 참고사항 : 상황실에서 촬영화면 수집하여 상황판단회의 영상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다. 수위관측시설

지역명	위 치	장비내역		유지관리업체	
		회선구분	TEL-Address	장비제작사	연락처
계	2개소	2			
청미교	일죽면 송천리 청미교	무선CDMA	010-7106-9403	한성전자	02-574-4556
고삼교	고삼면 대갈리 고삼교	무선CDMA	010-7106-9405	한성전자	02-574-4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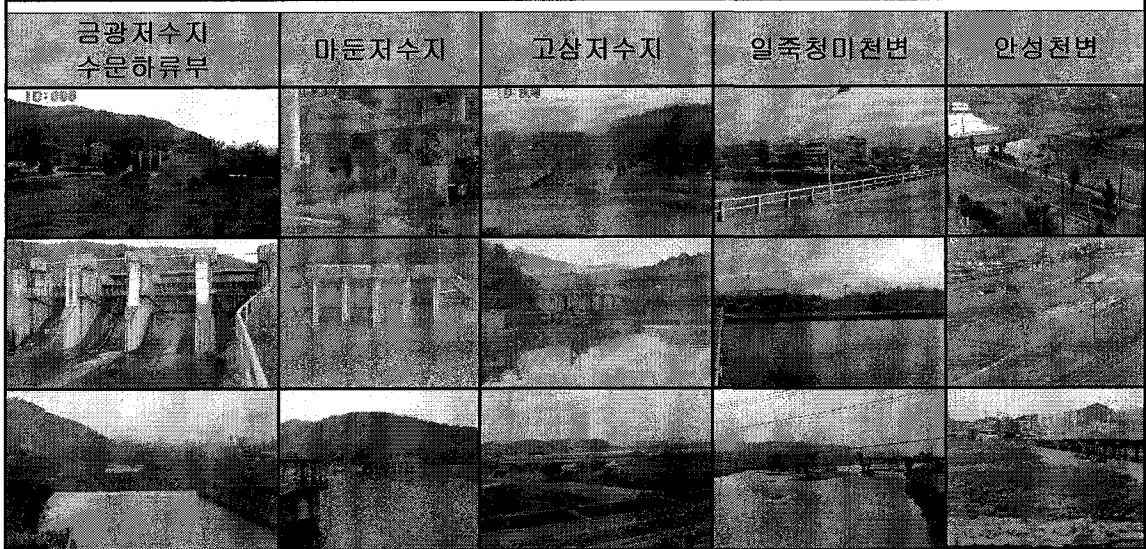
라. 재난위험시설물 모니터링

(2008년도 설치 완료)

〈 재난위험시설 CCTV 〉

▶ 재난위험시설
CCTV

- 금광저수지, 마둔저수지, 고삼저수지, 일죽 청미천변, 안성천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재난위험 감시



7. 읍·면·동 재난관리담당자

구 분		읍면동장	담 당	담당자(A)	담당자(B)	FAX
공도읍	직 위	공도읍장	공도개발담당	시설7급	시설8급	031-678-3619
	성 명	장덕희	조종기	최갑수	황선호	
	자 택	031-653-1620	031-672-8708	031-618-5445	070-8186-6804	
	휴대폰	010-2070-1153	011-776-8707	010-4047-7426	011-9133-2818	
보개면	직 위	보개면장	산업담당	행정7급	시설9급	031-678-3689
	성 명	김영기	김인성	임인식	이진형	
	자 택	031-675-5737	031-672-0351	031-673-0661	031-675-4133	
	휴대폰	011-9038-5737	011-9772-0351	016-267-6573	010-3925-3513	
금광면	직 위	금광면장	산업담당	시설7급	행정9급	031-678-3719
	성 명	박영식	강성희	유문선	김호성	
	자 택	031-672-1733	031-674-7997	031-671-5601	-	
	휴대폰	010-8989-1733	011-216-7994	011-479-1106	010-8613-3541	
서운면	직 위	서운면장	산업담당	행정7급	시설8급	031-678-3749
	성 명	안기천	최용묵	김승용	김원호	
	자 택	031-674-8345	031-671-8632	031-673-0074	-	
	휴대폰	010-2089-8345	010-6266-1478	017-227-0329	010-7224-3988	
미양면	직 위	미양면장	산업담당	시설7급	시설8급	031-678-3779
	성 명	이원호	이찬중	이병남	강 식	
	자 택	031-672-8012	-		-	
	휴대폰	017-738-8012	010-4204-0334	011-659-9180	010-8837-7777	
대덕면	직 위	대덕면장	산업담당	시설8급	행정9급	031-678-3809
	성 명	김주경	임영노	김학래	김수동	
	자 택	031-672- 2320	031-674-5342			
	휴대폰	010-6357-2320	011-733-5342	010-3763-0182	010-6369-0983	
양성면	직 위	양성면장	산업담당	시설7급	행정9급	031-678-3839
	성 명	김종수	정연호	양재춘	정원식	
	자 택	011-672-3406	031-678-3829	031-674-9316	-	
	휴대폰	011-9007-3406	010-4780-5744	011-682-2109	016-481-1499	
원곡면	직 위	원곡면장	산업담당	농업7급	시설8급	031-678-3869
	성 명	안익렬	황선태	심상철	이우현	
	자 택	031-676-6054	031-672-2082	031-674-1310	-	
	휴대폰	011-442-6054	011-9717-4436	016-9816-1310	010-4617-2253	

일죽면	직 위	일죽면장	산업담당	환경7급	시설7급	031-678-3899
	성 명	박명수	정상진	정재풍	송치규	
	자 택	031-672-3416	031-674-8360	031-672-2576	031-674-5724	
	휴대폰	019-272-3416	010-3849-8360	019-272-2576	010-3252-2216	

죽산면	직 위	죽산면장	산업담당	시설8급	농업8급	031-678-3929
	성 명	박상기	안성민	조순옥	박병순	
	자 택	031-673-3859	031-675-2959	-	041-588-7889	
	휴대폰	011-9785-3859	011-9650-2959	010-8819-9923	019-445-3738	

삼죽면	직 위	삼죽면장	산업담당	시설8급	행정9급	031-678-3959
	성 명	송근성	정만수	문규성	이시나	
	자 택	031-675 -3441	031-671-0032	070-8182-1745	043-265-8779	
	휴대폰	011 -709 -3441	010-9750-3330 9	010-7652-1745	010-2658-5819	

고삼면	직 위	고삼면장	산업담당	농업7급	시설8급	031-678-3989
	성 명	송상원	윤종찬	김기훈	박미리	
	자 택	031-675-9312	031-674-4167	031-672-6606	-	
	휴대폰	016-358-9312	010-2888-2100	016-757--9635	010-4660-0639	

안성1동	직 위	안성1동장	주무담당	농업8급	기능9급	031-678-4009
	성 명	이우중	정혜숙	김혜진	이영섭	
	자 택	031-674-8770	031-654-5761	-	-	
	휴대폰	011-9034-8770	010-4744-5761	010-2790-3827	018-280-4202	

안성2동	직 위	안성2동장	주무담당	행정8급	기능8급	031-678-4029
	성 명	오광환	유동식	박시찬	김용준	
	자 택	031-675-3677	031-673-2238	-	031-676-8310	
	휴대폰	016-344-3677	010-3173-2239	016-9522-3436	010-7117-4071	

안성3동	직 위	안성3동장	주무담당	행정7급	기능8급	031-678-4049
	성 명	이영기	남기성	김성호	곽영달	
	자 택	031-675-8101	031-675-6353	031-673-4175	031-671-2236	
	휴대폰	019-575-8101	011-298-6353	011-471-4175	011-895-5832	

8.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편성표

비 상 근 무 인 원 편 성 표								
구 분		준비단계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비상단계 (경보)			실무반 구분
부 서 명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계		76	6	70	225	25	200	
본 부 장(시장)		-	-	-	1	1	-	
차 장(부시장)		1	1	-	1	1	-	
통 제 관(도시건설국장)		1	1	-	1	1	-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1	-	1	2	-	2	비상지원반
공보감사담당관실		1	-	1	5	1	4	공보지원반
행 정 복 지 국	행정복지국장	-	-	-	1	-	1	
	행정과	1	-	1	7	1	6	행정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1	-	1	5	2	3	자원봉사지원반
	사회복지과	1	-	1	3	-	3	비상지원반
	세무과	-	-	-	5	-	5	비상지원반
	회계과	-	-	-	5	-	5	비상지원반
	정보통신과	1	-	1	3	-	3	비상지원반
산 업 경 제 국	토지민원과	1	-	1	3	-	3	비상지원반
	산업경제국장	-	-	-	1	-	1	
	지역경제과	1	-	1	2	-	2	비상지원반
	문화체육관광과	1	-	1	4	1	3	비상지원반
	농정과	1	-	1	6	1	5	비상지원반
	축산과	1	-	1	3	1	2	비상지원반
	산림녹지과	1	-	1	4	2	2	비상지원반
도 시 건 설 국	환경과	1	-	1	6	1	5	비상지원반
	도시정책과	2	-	2	3	-	3	비상지원반
	건설과	2	-	2	7	1	6	비상지원반
	교통행정과	1	-	1	5	1	4	비상지원반
	건축과	1	-	1	5	1	4	비상지원반
	도시개발과	1	-	1	2	-	2	비상지원반
	재난안전관리과	5	4	1	17	5	12	상황총괄반
보건소		1	-	1	7	1	6	비상지원반 구조구급반
농업기술센터		-	-	-	7	-	7	비상지원반
상수사업소		1	-	1	4	1	3	비상지원반
하수사업소		1	-	1	4	1	3	비상지원반
시립도서관		-	-	-	2	-	2	비상지원반
의회사무과		-	-	-	2	-	2	
안성소방서		1	-	1	2	1	1	구조구급반
읍·면·동		45	-	45	90	-	90	

유 관 기 관 별 비 상 근 무 인 원 편 성 표						
기 관 명	준비단계(주의보발령시)			비상단계(경보발령시)		
	계	상황실	사무실	계	상황실	사무실
계	7	-	7	12	5	7
안 성 경 찰 서	1	-	1	1	-	1
안 성 소 방 서	1	-	1	2	1	1
육군제5171부대2대대	1	-	1	2	1	1
한국농촌공사(안성지사)	1	-	1	2	1	1
한국전력공사(안성지사)	1	-	1	2	1	1
안성교육청	1	-	1	1	-	1
K T(안성지점)	1	-	1	2	1	1

※ 비상단계 : 안성교육청은 사무실 근무

9. 재난상황관리 비상연락망

재난상황관리 비상연락망

2010. 4.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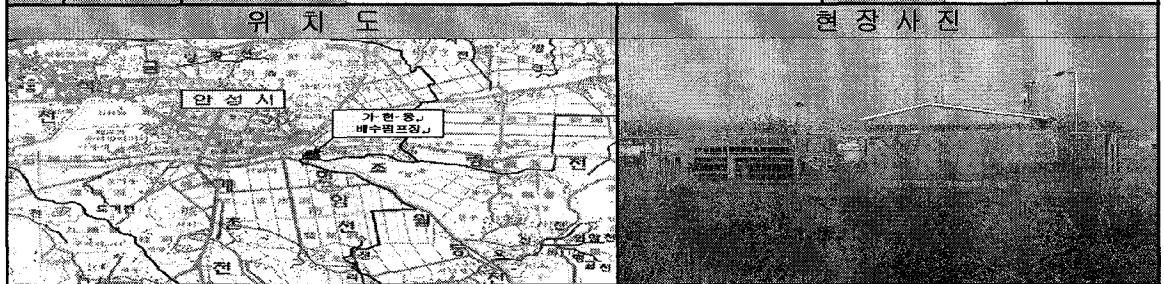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재난전략상황실	일) 02-2100-4949 fax) 02-2100-5590	중 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소방상황실	일) 02-2100-5119 fax) 02-2100-5590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청 종합상황실	경기도 소방재난 상황본부	일) 031-249-3653~4, 3642 fax) 031-249-3647~8, 3845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일) 031-659-4949, fax) 031-659-5484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일) 031-324-4949, fax) 031- 324-2159		
			일) 031-230-2961~5 행) 031-249-5151~2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일) 031-644-2119, fax) 031-644-2989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일) 041-551-2417, fax) 041-551-2419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일) 031-678-2119 031-678-5900~5904 무료) 080-343-3650~2(무료) fax) 031-678-2169	당 당 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은형	행) 2970	자 택 : 031-217-9518 휴대폰 : 017-335-9518	
				분 담 관 (복구지원담당)	백형일	행) 2991	자 택 : 031-673-3219 휴대폰 : 011-9708-3219	
안성시 사고 유형별 관리부서								
안 성 시 창 성	산 불	산림복지과	송상영 010-2331-9370 031)675-9370	시설7급	유윤상	행) 2992	자 택 : 휴대폰 : 010-3734-5947	
	환경오염	환경과	박인배 018-405-5141 031)678-2635	시설8급	김학민	행) 2993	자 택 : 031-672-9427 휴대폰 : 010-3562-9427	
	도로제설	건설과	장병목 019-9025-9152 031)674-9152	통신8급	이상용	행) 2994	자 택 : 휴대폰 : 010-3689-3305	
	가스사고	지역경제과	신상철 010-7332-2871 031)673-2871					
	건축물붕괴	건축과	김준석 010-4656-5507 031)672-7131					
	유도선사고	재난안전관리과	장문수 010-4521-3721 031)674-4156					
이재민발생	주민생활지원과	문현경 010-5380-4135 031)678-2195						
유 관 기 관				재 난 관 련 기 관 및 단 체				
소 방 서	안성소방서	676-0119 fax) 031-676-1194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259-3500 야) 259-3596 fax) 256-4361				
	도기파출소	672-0119	전기안전공사 평택안성지사	650-5201 야) 655-2811 fax) 651-4876				
	소현파출소	674-0019	주)삼천리 도시가스	667-3002 야) 667-3002 fax) 656-6564				
	미양파출소	677-7119	대한적십자사 남부봉사관 (평택)	안성협의회 이주찬(회장) 011-208-9891 전화)675-9898				
	죽산파출소	676-6119		손일수(관장) 031-653-1318 fax) 653-1317				
	평택소방서	652-0119 fax) 031-654-2400	재난통신지원단	신상철(회장) 010-5002-8061 fax) 671-0833				
	용인소방서	339-5119 fax) 031-338-4079	119무선봉사단	이경석(단장) 011-9894-7321 전화)655-0112				
	이천소방서	634-5119 fax) 031-631-5119	해 병 전 우 회	김취배(회장) 016-347-0469 전화)675-1985				
	오산소방서	373-0119 fax) 031-375-5119	안성시수난인명구조대	송영환(대장) 010-2343-1888 전화)677-8119				
	천안소방서	041-566-0119 fax) 041-552-1746	모범운전자회	김태환(회장) 011-769-8852 fax) 673-0126				
증평소방서	043-836-5119 fax) 041-836-7850	의용소방대	박용순(총무) 011-251-2914 fax) 673-4961					
소방항공대	031-333-3017	병 원 및 의 료 기 관						
경 찰 서	안성경찰서	674-0112 fax) 676-4586	안 성 의 료 원	674-7520	굿모닝 병원	659-7700		
	동부지구대	676-6112 (죽산, 일죽, 삼죽)	성 모 병 원	675-6007	남서울 병원	652-4567		
	서부지구대	653-2112 (공도, 양성, 원곡, 대덕)	동 인 병 원	671-0640	박 애 병 원	672-2121		
	남부지구대	675-3502 (금광, 서운, 미양, 안성시내)	재일경형외과	673-2119	연 세 병 원	651-1311		
	북부지구대	675-3240 (보개, 고삼)	한마음메디스	671-3200	중 앙 병 원	657-8114		
군 부 대	육군 제5171부대2대대	031-672-6113 fax) 031-672-6113	읍 · 면 · 동 재난관리담당자 및 야간당직전화번호					
	공군 제8990부대	031-656-0409	공도읍	시설8급 황선호	행) 3661 011-9773-9056	야)653- fax) 2001 3619		
	육군 제5291부대	041-581-0448	보개면	시설9급 이진형	행) 3694 010-3925-3513	야)675- fax) 3003 3689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점		주간)675-3111 670-2215(총무과) 야간)670-2268 fax) 670-2219(총무과)	금광면	시설7급 유문선	행) 3721 011-479-1106	야)672- fax) 3002 3719		
KT 안성지점		주간) 672-0060 야간) 674-0800 fax) 676-0007	서운면	시설8급 김원호	행) 3752 016-9224-3988	야)672 fax) -9001 3749		
			미양면	시설8급 강식	행) 3783 010-8837-7777	야)672 fax) -8001 3779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보수과)				031-218-1755	fax) 284-2210	대덕면	시설8급	김학래	행) 3813	010-3763-0182	야)675 fax) -3004 3809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경부)		041-561-0025	fax) 041-529-5308		양성면	시설7급	양재춘	행) 3841	011-682-2109	야)672 fax) -2001 3839
	경안지사(중부)		031-762-8191	fax) 031-760-9308		원곡면	시설8급	이우현	행) 3873	017-617-2253	야)653 fax) -3001 3869
농촌공사	안성지사	주·야간) 673-9771, 9772 유지관리팀) 673-9773 fax) 673-9774 지수지유지관리담당) 011-9114-6935 (박현철)				일죽면	시설7급	송치규	행) 3903	011-3252-2216	야)678 fax) -2684 3899
						죽산면	시설8급	조순욱	행) 3932	010-8819-9923	야)676 fax) -6001 3929
	공도지소	618-4008	고상지수지	016-379-6027 (배두환)		삼죽면	시설8급	문규성	행) 3963	010-7652-1745	야)672 fax) -4001 3959
	죽산지소	676-7354	금광지수지	016-327-8609 (김정수)		고상면	시설8급	박미리	행) 3993	010-4660-0639	야)672 fax) -7001 3989
	마암지소	673-9734	마련지수지	018-412-7723 (원장근)		안성1동	농업8급	김혜진	행) 4005	010-2790-3827	야)677 fax) -6201 4009
	중북배수장	010-4773-220 3(이영수)	미산지수지	010-7366-9986 (전기수)		안성2동	행정8급	박시찬	행) 4022	016-9522-3435	야)677 fax) -6301 4029
	신계배수장	016-343-644 1(권오준)	정릉저수지	016-365-6436 (최예준)		안성3동	행정7급	김성호	행) 4052	011-471-4175	야)677 fax) -6400 4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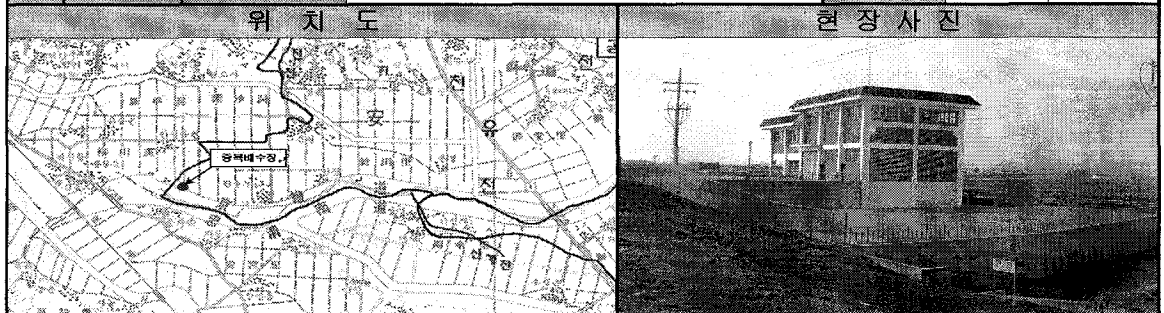
10. 방제시설물 현황(배수펌프장, 저수지)

가. 배수펌프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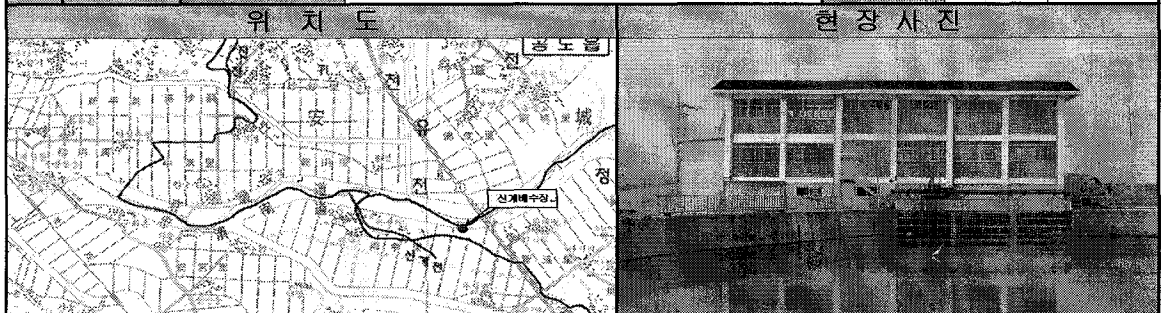
1	가 현 동 배수펌프장	주 용 도	위 치	준공연도	유역면적	처리능력	관리자	담당부서
		도시침수방지	안성시 가현동 155-3	2003	12.4(ha)	35(㎥/min)	안성시	재난안전 관리과
		펌프용량	D=400mm × Q=17.5㎥/min ×30HP(22kw) ×2대			시설담당자	이태현	678-2994



2	중북배수장	주 용 도	위 치	준공연도	유역면적	처리능력	관리자	담당부서
		농경지침수방지	공도읍 중북리 426-4	2001	316.7(ha)	4.0(㎥/sec)	농촌공사	공도지소
		펌프용량	D=1000mm ×125HP ×2대			시설담당자	신재호	678-3560



3	신계배수장	주 용 도	위 치	준공연도	유역면적	처리능력	관리자	담당부서
		농경지침수방지	미양면 신계리 219-36	2001	686.1(ha)	5.0(㎥/sec)	농촌공사	미양지소
		펌프용량	D=1000mm ×125HP ×2대			시설담당자	신재호	678-3560



11. 농촌공사관리 저수지 현황

구분	저수지명	위 치		준공 년도	유호저수량 (천톤)	몰리면적 (ha)	제 당		만수면적 (ha)	비 고
		읍면동	리				길이(m)	높이(m)		
계	19개소				40,111	7,549	3,210		670.3	
1	금광 저수지	금광	금광	1961	10,550	2,134	225	21	152	
2	고삼 저수지	고삼	월항	1963	15,150	3,123	207	17	279	
3	철곡 저수지	원곡	원곡	1958	625	134	205	11	15	
4	운수 저수지	원곡	반제	1942	359	94	113	11	12	
5	만수 저수지	공도	만정	1945	505	171	358	7	24	
6	마둔 저수지	금광	오산	1975,	3,500	575	170	24	41	
7	미장 저수지	삼죽	미장	1968	88	30	123	14	1.5	
8	청용 저수지	서운	청용	1974	1,594	317	170	25	19.8	
9	미산 저수지	양성	미산	1985	1,698	222	251	25	20	
10	용설저수지	죽산	용설	1985	3,064	395	459	19	54	
11	오촌 저수지	서운	오촌	1945	83	20	110	6	1	
12	노곡 저수지	양성	노곡	68	167	40	146	10	5	
13	장계 저수지	죽산	장계	1986	878	112	269	23	12	
14	덕산 저수지	삼죽	덕산	1992	1,850	242	404	15.8	34	
15	용담 저수지	원삼	사암	1978	1,023	212	280	11	38	용인시
16	두창 저수지	원삼	두창	1992	1,300	240	192	20.2	21	용인시
17	농촌 저수지	금광	농촌	1945	34	20	130	2.5	1	
18	거청 저수지	대덕	모산	1945	36	15	120	3.0	2.5	
19	양변 저수지	미양	양변	1960	15	22	240	3.7	2.5	

12. 소류지 현황

구분	소류지명	위 치		준공 년도	유출지수량 (천톤)	용리면적 (ha)	지 당		만수면적 (ha)	비 고
		읍면동	리				길이(m)	높이(m)		
계	51개소									
1	신장 소류지	보개	신장	1949	19	25	110	7.5	1.0	
2	적가 소류지	보개	적가	1945	13	15	156	5.0	1.4	
3	방축 소류지	보개	구사	1948	2	6	84	2.5	0.4	
4	북평 소류지	보개	북평	1968	16	13	82	4.0	1.4	
5	신안 소류지	보개	신안	1960	43	28	160	9.0	1.6	
6	북좌 소류지	보개	북좌	1949	14	8	110	6.0	0.8	
7	상삼 소류지	보개	상삼	1958	5	9	74	5.5	0.3	
8	양협 소류지	보개	양협	1968	5	4	126	3.0	0.7	
9	남풍 소류지	보개	남풍	1977	172	25	148	15	3.0	
10	동신곡소류지	금광	양북	1966	40	22	120	9.5	1.4	
11	연하 소류지	서운	동촌	1945	4	13	100	2.5	1.0	
12	양촌 소류지	서운	양촌	1962	73	61	100	12	2.0	
13	인처동 소류지	서운	인	1963	31	23	139	12.3	1.0	
14	중동 소류지	서운	인	1965	12	3	118	11.4	0.4	
15	신흥 소류지	서운	신흥	1962	10	12	106	3.5	1.0	
16	인리 소류지	서운	인	1969	10	7	222	6.0	1.0	
17	갈전 소류지	미양	갈전	1953	15	22	160	4.5	1.0	
18	고지 소류지	미양	고지	1956	181	40	248	5.0	2.0	
19	법전 소류지	미양	법전	1961	36	20	216	6.0	2.0	
20	장서 소류지	양성	장서	1950	6	7	102	5.3	0.5	
21	이현 소류지	양성	이현	1946	9	11	103	5.7	0.6	
22	산정 소류지	양성	산정	1969	145	50	137	14.0	4.0	
23	도곡 소류지	양성	도곡	1960	18	30	100	9.7	2.0	
24	산우물 소류지	양성	산정	1986	8	15	136	17.1	1.6	
25	추조 소류지	양성	추조	1960	51	38	158	6.6	2.0	
26	덕봉 소류지	양성	덕봉	1971	83	20	138	11.0	1.8	
27	동향 소류지	양성	동향	1969	142	23	170	15.0	3.0	
28	방축 소류지	양성	방축	1968	9	9	66	17.0	0.8	
29	독정 소류지	원곡	칠곡	1984	102	25	217	8.9	4.0	
30	성주 소류지	원곡	성주	1967	30	17	94	15.0	0.6	
31	성은1소류지	원곡	성은	1974	42	20	96	14.0	0.9	
32	성은2소류지	원곡	성은	1994	18	36	222	13.0	4.6	
33	내가천소류지	원곡	내가천	1945	29	23	50	5.0	2.0	
34	상지 소류지	원곡	지문	1987	300	44	212	13.4	7.0	
35	화봉 소류지	일죽	화봉	1971	49	23	116	12.0	1.2	
36	산북 소류지	일죽	산북	1961	38	22	123	7.0	2.0	
37	주천 소류지	일죽	주천	1945	8	19	120	5.2	1.0	
38	설동 소류지	죽산	용설	1969	19	20	68	10.1	0.6	
39	한평 소류지	죽산	매산	1961	70	34	160	11.0	2.0	
40	상곡 소류지	죽산	장능	1945	8	4	88	9.5	0.3	
41	능지 소류지	죽산	용설	1964	5	10	80	3.5	0.4	
42	열원 소류지	죽산	장원	1945	6	15	60	9.5	0.2	
43	능북 소류지	죽산	장능	1945	25	25	310	5.3	2.0	
44	도화동소류지	죽산	당목	1984	11	10	65	5.5	0.5	
45	회암 소류지	삼죽	내강	1955	22	14	59	9.3	0.8	
46	밤고개소류지	고삼	가유	1965	17	8	87	6.7	1.0	
47	가락골소류지	고삼	가유	1960	18	20	110	5.0	1.0	
48	월동 소류지	고삼	월향	1945	10	5	72	5.7	0.4	
49	삼은 소류지	고삼	삼은	1945	4	5	75	2.3	0.7	
50	호동1소류지	고삼	신창	1975	10	8	53	7.0	0.4	
51	호동2소류지	고삼	신창	1984	10	7	87	8.5	0.4	

13. 재난관련 IP 및 Password 현황

Disaster Management Section (IP & Password) Status

Disivision	IP(Web Address)	Adminstrator		Etc	
		ID	Password		
상황전파메신저 (safe on)다운로드	http://safeworld.go.kr	-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경기도홍수정보 시스템	http://105.0.1.103	ansung5160	1111	경기도	
방재기상정보 시스템	http://metsky.kma.go.kr	ggd30001	ans111	기상청	
강우자료수집시스템	http://105.30.7.39	anseong	anseong	(주)한성전자	
재난관리시스템	http://105.30.1.13:9100/sdt/SdtLogin.jsp	재난관리시스템 사용자 ID	재난관리시스템 PW	해당업무	
		상황전파메신저 접속 ID	상황전파메신저 접속 PW		
		4155001001	담당별 부여	방역	풍수해
		4155002001	담당별 부여	의료	
		4155003001	담당별 부여	인명피해	
		4155004001	담당별 부여	산사태	
		4155005001	담당별 부여	재해쓰레기	
		4155006001	담당별 부여	상수도	
		4155007001	담당별 부여	지방도	
		4155008001	담당별 부여	시군도	
		4155009001	담당별 부여	상황총괄	
		4155010001	담당별 부여	하천	
		4155011001	담당별 부여	수리시설	대설
		4155012001	담당별 부여	소규모시설	
		4155013001	담당별 부여	도시방재시설	
		4155007001	담당별 부여	지방도	
		4155008001	담당별 부여	시군도	
		4155009001	담당별 부여	상황총괄	
		4155022001	담당별 부여	내집앞 눈치우기	
		4155021001	담당별 부여	농업시설	
		4155000C	담당별 부여	건축물 관련 사유시설피해확정	
		4155000E	담당별 부여	농업시설물 관련 사유시설피해확정	
		4155000G	담당별 부여	이재민 관리	
안성시안전문화 운동	http://safe.anseong.go.kr	-	-	재난안전관리과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PEM-NDP)	http://www.pembiz.com	anseong119	anseong119	(주)이콤	
안성시청 SMS-MS	http://sms.anseong.go.kr	bangjae	bangjae	정보통신과	

14. 인명피해 최소화 행동요령

● 인명피해 경계령 추진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중호우 및 돌발성 인명피해 발생우려 시 자체 발령을 통보함으로써 단계별 추진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인명피해 최소화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유도

● 인명피해 경계령 개요

- 발령권자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발령대상 : 재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발령시기 : 태풍·호우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기
- 발령단계 : “준비” ⇒ “주의” ⇒ “위험”
- “인명피해 경계령” 발령시에는 반드시 상황근무자, 현장순찰근무자, 읍·면·동 등에 전파

■ 돌발성 인명피해 경계령 단계별 추진사항

● 준비단계 : 기상(예비)특보 발령 시

- “대피명령 시 대피해야한다”는 주민홍보 실시
- 대피장소, 대피소 등 대피 시 행동요령 전파
- 재해약자 및 거동불편자 등 파악 및 대피수단 지정
-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인(기관별 담당자, 차량 등 준비상태)
-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및 사전임무 분담

< 기관별 역할(임무) >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 대피명령 발령사실 홍보, 주민대피 안내, 차량지원
- 안성경찰서 : 주민대피 안내, 강제대피 유도, 치안유지, 차량지원
- 안성소방서 : 주민대피 안내, 위험지역 주민 구조, 응급환자 이송
- 육군 제5171부대 2대대 : 주민대피 안내 및 차량지원, 치안유지 등

☐ 재난안전선(SAFETY LINE) 및 야간대피 자재 배부

-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마을이장 기타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에게 배부.
-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나 주민이 대피한 마을 진·출입로, 야간에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물이 넘쳐서 하천과 도로가 구분 되지 않는 지역, 물이 넘치는소교량, 기타 방치할 경우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 **주의단계** : 기상특보(주의보)가 발령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우가 예상 되는 단계

- 대피명령 발령 준비 및 검토
- 주민대피를 위한 각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CP 운영
- 현장순찰팀 가동(담당마을 공무원, 통·리장 구성)
- 대피 대상지역 주민 이동사항 관리(부재중이거나 미리 대피한 인원 파악)
- 대상지역 대피인원 파악 및 대피담당자 사전지정

※ 읍면동 산업담당을 대피담당자로 지정 운영하고자 함.

- 계곡·유원지의 행락객 등은 바로 대피조치
- 재해약자는 가능하면 미리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

※ 현재 강우량은 적어도 향후 강우가 계속될 경우 위험이 예상되면 단계에 관계없이 지역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사전대피 시킬 수 있음.

● **위험(대피)단계** : 강우 등으로 인하여 위험지역 주민 등을 대피시는 단계

- 현장CP와 지속적인 상황파악을 통해 주민 대피시기 결정
(필요시 긴급 상황판단회의 개최)

※ 대피시점 결정은 누적강우량, 최대시우량, 연속강우량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각 강우량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결정

- 대피가 결정되면 대피명령을 발령하고 유관기관 협조요청
- 미리 준비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민대피 실시

※ 대피 거부자는 강제대피 및 벌금부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

-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재난안전선(S/L)”을 적극적으로 설치
- 주민대피지역은 “재난안전선(S/L)” 설치 및 출입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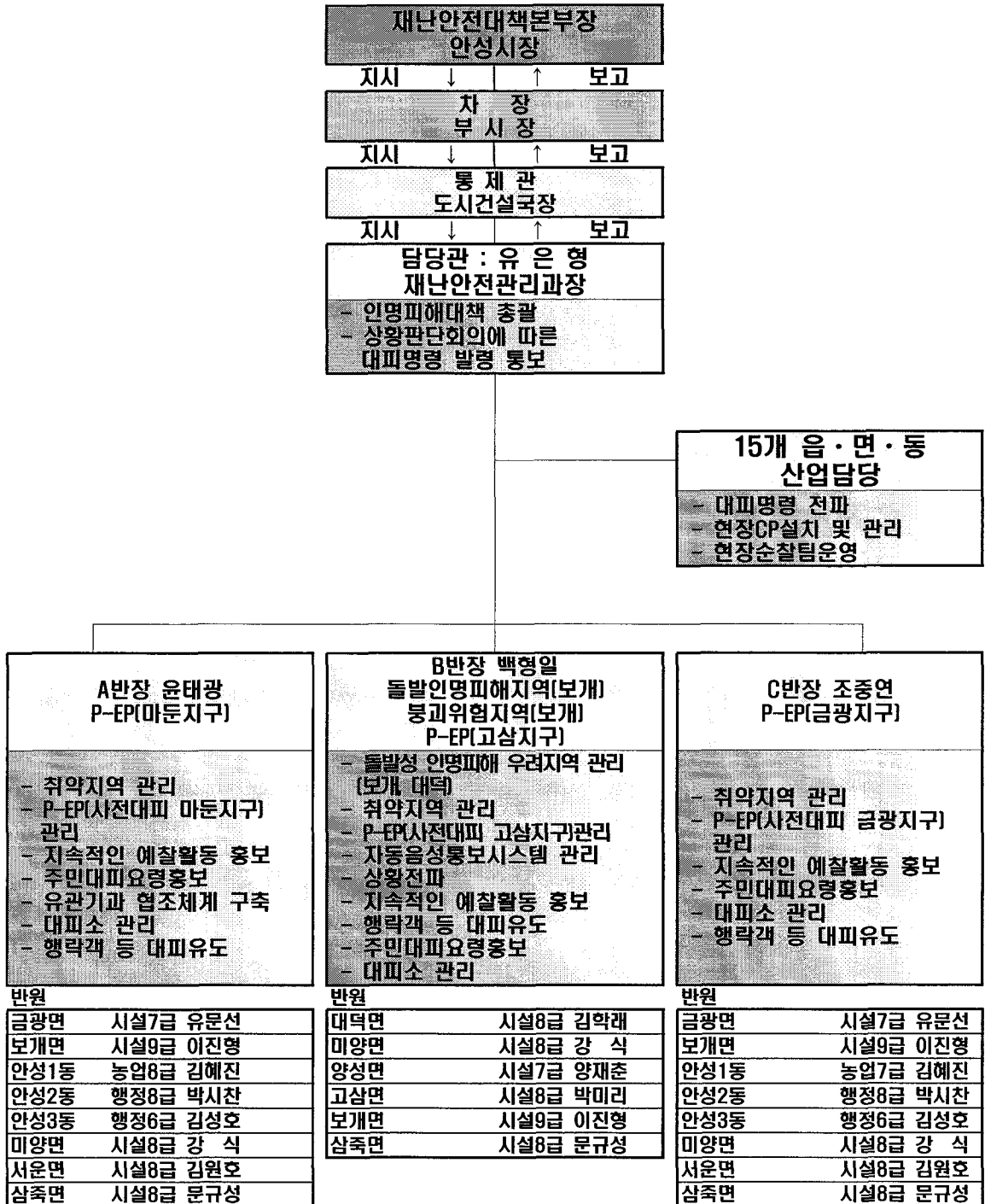
※ 경찰은 주민대피 마을 치안유지 협조

◆ **준비·주의·위험 등 각 단계는 필요시 즉시 발령하여야 하며 순차적으로 발령할 필요는 없음**

◆ **“인명피해 경계령”의 단계는 지역마다 토질, 경사도 등의 지역별 여건이 다르므로 일괄적용이 불가하며 자치단체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대피명령”은 과거의 피해이력, 피해발생시 누적강우량·시우량, 피해 지역의 토질·경사도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임계점을 분석하고 강우가 임계점에 접근할 경우에 발령

인명피해 최소화 T/F팀 구성(안)



야간 주민 대피계획

야간 주민 대피 각 조별 담당업무(안)

구 분	업 무	지자체공무원	유관기관
총괄조	대피업무 총괄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은형 ▶ 시설7급 장문수	▶ 지역자율방재단 총괄반
대피조	현지에서 직접 주민 대피유도	▶ 복구지원담당 백형일 ▶ 시설7급 유윤상 ▶ 시설8급 김학민	▶ 지역자율방재단 인명구조반 ▶ 육군 제5171부대 2대대
안내조	대피로 중간에서 대피소 안내 및 대피로의 상태 전파	▶ 재난관리담당 윤태광 ▶ 통신8급 이상용 ▶ 시설8급 최종수	▶ 지역자율방재단 현장운영반
확인조	대피완료 후 가구마다 방문 점검[대피조가 병행가능]	▶ 하천담당 조종연 ▶ 시설6급 오인섭 ▶ 시설7급 박태규	▶ 지역자율방재단 대피장소운영반
대피소 운영조	대피자 도착 전에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 확보	▶ 민방위담당 송재안 ▶ 행정7급 김기선 ▶ 기능7급 맹인석	▶ 지역자율방재단 복구지원반

◎ 담당자는 현장 출동 전에 야간대피시 유의사항, 현지상황, 담당주민 연락처, 가족 수, 재해약자 여부 및 현장 행동요령, 대피소 위치, 대피로, 비상연락처 등을 숙지하도록 조치

[야간 대피시 유의 사항]

- ▶ 집중호우 또는 침수 등 기상 악화 시에는 방향감각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변을 잘 살필 것
- ▶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있는 위치를 항상 숙지하고 행동할 것
- ▶ 단독행동 하지 말고, 낙오되거나 방향을 잃었을 경우는 즉시 비상연락을 취할 것(무전기, 휴대전화, 비상연락망 등 휴대)
 - ※ 혼자 방향을 찾으려고 시간낭비 하지 말 것(위험지역에서는 “시간은 곧 생명이다”라는 생각으로 신속하게 행동할 것)
- ▶ 집중 호우시 고함소리 등은 들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전등을 휴대하고 손전등 신호요령을 사전에 상호 약속할 것
 - 〈 손전등 신호의 예시 〉
 - 상하로 크게 움직인다 : 위험하다 도와 달라
 - 좌우로 크게 움직인다 : 응급환자가 있으므로 구급대를 보내라
 - 크게 원을 그린다 : 고립되었다 구조대를 보내라
- ▶ 반드시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행동할 것
- ▶ 대피 거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이나 주변 담당자 등에게 협조 요청하여 강제대피 시킬 것
 - ※ 설득하거나 혼자서 강제대피 시키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 사전 홍보방송 실시

- ▶ 위험요인 증대시 야간에라도 대피할 수 있으므로 사전준비 하라는 홍보방송 실시
 - ※ 방송 차량, 마을앰프, 전화(대피담당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 ▶ 대피소, 대피방법(도보, 차량), 차량탑승 장소, 준비물 등 안내
- ▶ 개인별로 대피 시에는 이장 등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안내
- ▶ 위급시 귀중품 챙기기에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사전홍보 철저

● 대피 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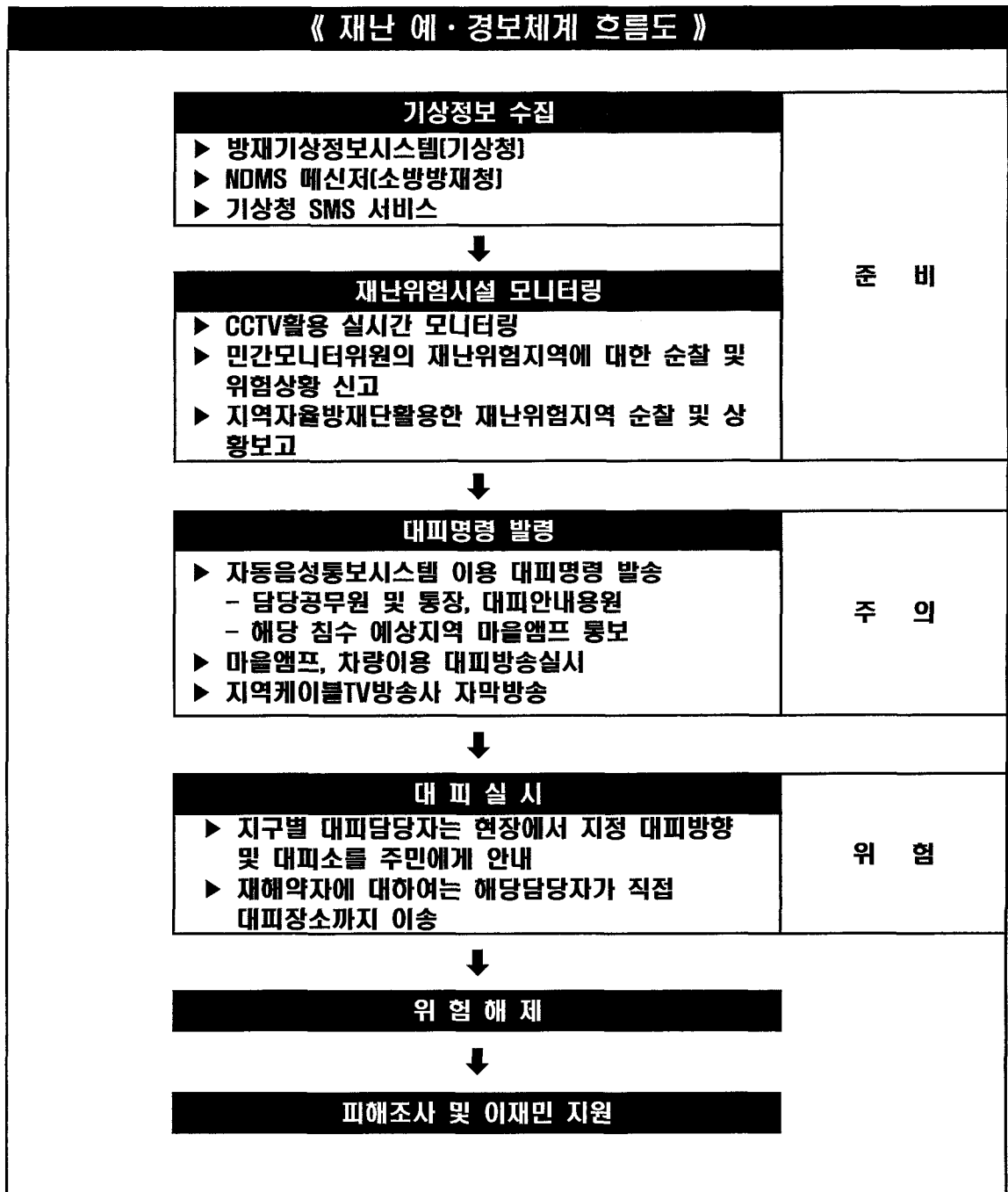
- ▶ 거동 불편자, 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재해약자는 최우선 대피
- ▶ 대피로 중간에서는 방향 유도 안내요원 배치(경광봉 휴대)
- ▶ 도보 대피자들이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소 입구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차량 불빛 등을 이용하여 위치 안내
 - ※ 필요시 비상발전기 등을 활용한 조명시설 설치
- ▶ 대피조는 주민과 대피소까지 동행 하여야 하며 대피 중(또는 차량 탑승 후) 어떠한 이유에서도 다시 집으로 가려는 것을 저지
 - ※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음
- ▶ 경찰은 선두·후미에서 대피자(차량) 안내 및 낙오자 유무 점검
- ▶ 확인조는 대피 완료한 마을을 가구별로 최종확인 후 철수
- ▶ 대피완료 후에는 가구별 대피 담당자가 대피인원, 대피장소 등을 최종 보고
- ▶ 주민대피에 참가한 담당자 중 낙오자 여부 확인 등

● 야간대피 자재(반사조끼, 후레쉬, 경광봉, 무전기등) 사전확보

● 대피완료 후

- ▶ 대피조는 주민의 대피완료 및 인원수를 총괄반에 보고
- ▶ 확인조는 철수하면서 위험지역 출입도로에 “재난안전선(S/L)을 설치하여 출입 통제
- ▶ 재난안전선 설치지역 출입통제(사전 지정된 담당자 또는 경찰)
 - ※ 이때 출입통제자는 반드시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근무

재난 예·경보 체계의 흐름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

비상상황 대피명령문안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지역은 호우주의보(경보)가 발효되어 오늘 중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여러분께서는 아래사항에 유의하시어 간단한 물품을 준비하시고 대피명령 발령 시 즉시 ○○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 물꼬 조정은 나중으로 미루시기 바라며
- 물이 넘치는 교량(세월교)이나 하천에 차량진입을 하지 마시고
- 물살이 센 하천은 물이 알아도 절대 건너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산간계곡 이나 야영지에 물이 불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야영객 및 행락객 여러분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비가 그친 후 물가에서 낚시나 고기잡이 등은 위험하오니 삼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11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회 반 복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들으시면서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대피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통 보 문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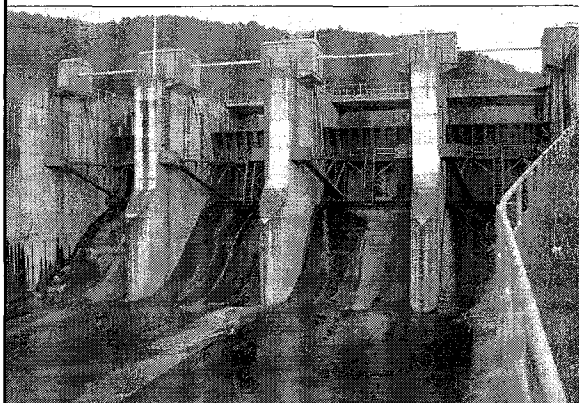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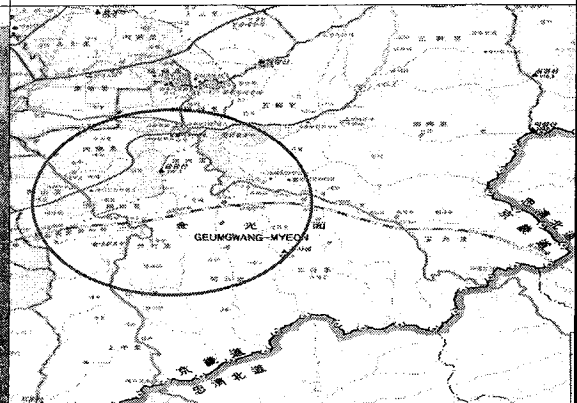
여기는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상황이 진행중에 있어 비상대피명령을 발령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대피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유선방송 방송자막문안

금일 ○○시 ○○분을 기하여 유사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지역 주민께서는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취약지역 지정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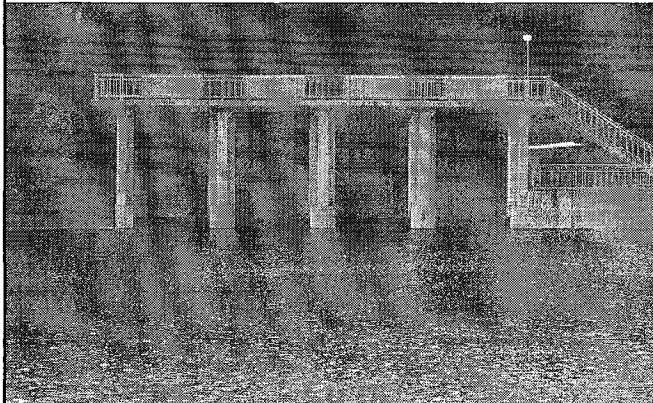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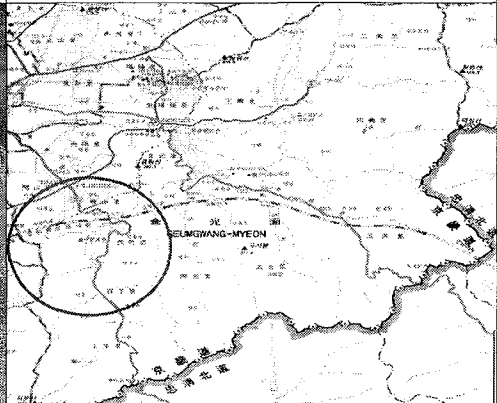
《 P-EP사전대피지구 - 금광지구 》

위험지역 대상마을	위 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금광저수지)					
	가구수	4,253가구		대상인원 (재해약자)		12,689명 (45명)	
피해발생 우려지역	피해형태	저수지붕괴 에 따른침수	하상경사		제방 상태	좌안	고수호안53.19(28.98)
	총저수량	1,059만톤	유역면적	4,830ha		우안	고수호안55.07(30.58)
	설계빈도	50년	교량과 연계산태		조령천 5개소, 안성천 4개소		
과거피해	발생일시	0000년 00월 00일		피 해 내 역	내용	금광저수지 붕괴에 따른 침수	
	강우량 (mm)	누적강우	-		원인	태풍 및 집중호우	
		최대시우량	-		인명	사망 0명, 실종 0명	
		연속강우	-		재산	전파 0동, 반파 0동	
주민대피 단계 결정							
준비단계	기상예비특보가 발령되고 향후 많은 비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단계	기상특보가 발령						
위험단계 (대피)	누적강우량	515mm	강우량 등을 감안하여 대피여부는 지역대책본부장이 결정 대피결정시에는 대피명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과거 피해지역은 피해당시 강우량 등 여건을 최대한 반영				
	최대시우량	80mm					
	연속강우량	333mm					
현장사진				위 치 도			
							
담당자	소속	재난안전 관리과	직급	시설6급	성명	조 중 연	전 화
							031-678-2981 011-494-5194

※ 제방높이는 평균높이로 하고 ()안에 최저높이 기재, 검토범위는 제방의 붕괴를 가정해서 마을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 한정

상습취약지역 지정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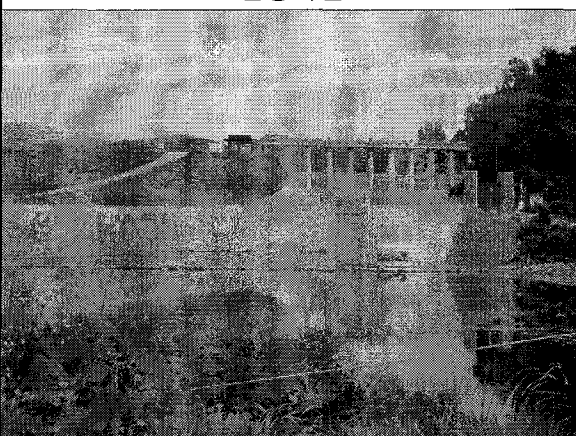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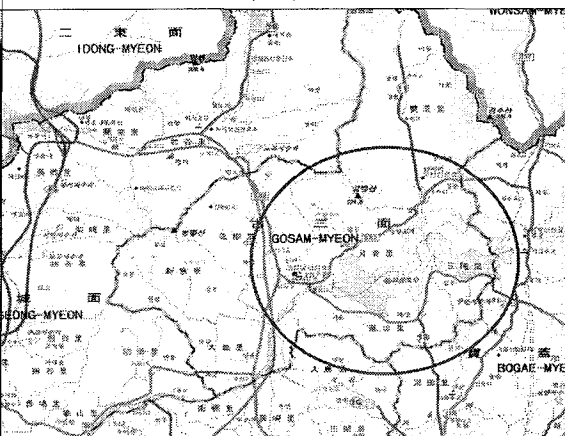
《 P-EP사전대피지구 - 마둔지구 》

위험지역 대상마을	위 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마둔저수지)					
	가구수	4,469가구		대상인원 (재해약자)		12,675명 (31명)	
피해발생 우려지역	피해형태	저수지붕괴에 따른 침수	하상경사		제방 상태	좌안	자연석65.45(34.27)
	총저수량	351만톤	유역면적	1,240ha		우안	자연석67.22(34.27)
	설계빈도	200년	교량과 연계산태			월동천 9개소, 조령천 5개소, 안성천 4개소	
과거피해	발생일시	0000년 00월 00일		피해 내역	내용	마둔저수지 붕괴에 따른 침수	
	강우량 (mm)	누적강우	-		원인	태풍 및 집중호우	
		최대시우량	-		인명	사망 0명, 실종 0명	
		연속강우	-		재산	전파 0동, 반파 0동	
주민대피 단계 결정							
준비단계	기상예비특보가 발령되고 향후 많은 비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단계	기상특보가 발령						
위험단계 (대피)	누적강우량	516mm	강우량 등을 감안하여 대피여부는 지역대책본부장이 결정 대피결정시에는 대피명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과거 피해지역은 피해당시 강우량 등 여건을 최대한 반영				
	최대시우량	80mm					
	연속강우량	333mm					
현장사진				위 치 도			
							
담당자	소속	재난안전관리과	직급	시설6급	성명	윤 태 광	전화 031-678-2971 017-357-8186

※ 제방높이는 평균높이로 하고 ()안에 최저높이 기재, 검토범위는 제방의 붕괴를 가정해서 마을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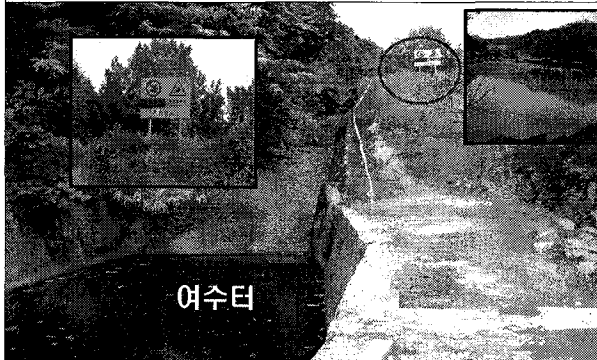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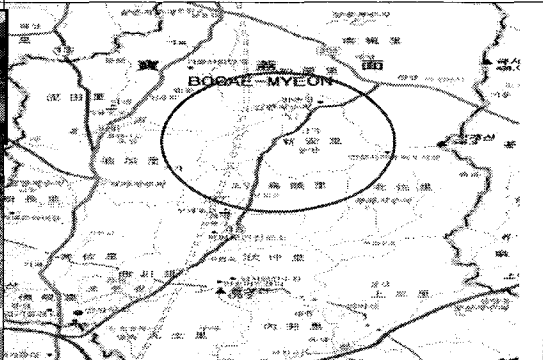
상습취약지역 지정 대장

《 P-EP사전대피지구 - 고삼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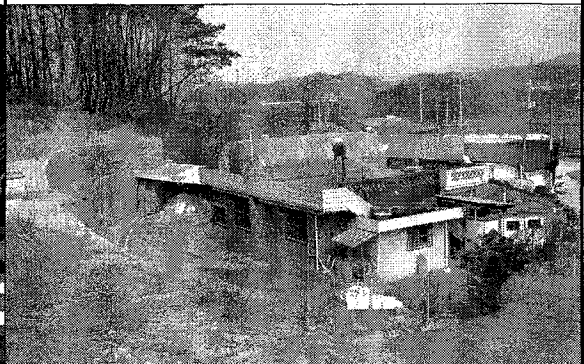
위험지역	위 치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고삼저수지)					
대상마을	가구수	825가구		대상인원 (재해약자)		1,496명 (9명)	
피해발생 우려지역	피해형태	저수지붕괴에 따른 침수	하상경사		제방 상태	좌안	돌망태, 호안블럭55.90(18.49)
	총저수량	1,515만톤	유역면적	7,100ha		우안	돌망태, 호안블럭53.55(14.49)
	설계빈도	200년	교량과 연계산태		한천 7개소, 안성천 7개소		
과거피해	발생일시	0000년 00월 00일		피 해	내용	고삼저수지 붕괴에 따른 침수	
	강우량 (mm)	누적강우	-		원인	태풍 및 집중호우	
		최대시우량	-	내 역	인명	사망 0명, 실종 0명	
		연속강우	-		재산	전파 0동, 반파 0동	
주민대피 단계 결정							
준비단계	기상예비특보가 발령되고 향후 많은 비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단계	기상특보가 발령						
위험단계 (대피)	누적강우량	515mm	강우량 등을 감안하여 대피여부는 지역대책본부장이 결정				
	최대시우량	80mm	대피결정시에는 대피명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연속강우량	333mm	※과거 피해지역은 피해당시 강우량 등 여건을 최대한 반영				
현장사진				위 치 도			
							
담당자	소속	재난안전 관리과	직급	시설6급	성명	백 형 일	전 화
							031-678-2991 011-9708-3219

※ 제방높이는 평균높이로 하고 ()안에 최저높이 기재, 검토범위는 제방의 붕괴를 가정해서 마을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 한정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대장

지 구 명	동안지구(산우물 저수지 수로)							
위 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담 당 자	총괄담당자	재난안전관리과 백형일	(031) 678-2991 011-9708-3219					
	현장책임자	보개면사무소 이진형	(031) 678-3694 010-3925-3513					
	현지담당자	동안이장 양창석	(031) 676-5287 011-9749-5289					
통제수단	※담당자지정							
홍보수단	※경고표지판							
통제시기	시간강우량 40mm이상 경우							
과거피해현황	내용	인명피해 1명 (성명 : 도경열 나이 : 60세 성별 : 남)						
	사유	유수에 휩쓸림에 따른 실족사						
[특이사항]								
현장사진		위치도						
								
담당자	소속	재난안전 관리과	직급	시설7급	성 명	유 윤 상	전 화	031-678-2992 010-3734-5947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장

지 구 명	소동산 지구				
위 치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산40				
담 당 자	총괄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031-678-2991
		재난안전관리과	시설6급	백형일	011-9708-3219
	현장책임관	소 속	직 급	성 명	031-678-3813
		대 덕 면	시설8급	김학래	010-3763-0182
	현지담당자	소동산 이장 홍해원			031-676-8881 019-330-8881
통제수단	※ 담당자지정 등 설치된 통제수단을 모두 표시				
홍보수단	※ 경고표지판, 안내표지판, 방송앰프 등 설치한 모든 시설 표시				
통제시기	시간강우량 100mm이상 또는 물이 넘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과거피해 현황	내용	인명피해 발생			
	사유	산사태 발생에 따른 매몰			
[특이사항]					
위 치 도			현장사진		
					

재해상황 관리 서식

1. 즉 보
2. 사유재산피해 신고서
3.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등록부
4. 피해상황 접수대장

1. 즉 보

재 난 상 황 보 고 서

(읍·면·동)즉보 제 호

수 신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접수일자 : 2010. . . .

시행일자 : 2010. . . .

발 신 : 읍·면·동장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교통두절, 기타()

1. 일 시 : 2010. . . .

2. 장 소 :

3. 상황개요 :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기 타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군경 : , 소방 : , 공무원 : , 기타 :)

· 장 비 :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 작성자 : 소속 ○○과 직 ○○○급 성명 ○○○

2. 사유재산피해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26>

(앞 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피해자 정보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번지
성 명			
가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시·군·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시·군·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지급동장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핸 드 폰 :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안성시	읍·면·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주택	②	③	④ ⑤
종 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허가·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원인	①	②	③	④ 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통장, 이웃]

주민등록번호 : -

안성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의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안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물/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6. 추가 피해내역은 뒤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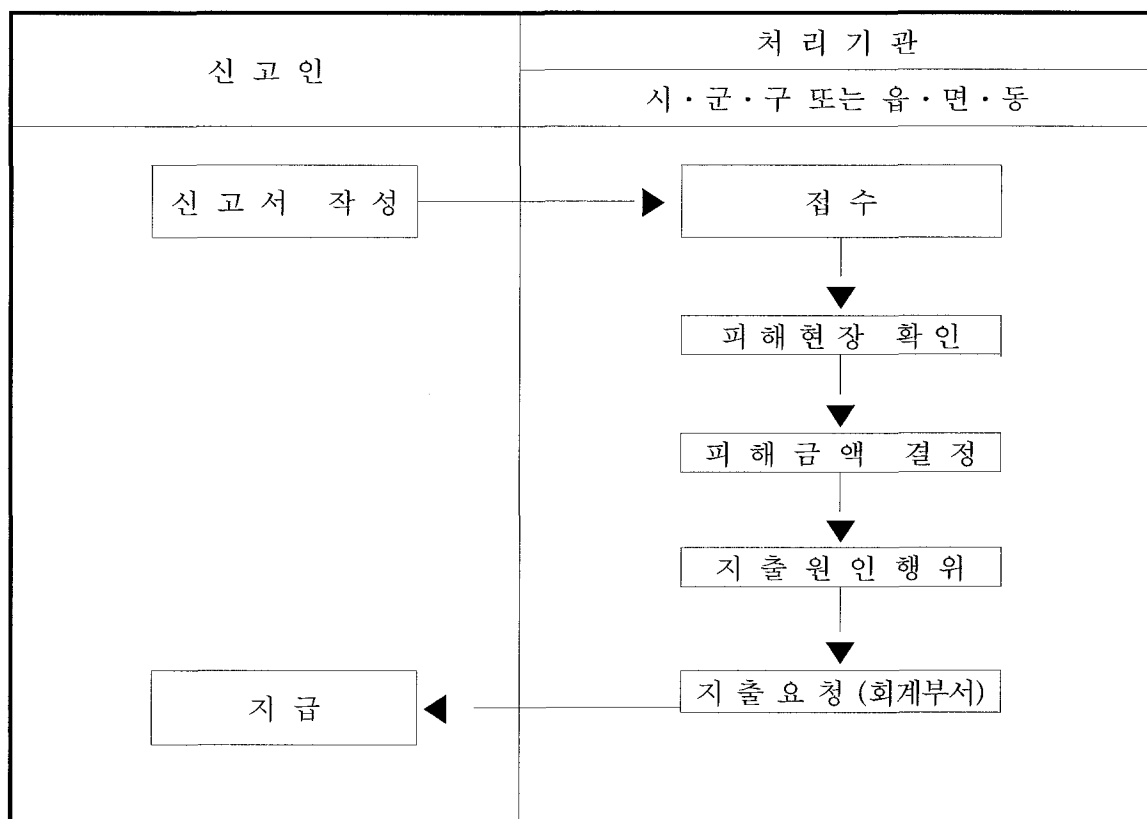
피해내역

피해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총 면적(소유+임차)	
면허·허가·등록번호	
피해물량	신고
	확정
피해구분	
피해원인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읍·면·동	번지외	필지
⑥	⑦	⑧	⑨
⑥	⑦	⑧	⑨
⑥	⑦	⑧	⑨
⑥	⑦	⑧	⑨
⑥	⑦	⑧	⑨
⑥	⑦	⑧	⑨
⑥	⑦	⑧	⑨
⑥	⑦	⑧	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등록부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등록부

2010년 00월 00일 00:00 ~ 00월 00일 00:00

[illegible]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

4. 피해상황접수 대장

재난종합상황 일지

연번	연월일 (시간)	피해상황	조치내용	신고자 연락처	접수자	처리자